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13호

2015. 9. 24.(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5-1566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5-173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15-173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제2015-1744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고 시

제2015-285호 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8
제2015-286호 압구정 428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8
제2015-287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13
제2015-288호 구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57
제2015-2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62
제2015-290호 구산근린공원 및 역촌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67
제2015-291호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75
제2015-292호 탑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79
제2015-293호 선유도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85
제2015-2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91
제2015-295호 도시관리계획(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29
제2015-296호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잠실광역중심 제2지구)·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4
제2015-297호 개화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6
제2015-29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25
제2015-300호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고시	244

◆ 공 고

제2015-172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246
제2015-172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246
제2015-1733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	248

제2015-173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249
제2015-173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250
제2015-174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250
제2015-1753호 광진구 구의동 626-1 일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51
제2015-1756호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253
제2015-175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광운대학교)	259

◆ 구 고 시

제2015-87호 성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261
제2015-88호 서마장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265
제2015-103호 중곡2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268
제2015-221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북구) ..	272
제2015-118호 도봉구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274
제2015-116호 독립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문구) ...	345
제2015-117호 불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문구) ..	349
제2015-118호 은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문구) ..	352
제2015-119호 문화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문구) ...	355
제2015-120호 문화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대문구)	358
제2015-121호 가자거꾸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대문구)	361
제2015-1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364
제2015-117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366

◆ 구 공 고

제2015-7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광진구)	368
제2015-9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강북구)	376
제2015-807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서대문구)	397
제2015-821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금천구)	397
제2015-88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동작구)	398

◆ 사업소고시

제2015-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03
제2015-1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03

제2015-1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04

◆ 사업소공고

제2015-13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05
제2015-13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07
제2015-14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09

◆ 정 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617호 정정	410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66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효율적인 법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행 중앙행정기관 및 부서 명칭,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관련사항 반영(안 제11조, 제13조)
 -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6조)
 - 다. 조례규칙심의회 정기회의 소집일정 개정(안 제17조제2항)
 - 라. 대리출석의 범위에 실·본부·국의 기획관 포함(안 제20조)
 - 마.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안 제23조, 제24조, 제44조)
 - 바. 부서명칭을 총무과장에서 정보공개정책과장으로 수정하고, 공포문의 사본 보관규정 삭제(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1, FAX: 02)2133-0821, E-mail: lyh122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3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에게 금전부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용료 환불 규정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공원 운영·관리상 변화요인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공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여건변화에 따른 규정정비(안 제8조, 별표 2)
- 신규 이용시설 이용료 반영,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이용료 규정 삭제 및 시설명칭 변경(안 별표 2)
-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3)
- 시민에게 과도한 금전부과로 오인할 수 있는 점용료 환불 규정 정비(안 제19조)
-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개정(안 제22조)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 2133-2025, FAX : 2133-1080, E-mail : rlag1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3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원프로그램 다양화로 현행 참가비 규정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참가비 현실화 등 조례규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를 조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을 삭제함(안 제6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 2133-2025, FAX : 2133-1080, E-mail : rlag1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44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관 또는 단체의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화장실 이용 시민의 복지증진 및 위생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에 대한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 활동 기관 및 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4조 제6항, 제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시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건과(전화 02-2133-7670, fax 02-2133-0727, E-mail : relaxu1330@gmail.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5호

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명 칭 : 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배경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16.1.1. ~ 2016.12.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7,145원[6,030원(최저임금) × 118%] / 월1,493,305원
 -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 교통비 + 식대
 - 생활임금적용대상 범위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 단,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직접일자리는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6호

압구정 428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43호(2004.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결정된 압구정 428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압구정 428 근린공원 조성계획(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휴식,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3. 면 적 : 13,968.3㎡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압구정 428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최초)

1. 총괄표(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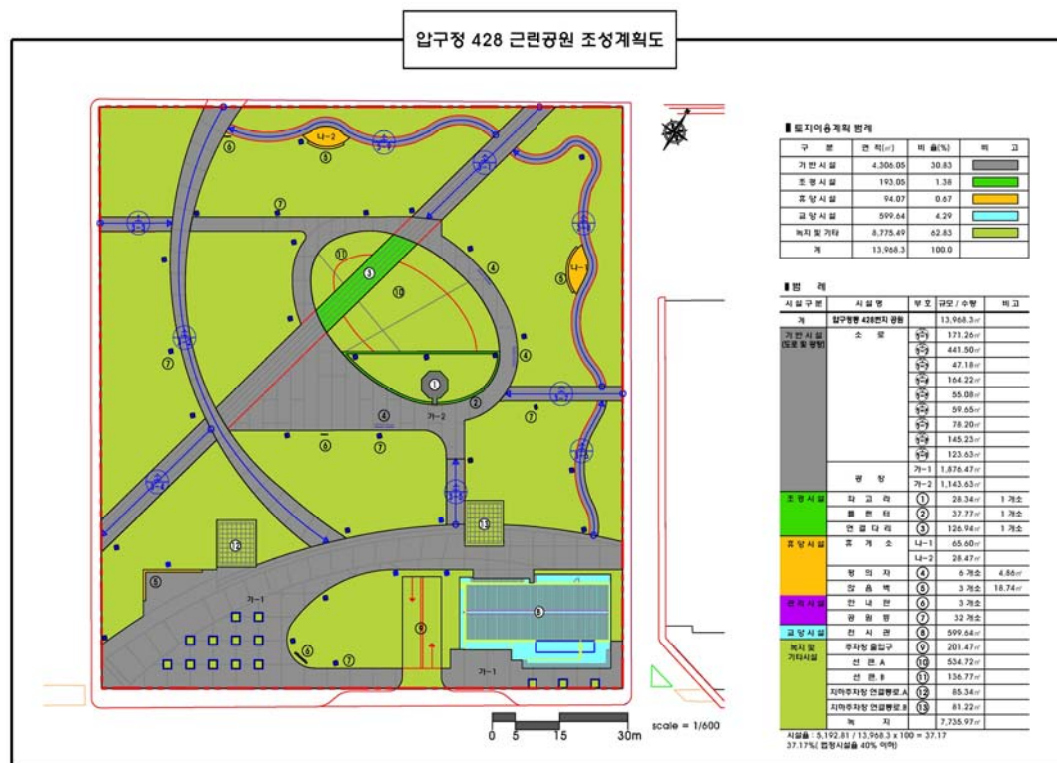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응답물 (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968.30	5,192.81	3동	647.78	986.35	47	
기 반 시 설	소 계	4,306.05	-	-	-	-	
	도 로	1,285.95	-	-	-	-	
	광 장	3,020.10	-	-	-	-	
조 경 시 설	193.05	193.05	-	-	-	3	
휴 양 시 설	94.07	94.07	-	-	-	9	
교 양 시 설	599.64	599.64	1	481.22	819.79	-	
관 리 시 설	-	-	-	-	-	35	
녹지 및 기타	8,775.49	(1,039.52)	2	166.56	166.56	-	
시 설 율 (법정40%)	(5,192.81 / 13,968.3) × 100 = 37.17%						
건 폐 율 (법정15%)	(647.78 / 13,968.3) × 100 = 4.64%						

2.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			13,968.30	5,192.81		3동	647.78	986.35	47		
기반 시설	소계		4,306.05	4,306.05							
	도로		압구정동428번지	1,285.95	1,285.95						
	소계	가		3,020.10	3,020.10						
	광장	가-1	압구정동428번지	1,876.47	1,876.47						
		가-2		1,143.63	1,143.63						
조경 시설	계			193.05	193.05				3		
	파고라	①		28.34	28.34				1		
	플랜터	②		37.77	37.77				1		
	연결다리	③		126.94	126.94				1		
휴양 시설	계			94.07	94.07				9		
	휴게소	나-1		65.6	65.6						
	휴게소	나-2		28.47	28.47						
	평의자	④		(4.86)	(4.86)				6		
	앉음벽	⑤		(18.74)	(18.74)				3		
관리	계			-	-				35		
	안내판	⑥		-	-				3		
	공원등	⑦		-	-				32		
교양	계			599.64	599.64			481.22	819.79		
	전시관	⑧		599.64	599.64	철골조	2층	481.22	819.79		
녹지 및 기타	계			8,775.49	(1,039.52)			166.56	166.56		
	주차장출입 구	⑨		201.47	(201.47)						
	선큰.A	⑩		534.72	(534.72)						
	선큰.B	⑪		136.77	(136.77)						
	지하주차장 연결통로.A	⑫		85.34	(85.34)	RC조	1층	85.34	85.34		
	지하주차장 연결통로.B	⑬		81.22	(81.22)	RC조	1층	81.22	81.22		
	녹 지			7,735.97	-						

3. 도로조서

구분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로		소계		390.66	1,285.95				
소로	3	1	5.0	34.19	171.26	진입로	부지경계	가-2	
		2	3.5	104	441.5	진입로	부지경계	가-1	
		3	3.0	15.74	47.18	진입로	부지경계	소-2	
		4	5.0	32.58	164.22	진입로	소-2	부지경계	
		5	3.2	13.81	55.08	연결로	가-1	가-2	
		6	2.0	29.82	59.65	산책로	가-1	소-7	
		7	3.0	26.03	78.2	진입로	부지경계	가-2	
		8	2.0	72.58	145.23	산책로	소-7	소-1	
		9	2.0	61.91	123.63	산책로	소-1	소-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5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변경없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나. 연 장 : 변경없음

- 13.753km

다. 면 적

- 당 초 : 284,950.78㎡

- 변 경 : 285,386.58(증435.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강남구 논현동 ~ 송파구 잠실동 : 2008. 6. 2. ~ 2015. 5.31.

나.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 : 2009.12.31. ~ 2015.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철도) 변경결정 사항

가. 결정취지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 조서(결정도면 : 별항2)

○ 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대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13,753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90,659.28 *하남시구간 1,491㎡ 포함	'08.11.20	
변경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대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13,753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90,562.08 *하남시구간 1,491㎡ 포함	'08.11.20	감)97.2㎡ ○ 디자인 심의 반영으로 인한 변 경(915공구) - 환기탑 위치 변경 및 축소 - 본선환기구 면적축소 ○ 환기구(928E1, 928S1) 환기탑 위치조정(916공구) ○ 지하수전용관료 배수탑 설치 및 환승통로 화장실정화조 환 기덕트 지상돌출(917공구)

※ 본선 면적산출은 정거장 부분을 뺀 부분임.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926정거장)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6,940	감)177	6,763	서울시고시 415 ('08.11.20)	○ 디자인 심의 및 기타변경 사항 반영으 로 인한 변경 - 출입구 및 환기탑 위치 변경
기정	철도	도시철도 (927정거장)	강남구 역삼동 802-1번지 일대	2,303	-	2,303	서울시고시 415 ('08.11.20)	
변경	철도	도시철도 (928정거장)	강남구 삼성동 111-147번지 일대	7,030	감)65	6,965	서울시고시 415 ('08.11.20)	○ 출입구 및 환기탑 위치조정 ○ 정거장 정화조 위치조정
변경	철도	도시철도 (929정거장)	강남구 삼성동 172번지 일대	8,008	증)775	8,783	서울시고시 415 ('08.11.20)	○ 출입구 및 환기탑 위치조정(COEX 연결 통로, 통합출입구) ○ 정거장 정화조 위치조정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0정거장)	송파구 잠실동 123번지 일대	7,850.9	-	7,850.9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1정거장)	송파구 잠실동 289번지 일대	8,237	-	8,237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2정거장)	송파구 삼성동 157번지 일대	6,002	-	6,002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3정거장)	송파구 석천동 209번지 일대	9,536.4	-	9,536.4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4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95번지 일대	7,986	-	7,986	서울시고시 415 ('08.11.20)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5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88-17번지 일대	8,783.4	-	8,783.4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6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일대	6,884.8	-	6,884.8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7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227-7번지 일대	7,122	-	7,122	국토부고시 758 ('10.11.04)	
기정	철도	도시철도 (938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8-1번지 일대	7,608	-	7,608	국토부고시 758 ('10.11.04)	
계				94,291.5	증)533	94,824.5		

7.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30, 7134)

나.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토 지 조 서(915공구)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5공구

1. 수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노현동 279-165	도	31,597.9	239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			31,597.9	252						
2	기정	노현동 279-128	도	22,721.6	131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			22,721.6	107						
3	기정	역삼동 800	도	23,941.8	220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			23,941.8	202						
4	기정	역삼동 800-3	도	21,106.6	142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			21,106.6	111						
5	기정	역삼동 802-1	도	3,714.0	51	도로	구	강남구			
	변경			3,714.0	30						
6	기정	삼성동 111-147	도	29,313.2	75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			29,313.2	67						
합계	기정				857						
	변경				769						

토 지 조 서(915공구)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5공구

2. 지하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용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도시철도 준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종류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논현동 279-165	도	31,597.9	8,825	도로	시	서울특별시				11.24	35.64 ~ -7.70
	변경				8,793								
2	기정	논현동 192-19	대	857.6	9	대지	김형준	대치동 970 코오롱 알엔에프D-3호	중소기업은행 피자헛(주)	중구 을지로2가 50 강남구 삼성동157-1	근저당 3건	4.80	34.39 ~ -7.75
	변경				2								
3	기정	논현동 279-128	도	22,721.6	659	도로	시	서울특별시				2.99	35.19 ~ 22.42
	변경				541								
4	기정	역삼동 800	도	23,941.8	6,110	도로	시	서울특별시				11.24	35.64 ~ -7.70
	변경				5,922								
5	기정	역삼동 606-7	대	469.4	18	대지	차광열	역삼동650-6 해진연립 210호	테넷헬스시스템 큐우에이인크	13737 노엘로드, 스위트100, 달라스, 텍사스75240	근저당	4.79	34.39 ~ -7.75
	변경				8								
6	기정	역삼동 800-3	도	21,104.6	672	도로	시	서울특별시				2.59	35.19 ~ -1.53
	변경				485								
7	기정	역삼동 650-9	대	1,262.4	18	대지	의료법인성광 의료재단	역삼동 650-9				4.89	32.50 ~ -1.50
	변경				14								

토 지 조 서(915공구)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5공구

2. 지하사용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용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도시철도 준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종류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기정	역삼동 650	대	467.9	1	대지	김정숙	종로구 구기동139-21 현대그랜드빌리젠시102호	(주)국민은행	종로구 남대문로5가19-1	근저 당1건	2.02	34.89 ~ -1.46
	변경			467.9			김정숙 윤정선 윤영선 최재호 최재우	종로구 구기동139-21 현대그랜드빌리젠시102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영아교육도시단독-11-3 강남구 도곡동 164-6 포스코아파트101동1004호 강남구 도곡동 164-6 포스코아파트101동1004호 강남구 도곡동 164-6 포스코아파트101동1004호	강남세무서 중소기업은행	강남구 청담동 45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 당 3건		
9	기정 변경	역삼동 802-7	도	3,478.7 3,478.7	1,298 1,334	도로	구	강남구				5.71	40.58 ~ -1.02
10	기정 변경	역삼동 802	도	253.4 253.4	155 160	도로	시	서울특별시				22.78	19.07 ~ 11.17
11	기정 변경	역삼동 802-1	도	3,714 3,714	1,554 1,541	도로	구	강남구				12.34	27.78 ~ 11.31
12	기정 변경	삼성동 111-147	도	29,313.2 29,313.2	8,370 8,795	도로	시	서울특별시				14.80	27.36 ~ -0.38
13	기정 변경	삼성동 111-143	도	911.0 911.0	- 264	도로	시	서울특별시				14.80	27.36 ~ -0.38

토 지 조 서(915공구)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5공구

3. 사용(일시)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용기간 당초 :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 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노현동 279-165	도	31,597.9	563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			31,597.9	-						
2	기정	노현동 192-19	대	857.6	57	대지	김형준	대치동970 코오롱알엔프디동3호	중소기업은행 피자헛(주)	중구 을지로2가 50 강남구 삼성동157-1	근저당 3건
	변경			857.6	-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1건
3	기정	노현동 192-15	대	481.8	11	대지	휴먼에스페이스 (주)	노현동 174-1			
	변경			481.8	-						
4	기정	노현동 279-128	도	22,721.6	156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			22,721.6	-						
5	기정	노현동 234-20	대	915.9	29	대지	권태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311-1	(주)우리은행 (주)한빛은행	회현동1가203(양재중앙 지점) 회현동 1가 293	근저당 5건
	변경			915.9	-		(주)하나은행	중구 을지로 55	(주)신한은행	중구 태평로 2가 120	근저당 2건

토 지 조 서(915공구)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5공구

3. 사용(일시)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용기간 당초 :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 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	기정	논현동 234-28	대	468.8	38	대지	권일우	-서초구 방배동 758-4 삼호아파트 5-1201	(주)신한은행 제일은행	중구 태평로 2가 120 종로구 공평동 100	근저당 2건
	변경			468.8	-		안경림 권봉희 권일우	-서초구 방배동 878-20 -서초구 방배동 878-20 -서초구 방배동 758-4	(주)신한은행		
7	기정	역삼동 800	도	23,941.8	243	도로	시	서울특별시			근저당 1건
	변경			23,941.8	-						
8	기정	역삼동 606-5	대	267.0	1	대지	차광열	역삼동 650-6 해진연립 210호	테넷헬스시스템 큐우에이링크	13737 노원로, 스위트100, 달라스, 텍사스75240	근저당 1건
	변경			267.0	-						
9	기정	역삼동 606-7	대	469.0	42	대지	차광열	역삼동 650-6 해진연립 210호	테넷헬스시스템 큐우에이링크	13737 노원로, 스위트100, 달라스, 텍사스75240	근저당 1건
	변경			469.0	-						
10	기정	역삼동 800-3	도	21,104.6	200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			21,104.6	-						
11	기정	역삼동 650-15	대	780.8	14	대지	의료법인 성광의료	역삼동 650-9			
	변경			780.8	-						
12	기정	역삼동 650-9	대	1,262.4	50	대지	의료법인 성광의료	역삼동 650-9			
	변경			1,262.4	-						

토 지 조 서(915공구)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5공구

3. 사용(일시)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용기간 당초 :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 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13	기정			467.9	32		김정숙	종로구 구기동139-21 현대그랜드빌리젠시102호	종로구 남대문로57가 19-1	(주)국민은행		근저당 1건
	변경	역삼동 650	대	467.9	-	대지	김정숙 윤정선 윤영선 최재효 최재우	종로구 구기동139-21 현대그랜드빌리젠시102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영어교육도시단독-11-3 강남구 도곡동 164-6 포스코아파트101동1004호 강남구 도곡동 164-6 포스코아파트101동1004호 강남구 도곡동 164-6 포스코아파트101동1004호	강남구 청담동 45 중구 을지로2가 50	강남세무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3건
14	기정 변경	역삼동 650-1	대	581.6 581.6	9 -	대지	(주)두선태한 텍스타일상사	성동구 행당동 1-87 남양주시 도농동265-46	중구 을지로2가 181	(주)한국외환 은행		근저당 2건 근저당 4건
15	기정	역삼동 650-2	대	397.1	21	대지	우종생 서삼술	-서초구 방배동 950-12 -서초구 방배동 950-12				
	변경			397.1	-		우종생 서삼술	-서초구 방배동 950-12 -서초구 방배동 950-12				
16	기정 변경	역삼동 802-7	도	3,478.7 3,478.7	58 -	도로	구	강남구				
17	기정 변경	역삼동 680	대	2,981.1 2,981.1	28 -	대지	아모레산업 주식회사	강남구 역삼동 680				
18	기정	역삼동 802-1	도	3,714.0	128.1	도로	구	강남구				
	변경			3,714.0	-							
19	기정 변경	삼성동 111-147	도	29,313.2 29,313.2	293 -	도로	시	서울특별시				

토 지 조 서(915공구)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5공구

3. 사용(일시)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용기간 당초 :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 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0	기정	논현동 192-21	대	516.7	2	대지	오혜경	용산구 이촌동 302-64 장미아파트 20층 씨호	(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5가19-1	근저당 1건
	변경			516.7	-						
21	기정	논현동 234-25	대	504.3	8	대지	국제공영(주)	강남구 청담동 44-15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1건
	변경			504.3	-						
22	기정	논현동 234-26	대	507.7	13	대지	고재웅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6동901호			
	변경			507.7	-			강남구 도곡동 467-17 타워펠리스 F동 3709호			
23	기정	논현동 234-27	대	568.3	2	대지	고영희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7-403	(주)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 4건
	변경			568.3	-						

토지조서 (수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6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삼성동 111-147	도	29,313.2	177.0	도	서울특별시					
	변경			29,313.2	187.9							
2	당초	삼성동 50-4	대	2,080.8	25.0	도	강남구					
	변경			2,080.8	22.4							
3	당초	삼성동 111-61	도	50,402.0	290.0	도	서울특별시					
	변경			50,402.0	269.7							
4	당초	삼성동 111-86	도	20,176.9	212.0	도	서울특별시					
	변경			20,176.9	208.8							
5	당초	삼성동 159	대	87,534.3	11.0	도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삼성동 159-1				
	폐지			87,534.3	0.0							
6	당초	삼성동 111-8	도	94,806.0	252.0	도	서울특별시					
	변경			94,806.0	197.4							
7	당초	삼성동 172	도	3,901.0	210.0	도	서울특별시					
	변경			3,901.0	161.4							
합계	당초				1,177.0							
	변경				1,047.6							

토지조서 (지하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6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삼성동 111-147	도	29,313.2	626.0	도	서울특별시					14.80	27.36 ~ -0.38	
	변경			29,313.2	620.6							16.23	21.17 ~ -0.68	
2	당초	삼성동 111-147	도	29,313.2	4,078.0	도	서울특별시					14.80	27.36 ~ -0.38	
	변경			29,313.2	3,960.1							8.74	23.53 ~ 4.22	
3	당초	삼성동 50-4	대	2,080.8	14.0	도	강남구					7.96	23.00 ~ 5.19	
	변경			2,080.8	12.8							7.96	23.50 ~ 4.69	
4	당초	삼성동 51-2	대	484.7	1.0	대	오경서	안구정동 462 현대A 52-403				7.71	21.89 ~ 4.79	
	폐기			484.7	0							7.71	22.39 ~ 4.29	
5	당초	삼성동 111-61	도	50,402.0	2,231.0	도	서울특별시					7.69	21.77 ~ 4.67	
	변경			50,402.0	2,324.8							7.69	22.27 ~ 4.17	
6	당초	삼성동 111-86	도	20,176.9	2,436.0	도	서울특별시					13.70	21.24 ~ -9.31	
	변경			20,176.9	2,431.7							5.62	22.98 ~ -5.94	
7	당초	삼성동 111-86	도	20,176.9	7,043.0	도	서울특별시					13.70	21.24 ~ -9.31	
	변경			20,176.9	7,013.7							12.59	20.58 ~ -11.12	
8	당초	삼성동 159	대	87,534.3	0	도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삼성동 159-1				5.29	16.44 ~ 2.20	
	변경			87,534.3	80.9							0.67	16.93 ~ 9.99	
9	당초	삼성동 159	대	87,534.3	8.0	도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삼성동 159-1				5.29	16.44 ~ 2.20	
	변경			87,534.3	4.2							0.50	18.36 ~ 8.81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	당초	삼성동 111-8	도	94,806.0	3,460.0	도	서울특별시					4.98	13.51 ~ -5.60	
	변경			94,806.0	3,773.5							4.98	14.01 ~ -6.10	
11	추가	삼성동 160	대	2,649.0	239.0	대	현대산업개발 (주)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1.04	20.83 ~ 3.27	
12	추가	삼성동 160-12	대	1,506.0	147.2	대	현대산업개발 (주)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1.04	20.94 ~ 10.69	
13	당초	삼성동 172	도	16,597.8	5,121.0	도	서울특별시					8.43	10.99 ~ -13.63	
	변경			16,597.8	5,177.8							11.11	11.48 ~ -11.78	
14	당초	삼성동 172	도	16,597.8	1,226.0	도	서울특별시					8.43	10.99 ~ -13.63	
	변경			16,597.8	1,225.9							16.77	9.19 ~ -14.04	
합계	당초			26,244.0										
	변경			27,012.2										

토지조서 (일시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6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용기간 : 당초 : 계약체결일부터 ~ 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4월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삼성동 111-147	도	29,313.2	302.0	도	서울특별시					
	변경			29,313.2	401.6							
2	당초	삼성동 50-4	대	2,080.8	54.0	도	강남구					
	변경			2,080.8	50.4							
3	당초	삼성동 117	대	2,568.0	9.0	대	대지권설정	쌍용플레티넘				
	폐지			2,568.0	0							
4	당초	삼성동 111-146	도	580.3	9.0	도	강남구					
	폐지			580.3	0							
5	당초	삼성동 51-4	대	410.3	41.0	대	이원규	삼성동 51-4	췌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영동지점)	근저당 11건	
	폐지			410.3	0							
6	당초	삼성동 51-2	대	484.7	26.0	대	오경서	압구정동 462 현대A 52-403				
	폐지			484.7	0							
7	당초	삼성동 51-5	대	484.3	13.0	대	오경서	압구정동 462 현대A 52-403				
	폐지			484.3	0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당초	삼성동 119-2	대	306.9	3.0	대	송요찬	삼성동 119-2				
	폐지			306.9	0							
9	당초	삼성동 111-61	도	50,402.0	548.0	도	서울특별시					
	변경			50,402.0	579.9							
10	당초	삼성동 71-14	대	842.9	5.0	대	한문성의 1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강남지점)	근저당 2건	
	폐지			842.9	0							
11	당초	삼성동 71-9	주	2,207.4	23.0	주	SK 네트웍스(주)	수원시 권선구 평동 4				
	폐지			2,207.4	0							
12	당초	삼성동 145-8	대	1,232.8	23.0	대	(주)한섬	삼성동 52-1				
	폐지			1,232.8	0							
13	당초	삼성동 145	대	431.3	31.0	대	조도성 외 2인	강남구 개포동 117 현대A 5-703	㈜제일은행	중로구 공평동 100(청담동지점)	근저당 1건	
	폐지			431.3	0							
14	당초	삼성동 145-1	대	643.1	2.0	대	조도성 외 2인	강남구 개포동 117 현대A 5-703	㈜제일은행	중로구 공평동 100(청담동지점)	근저당 1건	
	폐지			643.1	0							
15	당초	삼성동 111-86	도	20,176.9	537.0	도	서울특별시					
	변경			20,176.9	563.5							
16	당초	삼성동 159	대	87,534.3	28.0	도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삼성동 159-1				
	폐지			57,534.3	0							
17	당초	삼성동 111-8	도	94,806.0	604.0	도	서울특별시					
	변경			94,806.0	525.1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8	당초	삼성동 107-11	대	379.1	4.0	대	대지관설정	삼성동 미켈란			요역지지역권	
	폐지			379.1	0							
19	당초	삼성동 107-10	대	583.3	16.0	대	대지관설정	삼성동 미켈란			요역지지역권	
	폐지			583.3	0							
20	당초	삼성동 172	도	16,597.8	609.0	도	서울특별시					
	변경			16,597.8	623.4							
21	당초	삼성동 160	대	2,648.8	6.0	대	현대산업 개발(주)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변경			2,648.8	0							
22	당초	삼성동 161	대	753.9	10.0	대	의료법인 가산의료 재단	삼성동 161	수산업 협동조합	송파구 신천동 11-6(양재동지점)	근저당 2건	
	폐지			753.9	0							
23	당초	삼성동 108-10	대	453.3	10.0	대	(주)ADT캡스	삼성동 108-9	(주)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봉은사로지점)	근저당 2건	
	폐지			453.3	0							
24	당초	삼성동 108-9	대	440.4	7.0	대	(주)ADT캡스	삼성동 108-9	(주)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봉은사로지점)	근저당 2건	
	폐지			440.4	0							
합계	당초				2,920.0							
	변경				2,743.9							

토 지 조 서 (수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I7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관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1	대	9,006.7	0	대지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1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1-5	대	113.0	113.0	대지	시	서울특별시				"
2	당초	송파구 잠실동 10-1	체	212,430.7	37.3	체	시	서울특별시				증)32.8㎡
	변경				70.1							
2-1	당초	송파구 잠실동 10-4	체	33.7	33.7	체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	당초	송파구 잠실동 11	도	16,358.6	47.0	도	시	서울특별시				"
4	당초	송파구 잠실동 51	도	11,808.6	77.5	도	시	서울특별시				"
5	당초	송파구 잠실동 84	공	66,027.8	224.0	공	시	서울특별시				"
6	당초	송파구 잠실동 56-1	도	22.4	0	도	시	서울특별시				"
7	당초	송파구 잠실동 56	도	169	2.5	도	시	서울특별시				"
계					535.0							증)32.8㎡
					567.8							

토 지 조 서 (지하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I7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관리의 종류 및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2	도	3,901.0	2,277.0	도	시	서울특별시				18.25	7.10 ~ -19.21	변경없음
2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2-8	도	279.4	1.0	도	구	강남구				18.56	6.48 ~ -14.25	“
3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2-112	도	651.9	196.0	도	시	서울특별시				24.57	1.52 ~ -19.21	“
4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1-4	대	2,892.7	118.0	대	시	서울특별시				25.96	-2.09 ~ -22.82	“
5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1-4	대	2,892.7	91.0	대	시	서울특별시				9.21	11.47 ~ -21.80	“
6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1	대	9,006.7	73.0	대	시	서울특별시				25.96	-2.09 ~ -22.82	“
7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1	대	9,006.7	311.0	대	시	서울특별시				9.21	11.47 ~ -21.80	“
8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2-2	도	2,186.7	16.0	도	구	강남구				9.21	11.47 ~ -21.80	“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9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2-2	도	2,186.7	181.0	도	구	강남구				26.68	-3.34 ~ -24.07	변경없음
10	당초	강남구 삼성동 186-6	천	56,748.0	1,891.0	천	국	국)건설부				18.09	-10.03 ~ -46.88	“
11	당초	송파구 잠실동 1168-3	천	19,166.0	1,325.0	천	국	국)건설부				17.28	-4.84 ~ -25.96	“
12	당초	송파구 잠실동 2	제	28,846.0	565.0	제	시	서울특별시				23.19	-5.24 ~ -26.06	“
13	당초	송파구 잠실동 4	도	13,951.5	316.0	도	시	서울특별시				32.24	-5.36 ~ -26.08	“
14	당초	송파구 잠실동 6	제	20,531.7	480.0	제	시	서울특별시				27.17	-5.38 ~ -26.18	“
15	당초	송파구 잠실동 10-1	체	212,430.7	5,367.0	체	시	서울특별시				26.72	-8.52 ~ -29.32	“
16	당초	송파구 잠실동 10-1	체	212,430.7	933.0 927.0	체	시	서울특별시				16.38	0.41 ~ -28.96	감)6.0㎡
17	당초	송파구 잠실동 10-3	학	11,389.1	1,525.0	학	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				26.84	-8.73 ~ -29.78	변경없음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종류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지 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8	당초	송파구 잠실동 10-3	학	11,389.1	285.0	학	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				15.6	0.24 ~ -27.58	변경없음
19	당초	송파구 잠실동 11	도	16,358.6	29.0	도	시	서울특별시				25.72	-8.46 ~ -29.61	“
20	당초	송파구 잠실동 11	도	16,358.6	2,105.0	도	시	서울특별시				14.56	-0.15 ~ -27.55	“
21	당초	송파구 잠실동 123	도	6,401.4	1,251.0	도	시	서울특별시				14.54	-0.03 ~ -27.55	“
22	당초	송파구 잠실동 51	도	11,808.6	1,840.0	도	시	서울특별시				5.65	8.82 ~ -27.55	“
23	당초	송파구 잠실동 53-4	도	271.3	33.0	도	시	서울특별시				5.94	8.98 ~ -27.32	“
24	당초	송파구 잠실동 56	도	169.0	166.5	도	시	서울특별시				5.97	9.00 ~ -27.31	“
25	당초	송파구 잠실동 56-1	도	22.4	20.4	도	시	서울특별시				5.90	8.96 ~ -21.88	“
25-1	당초	송파구 잠실동 56-20	도	2	2.0	도	시	서울특별시				5.90	8.96 ~ -21.88	“
26	당초	송파구 잠실동 56-18	도	22.5	18.0	도	시	서울특별시				5.97	9.00 ~ -27.31	“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종류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 평균해수면기준 ()~()m 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7	당초	송파구 잠실동 56-19	도	169.6	154.0	도	시	서울특별시				5.94	8.98 ~ -27.32	변경없음
28	당초	송파구 잠실동 84	공	66,027.8	2,220.0	공	시	서울특별시				25.75	-7.96 ~ -28.73	“
29	당초	송파구 잠실동 84	공	66,027.8	1,159.0	공	시	서울특별시				6.91	5.25 ~ -24.58	“
30	당초	송파구 잠실동 125	도	2,646.2	1,184.0	도	시	서울특별시				23.68	-6.69 ~ -27.49	“
31	당초	송파구 잠실동 256	도	2,713.2	536.0	도	시	서울특별시				22.79	-6.69 ~ -27.49	“
32	당초	송파구 잠실동 126	도	2,926.2	20.0	도	시	서울특별시				21.34	-5.34 ~ -26.15	“
33	당초	송파구 잠실동 258	도	2,713.2	13.0	도	시	서울특별시				21.34	-5.34 ~ -26.15	“
계					26,701.9 26,695.9									합)6.0㎡

토 지 조 서 (일시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7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용기간 당초 : 2009년03월23일로부터 2014년 06월 30일까지
변경 : 2009년03월23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1	대	9,006.7	62.0	대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1-4	대	2,892.7	41.0	대	시	서울특별시				"
3	당초	강남구 삼성동 171-2	도	2,186.7	11.0	도	강남구	강남구				"
소 계				114.0								"
				114.0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 당초 : 2009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08월 30일까지
 변경 : 2009년 10월 13일부터 2015년 04월 30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	당초	송파구 잠실동 10-1	체	212,430.7	213.0	체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4-1	당초	송파구 잠실동 10-5	체	35.3	3.0	체	시	서울특별시				“
소 계					216.0							“
					216.0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04월 30일까지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	당초	송파구 잠실동 10-3	학	11,389.1	76.0	학	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용기간(당초분 65㎡):당초 			

토지조서 (수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9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성 명		
1	당초 변경	삼전동 88	도	3,558.5	84.0 84.0	도	시	서울특별시						
2	당초 변경	삼전동 157	도	2,775.9	173.0 173.0	도	시	서울특별시						
3	당초 변경	삼전동 90	도	2,023.4	66.0 66.0	도	시	서울특별시						
4	당초 변경	삼전동 127-1	도	1,918.4	18.0 18.0	도	시	서울특별시						
5	당초 변경	삼전동 157-1	도	1,203.9	19.0 19.0	도	시	서울특별시						
6	당초 변경	석촌동 189	도	1,852.1	142.0 142.0	도	시	서울특별시						
7	당초 변경	석촌동 189-7	도	1,173.5	19.0 19.0	도	시	서울특별시						
8	당초 변경	석촌동 299	도	1,904.9	25.0 25.0	도	시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	당초 변경	석촌동 298	도	1,912.9	122.0 122.0	도	시	서울특별시				
10	당초 변경	석촌동 208	도	3,317.3	34.0 34.0	도	시	서울특별시				
11	당초 변경	석촌동 318	도	5,040.0	225.0 225.0	도	시	서울특별시				
12	당초 변경	석촌동 209	도	14,058.1	232.0 232.0	도	시	서울특별시				
13	당초 변경	석촌동 323	도	4,737.6	78.0 78.0	도	시	서울특별시				
14	당초 변경	송파동 69	도	11,519.2	9.0 9.0	도	시	서울특별시				
15	당초 변경	송파동 68	도	5,191.4	190.0 190.0	도	시	서울특별시				
16	당초 변경	송파동 1-1	도	6,787.1	198.0 198.0	도	시	서울특별시				
합계	당초 변경			73,810.2	1,634.0 1,634.0							

토지조서 (지하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9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삼전동 75-2	도	1,415.0	370.0 370.0	도	시	서울특별시				5.25	9.39 ~ -12.58	
2	당초 변경	삼전동 159	도	4,836.0	1,363.0 1,363.0	도	시	서울특별시				5.36	14.89 ~ -12.58	
3	당초 변경	삼전동 86	도	3,695.5	1,816.0 1,816.0	도	시	서울특별시				12.44	7.83 ~ -12.58	
4	당초 변경	삼전동 158	도	4,637.8	2,345.0 2,345.0	도	시	서울특별시				4.41	10.40 ~ -12.22	
5	당초 변경	삼전동 88	도	3,558.5	1,884.0 1,884.0	도	시	서울특별시				4.39	10.40 ~ -11.92	
6	당초 변경	삼전동 157	도	2,775.9	2,077.0 2,077.0	도	시	서울특별시				4.40	10.37 ~ -11.92	
7	당초 변경	삼전동 90	도	2,023.4	1,232.0 1,232.0	도	시	서울특별시				5.55	9.21 ~ -6.49	
8	당초 변경	삼전동 157-1	도	1,203.9	160.0 160.0	도	시	서울특별시				5.92	8.90 ~ -6.50	
9	당초 변경	삼전동 127-1	도	1,918.4	159.0 159.0	도	시	서울특별시				5.92	8.90 ~ -6.50	
10	당초 변경	석촌동 299	도	1,904.9	150.0 150.0	도	시	서울특별시				5.92	8.90 ~ -6.50	
11	당초 변경	석촌동 189-7	도	1,173.5	143.0 143.0	도	시	서울특별시				5.92	8.90 ~ -6.50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소				
12	당초 변경	석촌동 189	도	1,852.1	1,370.0	도	시	서울특별시						5.13	8.70 ~ -12.28	
13	당초 변경	석촌동 298	도	1,912.9	1,330.0	도	시	서울특별시						5.13	9.70 ~ -12.28	
14	당초 변경	석촌동 194-1	도	3,794.8	1,867.0	도	시	서울특별시						12.97	7.46 ~ -13.60	
15	당초 변경	석촌동 303	도	3,575.2	1,753.0	도	시	서울특별시						13.03	7.40 ~ -13.54	
16	당초 변경	석촌동 308	도	2,123.1	1,038.0	도	시	서울특별시						16.53	6.20 ~ -14.26	
17	당초 변경	석촌동 199	도	2,055.9	1,004.0	도	시	서울특별시						16.53	6.20 ~ -14.26	
18	당초 변경	석촌동 199-1	도	2,999.9	1,534.0	도	시	서울특별시						18.13	5.48 ~ -14.74	
19	당초 변경	석촌동 199-4	도	269.0	106.0	도	시	서울특별시						19.00	4.88 ~ -14.86	
20	당초 변경	석촌동 199-2	도	906.2	472.0	도	시	서울특별시						18.76	4.76 ~ -14.98	
21	당초 변경	석촌동 199-3	도	516.7	241.0	도	시	서울특별시						19.00	4.88 ~ -14.86	
22	당초 변경	석촌동 313-1	도	147.5	7.0	도	시	서울특별시						18.76	4.76 ~ -14.98	
23	당초 변경	석촌동 312	도	2,998.8	1,527.0	도	시	서울특별시						15.72	4.76 ~ -16.03	
24	당초 변경	석촌동 205	도	3,010.4	1,483.0	도	시	서울특별시						15.86	4.64 ~ -16.09	
25	당초 변경	석촌동 208	도	3,317.3	1,584.0	도	시	서울특별시						4.95	10.15 ~ -16.39	
26	당초 변경	석촌동 318	도	5,040.0	2,554.0	도	시	서울특별시						4.95	10.15 ~ -16.39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27	당초 변경	석촌동 209	도	14,058.1	2,026.0 2,026.0	도	시	서울특별시						5.16	10.09 ~ -11.36	
28	당초 변경	석촌동 317	도	651.4	651.4 651.4	도	시	서울특별시						5.06	10.08 ~ -11.07	
29	당초 변경	석촌동 322	도	611.2	596.0 596.0	도	시	서울특별시						5.12	10.32 ~ -11.36	
30	당초 변경	석촌동 323	도	4,737.6	151.0 151.0	도	시	서울특별시						5.12	10.32 ~ -11.36	
31	당초 변경	송파동 69	도	11,519.2	262.0 262.0	도	시	서울특별시						5.15	10.26 ~ -11.42	
32	당초 변경	송파동 68	도	5,191.4	1,098.0 1,098.0	도	시	서울특별시						5.15	10.26 ~ -11.51	
33	당초 변경	송파동 1-1	도	6,787.1	1,500.0 1,500.0	도	시	서울특별시						5.15	10.26 ~ -11.51	
합계	당초 변경			107,218.6	35,853.4 35,853.4											

토지조서 (일시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19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06월 30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1	당초 변경	삼전동 75-2	도	1,415.0	32.0 32.0	도	시	서울특별시				
2	당초 변경	삼전동 159	도	4,836.0	34.0 34.0	도	시	서울특별시				
3	당초 변경	삼전동 158	도	4,637.8	27.0 27.0	도	시	서울특별시				
4	당초 변경	삼전동 88	도	3,558.5	119.0 119.0	도	시	서울특별시				
5	당초 변경	삼전동 157	도	2,775.9	219.0 219.0	도	시	서울특별시				
6	당초 변경	삼전동 90	도	2,023.4	179.0 179.0	도	시	서울특별시				
7	당초 변경	삼전동 133-13	대	547.8	18.0 17.5	대	신상철	삼전동 133-13				
8	당초 변경	삼전동 157-1	도	1,203.9	50.0 50.0	도	시	서울특별시				
9	당초 변경	삼전동 127-1	도	1,918.4	47.0 47.0	도	시	서울특별시				
10	당초 변경	석촌동 299	도	1,904.9	46.0 46.0	도	시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주소		
11	당초 변경	석촌동 189	도	1,852.1	141.0 141.0	도	시	서울특별시						
12	당초 변경	석촌동 298	도	1,912.9	155.0 155.0	도	시	서울특별시						
13	당초 변경	석촌동 189-7	도	1,173.5	43.0 43.0	도	시	서울특별시						
14	당초 변경	석촌동 208	도	3,317.3	103.0 103.0	도	시	서울특별시						
15	당초 변경	석촌동 318	도	5,039.9	289.0 289.0	도	시	서울특별시						
16	당초 변경	석촌동 209	도	14,058.1	355.0 355.0	도	시	서울특별시						
17	당초 변경	석촌동 323	도	4,737.6	67.0 67.0	도	시	서울특별시						
18	당초 변경	석촌동 322	도	611.2	9.0 9.0	도	시	서울특별시						
19	당초 변경	석촌동 317	도	651.4	- -	도	시	서울특별시						
20	당초 변경	송파동 69	도	11,519.2	127.0 127.0	도	시	서울특별시						
21	당초 변경	송파동 68	도	5,191.4	215.0 215.0	도	시	서울특별시						
22	당초 변경	송파동 1-1	도	6,787.1	231.0 231.0	도	시	서울특별시						
합계	당초 변경			81,125.5	2,506.0 2,505.5									

토지조서 (수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0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송파동1-1	도	6,787.10	36.00 36.00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	당초 변경	송파동 3	도	2,364.10	62.62 62.62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	당초 변경	송파동 3-15	도	3,145.30	69.50 69.50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4	당초 변경	송파동 64	도	3,978.00	135.48 135.48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5	당초 변경	송파동 68	도	5,191.40	71.00 71.00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	당초 변경	방이동 2	도	3,162.80	157.80 157.80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7	당초 변경	방이동 5	도	2,928.00	36.40 36.40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8	당초 변경	방이동 94-3	도	14,565.30	36.40 36.40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내용	비고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9	당초	방이동 95	도	4,519.60	150.58	도로	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150.58									
합계	당초				755.78									
	변경				755.78									

토지조서 (지하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0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평균해수면 기준 ()~()m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소	성 명	주 소	소				
1	당초 번경	송파동 1	도	843.10	843.00	도	시	서울특별시						16.70	4.27 ~ -15.50	
2	당초 번경	송파동 1-1	도	6,787.10	2,824.00 2,824.00	도	시	서울특별시						17.20	2.86 ~ -16.90	
3	당초 번경	송파동 1-9	도	495.40	480.00 480.00	도	시	서울특별시						12.97	7.48 ~ -12.28	
4	당초 번경	송파동 1-10	도	3,076.20	2,894.00 2,894.00	도	시	서울특별시						13.25	7.18 ~ -12.61	
5	당초 번경	송파동 2	도	2,638.90	2,615.00 2,615.00	도	시	서울특별시						14.98	5.44 ~ -14.32	
6	당초 번경	송파동 3	도	2,364.10	2,185.00	도	시	서울특별시						12.78	2.11 ~ -6.80	
														7.05	7.82 ~ -6.78	
					2,185.00									6.22	8.68 ~ -6.76	
7	당초 번경	송파동 3-15	도	3,145.30	457.00 457.00	도	시	서울특별시						6.22	8.68 ~ -6.76	
8	당초 번경	송파동 64	도	3,978.00	3,296.00	도	시	서울특별시						12.97	7.48 ~ -12.28	
														12.78	2.11 ~ -6.80	
					3,296.00									7.05	7.82 ~ -6.78	
					3,296.00									6.22	8.68 ~ -6.76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관설정 범위평균해수면 기준 (0~0)m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9	당초 변경	송파동 65	도	3,094.30	2,058.00 2,058.00	도	시	서울특별시				13.25	7.18 ~ -12.61	
10	당초 변경	송파동 66	도	1,836.40	779.00 779.00	도	시	서울특별시				14.98	5.44~ -14.32	
11	당초 변경	송파동 67	도	2,137.60	503.00 503.00	도	시	서울특별시				16.07	4.27~ -15.50	
12	당초 변경	송파동 68	도	5,191.40	1,050.00	도	시	서울특별시				12.35	2.53 ~ -11.79	
					1,050.00							17.20	2.86~ -16.90	
13	당초 변경	방이동 1	도	2,545.90	2,074.00	도	시	서울특별시				11.95	3.07~ -5.84	
					2,074.00							11.80	8.75~ -10.99	
14	당초 변경	방이동 2	도	3,162.80	2,529.00	도	시	서울특별시				5.81	8.98~ -6.46	
					2,529.00							6.50	8.50~ -6.11	
15	당초 변경	방이동 3	도	2,511.00	70.00 70.00	도	시	서울특별시				6.19	8.74~ -6.70	
16	당초 변경	방이동 3-2	도	2,764.50	355.00 355.00	도	시	서울특별시				6.19	8.74~ -6.70	
17	당초 변경	방이동 4	도	1,787.10	415.00 415.00	도	시	서울특별시				7.08	7.79~ -6.63	
18	당초 변경	방이동 5	도	2,928.00	1,546.00	도	시	서울특별시				12.44	7.98~ -11.77	
					1,546.00							7.08	7.79~ -6.63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평균해수면 기준 (0~)m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9	당초 변경	방이동 6	도	2,927.50	1,724.00 1,724.00	도	시	서울특별시						11.69	8.59 ~ -11.16	
20	당초 변경	방이동 7	도	381.20	216.00 216.00	도	시	서울특별시						11.70	8.88~ -10.88	
21	당초 변경	방이동 94-3	도	14,565.30	356.00 356.00	도	시	서울특별시						7.08	7.79~ -6.63	
22	당초 변경	방이동 94-4	도	2,585.50	2,038.00 2,038.00	도	시	서울특별시						12.44	7.98 ~ -11.77	
23	당초 변경	방이동 94-5	도	3,036.50	2,560.00 2,560.00	도	시	서울특별시						11.77	8.53~ -11.25	
24	당초 변경	방이동 94-6	도	2,709.60	2,645.00 2,645.00	도	시	서울특별시						11.93	3.09~ -5.82	
25	당초 변경	방이동 95	도	4,519.60	3,691.00 3,691.00	도	시	서울특별시						11.73	8.83~ -10.93	
합계	당초 변경				40,203.00 40,203.00									5.81	8.98~ -6.46	
														6.50	8.50~ -6.11	
														11.82	3.18~ -5.93	

토지조서 (일시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0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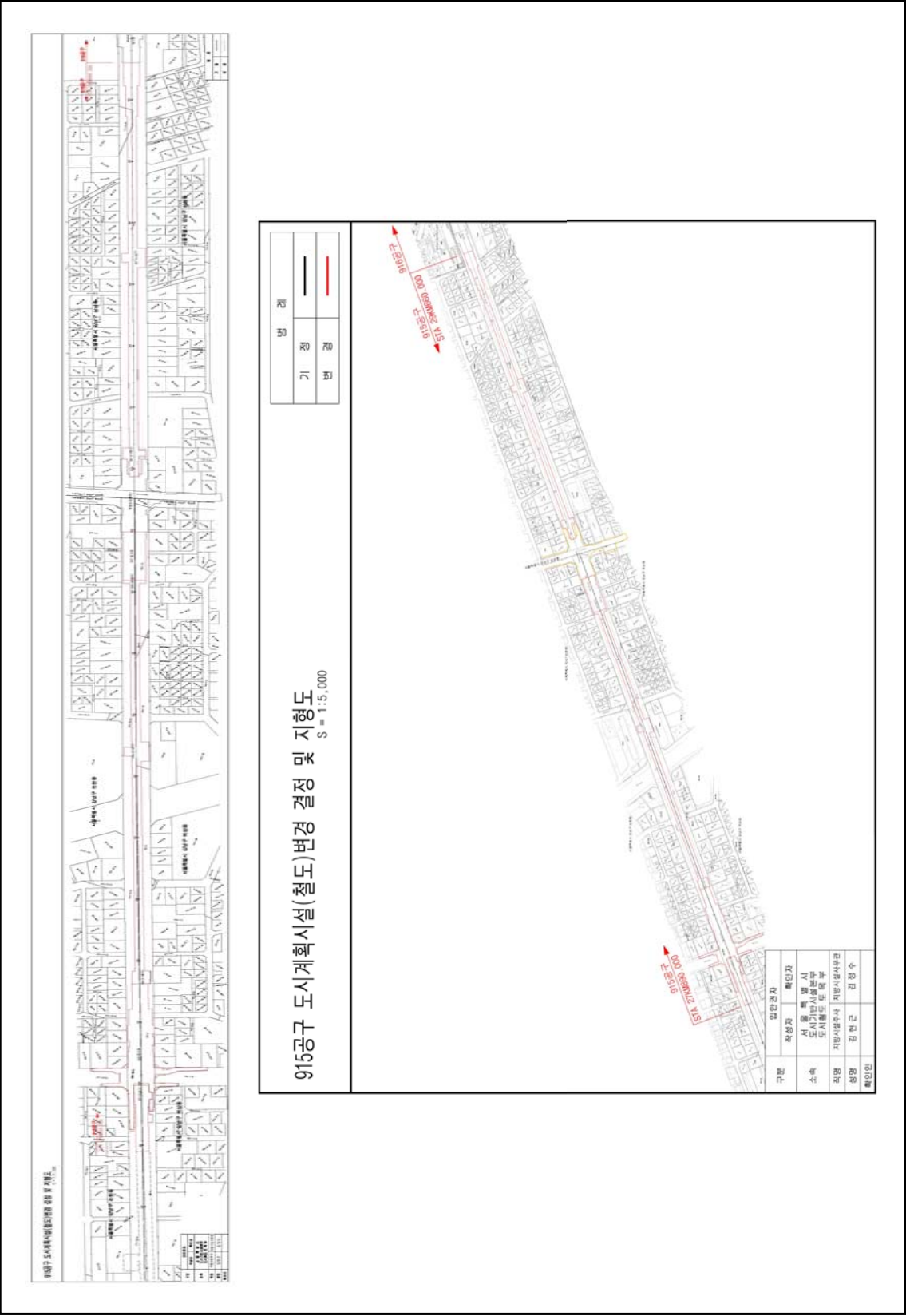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송파동 1-1	도	6,787.10	81.00 81.00	도	시	서울특별시				
2	당초 변경	송파동 68	도	5,191.4	96.00 96.00	도	시	서울특별시				
3	당초 변경	송파동 3	도	2,364.10	103.00 103.00	도	시	서울특별시				
4	당초 변경	송파동 48-4	대	331.50	6.00 4.00	대지	채희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25-502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방이남지점)	근저당권	
5	당초 변경	송파동 48-7	대	777.20	28.00 0	대지	김태성	송파구 송파동 58-1 잠실대우레이크월드 902호				
6	당초 변경	송파동 48-10	대	528.90	14.00 10.00	대지	김성환	서울시 강남구 계포동 653 현대 1차아파트 104-702	넥센타이어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8-10	전세권	
7	당초 변경	송파동 48-18	대	300.80	18.00 12.00	대지	하광호 김호연	강남구 삼성동 87아파트 삼성동사우스원 1901호 강남구 삼성동 87아파트 삼성동사우스원 1901호	주식회사에스원 -	서울시 중구 순화동 168 -	근저당권	
8	당초 변경	송파동 64	도	3,978.00	158.00 158.00	도	시	서울특별시				
9	당초 변경	방이동 1	도	2,545.90	84.00 84.00	도	시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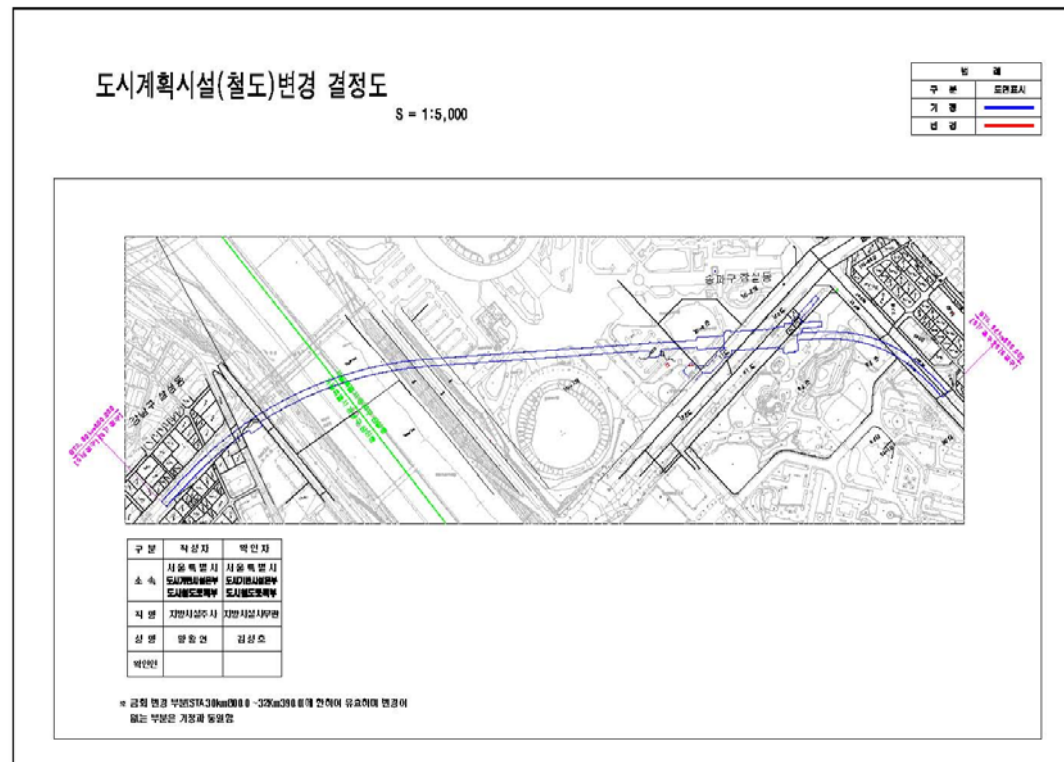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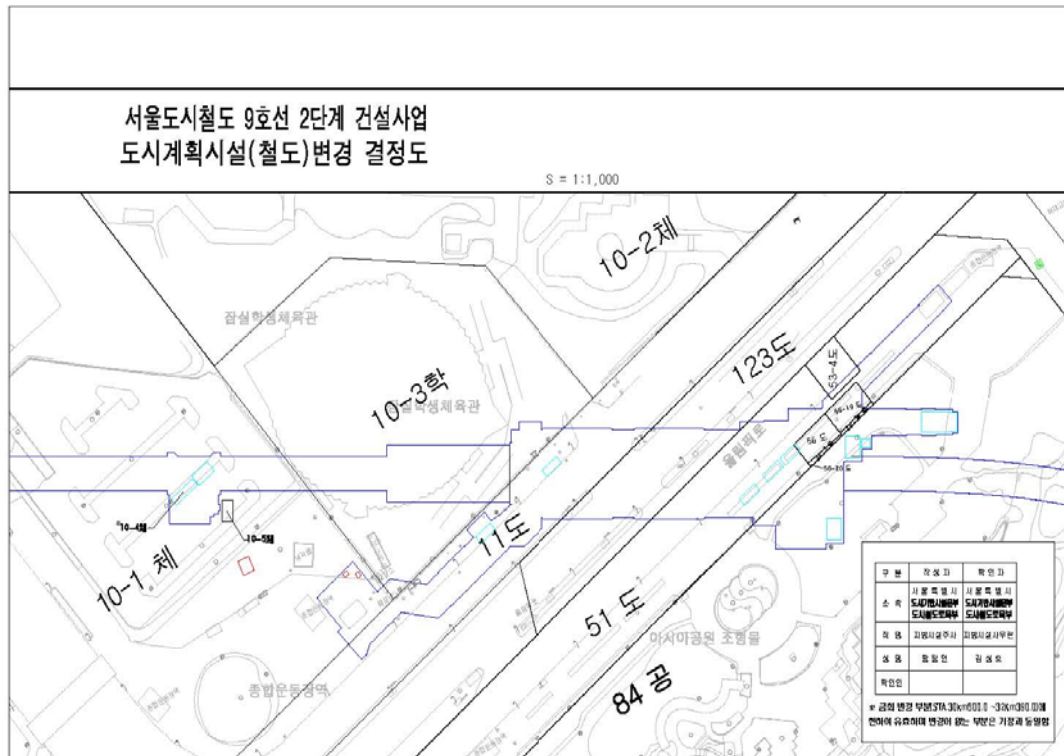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용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0	당초 변경	방이동 94-6	도	2,709.60	35.00 35.00	도	시	서울특별시				
11	당초 변경	방이동 97-4	도	4,032.00	21.00 21.00	도	구	송파구				
12	당초 변경	방이동 107-4	대	540.40	35.00 0	대	최종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519-6				
							박화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1-7				
							최인석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25 교동 마을현대필그리아파트106-1502				
							최웅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519-6				
13	당초 변경	방이동107-5	대	380.80	16.50 21.30	대	이창우 외 1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12-28 삼익투더빌리지				
							박영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12-28 삼익투더빌리지				
							재단법인대한 예수교장로회유 지재단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7길 28(동선동3가)				
14	당초 변경	방이동107-6	대	380.60	3.20 12.50	대	이학중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70-1 한신서레아파트 3동 702호				
15	추가	송파동48-11	대	529.00	0 12.70	대	박수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이- 편한세상 105동-1002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서초중앙지점)	근저당권	
							박수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레아파트 4동 1004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서초중앙지 점)	근저당권	
							박수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30(역삼동)	-	-		
16	당초 변경	방이동 108-11	대	310.90	8.60 0	대	조성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35 트리지움342-1003				
17	당초 변경	방이동 108-12	대	251.90	33.00 0	대	하귀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149-26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실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8	당초 변경	송파동108-1 3	대	603.00	76.00	대	김재덕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버버리힐즈 하멜가137놀즈90211						
							이진숙	강남구 역삼동 710 현대까르띠에710, 101-704						
							김태림	강남구 역삼동 710 현대까르띠에710, 101-704						
							김태완	강남구 역삼동 710 현대까르띠에710, 101-704						
							-	-						
19	당초 변경	방이동 4	도	1,787.10	23.00 23.00	도	시	서울특별시						
							시	서울특별시						
20	당초 변경	방이동 5	도	2,928.00	27.00 27.00	도	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21	당초 변경	방이동45-5	대	1,816.30	8.00 0	대	-	-						
							시	서울특별시						
22	당초 변경	방이동94-3	도	14,565.30	39.00 39.00	도	시	서울특별시						
							시	서울특별시						
23	당초 변경	송파동94-4	도	2,585.50	14.00 14.00	도	시	서울특별시						
							시	서울특별시						
24	당초 변경	송파동 3-15	도	3,145.30	47.00 47.00	도	시	서울특별시						
							시	서울특별시						
25	당초 변경	방이동 2	도	3,162.80	189.00 189.00	도	시	서울특별시						
							시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6	당초	방이동 3-2	도	2,764.50	29.00	도	시	서울특별시						
	변경				29.00									
27	당초	방이동 95	도	4,519.60	205.00		시	서울특별시						
	변경				205.00									
합계	당초				1,397.30									
	변경				1,223.50									

물 전 조 서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0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번	구분	지 번	물 건 의 종류	구 조 및 종	면적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1	당초	방이동 107-5	건물	정화조	13.00	정화조	이창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12-28 삼익투더빌리지		
	변경						박영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12-28 삼익투더빌리지		
					0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8호

구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86호(2003.04.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된 종로구 구기동 139-16번지 일대 구기근린공원에 대하여 2015년도 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최초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근린공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함.

2.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9-16번지 일대

3. 면적 : 5,369㎡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1), 종로구 공원녹지과(☎02-2248-2834)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9-16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369.00	905.20				17	
기 반 시 설	소계	497.90	497.90					
	도로	382.20	382.20					
	산책로	115.70	115.70					
조경시설		—	—				10	
휴양시설		274.50	274.50					
유희시설		—	—					
운동시설		132.80	132.80				7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4,463.80						
시 설 율 (법정40%)		(905.2/5,369)×100=16.86%						
건 폐 율 (법정20%)		0.00%						

나.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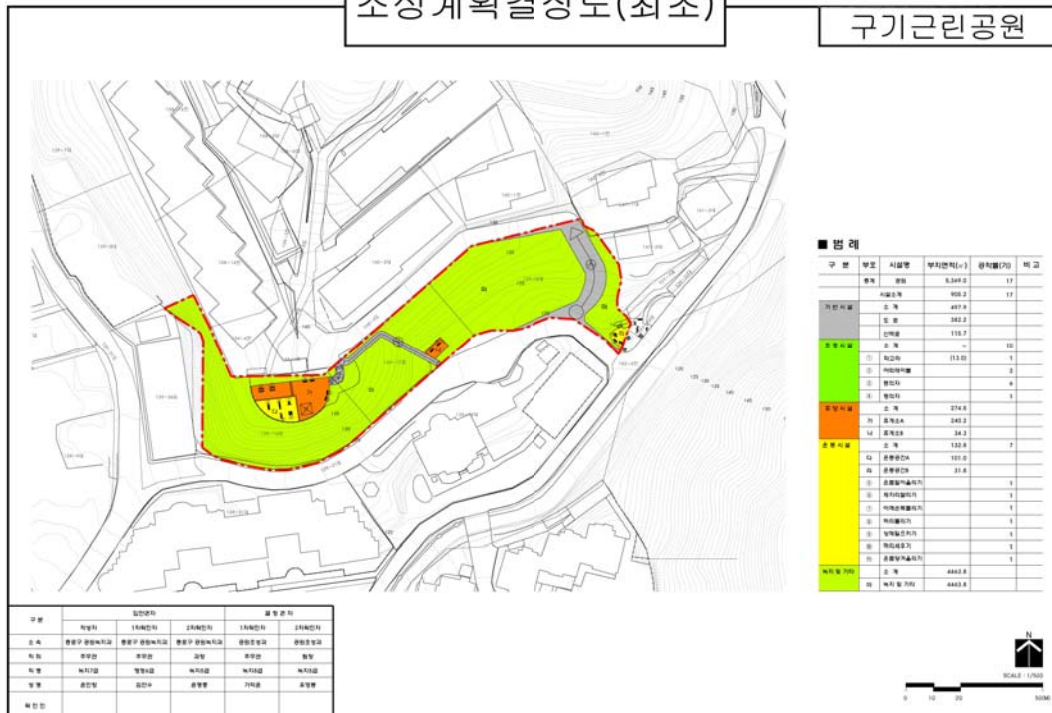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5,369.00	905.20					17	
기반 시설	소계			497.90	497.90						
	도로		구기동139-18	382.20	382.20						
	산책로		구기동139-16 구기동139-17	115.70	115.70						
조경 시설	소계			-	-					10	
	파고라	①	구기동139-16	(13.00)	(13.00)	목조				1	
	야외테이블	②	구기동139-16			목조				2	
	등의자	③	구기동139-16 구기동139-17			목조				6	
	평의자	④	구기동139-18			목조				1	
휴양 시설	소계			274.50	274.50						
	휴게소A	가	구기동139-16	240.20	240.20						
	휴게소B	나	구기동139-17	34.30	34.30						
운동 시설	소계			132.80	132.80					7	
	운동공간A	다-1	구기동139-16	101.00	101.00						
	운동공간B	다-2	구기동139-18	31.80	31.80						
	온몸밀어올리기	⑤	구기동139-16							1	
	제자리달리기	⑥	구기동139-16							1	
	어깨손목돌리기	⑦	구기동139-16							1	
	허리돌리기	⑧	구기동139-16							1	
	상체일으키기	⑨	구기동139-16							1	
	허리세우기	⑩	구기동139-18							1	
	온몸당겨올리기	⑪	구기동139-18							1	
녹지및 기타			전지역	4,463.80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94.6	497.9				
신설	소계				40.0	382.2				
	소로	3	1	8.0	40.0	382.2	보조동선	대지경계	대지경계	
	소계				54.6	115.7				
	산책로		1	3.0	43.9	90.7	주동선	대지경계	휴게소A	
	산책로		2	2.0	10.7	25.0	주동선	대지경계	대지경계	

조성계획결정도(최초)

구기근린공원



동선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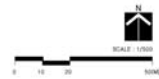
구기근린공원



도로결정조서

종류	번호	연호	연도(m)	연도(-)	가량	종류	비고
국			94.8	487.9			
소	3	1	8.0	40.0	382.2	대지형	부동산
간	1	0.0	43.9	46.7	대지형	부동산	
간	2	0.0	10.7	28.0	대지형	부동산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시설배치도

구기근린공원



범례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63호(1997.3.13.)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7-59호(1997.6.10.)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63호(2015. 9.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동대문구 전농동 588-1 ~ 675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연결고가도로 개설 : 폭 20m, 연장 476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변경조서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0)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3708-8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합 계						7,760					
1	당초	전농동	588-192	철	4,141	국	국토교통부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0)에 의거 무상사용
	변경	변경없음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일련 번호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제8항(2002.12.21)에 의거 무상사용
2	당초	전농동	588-193	철	500	국	국토교통부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2)에 의거 무상사용
	변경	변경없음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3)에 의거 무상사용
3	당초	전농동	588-195	철	215	한국철도 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4)에 의거 무상사용
	변경	변경없음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5)에 의거 무상사용
4	당초	전농동	588-196	철	16	한국철도 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6)에 의거 무상사용
	변경	변경없음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7)에 의거 무상사용
5	당초	전농동	588-183	철	74.0	국	국토교통부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8)에 의거 무상사용
	변경	전농동	588-183	철	114.0	국	국토교통부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29)에 의거 무상사용
6	당초	전농동	588-184	철	114.0	국	국토교통부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30)에 의거 무상사용
	변경	전농동	588-184	철	74.0	한국철도 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31)에 의거 무상사용
7	당초	전농동	547-1	철	1,115	한국철도 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32)에 의거 무상사용
	변경	변경없음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33)에 의거 무상사용
8	당초	전농동	578-4	도	26	동대문구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34)에 의거 무상사용
	변경	변경없음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35)에

일련 번호	구분	동 명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9	당초	전농동	575-1	철	49	한국철도 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의거 무상사용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36)에 의거 무상사용
	변경	변경없음									청량리민자역사 실시계획인가조건 제8항(2002.12.37)에 의거 무상사용
10	당초	전농동	684-4	도	812.3	동대문구					
	변경	변경없음									
11	당초	전농동	687-6	도	126.8	동대문구					
	변경	변경없음									
12	당초	전농동	675-12	도	6.1	서울특별 시					
	변경	변경없음									
13	당초	전농동	675-13	도	42.7	서울특별 시					
	변경	변경없음									
14	당초	전농동	675-11	공원	334.4	동대문구					
	변경	변경없음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면적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당초	전농동	588-152	테니스라카룸	철근콘크리트조	1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변경	변경없음										
2	당초	전농동	588-152	창고	콘테이너	21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지하1층	세면벽돌조	41						
				1층	세면벽돌조	41						
				2층	세면벽돌조	41						
				3층	세면벽돌조	41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2						
				감나무	10cm	1주						
	변경	전농동	588-152	창고	콘테이너	21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지하1층	세면벽돌조	41						
				1층	세면벽돌조	41						
				2층	세면벽돌조	41						
				3층	세면벽돌조	41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2						
3	당초	전농동	588-1	창고	벽돌조	72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창고	샌드위치판넬	20						
				1층	세면벽돌조	579						
				2층	세면벽돌조	579						
				창고	조립식건물	20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12						
				휴게실	철근콘크리트조	38						
	변경	전농동	588-1	창고	벽돌조	72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창고	샌드위치판넬	20						
				1층	세면벽돌조	579						
				2층	세면벽돌조	579						
				창고	세면벽돌조	20						
				창고	벽돌조	12						
				휴게실	벽돌조	38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면적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	당초	전농동	588-1	1층	철근콘크리트조	75	국(경찰청)	(02486) 동대문구약령사로21 길29(동대문경찰서)				
				2층	철근콘크리트조	75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11						
				자전거보관대		1EA						
				감나무	10cm	1주						
	변경	전농동	588-1	1층	철근콘크리트조	75	국(경찰청)	(02486) 동대문구약령사로21 길29(동대문경찰서)				
				2층	철근콘크리트조	75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11						
				자전거보관대		1EA						
				목련	10cm	1주						
5	당초	전농동	547-1	유류저장탱크	20,000L	1EA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유류저장소	철근콘크리트조	20						
	변경	제외										
6	당초	전농동	547-1	1층	세면벽돌조	50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2층	세면벽돌조	50						
	변경	변경없음										
7	당초	전농동	547-1	정압기(기스)	철근콘크리트조	4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1층	세면벽돌조	15						
				굴뚝	콘크리트	1EA						
	변경	전농동	547-1	정압기(기스)	철근콘크리트조	4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1층	세면벽돌조	26						
				굴뚝	콘크리트	1EA						
8	당초	전농동	547-1	변압기	50-100KVA	1EA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변경	제외										
9	당초	전농동	575	담장	벽돌조	70m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변경	변경없음										
10	추가	전농동	684-4	자율방범	콘테이너	1동	강영수	동대문구 전농동 141-37				

□ 위 치 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0호

구산근린공원 및 역촌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된 구산근린공원 및 역촌근린공원에 대하여 2015년도 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최초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위치 및 면적

- 구산근린공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48-7번지 일대 32,300㎡

- 역촌근린공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142-1번지 일대 52,500㎡

3.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90), 은평구 공원녹지과(☎02-351-8008)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은평구 구산동 산48-7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시설면적 (㎡)	시설면적 (㎡)		
계	32,300.0	2,644.1				77	
기 반 시 설	소계	1,065.6				17	
	광장	119.8				16	
	도로	945.8				1	
조경시설	285.6	285.6				8	
휴양시설	314.6	314.6				25	
유희시설	394.0	394.0				14	
운동시설	485.6	485.6				11	
편익시설	98.7	98.7				2	
녹지 및 기타	29,655.9	29,655.9				-	
시설율 (법정 40%)	$(2,644.1 / 32,300) \times 100 = 8.2\%$						

나.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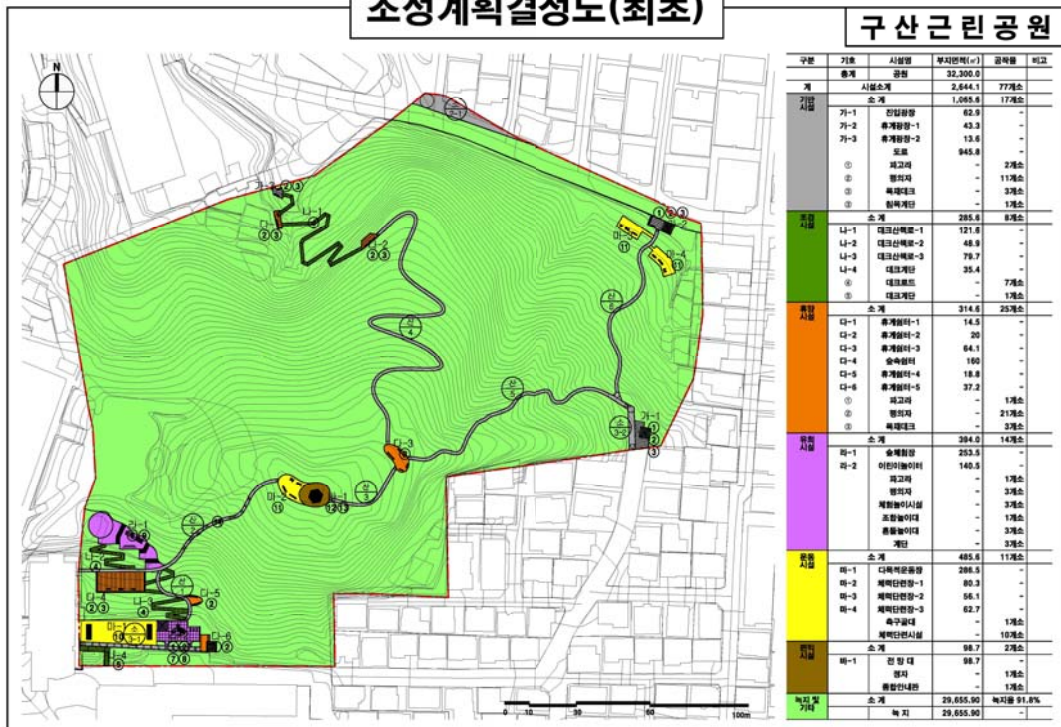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32,300.0	2,644.1					77	
기반 시설	소 계	-	-	1,065.6	1,065.6					17	
	진입광장	가-1	진입부	62.9	62.9					-	
	휴게광장-1	가-2	진입부	43.3	43.3					-	
	휴게광장-2	가-3	진입부	13.6	13.6					-	
	도 로		전지역	945.8	945.8					-	
	파고라	①	가-1,2							2	
	평의자	②	가-1,2,3							11	
	목재데크	③	가1,2,3							3	
	침목계단	④	산책로2							1	
조경 시설	소 계			285.6	285.6					8	
	데크산책로-1	나-1	부지북서측	121.6	121.6					-	
	데크산책로-2	나-2	부지남서측	48.9	48.9					-	
	데크산책로-3	나-3	부지남서측	79.7	79.7					-	
	데크계단	나-4	부지남서측	35.4	35.4					-	
	데크로드	④	부지북서측 부지남서측							7	
	데크계단	⑤	부지남서측							1	
휴양 시설	소 계			314.6	314.6					25	
	휴게쉼터-1	다-1	부지북서측	14.5	14.5					-	
	휴게쉼터-2	다-2	부지북서측	20.0	20.0					-	
	휴게쉼터-3	다-3	부지중앙	64.1	64.1					-	
	숲속쉼터	다-4	부지남서측	160.0	160.0					-	
	휴게쉼터-4	다-5	부지남서측	18.8	18.8					-	
	휴게쉼터-5	다-6	부지남서측	37.2	37.2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휴게 시설	파고라	①	다-6							1	
	평의자	②	휴양시설내							21	
	목재데크	③	다-1,2,4							3	
유희 시설	소 계			394.0	394.0					14	
	숲체험장	라-1	부지남서측	253.5	253.5					-	
	어린이놀이터	라-2	부지남서측	140.5	140.5					-	
	파고라	①	라-2							1	
	평의자	②	라-2							3	
	체험놀이시설	⑥	라-1							3	
	조함놀이대	⑦	라-2							1	
	흔들놀이대	⑧	라-2							3	
	계단	⑨	라-1							3	
운동 시설	소 계			485.6	485.6					11	
	다목적운동장	마-1	부지남서측	286.5	286.5					-	
	체력단련장-1	마-2	부지중앙	80.3	80.3					-	
	체력단련장-2	마-3	부지북동측	56.1	56.1					-	
	체력단련장-3	마-4	부지북동측	62.7	62.7					-	
	축구골대	⑩	마-1							1	
	체력단련시설	⑪	마-2,3,4							10	
편익 시설	소 계			98.7	98.7					2	
	전 망 대	바-1	부지중앙	98.7	98.7					-	
	정 자	⑫	바-1							1	
	종합안내판	⑬	바-1							1	
녹지 및 기타	소 계			29,655.9						-	
	녹 지		전지역	29,655.9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650.6	945.8				
신설	소로	계			121.1	310.5				
		2	1	1.0~7.0	54.7	193.7	연결로	북측경계	북동측경계	
		3	1	1.5	49.3	74.0	진입로	다-6	남서측경계	
		3	2	2.5	17.1	42.8	진입로	산책로5	남동측경계	
	산책로	계			529.5	635.3				
			1	1.2	28.7	34.4	연결로	산책로2	라-2	
			2	1.2	95.2	114.2	연결로	남서측경계	마-2	
			3	1.2	34.5	41.4	연결로	바-1	다-3	
			4	1.2	187.5	225.0	연결로	다-3	나-2	
			5	1.2	107.1	128.5	연결로	다-3	소로3-2	
			6	1.2	76.5	91.8	연결로	산책로5	가-2	

조성계획결정도(최초)



역촌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산142-1호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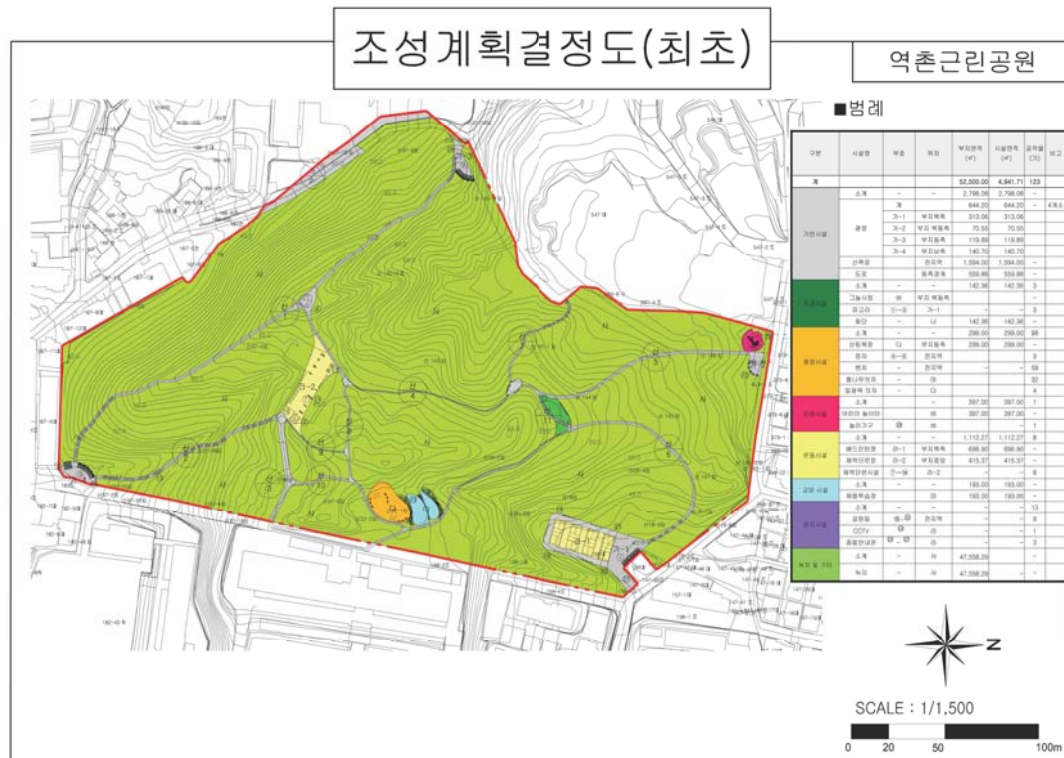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등)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계		52,500.00	4,941.71				123	
기 반 시 설	소계	2,798.08	2,798.08				—	
	광장	644.2	644.2				—	
	산책로	1,594.00	1,594.00				—	
	도로	559.88	559.88				—	
조경시설		142.36	142.36				3	
휴양시설		299.00	299.00				87	
운동시설		1,112.27	1,112.27				8	
유희시설		397.00	397.00				1	
교양시설		193.00	193.00				—	
관리시설		—	—				13	
녹지 및 기타		47,558.29	—				—	
시설율 (법정 40%)		$(4,941.71 / 52,500.00) \times 100 = 9.41\%$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52,500.00	4,941.71					123	9.41%
기반 시설	소계	-	-	2,798.08	2,798.08					-	
	광장	계		644.20	644.20					-	4개소
		가-1	부지북측	313.06	313.06						
		가-2	부지 북동측	70.55	70.55						
		가-3	부지동측	119.89	119.89						
		가-4	부지남측	140.70	140.70						
	산책로		전지역	1,594.00	1,594.00					-	11노선
	도로		동측경계	559.88	559.88					-	1노선
조경 시설	소계	-	-	142.36	142.36					4	
	그늘시렁	바	부지 북동측							-	
	파고라	①~③	가-1	-	-					3	
	화단	-	나	142.36	142.36					-	
휴양 시설	소계	-	-	299.00	299.00					98	
	산림욕장	다	부지동측	299.00	299.00					-	
	정자	④~⑥	전지역							3	
	벤치	-	전지역	-	-					59	
	통나무의자	-	마							24	
	일광욕 의자	-	다							4	
운동 시설	소계	-	-	1,112.27	1,112.27					8	
	배드민턴장	라-1	부지북측	696.90	696.90					-	
	체력단련장	라-2	부지중앙	415.37	415.37					-	
	체력단련시설	⑦~⑭	라-2	-	-					8	
관리 시설	소계	-	-	-	-					13	
	공원등	⑮~㉓	전지역	-	-					9	
	CCTV	㉔	라	-	-					1	
	종합안내판	㉕~㉗	라	-	-					3	
교양 시설	소계	-	-	193.00	193.00					-	
	체험학습장		마	193.00	193.00					-	
유희 시설	소계		-	397.00	397.00					1	
	어린이 놀이터		바	397.00	397.00					-	
	놀이기구	㉘	바		-					1	
녹지 및 기타	소계	-	-	47,558.29	-					-	
	녹지	-	전지역	47,558.29	-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249.6	2,153.88				
신설	산책로		1	1.5	267.8	380.38	진입로	남동측경계	서측경계	
			2	1.5	109.7	151.00	진입로	남동측경계	라	
			3	2~3	58.4	145.22	연결로	산-1	다	
			4	0.9~1.5	151.5	165.45	연결로	산-1	산-3	
			5	1.5	139.9	187.68	진입로	북동측경계	산-4	
			6	1.5	248.5	284.76	진입로	북동측경계	라	
			7	1	61.6	62.88	진입로	동측중앙부 경계	산-4	
			8	1.5	101.8	103.78	진입로	서측중앙부 경계	산-4	
			9	0.75	37.9	32.00	연결로	산-3	산-8	
			10	1.25	32.5	50.63	연결로	산-3	산-8	
			11	1	32	30.23	연결로	산-5	산-6	
기정	소로	3		8	8	559.88				편입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1호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된 용산구 한남동 677-1번지 일대 한남근린공원에 대하여, 2015년도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최초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함.

2.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77-1번지 일대
3. 면적 : 28,197㎡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0), 용산구 공원녹지과(☎02-2199-7603)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최초)

1. 총괄표 (위치 : 용산구 한남동 677-1번지 일대)

구분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합 계		28,197	8,763				66	
기 반 시 설	소 계	5,566	5,566					
	도 로	3,995	3,995					
	광 장	1,571	1,571					
조 경 시 설		2,130	2,130				6	
휴 양 시 설		293	293				45	
유 희 시 설		705	705				6	
운 동 시 설		69	69				9	
편 익 시 설		191	191					
녹지 및 기타		19,243						
시 설 율 (법정 40%)		(8,763/ 28,197) x 100 = 31.08%						
건 폐 율 (법정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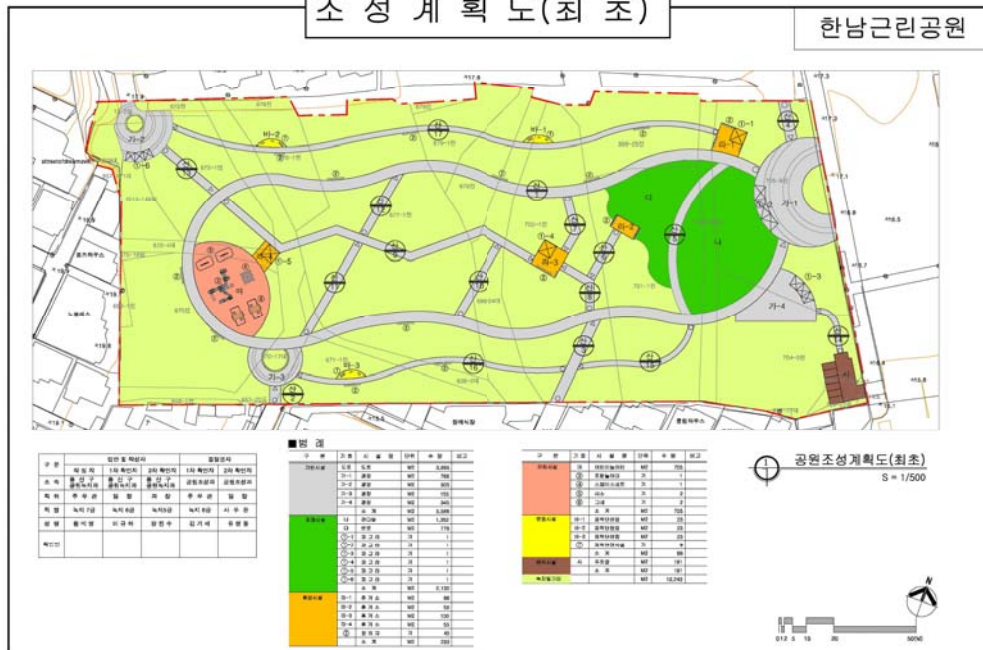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 본 시 설	총 계			28,197	8,763					66	
	소 계			5,566	5,566						
	도 로			3,995	3,995						
	광 장	가		1,571	1,571						
		가-1	705-9전	(766)	(766)						
		가-2	672-1전	(305)	(305)						
		가-3	670-17대	(155)	(155)						
		가-4	704-3전	(345)	(345)						
조 경 시 설	소 계			2,130	2,130						
	잔디밭	나	705-9전	1,352	1,352						
	연못	다	701-1전	778	778						
	파고라	①								6	
		①-1	705-9전							(1)	'라-1' 에 포함
		①-2	705-9전							(1)	'가-1' 에 포함
		①-3	705-9전							(1)	'가-4' 에 포함
		①-4	700-1전							(1)	'라-3' 에 포함
		①-5	670-4대							(1)	'라-4' 에 포함
		①-6	산13-149임							(1)	'가-2' 에 포함
휴 양 시 설	소 계			293	293					45	
	휴 게 소	라		293	293						
		라-1	705-9전	(88)	(88)						
		라-2	701-1전	(50)	(50)						
		라-3	700-1전	(100)	(100)						
		라-4	670-4대	(55)	(55)						
	장 의 자	②	전지역							45	
유 회 시 설	소 계			705	705					6	
	어린이놀이터	마	670전	705	705						
	조합놀이대	③	670전							1	'마' 에 포함
	스페이스네트	④	670전							1	'마' 에 포함
	시소	⑤	670전							2	'마' 에 포함
	그네	⑥	670전							2	'마' 에 포함
운 동 시 설	소 계			69	69					9	
	체력단련장	바		69	69						
		바-1	700-1전	(23)	(23)						
		바-2	676-1전	(23)	(23)						
		바-3	671-1전	(23)	(23)						
	체력단련시설	⑦	체력단련장							9	
편 의 시 설	소 계			191	191						
	주차장	사	407-16전	191	191						
녹지 및 기타				19,243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275	3,995				
	산책로	소 계			1,275	3,995				
			1	4	475	1,900	산책로	가-1	가-1	
			2	4	6	24	진입로	진입부	가-3	
			3	4	32	128	진입로	진입부	산책로 1	
			4	4	27	108	진입로	진입부	가-1	
			5	3	61	183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6	3	20	60	산책로	라-2	산책로 8	
			7	3	21	63	산책로	산책로 1	라-3	
			8	3	21	63	산책로	산책로 1	라-3	
			9	3	126	378	산책로	산책로 1	라-3	
			10	3	29	87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9	
			11	3	37	11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9	
			12	3	24	72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1	
			13	3	26	78	산책로	가-2	산책로 1	
			14	2	21	42	진입로	아	가-4	
			15	2	46	92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16	2	100	200	산책로	산책로 3	가-3	
			17	2	203	406	산책로	라-1	가-2	

조성계획도(최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2호

탐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된 종로구 종로2가 38-1번지 일대 탐골근린공원에 대하여 2015년도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최초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1번지 일대

3. 면적 : 14,808.7㎡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1), 종로구 공원녹지과(☎02-2248-2482)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탐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위치 : 종로구 종로2가 38-1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4,808.7	5,356.6	10	400.36	400.36	72	
기 반 시 설	3,637.5	3,637.5					
조 경 시 설	31.4	31.4				22	
휴 양 시 설	71.4	71.4					
유 희 시 설	—	—					
운 동 시 설	—	—					
교 양 시 설	1,228.3	1,228.3	7	266.33	266.33	19	
편 익 시 설	216.0	216.0	2	53.70	53.70	3	
관 리 시 설	172.0	172.0	1	80.33	80.33	28	
소 계	5,356.6	5,356.6					
녹지 및 기타	9,452.1						
시 설 율 (40% 이하)	$(5,356.6 / 14,808.7\text{㎡}) \times 100\% = 36.20\%$						
건폐율 (20% 이하)	$(400.36 / 14,808.7\text{㎡}) \times 100\% = 2.70\%$						

나. 시설조서

구분	시 설 명	신 설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14,808.7	5,356.6		10	400.36	400.36	72	
기반 시설	소 계			3,637.50	7,264.60						
	도 로			3,139.30	3,139.30						
	진입광장	가	종로2가 38-1사	498.20	498.20						
조경 시설	소 계			31.40	31.40					22	
	연못	나	종로2가 38-1사	(28.00)	(28.00)						
	데크	다	종로2가 38-1사	(3.40)	(3.40)						
	석재의자	①	종로2가 38-1사							22	
휴양 시설	소 계			71.40	71.40						
	휴게소	라-1	종로2가 38-1사	(4.00)	(4.00)						
		라-2	종로2가 38-1사	(4.00)	(4.00)						
		라-3	종로2가 38-1사	(4.00)	(4.00)						
		라-4	종로2가 38-1사	(4.00)	(4.00)						
		라-5	종로2가 38-1사	(4.00)	(4.00)						
		라-6	종로2가 38-1사	(35.00)	(35.00)						
		라-7	종로2가 38-1사	(4.00)	(4.00)						
		라-8	종로2가 38-1사	(4.00)	(4.00)						
		라-9	종로2가 38-1사	(4.00)	(4.00)						
		라-10	종로2가 38-1사	(4.00)	(4.00)						
교양 시설	소 계			1,228.30	1,228.30		7	195.77	195.77	19	
	팔각정	1		(153.30)	(153.30)	목조	1층	63.9	63.9		
	서울원각사지 십층석탑	마	종로2가 38-2사	(368.40)	(368.40)	철골조	15.4 m	70.56	70.56		
	서울원각사지 대원각사비	2	종로2가 38-3사	(160.00)	(160.00)	한식 목구조	9.2m	56.25	56.25		
	삼일문	3	종로2가 38-1사	(136.00)	(136.00)	목조	1층	39.67	39.67		
	서문	4	종로2가 38-4공	(30.70)	(30.70)	목조	1층	7.2	7.2		

구분	시 설 명	신 설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 시설	북문	5	종로2가 38-1사	(30.50)	(30.50)	목조	1층	7.2	7.2			
	동문	6	종로2가 38-1사	(48.50)	(48.50)	목조	1층	21.55	21.55			
	손병희선생 동상	②	종로2가 38-1사	(27.90)	(27.90)					1		
	3.1운동 기념비	③	종로2가 38-1사	(68.70)	(68.70)					1		
	전통담장	④	전지역	(133.00)	(133.00)					1		
	발굴출토 우물	⑤	종로2가 38-1사	(7.80)	(7.80)					1		
	양구일구대석	⑥	종로2가 38-1사	(1.50)	(1.50)					1		
	3.1운동 찬양비	⑦	종로2가 38-1사	(2.00)	(2.00)					1		
	3.1운동 기념부조	소 계			(30.00)	(30.00)					10	
		⑧-1	종로2가 38-1사	(3.00)	(3.00)						1	
		⑧-2	종로2가 38-1사	(3.00)	(3.00)						1	
		⑧-3	종로2가 38-1사	(3.00)	(3.00)						1	
		⑧-4	종로2가 38-1사	(3.00)	(3.00)						1	
		⑧-5	종로2가 38-1사	(3.00)	(3.00)						1	
		⑧-6	종로2가 38-1사	(3.00)	(3.00)						1	
		⑧-7	종로2가 38-1사	(3.00)	(3.00)						1	
		⑧-8	종로2가 38-1사	(3.00)	(3.00)						1	
		⑧-9	종로2가 38-1사	(3.00)	(3.00)						1	
		⑧-10	종로2가 38-1사	(3.00)	(3.00)						1	
	탐골공원 사적비	⑨	종로2가 38-1사								1	
만해한용운대 선사비	⑩	종로2가 38-1사								1		
비석	⑪	종로2가 38-1사								1		

구분	시 설 명	신 설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 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편익 시설	소 계			216.00	216.00		2	53.70	53.70	3		
	화장실	7	종로2가 7-1공	(178.00)	(178.00)	철근콘크리트	1층	(43.95)	(43.95)			
	매표소	8	종로2가 8-1사	(31.00)	(31.00)	철근콘크리트	1층	(9.75)	(9.75)			
	음수전	㉔	종로2가 8-1사	(2.00)	(2.00)					1		
	공중전화 박스	소 계		(5.00)	(5.00)					2		
		㉔-1	종로2가 7-1공	(2.00)	(2.00)					1		
		㉔-2	종로2가 7-1공	(3.00)	(3.00)					1		
관리 시설	소 계			172.00	172.00		1	80.33	80.33	28		
	관리사무소	9	종로2가 8-1사	(122.00)	(122.00)	철근콘크리트	1층	(80.33)	(80.33)			
	소화전	㉓	종로2가 8-1사							1		
	국기계양대	㉔	종로2가 8-1사							1		
	공원등	㉕	종로2가 8-1사							20		
	조명등	㉖	종로2가 8-1사							2		
	종합안내판	㉗	종로2가 31공							1		
	이용안내판	㉘	종로2가 8-1사							3		
	담장	㉙	종로2가 31공	(50.0)	(50.0)							
녹지 및 기타	소 계			9,452.10								
	녹 지			5,825.00								
	기타	바-1	종로2가 38-1사	(48.50)								
		바-2	종로2가 38-1사	(46.40)								
		바-3	종로2가 38-1사	(198.00)								
		바-4	종로2가 37-1사	(289.40)								
		바-5	종로2가 38-1사	(1181.80)								
바-6		종로2가 38-1사	(186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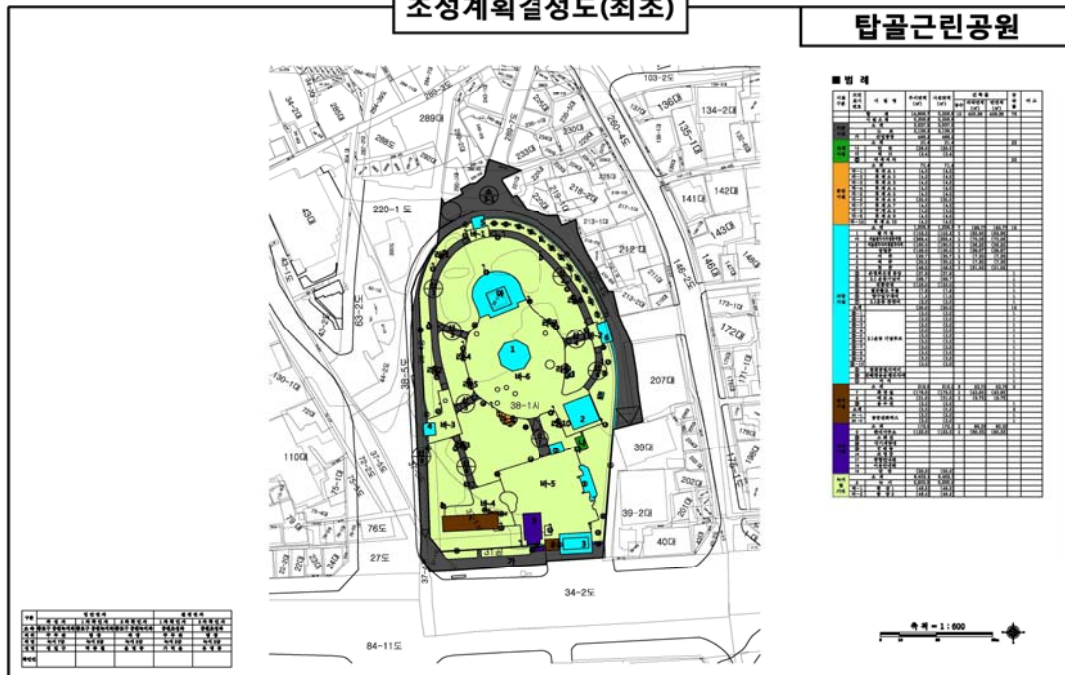
라. 도로조서 총괄표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계					3,139.30				
신설	소로	소계				1,596.40				
신설		3	1	9.0	177.50	1,596.40	진입	진입광장 가	산책로 9	
신설	산책로	소계				1,542.90				
신설			1	3.0	79.00	237.00	산책	나-3 광장	나-1 광장	
신설			2	3.0	68.00	204.00	산책	나-2 광장	나-1 광장	
신설			3	3.0	15.50	46.50	산책	나-6 광장	산책로 1	
신설			4	3.0	13.00	39.00	산책	나-2 광장	나-6 광장	
신설			5	3.0	13.13	39.30	산책	나-3 광장	나-6 광장	
신설			6	3.0	20.70	62.10	산책	나-2 광장	나-6 광장	
신설			7	5.5	19.20	105.50	산책	나-5 광장	나-6 광장	
신설			8	3.0	25.80	77.40	산책	나-3 광장	나-4 광장	
신설			9	4.00	183.00	732.00	산책	진입광장 가	소로 3-1	

조성계획결정도(최초)

탐골근린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3호

선유도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38호(2001.4.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선유도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선유도공원 조성계획(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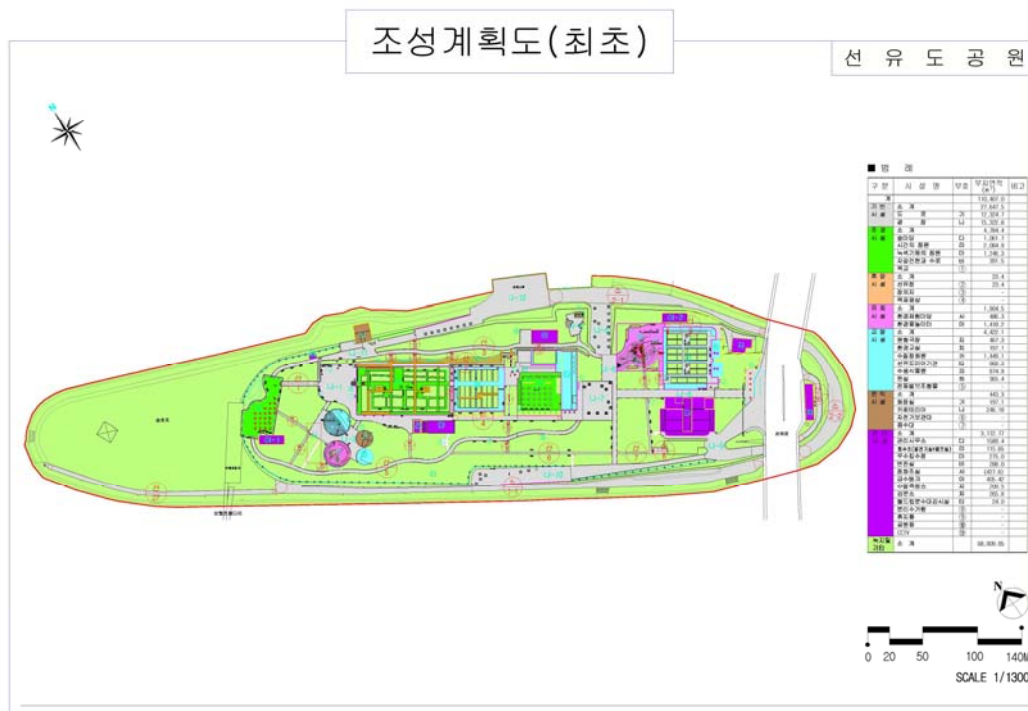
3. 면 적 : 110,407m²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 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및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300-553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유도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 일대)

구 분	최 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10,407.0	42,397.95	16동	4,016.32	7,259.27	222
기반 시설	소 계	27,647.5				
	도 로	12,324.7				
	광 장	15,322.8				
조 경 시 설	4,784.4	4,784.4				1
휴 양 시 설	23.4	23.4	1동	20.79	20.79	110
유 회 시 설	1,904.5	1,904.5				2
운 동 시 설	-	-				
교 양 시 설	4,422.1	4,422.1	4동	2,089.46	2,760.61	1
편 의 시 설	443.28	443.28	2동	352.94	684.58	12
관 리 시 설	3,172.77	3,172.77	9동	1,553.13	3,793.29	96
녹지 . 기타	68,009.05					
공원시설율 (법정40%)	$(42,397.95\text{㎡} / 110,407.0\text{㎡}) \times 100\% = 38.40\%$					
공원건폐율 (법정10%)	$(4,016.32\text{㎡} / 110,407.0\text{㎡}) \times 100\% = 3.63\%$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10,407.0	42,397.9		16동	4,016.32	7,259.27	222	
기 반 시 설	소 계		27,647.5	27,647.5						
	도 로	가	12,324.7	12,324.7						
	광 장	나	12개소	15,322.8	15,322.8					
		나-1	양화동 95번지	(2,030.5)	(2,030.5)					
		나-2	양화동 95번지	(655.8)	(655.8)					
		나-3	양화동 95번지	(657.7)	(657.7)					
		나-4	양화동 95번지	(180.6)	(180.6)					
		나-5	당산동 1번지	(831.6)	(831.6)					
		나-6	당산동 1번지	(639.8)	(639.8)					
		나-7	당산동 1번지	(1,271.2)	(1,271.2)					
		나-8	당산동 1번지	(1,255.2)	(1,255.2)					
		나-9	당산동 1번지	(2,140.2)	(2,140.2)					
		나-10	양화동 52-1번지	(2,201.4)	(2,201.4)					
		나-11	양화동 95번지	(966.4)	(966.4)					
		나-12	양화동 95번지	(2,492.4)	(2,492.4)					
조경 시설	소 계		4,784.4	4,784.4					1	
	숲마당	다	양화동 95번지	1,061.7	1,061.7					
조경 시설	시간의 정원	라	양화동 95번지	2,084.9	2,084.9					
	녹색기둥의 정원	마	양화동 95번지	1,246.3	1,246.3					
	자갈 건천과 수로	바	양화동 95번지	391.5	391.5					
	목교	①	환경물놀이터내						(1)	
휴양 시설	소 계		23.4	23.4		1동	23.4	23.4	110	
	선유정	②	양화동 95번지	23.4	23.4	1동	23.4	23.4	(1)	목구조
	장의자	③	시설지내						(108)	
	목재평상	④	환경물놀이터						(1)	
유희 시설	소 계		1,904.5	1,904.5					2	
	환경 체험마당	사	양화동 95번지	486.3	486.3				(1)	
	환경 물놀이터	아	당산동 1번지1,418.2	1,418.2	1,418.2				(1)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소 계			4,422.1	4,422.1		4동	2,089.46	2,760.61	1	
	원형극장	자	양화동 95번지	467.3	467.3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467.36		
	환경교실	차	양화동 95번지	197.1	197.1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148.0	148.0		
	수질 정화원	카	당산동 1번지	1,449.1	1,449.1						
	선유도 이야기관	타	양화동 95번지	968.3	968.3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1,576.06	1,794.65		
	수생 식물원	파	양화동 95번지	974.9	974.9						
	온실	하	당산동 1번지	365.4	365.4	경량철골 구조 박공지붕	1동	365.4	350.6		
	전동 밸브조형물	⑤	양화동 95번지							(1)	
편익 시설	소 계			443.28	443.3		2동	352.94	684.58	12	
	화장실	가	양화동 95번지	197.1	197.1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106.76	106.76		
	카페 테리아	냐	양화동 52-1번지	246.18	246.18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246.18	577.82		
	자전거 보관대	⑥	시설지내							(10)	
	음수대	⑦	시설지내							(2)	
관리 시설	소 계			3,172.77	3,172.77		9동	1,553.13	3,793.29	96	
	관리 사무소	다	당산동 1번지	1,589.4	1,589.4	철근콘크 리트 조적조	1동	483.8	2,564.91		
	회수조 (발전기실+ 펌프실)	마	양화동 95번지	115.65	115.65	철근콘크 리트	1동	115.65	115.65		
	우수 집수정	바	양화동 95번지	275.0	275.0						
	변전실	샤	양화동 95번지	288.0	288.0	철근콘크 리트	1동	288.0	288.0		
	정화조실	야	양화동 95번지	(427.6)	(427.6)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13.64	432.0		

구 분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급수탱크 (관수기계실 +수경 기계실)	차	양화동 95번지/ 당산동 1번지	405.42	405.42	철골철근 콘크리트	2동	405.42	102.44		
	사무실 (마포지대)	차	당산동 1번지	209.5	209.5	철근콘크 리트	1동	56.34	100.01		
	검문소	카	당산동 1번지	265.8	265.8	철근콘크 리트	1동	166.28	166.28		
	월드컵분수대 감시실	타	양화동 95번지	24	24	철재콘테 이너박스 +반원목 외장	1동	24.0	24.0		
	분리수거함	㉔	시설지내							(2)	
	휴지통	㉕	시설지내							(12)	
	공원등	㉖	시설지내							(77)	
	CCTV	㉗	시설지내							(5)	
녹지 및 기타				68,009.05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최초	합 계				2,738.2	12,324.7				
최초	소 로	소 계			772.9	6,603.0				
최초	소 로	3	1	7.5	445.4	3,340.5	진입로	산책로26 (종점)	양화대교	
최초		2	1	9.5	201.5	1,914.3	진입로	광장 나-12	양화대교	
최초		2	2	10.7	126.0	1,348.2	우회로	양화대교	양화대교	
최초	산 책 로	소 계			1,965.3	5,721.8				
최초		3	1	4.0	34.3	137.2	산책로	숲마당	광장 나-1	
최초		3	2	2.7	184.2	497.3	산책로	광장 나-1	산책로 22	
최초		3	3	3.0	264.8	794.4	산책로	광장 나-11	광장 나-6	
최초		3	4	4.0	105.7	422.8	산책로	광장 나-1	광장 나-7	
최초		3	5	3.0	326.7	980.1	산책로	숲마당	광장 나-7	
최초		3	6	1.8	148.8	267.8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나-6	
최초		3	7	1.8	81.3	146.3	산책로	광장 나-6	광장 나-8	
최초		3	8	6.0	14.5	87.0	산책로	산책로 7	장애인주차장	
최초		3	9	3.0	138.7	416.1	산책로	환경물놀이터	온실	
최초		3	10	1.8	35.7	64.3	산책로	숲마당	광장 나-2	
당초		3	11	1.8	33.9	61.0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나-2	
당초		3	12	1.8	10.9	19.6	산책로	산책로 5	환경놀이마당	
당초		3	13	1.8	23.1	41.6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나-1	
당초		3	14	1.8	51.6	92.9	산책로	광장 나-1	산책로 2	
당초		3	15	1.8	10.9	19.6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5	
당초		3	16	1.8	14.8	26.6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4	
당초		3	17	1.8	27.8	50.0	산책로	산책로 4	광장 나-3	
당초		3	18	1.8	8.1	14.6	산책로	산책로 2	광장 나-11	
당초		3	19	1.8	8.7	15.7	산책로	산책로 2	광장 나-11	
당초	산 책 로	3	20	1.8	8.9	16.0	산책로	산책로 3	광장 나-11	
당초		3	21	1.8	8.4	15.1	산책로	산책로 2	광장 나-11	
당초		3	22	1.8	17.3	31.1	산책로	광장 나-3	산책로 3	
당초		3	23	1.6	77.2	123.5	산책로	산책로 22	녹지	
당초		3	24	1.8	17.3	31.1	산책로	광장 나-8	환경물놀이터	
당초		3	25	3.9	18.4	71.8	산책로	광장 나-8	환경물놀이터	
당초		3	26	5.4	74.9	404.5	산책로	양화대교	양화대교	
당초		3	27	4.0	218.4	873.6	산책로	녹지	소로3-1 (시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71호(1994.08.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강서구고시 제1995-3호(1995.01.16)로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9호(2010.06.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3호(2011.02.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강서구고시 제2012-58호(2012.07.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8호(2012.11.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강서구고시 제2013-87호(2013.08.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2호(2013.10.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를 변경하고자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가.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로 일부구간의 폭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85	40~ 46.5	보조 간선 도로	1,215	광로 3-19 강서구 외발산동 289-12	부천시계 강서구 외발산동 산17-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94-271호 (1994.08.18)	
변경	광로	3	85	40~ 46.5	보조 간선 도로	1,215	광로 3-19 강서구 외발산동 289-12	부천시계 강서구 외발산동 산71-1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폭원확장

다. 관계도면 : 붙임참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대신함)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7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서구 외발산동 276-9 ~ 산71-15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칭 : 남부순환로 ~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44~66m(8차로), 연장 960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78)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변경 토지집계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구 분	합 계			국 · 공 유 지			사 유 지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당 초	변 경	증 · 감	당 초	변 경	증 · 감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합 계	124 / 51,922.0	129 / 52,191.7	5 / 269.7	74 / 41,551.6	124 / 51,922.0	50 / 10,370.4	50 / 10,370.4	5 / 269.7	-45 / -10,100.7	
전	26 / 15,893.4	29 / 16,055.4	3 / 162.0	10 / 14,274.4	26 / 15,893.4	16 / 1,619.0	16 / 1,619.0	3 / 162.0	-13 / -1,457.0	
답	41 / 16,649.0	41 / 16,649.0	0 / 0.0	23 / 12,478.0	41 / 16,649.0	18 / 4,171.0	18 / 4,171.0	0 / 0.0	-18 / -4,171.0	
도 로	9 / 883.0	9 / 883.0	0 / 0.0	9 / 883.0	9 / 883.0	0 / 0.0				
대 지	4 / 839.3	4 / 839.3	0 / 0.0	1 / 80.2	4 / 839.3	3 / 759.1	3 / 759.1	0 / 0.0	-3 / -759.1	
임 야	20 / 14,111.0	21 / 14,125.0	1 / 14.0	14 / 10,993.0	20 / 14,111.0	6 / 3,118.0	6 / 3,118.0	1 / 14.0	-5 / -3,104.0	
구 거	14 / 1,686.0	14 / 1,686.0	0 / 0.0	10 / 1,383.0	14 / 1,686.0	4 / 303.0	4 / 303.0	0 / 0.0	-4 / -303.0	
하 천										
제 방										
유 지										
잡 종지	8 / 1,592.8	8 / 1,592.8	0 / 0.0	7 / 1,460.0	8 / 1,592.8	1 / 132.8	1 / 132.8	0 / 0.0	-1 / -132.8	
철도용지										
과 수원										
창 고	2 / 267.5	3 / 361.2	1 / 93.7	0 / 0.0	2 / 267.5	2 / 267.5	2 / 267.5	1 / 93.7	-1 / -173.8	
공 강										
장										

수용 또는 사용할 변경 토지조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성 명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면적 (㎡)	성 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1	-	426-2		도	120		120		서울특별시							
2	-	276-9		전	8,116		8,116		서울특별시							
3	당초	426	426-4	대	58,100.4	533.4	533.4		정림개발 주식회사	강서구 방화대로 94 (외발산동 426)						
	변경		426-4	대		533.4	533.4		서울특별시							
3-1	당초		426-5	대		2.1	2.1		정림개발 주식회사	강서구 방화대로 94 (외발산동 426)						
	변경		426-5	대		2.1	2.1		서울특별시							
3-2	당초		426-6	대		223.6	223.6		정림개발 주식회사	강서구 방화대로 94 (외발산동 426)						
	변경		426-6	대		223.6	223.6		서울특별시							
4	-	365-4		구	477		477		서울특별시							
5	-	365-1		구	69		69		서울특별시							
6	-	365-2		답	20		20		서울특별시							
7	-	367		답	1		1		서울특별시							
8	당초	368-9		답	23		23		이종문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22-1 (연희동 200-148) 아남빌라 E호						
	변경	368-9		답	23		23		서울특별시							
9	당초	368-14	368-36	답	675	367	367		이종문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22-1 (연희동 200-148) 아남빌라 E호						
	변경		368-36	답		367	367		서울특별시							
10	당초	368-16	368-32	답	976	377	377		김은겸	강서구 동촌로5길 18-27 (화곡동 805-5) 기동			김원섭	강제경매 개시결정 1105호	수협중앙 회	강제경매 개시결정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368-32	답		377	377		서울특별시							
11	-	368-24		답	1,467		1,467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지목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리관계		
12	-	368-25		답	806		806			서울특별시						
13	-	368-26		답	95		95			서울특별시						
14	-	368-27		구	54		54			서울특별시						
15	당초 변경	368-19	368-33	구	204	151	151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368-33	구		151	151			서울특별시						
16	-	368-28		답	1		1			서울특별시						
17	-	369		답	1		1			서울특별시						
18	당초 변경	368-6	368-35	답	303	237	237			조종선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0길 21 (문동 505-12)					
			368-35	답		237	237			서울특별시						
19	-	368-29		답	53		53			서울특별시						
20	-	415-8		도	255		255			국	국토해양부					
21	-	산59-2		임	37		37			서울특별시						
22	-	371-2		전	11		11			서울특별시						
23	당초 변경	산59-1	산59-5	임	1,240	324	324			국	국방부					
			산59-5	임		324	324			서울특별시						
24	-		415-13	잡		10	10			국	기획재정부					
24-1	-		415-14	잡		5	5			국	기획재정부					
25	당초 변경		254-8	잡		17	17			국	국방부					
			254-8	잡		17	17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지목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5-1	당초 변경		254-9	잡		56	56			국 서울특별시	국방부			
26	-	신58-2		임	640		640			서울특별시				
27	-	379-4		잡	1,266		1,266			서울특별시				
28	당초 변경	379-1	379-9	잡	2,437	69	69			국 서울특별시	국방부			
29	-	379-5		전	1,116		1,116			서울특별시				
30	당초 변경	379	379-10	전	445	122	122			김용휘 서울특별시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23번길 73 (송촌동 495-2) 3층동	회덕농업 협동조합	대전 대덕구 중리동 411-4 (송촌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31	-	378-2		구	192		192			서울특별시				
32	당초 변경	379-3	379-11	전	161	100	100			이종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3길 50 (신월동 1022) 별산블라임 101동 602호	계양농업 협동조합	인천 계양구 박촌동 101-4 (병방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33	-	신58-3		임	62		62			서울특별시				
34	-	384-3		답	2,569		2,569			서울특별시				
35	당초 변경	384-4	384-5	답	1,620	263	263			유재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65가길 4 (염창동 265-28) 보람더하임 105동 201호	에스케이 가스주식 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근저당권 지상권
36	-	385-1		전	443		443			서울특별시				
37	당초 변경	385	385-2	전	813	70	70			윤수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5길 32 (방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04동 204호			
38	-	423-10		도	9,766.5		90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성 명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주	소	
39	-	288-23		답	30		30			서울특별시					
40	-	423-12		도	4,965.9		160			강서구					
41	-	288-24		답	166		166			서울특별시					
42	당초 변경	423-13	423-16	잡	1,710.9	132.8	132.8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향동 1370		한국산업 은행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금용4부)	근저당권
43	당초 변경	429	429-2	창	7,280.1	132.8	132.8			서울특별시					
43-1	당초 변경	429-2	429-2	창	222.7	222.7	222.7			주식회사한진	중구 남대문로 63 (남대문로2가)		군포경찰서		압 류
44	-	429-1		창	44.8	44.8	44.8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남대문로2가)		군포경찰서		압 류
45	당초 변경	276-37	276-40	전	75.4	38	38			강서구	중구 남대문로 63 (남대문로2가)				미등기
46	-	276-39		전	47		47			강서구					
47	당초 변경	359-23	359-25	전	2,168	40	40			안향찬 외 1인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39-50 (아미리 1245) 현대성우스타 207동 802호		정성남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2 아이스페이스 908호	공유자
48	-	359-9		답	1	40	40			서울특별시			강서농협	강서구 방화동 829-3 (발산지점)	지상권
49	-	359-2		답	24		24			서울특별시			강서농협	강서구 방화동 829-3 (발산지점)	근저당권
50	당초 변경	359-24	359-26	답	3,870	131	131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향동 1370				
51	-	365-5		답	656	131	131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면적(㎡)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성 명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	주	소		주	소	
52	-		365-6	답		261	261			서울특별시					
53	-	366		답	241		241			서울특별시					
54	당초 변경	366-1	366-2	답	2,662	95	95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366-2	답		95	95								
55	-	367-2		답	977		977			서울특별시					
56	당초 변경	367-1	367-3	답	3,597	257	257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367-3	답		257	257								
57	-		368-30	답		160	160			서울특별시					
58	-	368-23		답	1,591		1,591			서울특별시					
59	-	368-11		답	464		464			서울특별시					
60	-		368-31	답		325	325			서울특별시					
61	-	363-3		답	142		142			서울특별시					
62	당초 변경	363-4	363-5	답	4,483	252	252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363-5	답		252	252								
63	-	368-15		구	155		155			서울특별시					
64	-	368-17		구	119		119			서울특별시					
65	당초 변경	369-1	369-3	답	2,715	453	453			김성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8길 108 (등촌동 691-1) 동성아파트 105동1202호	계양동협	인천 계양구 박촌동 101-4	지상권	
			369-3	답		453	453					노원중앙회	중구 충정로1가75(북천기린공용지점)	근저당권	
66	-	369-2		답	1,575		1,575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면적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7	-		415-12	도		40	40			국	국토해양부			
68	-	415-6		도	92		92			국	국토해양부			
69	-	370-1		답	528		528			서울특별시				
70	-		370-4	답		456	456			서울특별시				
71	-	370-2		구	169		169			서울특별시				
72	당초	372-3	372-5	전	1,713	248	248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변경		372-5	전		248	248			서울특별시				
73	-	372-1		답	23		23			서울특별시				
74	-	372-2		구	70		70			서울특별시				
75	당초	372-4		구	29		29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변경	372-4		구	29		29			서울특별시				
76	-	371-1		전	1,383		1,383			서울특별시				
77	당초	374-1	374-3	전	1,712	122	122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변경		374-3	전		122	122			서울특별시				
78	당초	374-2	374-4	구	86	77	77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변경		374-4	구		77	77			서울특별시				
79	-	신59-3		임	975		975			서울특별시				
80	-		371-3	전		201	201			서울특별시				
81	-	415-4		도	99		99			국	국토해양부			

입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성 명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지목	편입면적 (㎡)	주	소		주	소	
82	-	산59-4		임	129		129			서울특별시					
83	-	420-2		도	9		9			국					
84	-		420-3	도		18	18			국					
85	당초	379-6		전	26		26			김용휘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23번길 73 (송촌동 495-2) 3층동				
	변경	379-6		전	26		26			서울특별시					
86	-		379-12	전		268	268			서울특별시					
87	-	379-7		전	1,847		1,847			서울특별시					
88	당초	378-1	378-8	구	251	46	46			변광주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 36 (별양동 8) 주공아파트 304동 108호				
	변경		378-8	구		46	46			서울특별시					
89	-	378-5		구	37		37			서울특별시					
90	-	378-6		답	2		2			서울특별시					
91	당초	378-9		답	90		65			변광주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 36 (별양동 8) 주공아파트 304동 108호				
	변경	378-9	378-9	답	90	65	65			서울특별시					
92	-	378-7		답	1,046		1,046			서울특별시					
93	당초	378-10		답	603		346			변광주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 36 (별양동 8) 주공아파트 304동 108호	농협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강남대 로지점)		근저당권
	변경	378-10	378-10	답	603	346	346			서울특별시					
94	-	384-1		답	102		102			서울특별시					
95	-	388-5		전	35		35			서울특별시					
96	당초	388-1	388-6	전	3,446	116	116			최경희	강서구 방화대로45길 32 (방화동 875) 동부센터레빌 104동 204호	강서농업 협동조합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9-3 (발산지점)		근저당권
	변경		388-6	전		116	116			서울특별시					

입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97	당초	388-2	388-7	전	225	127	127			최경희	강서구 방화대로45길 32 (방화동 875) 동부세트레빌 104동 204호	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9-3 (방산지점)	근저당권
	변경		388-7	전		127	127			서울특별시				
98	-	388-4		전	863		863			서울특별시				
99	-		386-3	전	401	109	109			서울특별시				
100	-	386-2		전	349		349			서울특별시				
101	-		386-4	전		5	5			서울특별시				
101-1	-		386-5	전		16	16			서울특별시				
102	-	산71-12		임	138		138			서울특별시				
103	당초	산71-10	산71-22	임	327	216	216			주식회사 지엔지비즈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52-1 (작전동 866-32)			
	변경		산71-22	임		216	216			서울특별시				
104	당초	산71-8		임	542		54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청구바이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조곡5길 110 (조곡리 45-12)			
	변경	산71-8		임	542		542			서울특별시				
105	당초	산71-9	산71-23	임	4,444	747	74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청구바이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조곡5길 110 (조곡리 45-12)			
	변경		산71-23	임		747	747			서울특별시				
106	-	산71-7		임	47		47			국	국토해양부			
107	당초	산71-1	산71-18	임	438	190	190			주식회사 지엔지비즈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52-1 (작전동 866-32)			
	변경		산71-18	임		190	190			서울특별시				
108	-	산71-17		임	2,084		2,084			서울특별시				
109	당초	산71-6	산71-19	임	4,738	1,422	1,4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청구바이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조곡5길 110 (조곡리 45-12)			
	변경		산71-19	임		1,422	1,422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성 명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면적면적 (㎡)	지 목		주 소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110	-	산71-14		임	344		344		서울특별시						
111	-	산71-16		임	3,176		3,176		서울특별시						
112	-	산71-20		임	1,773		1,773		국	국토해양부					
113	-	산71-13		임	220		220		국	국토해양부					
114	-	산71-15		임	1,044		1,044		국	국토해양부					
115	당초	산71-2 산71-21		임	1,686	1	1		임성래 외 5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50 (구미동 202) 무지개마을 210동 1501호		송정자	방배 중앙로21길55(방배동)3차현대홀타 운301동101호	공유자	
												송정순	김포시 양도로 46 (풍무동)서해아파트 203동 401호	공유자	
												송규진	철원군 서면 자등로 286 (자등리)	공유자	
												송동진	철원군 김화읍 정양로 382-11 (청양리)	공유자	
												송영숙	송파구 종대로 24 (문정동)해밀아파트211동1304호	공유자	
116	-	412-8	412-14	구	59	41	41		서울특별시	국토해양부					
117	당초 변경	254-1	254-7	잔	41,745	37	37		국	국방부					
118	-	426-3		대	80.2		80.2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탁자
119	신설	429		창	7,012.6		93.7		주식회사하나 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 (대치동, 신안빌딩)					
120	신설	276-37		전	66		66		주식회사 한 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남대문로2가 118)					
121	신설	359-8		전	2,407		22		오원석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83-38 (화곡동)		강서농업 협동조합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127 (방화동) (까치산역지점)	근저당권	
122	신설	359-23		전	2,128		74		김미정 외 1인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10, 102동강서농협 804호 (대방동, 대림아파트)		김동현	서울 강서구 양천로66길 31 (등촌동)	공유자	
												강서농협	강서구 금남화로 127 (방화동) (발산지점)	근저당권	
123	신설	385-3		임	3,387		14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정구 바이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조곡5길 110 (소곡리 45-12)		강서농협	강서구 금남화로 127 (방화동) (발산지점)	지상권	
합 계		단 초 변 경 증·감					51,922.0	0.0							
							52,191.7	0.0							
							269.7	0.0							

지장물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단 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건물	계	동/M2	4 / 289.0	4 / 289.0	0 / 0.0	
	공 장 조립식	동/M2	1 / 84.0	1 / 84.0	0 / 0.0	
	창 고 조립식	동/M2	1 / 103.0	1 / 103.0	0 / 0.0	
	사무실	조립식	1 / 84.0	1 / 84.0	0 / 0.0	
		이동식	1 / 18.0	1 / 18.0	0 / 0.0	
부속건물	계	동/M2	23 / 360.5	23 / 360.5	0 / 0.0	
	가 추	동/M2	3 / 102.9	3 / 102.9	0 / 0.0	
	창 고	동/M2	11 / 112.3	11 / 112.3	0 / 0.0	
	휴 게 실	동/M2	2 / 28.0	2 / 28.0	0 / 0.0	
	식 당	동/M2	1 / 14.0	1 / 14.0	0 / 0.0	
	작 업 장	동/M2	3 / 81.8	3 / 81.8	0 / 0.0	
	원 두 막	동/M2	1 / 12.0	1 / 12.0	0 / 0.0	
	담 장	동/M2	2 / 9.5	2 / 9.5	0 / 0.0	
담장및울타리	계	개소/M2	25 / 4,184.4	25 / 4,184.4	0 / 0.0	
	블 록	개소/M2	1 / 287.0	1 / 287.0	0 / 0.0	
	철재, 함석	개소/M2	11 / 1,710.2	11 / 1,710.2	0 / 0.0	
	철재, 망	개소/M2	1 / 139.4	1 / 139.4	0 / 0.0	
	철 재	개소/M2	1 / 525.6	1 / 525.6	0 / 0.0	
	철재, 보호막	개소/M2	1 / 276.0	1 / 276.0	0 / 0.0	
	헨 스	개소/M2	9 / 1,127.6	9 / 1,127.6	0 / 0.0	
	철 조 망	개소/M2	1 / 118.6	1 / 118.6	0 / 0.0	
대 문	함석 및 철재	식	10	10	0	
수 목	계	주	29,563	29,563	0	
	유 실 수	주	774	774	0	
	관 상 수	주	28,789	28,789	0	
화 초		식	1	1	0	
콘 테 이 너	계	개/M2	61 / 941.8	61 / 941.8	0 / 0.0	
	사무실	개/M2	13 / 256.8	13 / 256.8	0 / 0.0	
	휴게실	개/M2	3 / 55.8	3 / 55.8	0 / 0.0	
	창 고	개/M2	45 / 629.2	45 / 629.2	0 / 0.0	
비 닐 하 우 스		동/M2	6 / 1,377.0	6 / 1,377.0	0 / 0.0	
원 형 탁 자		개	1	1	0	
계 근 대 (저 울)		식	7	7	0	저울 500kg포함

구 분	단 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거 치 대	개소/M2	2 13.2	2 13.2	0 0.0	
적 재 박 스	개	3	3	0	
컨 베 어	식	3	3	0	
세 료 시 설	식	1	1	0	
화장실 및 세면장	식	1	1	0	정화조 포함
비닐하우스철재	식	1	1	0	
음식물쓰레기통	개	2	2	0	
손 수 레	대	1	1	0	
간 판	식	13	13	0	
관 정	개	4	4	0	
상 수 도 관 로	M	28.6	28.6	0	
훈 련 시 설 물	개	9	9	0	
항 아 리	개	60	60	0	
절 구	개	2	2	0	
조 경 석	개	18	18	0	다담이돌 포함
검 은 자 갈	식	1	1	0	15톤트럭 3대분
응 벽	식	1	1	0	
석 축	식	1	1	0	
모 래	M3	265.5	265.5	0	
시 멘 트	포대	900	900	0	
콘크리트 블록	ton	102.5	102.5	0	
파 이 프 자 재	ton	10.0	10.0	0	
사 무 실 집 기	식	7	7	0	
에 어 콘	대	2	2	0	
고 철 분쇄 기	대	1	1	0	
발 전 기	대	2	2	0	
살 수 기	대	5	5	0	
소 각 기	대	1	1	0	
스치로폼분쇄기	대	1	1	0	
스치로폼흡합기	대	1	1	0	
스치로폼인코트기	대	1	1	0	
전선가공기계	대	2	2	0	
전 선 탈 피 기	대	1	1	0	
전기다운도란스	식	1	1	0	
전 기 분 전 반	식	1	1	0	
전기, 통신 등	식	1	1	0	전기, 통신, PC, 주방식기, 냉장고

구 분	단 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유 압 기 계	대	4	4	0	
전 동 대 패 기	대	1	1	0	
원 치	대	3	3	0	
혼 합 믹 서 기	대	3	3	0	
컴 푸 레 샤	대	11	11	0	
양 수 기	대	2	2	0	
용 접 기	대	8	8	0	
프 라 스 마	대	2	2	0	
고 철 류	ton	293.0	293.0	0	
비 철 류	ton	50.0	50.0	0	
캔	ton	96.0	96.0	0	
폐 지	M3	691.0	691.0	0	
프 라 스 틱	M3	312.0	312.0	0	
프라스틱맥주박스	개	1,000	1,000	0	
기 타	식	2	2	0	각종기계 및 모터
공 병 묶 음	ton	2.5	2.5	0	
기 름 탱 크	개	4	4	0	
물 탱 크	개	3	3	0	
드 럼 통	개	45	45	0	
가 스 통	개	1	1	0	
산 스 통	개	19	19	0	
빠 렛 트	개	165	165	0	
스 텐 탱 크	개	3	3	0	
드 릴 기	대	1	1	0	
리 어 카	대	6	6	0	
렉 카	개	90	90	0	
방 음 판	개	2	2	0	
바 닥 철 판	ton	16.0	16.0	0	
농 기 계	식	1	1	0	
농 자 재	식	1	1	0	
개 집	개	2	2	0	
방 법 C C T V	식	3	3	0	
전 선	M	430	430	0	개인소유
전 신 주	개	12	12	0	개인소유
가 로 등	개	3	3	0	개인소유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소(구)면(읍)리(동)	구분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목 년 생	수 량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소	성 명	주 소	소	
1	강서	-	276-9	간 판	철 재		1식	경동물류	강서구 외발산동 369-1					
2	강서	-	276-9	창 고	목재, 목재 수고(H) = 5.0m 직경(R) = 15.0cm	15년생	10.0㎡							
3	강서	-	276-9	가중나무	수고(H) = 5.0m 직경(R) = 15.0cm	15년생	34주	이종문	서대문구 연희동 200-148 아남레지던스D					
		-	"	가중나무	수고(H) = 8.0m 직경(R) = 25.0cm	20년생	35주							
		-	"	가중나무	수고(H) = 10.0m 직경(R) = 35.0cm	30년생	10주							
		-	"	가중나무	수고(H) = 12.0m 직경(R) = 45.0cm	35년생	7주							
		-	"	개 나 리	수고(H) = 1.2m 직경(R) = 1.0cm	7년생	8주							
		-	"	고 로 쇠	수고(H) = 6.0m 직경(R) = 15.0cm	25년생	2주							
		-	"	낙 우 송	수고(H) = 15.0m 직경(R) = 40.0cm	40년생	18주							
		-	"	낙 우 송	수고(H) = 18.0m 직경(R) = 50.0cm	40년생	14주							
		-	"	낙 우 송	수고(H) = 18.0m 직경(R) = 60.0cm	45년생	29주							
		-	"	낙 우 송	수고(H) = 20.0m 직경(R) = 75.0cm	50년생	21주							
		-	"	느티나무	수고(H) = 12.0m 직경(R) = 30.0cm	25년생	2주							
		-	"	느티나무	수고(H) = 15.0m 직경(R) = 60.0cm	30년생	2주							
		-	"	단풍나무	수고(H) = 4.0m 직경(R) = 10.0cm	10년생	10주							
		-	"	단풍나무	수고(H) = 10.0m 직경(R) = 20.0cm	25년생	11주							
		-	"	단풍나무	수고(H) = 15.0m 직경(R) = 40.0cm	35년생	16주							
		-	"	매죽나무	수고(H) = 1.8m 직경(R) = 3.0cm	6년생	20주							

일련 번호	소재지 (구)면(읍)리(동)	구분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276-9	모감주	수고(H) = 8.0m 직경(R) = 13.0cm	25년생	14주							
		-	"	목련	수고(H) = 13.0m 직경(R) = 28.0cm	20년생	10주							
		-	"	목백합	수고(H) = 6.0m 직경(R) = 8.0cm	10년생	2주							
		-	"	버드나무	수고(H) = 11.0m 직경(R) = 30cm	48년생	11주							
		-	"	버드나무	수고(H) = 12.0m 직경(R) = 55.0cm	60년생	9주							
		-	"	섬잣나무	수고(H) = 5.0m 직경(R) = 15.0cm	25년생	1주							
		-	"	소나무	수고(H) = 9.0m 직경(R) = 20.0cm	32년생	3주							
		-	"	소나무	수고(H) = 10.0m 직경(R) = 28.0cm	32년생	2주							
		-	"	왕벚나무	수고(H) = 12.0m 직경(R) = 35cm	40년생	2주							
		-	"	은행나무	수고(H) = 8.0m 직경(R) = 15.0cm	20년생	1주							
		-	"	자귀나무	수고(H) = 8.0m 직경(R) = 35.0cm	45년생	3주							
		-	"	주목나무	수고(H) = 6.0m 직경(R) = 15.0cm	40년생	7주							
		-	"	주목나무	수고(H) = 8.0m 직경(R) = 30.0cm	50년생	1주							
		-	"	철쭉	수고(H) = 2.0m 직경(R) = 2.0cm	22년생	42주							
		-	"	회양목	수고(H) = 1.2m 직경(R) = 1.5cm	18년생	178주							
		-	"	축백나무	수고(H) = 15.0m 직경(R) = 25.0cm	35년생	9주							
		-	"	축백나무	수고(H) = 18.0m 직경(R) = 50.0cm	45년생	13주							
		-	"	칠엽수	수고(H) = 7.0m 직경(R) = 10.0cm	30년생	20주							
		-	"	칠엽수	수고(H) = 8.0m 직경(R) = 20.0cm	35년생	2주							

입찰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276-9	프라타나스	수고(H) = 18.0m 직경(R) = 80.0cm	40년생	3주							
				-	"	회화나무	수고(H) = 10.0m 직경(R) = 10.0cm	25년생	4주							
				-	"	회화나무	수고(H) = 15.0m 직경(R) = 40.0cm	35년생	3주							
				-	"	검은자갈	40mm 이하 (15톤트럭 3대분)		1식							
				-	"	관정(지하수)	관로(PE관 50A) 포함		1식							관로 확대포상
4	강서		외발산	-	276-9	가추	목재, 천막		14.9㎡							
5	강서		외발산	-	388-11,23 363-3	사철나무	모목	3년생	3,496주	이종구	강서구 외발산동 386-22 서울장미					
				-	"	사철나무	모목	5년생	4,846주							
				-	"	사철나무	모목	8년생	650주							
				-	"	사철나무	모목	40년생	1주							
				-	"	줄장미	모목	2년생	1,152주							
				-	"	줄장미	모목	4년생	376주							
				-	"	줄장미	모목	5년생	320주							
				-	"	줄장미	모목	8년생	25주							
				-	"	목단나무	모목	8년생	10주							
				-	"	왕벚나무	모목	10년생	61주							
				-	"	왕벚나무	모목	20년생	162주							
				-	"	좌뽕나무	모목	3년생	972주							
				-	"	좌뽕나무	모목	5년생	650주							

인 원 번호	소재지			구분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목 년 생	수 량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관계	
				-	368-11,23 363-3	좌동나무	묘 목	11년생	399주							
				-	"	향 나 무	묘 목	17년생	8주							
				-	"	향 나 무	묘 목	40년생	9주							
				-	"	옥향나무	묘 목	12년생	59주							
				-	"	단풍나무	묘 목	13년생	40주							
				-	"	단풍나무	묘 목	19년생	51주							
				-	"	공작단풍나무	묘 목	10년생	11주							
				-	"	살구나무	묘 목	8년생	41주							
				-	"	살구나무	묘 목	13년생	61주							
				-	"	석류나무	묘 목	5년생	262주							
				-	"	석류나무	묘 목	12년생	7주							
				-	"	철쭉	묘 목	8년생	113주							
				-	"	철쭉	묘 목	12년생	14주							
				-	"	철쭉	묘 목	30년생	19주							
				-	"	황철쭉	묘 목	8년생	137주							
				-	"	소나무	묘 목	7년생	6주							
				-	"	소나무	묘 목	27년생	10주							
				-	"	감나무	묘 목	4년생	23주							
				-	"	감나무	묘 목	20년생	14주							

인결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368-11,23 363-3	배나무	묘목	9년생	44주							
				-	"	대추나무	묘목	6년생	46주							
				-	"	대추나무	묘목	20년생	18주							
				-	"	노티나무	묘목	40년생	8주							
				-	"	회양목	묘목	6년생	2,709주							
				-	"	회양목	묘목	10년생	67주							
				-	"	앵두나무	묘목	13년생	21주							
				-	"	측백나무	묘목	3년생	4,578주							
				-	"	측백나무	묘목	6년생	421주							
				-	"	측백나무	묘목	10년생	37주							
				-	"	황금측백나무	묘목	7년생	30주							
				-	"	주목나무	묘목	12년생	29주							
				-	"	주목나무	묘목	18년생	19주							
				-	"	미니주목나무	묘목	7년생	29주							
				-	"	무궁화	묘목	12년생	6주							
				-	"	무궁화	묘목	50년생	1주							
				-	"	옻나무	묘목	5년생	25주							
				-	"	목과나무	묘목	12년생	16주							
				-	"	목과나무	묘목	18년생	28주							

인별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구역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성명	
				-	388-11,23 363-3	매실나무	묘목	4년생	13주							
				-	"	잣나무	묘목	11년생	62주							
				-	"	백일홍	묘목	14년생	5주							
				-	"	라일락	묘목	5년생	130주							
				-	"	라일락	묘목	9년생	14주							
				-	"	박태기나무	묘목	11년생	2주							
				-	"	신수유나무	묘목	6년생	60주							
				-	"	신수유나무	묘목	8년생	2주							
				-	"	포도나무	묘목	6년생	29주							
				-	"	복숭아나무	묘목	8년생	1주							
				-	"	자두나무	묘목	9년생	38주							
				-	"	두릅나무	묘목	10년생	42주							
				-	"	무화과	묘목	10년생	4주							
				-	"	은행나무	묘목	15년생	48주							
				-	"	옥자매	묘목	8년생	2주							
				-	"	목련	묘목	15년생	5주							
				-	"	옥매화	묘목	7년생	36주							
				-	"	옥매화	묘목	15년생	3주							
				-	"	등나무	묘목	7년생	11주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368-11,23 363-3	등나무	모목	15년생	1주							
				-	"	대나무	모목	8년생	18주							
				-	"	해당화	모목	7년생	2주							
				-	"	연산홍	모목	5년생	12주							
				-	"	수국	모목	9년생	64주							
				-	"	개나리	모목	2년생	113주							
				-	"	개나리	모목	5년생	21주							
				-	"	기타관상수	모목	10년생	10주							
				-	"	화초			1식							
				-	"	비닐하우스1	철재, 비닐		241.0㎡							
				-	"	비닐하우스2	철재, 비닐		271.0㎡							
				-	"	비닐하우스3	철재, 비닐		324.0㎡							확대보상
				-	"	비닐하우스4	철재, 비닐		345.0㎡							확대보상
				-	"	휴게실	조립식 함석		18.0㎡							
				-	"	원두막	철재, 비닐 루핑		12.0㎡							
				-	"	창고	철재, 비닐 루핑		7.0㎡							
				-	"	담장	목재, 목재		3.2㎡							
				-	"	관정	φ 50mm, L=80.0m		1식							
				-	"	항아리			43개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목 수령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인	
				-	368-11,23 363-3	철구	화강석		1개							
				-	"	조경석	다짐이돌 포함		13개							
6	강서		외발산	-	369-2	담장	함석(H=2.0m)		164.0㎡	김성수	강서구 외발산동 369-1 경동물류					
				-	"	콘테이너	2.4×6.0×H2.5		43개							
				-	"	간판	철재		1식							
7	강서		외발산	-	369-2	공장	조립식 함석		84.0㎡ (128.0㎡)	주성호	강서구 외발산동 369-1 대국수출포장					
8	강서		외발산	-	369-2	가추	철재, 천막		67.0㎡ (89.7㎡)	로젠택배	강서구 외발산동 369-1 로젠주식회사(강서점)					
				-	"	컨베이어	폭원(B) = 56cm		25.0m							
9	강서		외발산	-	371-1 산59-3	사무실	콘테이너		20.0㎡	보령자원 (김국진)	인천 서구 당하동 820-1 태평아파트 102동 1805호					
				-	"	식당	철재, 천막		14.0㎡							
				-	"	작업장	철재, 천막		24.0㎡							
				-	"	창고 1	철재, 함석		5.0㎡							
				-	"	창고 2	철재, 천막		4.0㎡							
				-	"	창고 3	철재, 천막		6.0㎡							
				-	"	창고 4	콘테이너		4.0㎡							
				-	"	거치대	철재		6.0㎡							
				-	"	계근대(저울)	30ton		1식							
				-	"	계근대(저울)	1ton		1식							
				-	"	담장	함석(H=2.2m)		144.3㎡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	371-1 산59-3	대문	합석		1식							
				-	"	적재박스	철재		2개							
				-	"	간판	철재		4식							
				-	"	버드나무	수고(H) 15.0m 직경(R) 50cm	50년생	2주							
				-	"	사무실집기			1식							
				-	"	유압기계			3대							
				-	"	컴퓨터사	대:3대, 중:3대, 소:2대		8대							
				-	"	살수기			5대							
				-	"	원치			3대							
				-	"	드릴기			1대							
				-	"	용접기	대:2대, 소:3대		5대							
				-	"	전신기공기계			1대							
				-	"	전동대패기			1대							
				-	"	프리스마			2대							
				-	"	발전기	대:1대, 소:1대		2대							
				-	"	기타	각종기계 및 모타		1식							
				-	"	고철류 I			120.0ton							
				-	"	고철류 II			30.0ton							
				-	"	폐지			190.0m3							

인별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371-1 산59-3	비철			50.0ton							
				-	"	산소통			11개							
				-	"	빠렛트			50개							
				-	"	드럼통			45개							
				-	"	가스통			15개							
				-	"	물탱크			3개							
				-	"	기름탱크			4개							
				-	"	스텐탱크			3개							
				-	"	바닥출판			15.0ton							
				-	"	파이프자재			10.0ton							
				-	"	방범 CCTV	4조		1식							
10	강서	외발산		-	371-1	사무실	콘테이너		14.0㎡	정재선	강서구 외발산동 371-1 선우비철					
				-	"	휴게실	조림식 함석		10.0㎡							
				-	"	작업장	철재, 함석		34.8㎡							
				-	"	창고	철재, 함석		8.9㎡							
				-	"	계근대(저울)	30ton		1식							
				-	"	담장	함석(H=2.7m)		101.8㎡							
				-	"	대문	함석		1식							
				-	"	간판	철재		3식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강서	외발산	외발산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371-1	사무실집기			1식							
				-	"	유압기계			1대							
				-	"	전선가공기계			1대							
				-	"	저울	500kg		1식							
				-	"	컴퓨터사			1대							
				-	"	고철류			23.0ton							
				-	"	산소통			5개							
11	강서	외발산	외발산	-	371-1 산59-3	사무실	콘테이너		13.0㎡	대웅자원 (배일환)	인천 남구 옹현동 456-320 보은빌라 2동 202호					
				-	"	휴게실	콘테이너		18.0㎡							
				-	"	작업장	철재천막, 함석		23.0㎡							
				-	"	창고	철재천막, 목재		18.6㎡							
				-	"	가추	철재, 천막		21.0㎡							
				-	"	계근대(저울)	50ton		1식							
				-	"	담장	함석(H=2.4m)		78.2㎡							
				-	"	적재박스	철재		1개							
				-	"	버드나무	수고(H) 16.0m 직경(R) 55cm	50년생	1주							
				-	"	사무실집기			1식							
				-	"	계근대(저울)	2ton		1식							
				-	"	스치로폼분쇄기			1대							

입 결 번호	소재지			구분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목 번호	수 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371-1 산59-3	스프링롤합기			1대							
				-	"	스치로폼 인코트기			1대							
				-	"	전신탈피기			1대							
				-	"	콜푸레샤			2대							
				-	"	양수기			2대							
				-	"	고철분쇄기			1대							
				-	"	소각기			1대							
				-	"	용접기			2대							
				-	"	고철류			120.0ton							
				-	"	폐지			501.0m3							
				-	"	캔			96.0ton							
				-	"	프라스틱			312.0m3							
				-	"	프라스틱 매주박스			1,000개							
				-	"	빠렛트			115개							
				-	"	공병복음			2.5ton							
				-	"	산소통			3개							
				-	"	전기다온도란스	30k		1식							
				-	"	방음판	2.55		2개							
				-	"	컨베어	5조		1식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371-1 산59-3	리어카			6대							
				-	"	바닥철판			1.0ton							
				-	"	기타	그라인더,카터기,절단기 ,각종연장드릴,실린더		1식							
				-	"	방범 CCTV	4조		1식							
12	강서		외발산	-	산59-3, 415-4	사무실	콘테이너		19.0㎡	우신산업 (김영숙)	금천구 가산동 647-44 우정연립 나동 309호					
				-	"	창고	철재, 천막		7.0㎡							
				-	"	창고	콘테이너		6.0㎡							
				-	"	사무실집기			1식							
				-	"	웅집기			1대							
				-	"	개집			1개							
				-	379-5	혼합믹서기	콘크리트		3대							
				-	"	컨베이어	6대		1식							
				-	"	렉카			90개							
				-	"	콘크리트 블록			32.38ton							
				-	"	모래			229.5㎡							
13	강서		외발산	-	379-4 산58-2	담장	블록(H=2.42m)		287.0㎡	국방부						
				-	"	철조망	원형(H=1.0m)		118.6㎡							
				-	"	환전시설물	목재외 시설		9개							
				-	"	프라타나스	수고(H) 13.0m 직경(R) 22cm	20년생	18주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생년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379-4 산58-2	아카시아	수고(H) 13.0m 직경(R) 23cm	27년생	13주							
14	강서	외발산	-	379-5	담장	철재, 함석(H=4.8m)		278.9㎡	김영숙	강서구 외발산동 415-4 우신산업	최남기	미포구 성산동 250-38 청구하이츠빌라 302호			2분의1 공용소유 확대보상
			-	"	담장	철재, 망(H=2.4m)		139.4㎡							확대보상
15	강서	외발산	-	379-7	거치대	철재		7.2㎡	이종열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22 벽산블루밍 101동 602호					
16	강서	외발산	-	384-3	사무실	콘테이너		18.0㎡	송인태	서울 마포구 망원동 414-4 들국화타운 202호					
			-	"	담장	철재, 함석(H=2.4m)		210.2㎡							확대보상
			-	"	담장	철재(H=6.0m)		525.6㎡							확대보상
			-	"	사무실집기			1식							
			-	"	콘크리트 블록			41.83ton							
17	강서	외발산	-	384-3	대나무분재	수고(H) 2.8m 직경(R) 8cm	10년생	127주	박병천	강서구 등촌동 684-2 우리벤처타운6층 삼한건설(주)					
			-	"	관리사무실	이동식간물(철재)		18.0㎡							
			-	"	비닐하우스	철재, 비닐		85.0㎡							
			-	"	농기계			1식							
18	강서	외발산	-	388-2	사무실	콘테이너		28.8㎡	양성희	강서구 외발산동 388-2 서울환경					
			-	388-5	창고	목재, 천막		5.5㎡							
			-	385-1	간판	철재		1식							
			-	"	계근대(저울)	50ton		1식							
			-	388-4	방범 CCTV	감시카메라 50만화소 4조		1식							
			-	"	전기분전반	외부전기메인분전함		1식							

일련 번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목 년 생	수 량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군(구)	면(읍)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	388-2	전기, 통신 등	전기, 통신, PC, 주방식기, 냉장고, 등		1식							
				-	"	에 어 콘			2대							
				-	"	사무실집기	책상, 캐비닛, 서류철 등		1식							
19	강서		외발산	-	388-4	농 자 재			1식	최경희	강서구 방화동 875 동부센트레빌 104동 204호					
20	강서		외발산	-	산71-17	사무실 1	콘테이너		18.0㎡	김소영 외 3인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26 성동 마을엘지빌리지3차 309동 501호					
				-	"	사무실 2	콘테이너		18.0㎡							
				-	"	사무실 3	콘테이너		27.0㎡							
21	강서		외발산	-	산71-16	향 나 무	수고(H) 3.0m 직경(R) 15cm	35년생	8주	김소영 외 3인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26 성동 마을엘지빌리지3차 309동 501호					
				-	"	사철나무	수고(H) 2.5m 직경(R) 7cm	25년생	8주							
				-	"	잣 나 무	수고(H) 25.0m 직경(R) 4cm	8년생	6주							
				-	"	무 공 화	수고(H) 3.0m 직경(R) 10cm	25년생	1주							
				-	산71-15	울 타 리	헬스(H=1.5m)		138.8㎡							확대보상
				-	산71-16	원형탁자	콘크리트(R=1.05m)		1식							
				-	"	대 문	철 재		1식							
				-	"	리키다소나무	수고(H) 15.0m 직경(R) 23cm	40년생	62주							
				-	"	상수리나무	수고(H) 15.0m 직경(R) 25cm	35년생	60주							
22	강서		외발산	-	379-5	사 무 실	콘테이너		18.0㎡	신흥골재						
				-	"	사무실집기			1식							
				-	"	시 멘 트	40kg		900포대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3	강서	외발산	-	산59-2 371-1	전신주			4개	김영숙	강서구 외발산동 415-4 우신산업				
			-	"	전선			200m						
24	강서	외발산	-	378-5,378-2 384-3,385-1	전신주			8개	송인태	서울 마포구 망원동 414-4 들국화타운 202호				
			-	"	전선			230m						
25	서울	강서 외발산	-	426-2	대문	철재		1식	메이필드 호텔	강서구 방화대로 94 (외발산동 426)				
26	서울	강서 외발산	-	423-12	소나무	수고(H) = 6.0m 직경(R) = 9.0cm	20년생	15주	강서구					
			-	"	느티나무	수고(H) = 8.0m 직경(R) = 25.0cm	30년생	2주						
			-	"	호두나무	수고(H) = 7.0m 직경(R) = 12.0cm	20년생	1주						
27	서울	강서 외발산	-	429-2	담장	웁스(H=1.8m)		288.0㎡	한진택배	중구 남대문로 63 (남대문로2가 118)				
			-	"	가로등			2개						
			-	"	옹벽	H=1.0m, L=80.0m		1식						
			-	"	측백나무	수고(H) = 3.5m 직경(R) = 4.0cm	15년생	98주						
			-	"	측백나무	수고(H) = 1.0m 직경(R) = 1.2cm	5년생	2주						
			-	"	회양목	수고(H) = 0.5m 직경(R) = 0.5cm	8년생	12주						
			-	"	꽃사과나무	수고(H) = 4.0m 직경(R) = 5.0cm	8년생	1주						
			-	"	목련	수고(H) = 3.0m 직경(R) = 4.0cm	8년생	2주						
			-	"	은행나무	수고(H) = 5.0m 직경(R) = 8.0cm	13년생	2주						
			-	"	자나무	수고(H) = 5.0m 직경(R) = 4.0cm	13년생	14주						
			-	"	장미	수고(H) = 2.0cm 직경(R) = 2.0cm	13년생	14주						

일련 번호	소재지 구(군)면(읍)리(동)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429-2	관상수	수고(H) = 3.5m 직경(R) = 5.0cm	8년생	14주							
		-	"	기타관상수	수고(H) = 2.5m 직경(R) = 2.5cm	15년생	2주							
28	서울 강서 외발산	-	426-4	낙우송	수고(H) = 18.0m 직경(R) = 70.0cm	50년생	1주	정림개발 주식회사	강서구 방화대로 94 (외발산동 426)					
		-	"	낙우송	수고(H) = 18.0m 직경(R) = 47.0cm	40년생	9주							
		-	"	낙우송	수고(H) = 18.0m 직경(R) = 35.0cm	35년생	6주							
		-	"	축백나무	수고(H) = 15.0m 직경(R) = 28.0cm	45년생	1주							
29	서울 강서 외발산	-	368-36 426-5	담장	웁스(H=1.8m)		156.8㎡	정림개발 주식회사	강서구 방화대로 94 (외발산동 426)					
		-	"	상수도관로	PE관 50A		48.6m							
		-	"	낙우송	수고(H) = 13.0m 직경(R) = 35.0cm	35년생	2주							
		-	"	낙우송	수고(H) = 10.0m 직경(R) = 27.0cm	30년생	1주							
		-	"	버드나무	수고(H) = 4.0m 직경(R) = 2.8cm	10년생	2주							
		-	"	무궁화	수고(H) = 2.8m 직경(R) = 3.5cm	10년생	60주							
		-	"	쭉레꽃	수고(H) = 2.0m 직경(R) = 1.5cm	12년생	4주							
		-	"	기타관상수	수고(H) = 2.0m 직경(R) = 2.8cm	7년생	5주							
30	서울 강서 외발산	-	426-6 426-3	담장	웁스(H=1.8m)		197.8㎡	정림개발 주식회사	강서구 방화대로 94 (외발산동 426)					
		-	"	석축	돌(L=98.7m)		1식							
		-	"	대문	철제		1식							
		-	"	가로등			1개							
		-	"	느티나무	수고(H) = 12.0m 직경(R) = 32.0cm	40년생	1주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426-6 426-3	잣 나무	수고(H) = 8.0m 직경(R) = 20.0cm	25년생	1주							
				-	"	낙 우 송	수고(H) = 18.0m 직경(R) = 35.0cm	35년생	3주							
				-	"	향 나 무	수고(H) = 5.0m 직경(R) = 20.0cm	40년생	3주							
				-	"	측백나무	수고(H) = 10.0m 직경(R) = 25.0cm	35년생	8주							
				-	"	단풍나무	수고(H) = 3.5m 직경(R) = 15.0cm	20년생	7주							
				-	"	주목나무	수고(H) = 2.5m 직경(R) = 10.0cm	20년생	1주							
				-	"	철쭉	수고(H) = 1.2m 직경(R) = 1.5cm	20년생	3주							
				-	"	찔레꽃	수고(H) = 2.0m 직경(R) = 1.5cm	12년생	39주							
				-	"	개나리	수고(H) = 1.8m 직경(R) = 1.0cm	10년생	20주							
				-	"	기타관상수	수고(H) = 3.5m 직경(R) = 15.0cm	20년생	5주							
31	서울	강서	외발산	-	386-30, 31 363-5	사철나무	묘목	4년생	3,000주	이풍구	강서구 외발산동 386-22 서울장미					
				-	"	사철나무	묘목	42년생	1주							
				-	"	줄장미	묘목	4년생	568주							
				-	"	줄장미	묘목	5년생	467주							
				-	"	줄장미사계장	묘목	8년생	357주							
				-	"	왕벚나무	묘목	32년생	4주							
				-	"	옥향나무	묘목	14년생	45주							
				-	"	철쭉	묘목	35년생	19주							
				-	"	황철쭉	묘목	9년생	4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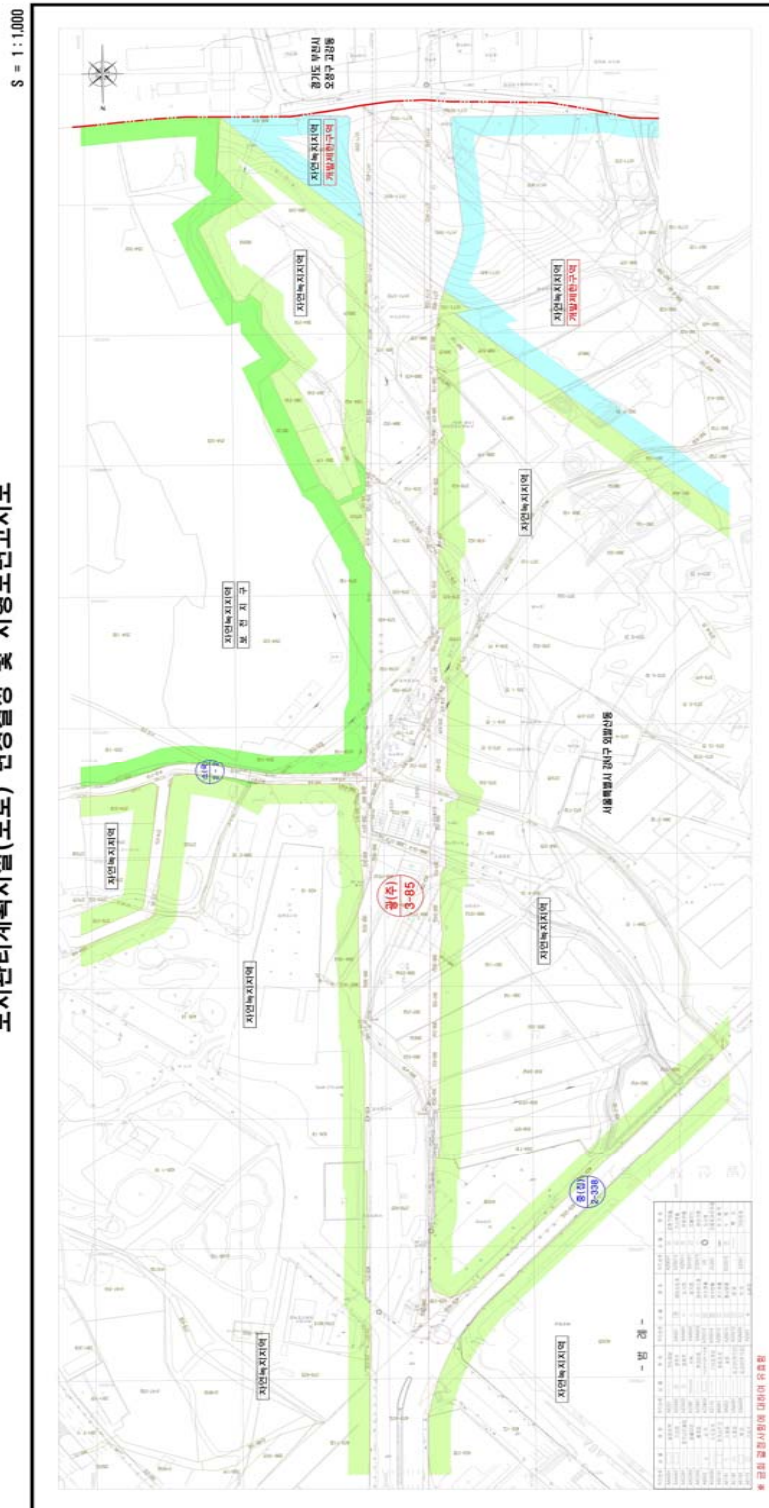
인별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구)	면(읍)	리(동)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	386-30, 31 363-5	실구나무	모 목	12년생	14주							
				-	"	측백나무	모 목	5년생	350주							
				-	"	은행나무	모 목	10년생	20주							
				-	"	대추나무	모 목	11년생	12주							
				-	"	대추나무	모 목	23년생	4주							
				-	"	매실나무	모 목	4년생	7주							
				-	"	박태기나무	모 목	12년생	2주							
				-	"	옥매화	모 목	12년생	10주							
				-	"	라일락	모 목	11년생	40주							
				-	"	무궁화	모 목	14년생	1주							
				-	"	목단	모 목	14년생	7주							
				-	"	감나무	모 목	12년생	4주							
				-	"	해당화	모 목	16년생	42주							
				-	"	공작단풍나무	모 목	14년생	22주							
				-	"	공작단풍나무	모 목	42년생	4주							
				-	"	배나무	모 목	9년생	5주							
				-	"	목주영	모 목	18년생	10주							
				-	"	개나리	모 목	5년생	7주							
				-	"	소나무	모 목	10년생	120주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번호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구(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386-30, 31 363-5	개 집			1개							
			-	"	항아리			17개							
			-	"	절 구	화강석		1개							
			-	"	조경석	다듬이돌 포함		5개							
32	서울	강서	-	369-3	사무실	조립식(2층건물)		84.0㎡	김성수	강서구 외발산동 369-1 경동물류	경동건설 산업㈜	강서구 외발산동 369-2	세입자		보장대상 있음
			-	"	창고	조립식(2층건물)		103.0㎡ (416.0㎡)				강서구 외발산동 369-2	세입자		보장대상 있음
			-	"	담장	철재, 함석(H=2.0m)		49.8㎡				로전택배	강서구 외발산동 369-2	세입자	보장대상 있음
			-	"	관정	콘크리트 2㎡포함 (모터펌프)		1식				한남상사	강서구 외발산동 369-2	세입자	보장대상 있음
33	서울	강서	-	378-8	콘크리트 블록			28.27ton	장재환	강서구 외발산동 371-1 신흥골재					
			-	"	모래			36.0㎡							
34	서울	강서	-	384-5	휴게실	콘테이너		9.0㎡	유제민	강서구 공항대로65가길 4 (영창동 265-28) 보람더하임 105동201호					
			-	"	창고	목재, 목재천막		34.0㎡							
35	서울	강서	-	388-7	휴게실	콘테이너		28.8㎡	양성희	강서구 외발산동 388-2 서늘환경					
			-	388-6 388-7	담장	철재, 함석(H=2.4m)		138.0㎡							
			-	"	담장	철재, 보호막 (H=4.8m)		276.0㎡							
			-	388-7	세륜시설	철근콘크리트 (저수조형식)		1식							
			-	388-5	관정	φ50mm, H=10.0m 모터펌프		1식							
			-	388-7	화장실 및 세면장	정화조포함		1식							
36	서울	강서	-	385-2	비닐하우스	철재, 비닐		111.0㎡	윤수년	강서구 방화대로45길 32 (방화동 875) 동부센트레빌 104동 204호					

일련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구	면(읍)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울타리	웁스(H=2.0m)		71.0㎡							
				-	"	대문	철재		1식							
37	서울	강서	외발산	-	산71-18	사무실 1	콘테이너		18.0㎡	주식회사 지앤지비즈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52-1 (작전동 866-32)					
				-	산71-18	사무실 2	콘테이너		18.0㎡							
				-	"	사무실 3	콘테이너		27.0㎡							
				-	"	울타리	철재, 함석(H=2.4m)		63.6㎡							
				-	"	울타리	웁스(H=1.5m)		30.8㎡							
				-	"	대문	철재		1식							
38	서울	강서	외발산	-	산71-22	울타리	철재, 함석(H=2.4m)		158.6㎡	주식회사 지앤지비즈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52-1 (작전동 866-32)					
				-	"	대문	철재		1식							
39	서울	강서	외발산	-	산71-19	울타리	웁스(H=1.8m)		176.4㎡	농업회사법 인 주식회사 청구바이오	황성군 황성읍 한우로조곡5길 110 (조곡리 45-12)					
				-	"	대문	철재		1식							
				-	"	잔나무	수고(H) = 1.0m 직경(R) = 1.8cm	6년생	70주							
				-	"	잔나무	수고(H) = 1.5m 직경(R) = 3.0cm	6년생	30주							
				-	"	벗나무	수고(H) = 13.0m 직경(R) = 23.0cm	40년생	1주							
				-	산71-19	리키다소나무	수고(H) 13.0m 직경(R) 23.0cm	40년생	32주							
				-	"	상수리나무	수고(H) 15.0m 직경(R) 22.0cm	35년생	2주							
40	서울	강서	외발산	-	산71-8 산71-23	울타리	철재, 함석(H=2.4m)		322.8㎡	농업회사법 인 주식회사 청구바이오	황성군 황성읍 한우로조곡5길 110 (조곡리 45-12)					
				-	"	울타리	웁스(H=1.5m)		59.0㎡							

일련 번호	소재지 (구)면(읍)리(동)	구분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목 년생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물타리	헬스(H=1.8m)		9.0㎡							
		-	"	대문	철재		1식							
		-	"	항나무	수고(H) = 2.5m 직경(R) = 12.0cm	38년생	12주							
		-	"	사철나무	수고(H) 2.0m 직경(R) 6.0cm	35년생	5주							
		-	"	잣나무	수고(H) = 1.8m 직경(R) = 2.7cm	10년생	30주							
		-	"	주목나무	수고(H) = 0.7m 직경(R) = 0.8cm	5년생	20주							
		-	"	주목나무	수고(H) = 1.0m 직경(R) = 1.2cm	7년생	23주							
		-	"	관상수	수고(H) = 0.8m 직경(R) = 0.8cm	4년생	41주							
41	서울 강서 외발산	-	산71-20	간판	철재		1식	신승근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1-51 (주)아경물산					
42	서울 강서 외발산	-	산71-20	간판	철재		1식	양천						
43	서울 강서 외발산	-	산71-20	간판	철재		1식	청우비철						
44	서울 강서 외발산	-	산59-1	창고	철재, 천막		6.3㎡							
		-	"	담장	철재, 천막		6.3㎡							
		-	"	비닐하우스철재			1식							
		-	"	음식물쓰레기통			2개							
		-	"	손수레			1대							
		-	"	항나무	수고(H) 2.0m 직경(R) 15cm		1주							
		-	"	항나무	수고(H) 5.0m 직경(R) 25cm		1주							
		-	"	주목나무	수고(H) 1.0m 직경(R) 3cm		1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5호

도시관리계획(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1호(2008.5.22.) 및 중구고시 제2014-95(2014.11.20)호로 변경 결정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남학동 13-2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5.7.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남학동 13-2번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 5가 일대	93,575	-	93,575	서고 제1994-189호 (1994. 6. 7)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 가) 불허용도 (변경없음)
- 나) 권장용도 (변경없음)
- 다) 지정용도 (신설)

위 치	구분	지정용도주 (전층)		비 고
		기정	변경	
남학동 13-2	①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주)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 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공용시설 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지정용도	• 지정용도 신설	•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합목적성을 위하여 지정용도 신설	

2) 건축물의 개발밀도

- 가) 건폐율 계획 (변경없음)
- 나)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계획

구 분	적용지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200%이하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50%이하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600%이하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200%이하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50%이하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600%이하		
	남학동 13-2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50%이하	830%이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600%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4조 적용.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 경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기준(정량적기준)

용도 지역	특별법 용적률 (A)	허용 용적률 (B)	인센티브 용적률 (C=A-B)	인센티브 확보 용적률 (D=Cx계수)	계 수 적 용					건축가능 용적률 (B+D)
					계수 (axbxcxd)	상대 정화 구역 (a)	인접지 주거 비율 (b)	공개 공지 면적 (c)	객실 비율 (d)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020.3%	502.1%	518.2%	476.8%	0.92	X	13.08%	법정면적 25%이상 추가확보	76%	978.9%
						1.0	1.0	1.0	0.92	

-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구분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A)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운영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B)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기준용적률+(A)+(B)]	용적률 적용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416.1%	502.1%	86%	476.8%	416.1%+86%+476.8% = 978.9%	830%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다) 높이계획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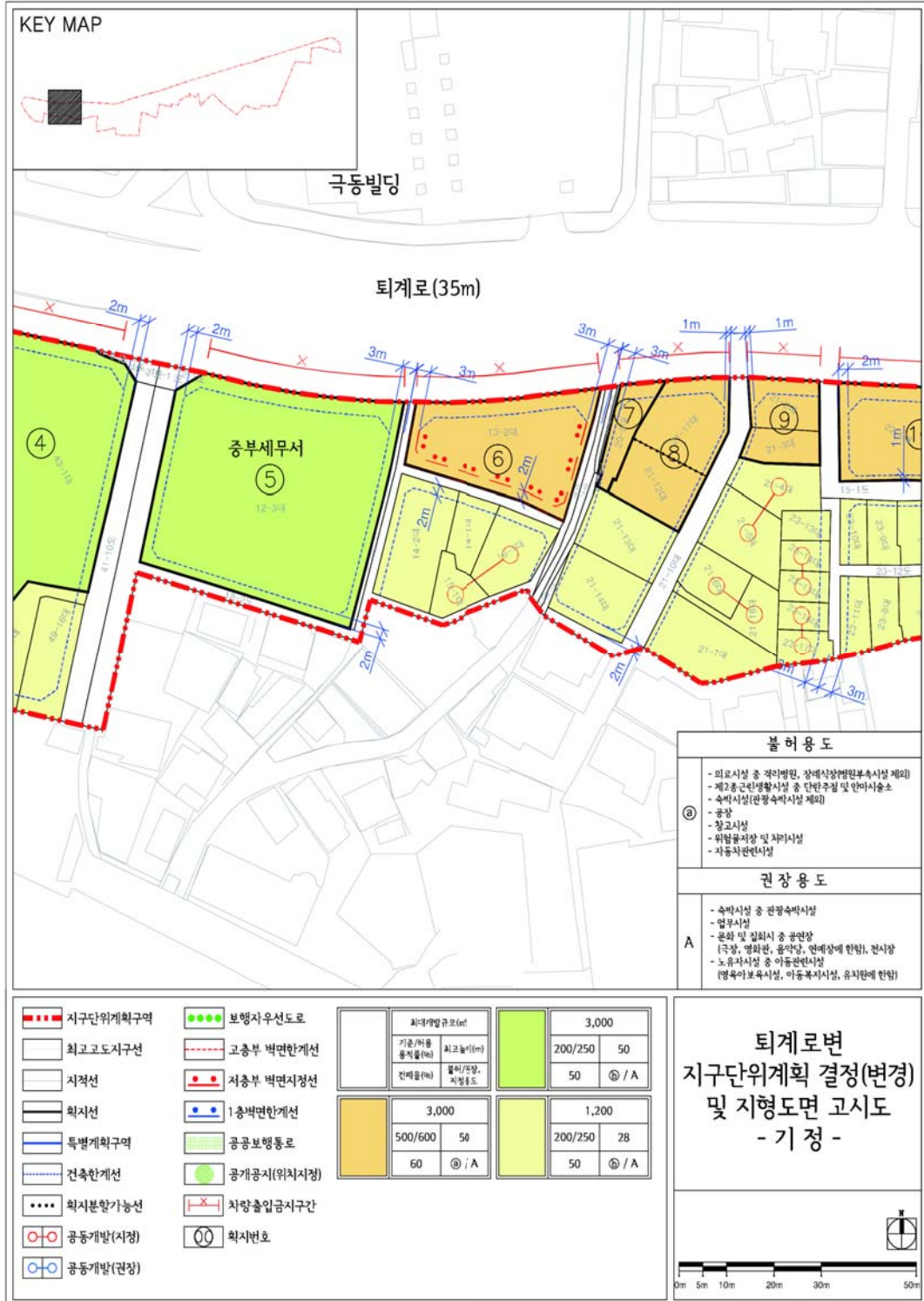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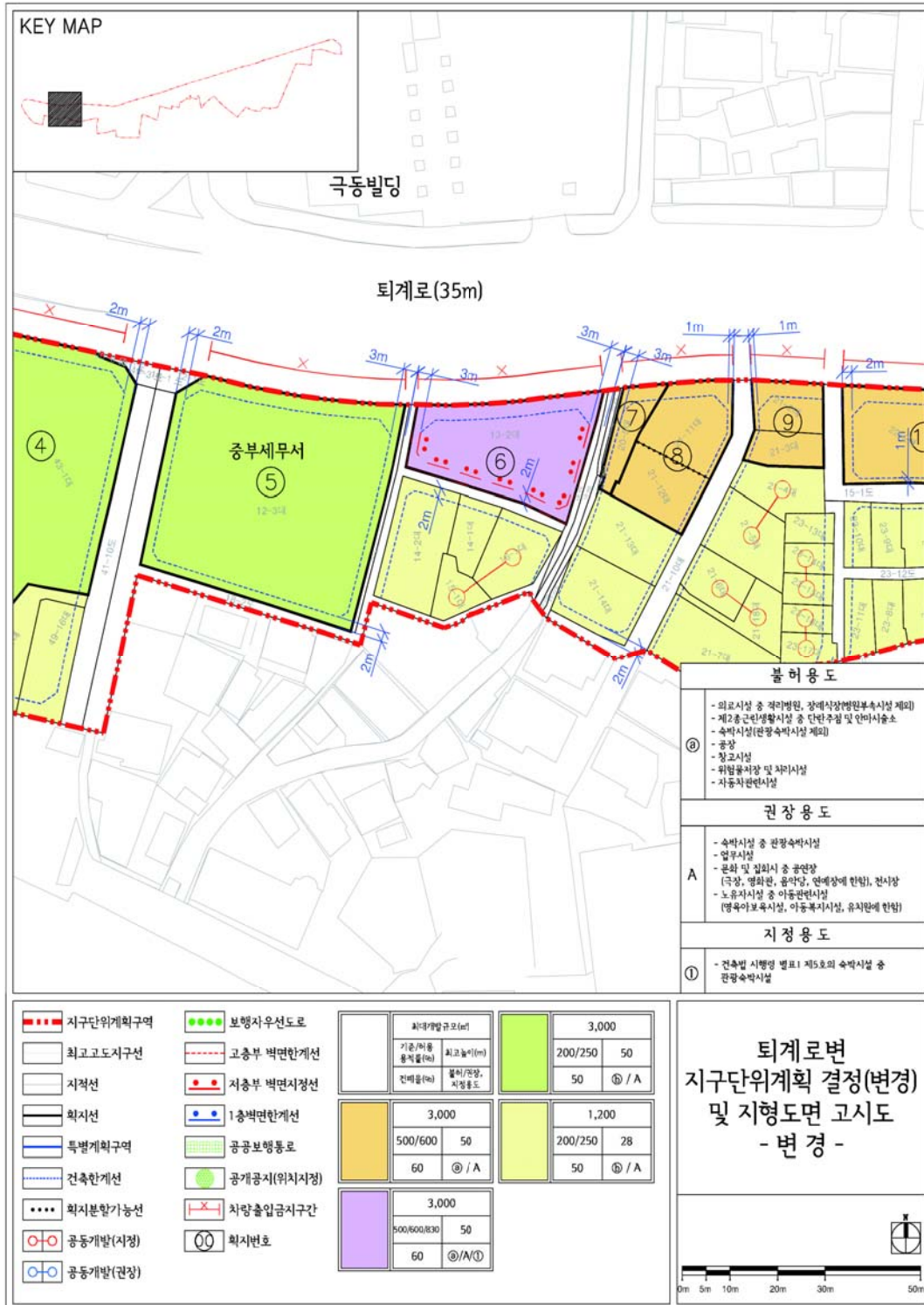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열람장소 : 민원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2),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86)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호(2009.02.12)로 결정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50호(2012.06.07)로 결정된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5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5.06.1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잠실광역중심 제2지구·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의 도시위상, 잠실관광특구 지정 등 변화된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에 대응하는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기정			변경		비고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 분리(잠실·방이지역) -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 편입 - 잠실관광특구 및 방이맞골 주변 신규 편입	
위치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주변	위치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면적	858,791㎡			
면적	1,121,878㎡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 분리(신천지역) - 잠실근린공원 일원 신규 편입	
		위치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면적	367,687㎡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 잠실관광특구역 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편입	
위치	가락동, 송파대로 주변		위치	가락동, 송파대로 주변		
면적	282,090㎡		면적	198,442㎡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총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1,121,878㎡)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858,791㎡) ：구역분리 및 편입 － 올림픽로지구 일부 분리 : 증) 766,935㎡ － 송파대로지구 일부 편입 : 증) 83,648㎡ － 방이맛골 주변 신규 편입 : 증) 8,208㎡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367,687㎡) ：구역분리 － 올림픽로지구 일부 분리 : 증) 354,943㎡ － 잠실근린공원 일원 편입 : 증) 12,744㎡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198,442㎡) ：구역제척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로 편입 : 감) 83,648㎡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간적으로 분리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분할 관리(잠실·방이지역) － 잠실관광특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부분 편입 － 잠실관광특구 통합적 관리와 방이맛골의 일체적 정비를 위한 신규 편입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간적으로 분리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분할 관리(신천지역) －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잠실본동주민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규 편입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잠실관광특구 경계 일대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로 편입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282,090㎡)		

III.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58,791	—	858,791	100.0	
주거지역	소계	289,709	—	289,709	33.7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	—	146	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97	—	1,597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923	—	102,923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8,047	—	128,047	14.9	
	준주거지역	56,996	—	56,996	6.6	
상업지역	소계	569,082	—	569,082	66.3	
	일반상업지역	569,082	—	569,082	66.3	

■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연번	위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상향전	상향후		
1	방이동 62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876	

*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개발규모가 1,500㎡이상 개발하는 대지에 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올림픽로)	중심지 미관지구	잠실지구내	260,148.3	집단	-	서고164호 (' 82.4.22)	
기정	③	미관지구 (올림픽로)	중심지 미관지구	방이동 431블럭 ~ 신천동 교통회관	19,680 (10,460)	820 (820)	양측12m (편측12m)	서고121호 (' 85.2.26)	
기정	⑤	미관지구 (백제고분로)	중심지 미관지구	석촌동 286-9 ~ 방이동 51-11	32,400 (1,692)	1,350 (310)	양측12m (편측12m)	서고172호 (' 85.2.26)	
기정	⑥	미관지구 (석촌호수길)	중심지 미관지구	신천동 교통회관 ~ 잠실 1134블럭	69,490 (21,150)	2,900 (1,740)	양측12m (편측12m)	서고172호 (' 85.2.26)	
기정	⑦	미관지구 (송파대로)	일반 미관지구	석촌동~장지동	110,400 (814)	4,600 (47)	양측12m (양측12m)	서고46호 (' 96.3.6)	
기정	⑧	미관지구 (삼학사길)	일반 미관지구	잠실지구내 (삼전동130-5~석촌동220)	36,000 (1,339)	1,000 (74)	양측18m	서고164호 (82.4.22)	

* 면적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1	15,156	229,530	22	7,223	152,316	-	-	-	39	7,933	77,214
광로	3	2,855	109,512	3	2,855	109,512	-	-	-	-	-	-
대로	7	4,137	58,919	4	1,220	6,776	-	-	-	3	2,917	52,144
중로	4	1,517	22,617	4	1,517	22,617	-	-	-	-	-	-
소로	47	6,647	38,481	11	1,631	13,411	-	-	-	36	5,016	25,070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지하도로 제외)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20	50 (25)	주간선	7,780 (1,900)	서초동 광로21 (잠실동 40)	송파동	일반 도로	-	건고324호 (' 74.9.24)	올림픽로
기정	광로	1	23	70 (35)	보조 간선	2,500 (255)	방이동	오금동 대로3-69	일반 도로	-	건고198호 (' 71.4.7)	위례성길
기정	광로	1	29	50 (25~50)	주간선	7,300 (700)	가락동 잠실대교남단 (잠실동 7-30)	장지동 596-1 (석촌동 183-3)	일반 도로	-	건고198호 (' 71.4.7)	송파대로
기정	대로	1	32	35 (17.5)	보조 간선	4,050 (788)	송파동 광20	방이동 대2-33 (송파동 59-11)	일반 도로	-	건고331호 (' 81.8.29)	오금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3	35 (17.5)	보조 간선	3,900 (185)	잠실동 대1-22 (방이동 51-5)	송파동 광1-23	일반 도로	-	건고64호 (' 78.3.29)	백제교분로
기정	대로	1	34	35 (17.5)	보조 간선	1,400 (161)	잠실동 광로20	삼전동 광로19 (대3-106)	일반 도로	-	건고324호 (' 74.9.24)	삼전로
기정	대로	1	105	25	보조 간선	1,512 (86)	삼전동광19 (석촌동1-7)	송파동대3-106 (석촌동1)	일반 도로	-	건고125호 (' 74.12.6)	삼학사길
기정	대로	3	106	25 (12.5)	보조 간선	1,260	잠실동 대1-34	송파동 대1-32	일반 도로	-	건고125호 (' 74.12.6)	잠실길
기정	대로	3	107	25 (12.5)	보조 간선	2,910.5 (1,300)	송파동 대1-32	신천동 중2-123 (삼전동 130)	일반 도로	-	건고324호 (' 74.9.24)	석촌 호수길
기정	대로	3	109	25 (12.5)	보조 간선	600 (357)	송파동 중2-123 (신천동 14)	송파동 광20	일반 도로	-	건고8호 (' 76.1.21)	
기정	중로	1	152	20	국지 도로	640 (270)	잠실동 중2-123 (신천동 10)	신천동11-1	일반 도로	-	서고93-183 (' 93.6.17)	
기정	중로	1	181	20 (10)	국지 도로	1,440 (642)	신천동 광1-29	풍납동 광2-34 (신천동11-8)	일반 도로	-	서고85호 (' 78.3.9)	
기정	중로	1	247	20	국지 도로	485	강동구 신천동 7-11	강동구 신천동 7-12	일반 도로	-	서고526호 (' 82.12.17)	
기정	중로	1	248	20	국지 도로	120	강동구 신천동 7-21	강동구 신천동 7-19	일반 도로	-	서고526호 (' 82.12.17)	
기정	소로	1	7	10 (5)	국지 도로	707	방이동 22-5	방이동 5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1	8	10 (5)	국지 도로	352	방이동 66-4	방이동 5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1	9	10	국지 도로	352	방이동 66-4	방이동 5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1	9	10	국지 도로	70	신천동 7-23	신천동 7-2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2	6	국지 도로	253	방이동 24-4	방이동 24-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3	6	국지 도로	253	방이동 28-3	방이동 34-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4	6	국지 도로	20	방이동 23-4	방이동 3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5	6	국지 도로	250	방이동 36-10	방이동 37-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6	6	국지 도로	250	방이동 38-3	방이동 43-8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66	6~9	국지 도로	250	방이동 38-3	방이동 43-8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7	6	국지 도로	196	방이동 41	방이동 4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8	6	국지 도로	162	방이동 42-6	방이동 41-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9	6	국지 도로	127	방이동 42-8	방이동 42-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69	6~8	국지 도로	127	방이동 42-8	방이동 42-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0	6	국지 도로	307	방이동 43-5	방이동 46-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1	6	국지 도로	314	방이동 47-11	방이동 48-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71	6~8	국지 도로	314	방이동 47-11	방이동 48-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2	6	국지 도로	321	방이동 49-6	방이동 50-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3	6	국지 도로	300	방이동 64-7	방이동 63-1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4	6	국지 도로	271	방이동 62-9	방이동 67-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5	6	국지 도로	112	방이동 67-10	방이동 67-7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6	6	국지 도로	84	방이동 68-8	방이동 68-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7	4	국지 도로	37	방이동 64	방이동 64-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8	4	국지 도로	38	방이동 62-3	방이동 62-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9	2	국지 도로	35	방이동 66	방이동 66-10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80	2	국지 도로	38	방이동 28	방이동 28-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81	2	국지 도로	37	방이동 36	방이동 36-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82	2	국지 도로	35	방이동 38	방이동 38-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83	4	국지 도로	39	방이동 47	방이동 47-8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83	6	국지 도로	39	방이동 47	방이동 47-8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84	4	국지 도로	39	방이동 49	방이동 49-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85	4	국지 도로	39	방이동 51-11	방이동 94-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91	2	국지 도로	20	방이동 23	방이동 23	일반 도로	-	서고49호 (' 09.2.12)	
기정	소로	3	92	2	국지 도로	20	방이동 35-10	방이동 35-10	일반 도로	-	서고49호 (' 09.2.1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3	2	국지 도로	34	방이동 44-5	방이동 44-5	일반 도로	-	서고49호 (' 09.2.12)	
변경	소로	3	93	3	국지 도로	34	방이동 44-5	방이동 44-5	일반 도로	-	서고49호 (' 09.2.12)	
기정	소로	3	94	2	특수 도로	11	방이동 40-7	방이동 44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49호 (' 09.2.12)	
기정	소로	1	1	10 (5)	국지 도로	441 (79)	삼전동 133-10	삼전동 130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2	10 (5)	국지 도로	107	삼전동 130-6	삼전동 129-7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3	10 (5)	국지 도로	119	석촌동 1-4	석촌동 1-7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401 (46)	석촌동 15	석촌동 24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457 (38)	석촌동 60-13	석촌동 158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413 (43)	석촌동 174-3 (석촌동 183-8)	석촌동 183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454 (35)	송파동 19-9 (송파동 7-12)	송파동 32-1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424 (35)	송파동 48-19 (송파동 58-15)	송파동 58-18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3	삼전동 130-7	삼전동 130-2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	6 (3)	국지 도로	414	석촌동 158-8	석촌동 24-11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	6 (3)	국지 도로	91	석촌동 183-3	석촌동 183-8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45	6 (3)	국지 도로	148	송파동 7-8	송파동 7-12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46	6 (3)	국지 도로	404	송파동 32-1	송파동 58-8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신설	소로	3	95	6 (3)	국지 도로	157 (103)	방이동 60-13 (방이동 59-15)	방이동 59-9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96	6	국지 도로	74	방이동 59-15	방이동 58-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97	6 (3)	국지 도로	177 (37)	방이동 58-26 (방이동 58-23)	방이동 58	일반 도로	-		

* 폭원, 연장, 기정 및 종점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9	소로 1-9	• 기종점 오기 정정 • 연장 : 352m ⇒ 70m	• 기종점 오기 정정 및 연장 조정
소로 3-66	소로 3-66	• 폭원 : 6m ⇒ 6~9m	• 방이동 43번지 외 2필지 신축(공동개발)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일부구간 3m 폭원 확폭
소로 3-69	소로 3-69	• 폭원 : 6m ⇒ 6~8m	• 방이동 43번지 외 2필지 신축(공동개발)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일부구간 2m 폭원 확폭
소로 3-71	소로 3-71	• 폭원 : 6m ⇒ 6~8m	• 방이동 47번지 외 2필지 신축(공동개발)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일부구간 2m 폭원 확폭
소로 3-83	소로 3-83	• 폭원 : 4m ⇒ 6m	• 방이동 47번지 외 2필지 신축(공동개발)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일부구간 2m 폭원 확폭
소로 3-93	소로 3-93	• 폭원 : 2m ⇒ 3m	• 방이동 44-5 도로 확보(1m) 구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	소로 3-95	•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57m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구획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소로 3-96	• 신설 - 폭원 : 6m - 연장 : 74m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구획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소로 3-97	•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77m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구획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2) 지하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잠실역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	비 고
기정	①	도로	지하도로	송파구 잠실동 40-2앞(잠실역)	11,079.2	• 서울시 고시 제239호(1988.4.6.) • 잠실역 대합실과 인접건물 연결 지하보도 및 광장 확보

■ 잠실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	32.8 ~ 36.8 (20)	보조 간선	358	송파구 신천동 30	송파구 신천동 30	지하 도로	-	송파구고시 2012-41호 (' 12.6.7)	공원 중복결정 (지하부453㎡)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 고
			연장(m)	폭(m)	높이(m) (해수면기준)	면적(㎡)	
기정	도로 (지하도로)	송파구 신천동 30번지	358	32.8~36.8 (20)	5.73~14.63	12,123 (7,195)	• 집수정 높이 : -3.75m~14.63m

* 폭원, 면적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3)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본선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또는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경과지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8호선본선)	방이동 35	장지동 596	-	L=6,500m	건고 399호 (' 91.7.15)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8호선본선)	강동구 암사동 504	방이동 35	-	L=4,520m	송파고94-39호 (' 94.8.25)	
기정	③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대	-	L=13,753	서고 415호 (' 08.11.20)	
기정	-	철도	고속철도 (2호선본선)	시청	잠실동	전철2호선	48.8km	서고 273호 (' 82.7.20)	

■ 철도 정거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④	철도	도시철도 (잠실정거장)	잠실대교앞 광장	8,872	건고 349호 (' 79.9.24)	2호선 잠실역
기정	⑤	철도	도시철도 (잠실정거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22,403.6	건고 399호 (' 91.7.24)	8호선 잠실역
기정	⑥	철도	도시철도 (몽촌토성 정거장)	방이동 44	5,774	송파고 94-39호 (' 94.8.25)	8호선 몽촌토성역
기정	⑦	철도	도시철도 (935 정거장)	방이동 88-17번지 일대	8,783.4	서고 415 (' 08.11.20)	9호선

■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규모				비 고
					길이(m)	폭(m)	높이(m) (해수면기준)	면적(㎡)	
기정	⑧	철도 (정거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일대	환기구①	8.2	7.5	7.0~17.0	61.2	
기정	⑨	철도 (정거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일대	환기구②	9.0	11.4	7.0~17.0	101.7	
기정	⑩	철도 (정거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일대	연결통로	5.1	14.6	2.0~13.0	74.3	●총길이: 11.0m
기정	⑪	철도 (정거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일대	출입구등	11.8	61.1	-1.0~19.0	562.3	
기정	⑫	철도 (정거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일대	엘리베이터	3.1	3.5	1.0~20.0	11.2	●장애인전용
기정	⑬	철도 (정거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일대	환기구③	3.25	10.8	0.0~17.0	35.1	●신천동 29번지 5.1㎡ ●신천동 29-8번지 30.0㎡
기정	⑭	철도 (정거장)	송파구 신천동 29-8번지일대	대합실	6.3	47.1	-1.0~16.0	266.2	
합 계								1,112.0	

4) 주차장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송파구 신천동 27번지 일대	8,809	-	8,809	서고 97-198 (97.6.14)	•올림픽로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철도 - 잠실정거장 : 870.8㎡ - 8호선본선 : 2,541.9㎡ - 환기구 : 248.7㎡ ▶ 광로(올림픽로) : 8,708㎡ ▶ 공공청사(송파구청) : 35.9㎡
기정	②	주차장	송파구 신천동 28번지 일대	19,797	-	19,797	서고 13-93 (13.4.11)	•중복결정(19,412㎡) - 송파나루근린공원(1,186㎡), 시장(48㎡) - 광로1-29, 대로3-106 내 [18,226㎡중 철도중복결정(2,297㎡)] •입체적결정(385㎡) - 신천동29(337㎡) - 잠실동40-1(시장 48㎡) - 높이:0.2~16.01m(해수면기준)

■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주차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길이(m)	40.36~48.18	-	40.36~48.18		
				폭(m)	7.6	-	7.6		
				높이(m)	2.51~14.52	-	2.51~14.52		
				층	-	-	-		
기정	-	주차장	송파구 신천동 40-1번지	길이(m)	27.50	-	27.50		
				폭(m)	1.75	-	1.75		
				높이(m)	0.2~16.01	-	0.2~16.01		
				층	-	-	-		

나. 공간시설

1) 광장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교통광장 (잠실광장)	신천동	32,000 (21,544)	-	32,000 (21,544)	건고78호 (' 74.3.23)	잠실 광장
기정	②	광장	교통광장 (송파광장)	송파동 61번지 일대 (방이동 44번지)	12,210 (4,495)	-	12,210 (4,495)	건고223호 (' 77.11.9)	송파 광장

* 면적의 ()는 지구단위구역내 사항임

2) 공원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신천공원	근린공원	신천동 7-15일대	12,755.5	-	12,755.5	건고173호 (' 82.4.28)	-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평화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방이동 42-2일대	1,651.3	-	1,651.3	건고125호 (' 74.12.6)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평화공원	•공원시설의 종류 변경 - 어린이공원 ⇒ 소공원	•면적이 협소하고 주변 상업지역과 연결하여 어린이공원 역할 저하

3)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방이동 44	141.6	-	141.6	서고166호 (' 14.5.1)	

4) 시장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시장	-	잠실동40-1	128,246.2	-	128,246.2	서고643호 (' 88.11.29)	롯데쇼핑
기정	②	시장	-	잠실동40	23,972.8	-	23,972.8	서고185호 (' 83.3.31)	한양유통

5)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구청	신천동 29-5	9,833.1	-	9,833.1	서고2004-321 호 (' 04.10.20)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800%이하 - 높 이 : 130m 이하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부	석촌호수길변	준주거지역	2,5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0㎡	
	석촌호수길변 외		제한없음	
이면부	석촌호수길변		1,000㎡	-
	석촌호수길변 외		2,000㎡	종교 및 집회시설에 한함

* '석촌호수길 변' 은 송파대로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편입된 지역에 해당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계획	•간선변 상업지역 필지중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경우	-	폐지
공동개발 (규제)	•획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간선변 필지중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경우 •간선변 필지중 기 공동개발 상황의 유치가 필요한 경우	•동일 소유, 기 공동개발(기 맞벽건축), 간선변 계획적 개발 유도가 필요한 경우	-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C1	C1	151,866.3	151,866.3	
기정	C2	C2	107,979.3	107,979.3	
기정	C3-1	C3-1	38,930.4	38,930.4	
기정	C3-2	C3-2	55,061.2	55,061.2	
기정	C3-3	C3-3	31,911.0	31,911.0	
기정	C3-4	C3-4	17,337.3	17,337.3	
기정	C3-5	C3-5	23,702.1	23,702.1	
기정	C7-1	C7-1	5,139.2	5,139.2	
기정	C7-2	C7-2	1,760.3	1,760.3	
기정	C7-3	C7-3	3,229.2	3,229.2	
기정	C7-4	C7-4	3,835.6	3,835.6	
기정	C7-5	C7-5	4,002.6	4,002.6	
기정	C7-6	C7-6	4,040.7	4,040.7	
기정	C7-7	C7-7	3,894.9	3,894.9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C7-8	C7-8	3,530.9	3,530.9	
기정	C7-9	C7-9	3,682.6	3,682.6	
기정	C7-10	C7-10	3,531.9	3,531.9	
기정	C8-1	C8-1	4,548.1	4,548.1	
기정	C8-2	C8-2	4,837.8	4,837.8	
기정	C8-3	C8-3	4,760.2	4,760.2	
기정	C8-4	C8-4	4,851.9	4,851.9	
기정	C8-5	C8-5	5,436.8	5,436.8	
기정	C8-6	C8-6	3,806.5	3,806.5	
기정	C8-7	C8-7	2,973.7	2,973.7	
기정	C8-8	C8-8	3,388.6	3,388.6	
신설	-	C8-9	-	4,940.7	신규편입지역
신설	-	C8-10	-	1,451.0	
기정	D1-1	D1-1	3,398.5	3,398.5	
기정	D1-2	D1-2	4,387.2	4,387.2	
기정	D1-3	D1-3	5,973.3	5,973.3	
기정	D1-4	D1-4	5,513.6	5,513.6	
기정	D1-5	D1-5	4,410.3	4,410.3	
기정	D1-6	D1-6	3,309.1	3,309.1	
기정	D1-7	D1-7	5,000.7	5,000.7	
기정	D1-8	D1-8	5,162.3	5,162.3	
기정	D1-9	D1-9	5,137.1	5,137.1	
기정	D1-10	D1-10	5,297.2	5,297.2	
기정	D1-11	D1-11	5,275.0	5,275.0	
기정	D1-12	D1-12	5,439.2	5,439.2	
변경	1-1	E1-1	2,096.6	2,096.6	송파대로지구 편입지역 가구번호 재부여
변경	2-1	E1-2	4,821.0	4,821.0	
변경	3-1	E1-3	5,303.6	5,303.6	
변경	3-2	E1-4	6,985.7	6,985.7	
변경	3-3	E2-1	7,431.4	7,431.4	
변경	3-4	E2-2	5,539.5	5,539.5	
변경	3-15	E3-1	5,040.3	5,040.3	
변경	3-16	E3-2	3,583.2	3,583.2	
변경	3-17	E3-3	3,590.6	3,590.6	
변경	3-18	E3-4	7,123.9	7,123.9	

■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C3-3	신천동 11-8, 12	8,481.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C7-2	방이동 23, 23-1	660.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23-3, 23-4	641.2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C7-3	방이동 35, 35-1	697.1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35-4, 5, 6, 7	1,251.2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35-8, 9	764.9	-	맞벽건축	기 맞벽건축
C7-4	방이동 24-3, 4, 5, 6	1,150.7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24-7, 10	511.7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C7-5	방이동 28-5, 6	526.4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공동개발 (28-6 : 과소필지)
C7-7	방이동 36-9, 10	534.2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C7-8	방이동 37-2, 9	799.8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방이동 37-3, 4	445.7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방이동 37-5, 6	436.2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방이동 37-7, 8	449.7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C7-10	방이동 39, 39-1, 4	791.5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C8-1	방이동 65, 65-5	1,190.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C8-2	방이동 64-1, 2, 4	793.8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64-6, 7	539.6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C8-3	방이동 63, 63-5	409.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방이동 63-9, 10	416.5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방이동 63-11, 12	577.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C8-4	방이동 62-2, 14	394.3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C8-5	방이동 66, 66-10	574.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66-1, 9	818.3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66-2, 8	1,101.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66-3, 7	1,459.5	공동개발 지정	-	-
	방이동 66-3, 4, 7	2,942.8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C8-7	방이동 68-1, 4	363.8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C8-8	방이동 69-10, 11	672.8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C8-9	방이동 59, 59-9	961.3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D1-1	방이동 40-1, 2	1,004.7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D1-2	방이동 44-3, 4, 7, 8	1,382.5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D1-3	방이동 45-2, 3, 6, 7	1,000.1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45-4, 5	3,487.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D1-4	방이동 41-1, 4, 11	1,007.8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공동개발
	방이동 41-3, 6	755.5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방이동 41-7, 13	543.4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방이동 41-8, 9	544.5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D1-5	방이동 42-5, 6, 7	974.5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D1-6	방이동 43, 43-1, 8	1,693.3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D1-7	방이동 46-4, 5	924.3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D1-8	방이동 47, 47-1, 8	1,522.2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47-4, 12	720.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47-13, 14	602.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D1-9	방이동 48-2, 8	516.4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방이동 48-5 6, 7	1,735.6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D1-10	방이동 49-2, 3	722.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방이동 49-4, 7	770.7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방이동 49-11, 12	469.9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D1-11	방이동 50-5, 6	625.8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D1-12	방이동 51-1, 8	1,055.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51-2, 3, 6, 7	1,260.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방이동 51-4, 5	1,039.7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E1-1	삼전동 129-3, 9	369.5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삼전동 129-6, 7	394.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E1-2	삼전동 130-5, 8	978.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삼전동 130-6, 7	440.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삼전동 130-14, 15	408.4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E1-3	석촌동 1-1, 2, 9	2,480.5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E1-4	석촌동 24, 24-10, 11	1,454.3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석촌동 24-14, 15	1,341.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석촌동 24-3, 4, 5, 7 12, 13	2,457.1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E2-1	석촌동 158, 158-1, 13, 14	1,366.3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석촌동 158-2, 12	811.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석촌동 158-3, 11	760.3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석촌동 158-4, 10	1,140.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E3-1	송파동 7-4, 5	589.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송파동 7-7, 8	774.3	맞벽건축	맞벽건축	기 맞벽건축
E3-3	송파동 31, 31-1, 5, 9, 10, 11	1,578.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E3-4	송파동 58, 58-17	677.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전층)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A	•단독주택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위락시설(관광호텔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제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불허)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캠핑 및 베딩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 오락실(전자오락)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포함)	상업 지역 (간선변)
B	•단독주택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위락시설(관광호텔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제외) •공장 •창고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상업 지역 (이면부)

<계 속>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C	•단독주택 -단, 준주거지역에 불허,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허용 •공동주택 -단, 준주거지역에 불허(복합용도중 비주거용도가 전체면적 30%이상인 경우는 제외),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복합용도 포함)허용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 1.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허용 2. 준주거지역은 비주거용도가 용적률의 10% 이상인 주거복합건물인 경우 허용 (단, 석촌호수길변은 주거전용면적 30㎡미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전용면적 30㎡이하 오피스텔 (석촌호수길변 준주거지역에 한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캠블링 및 베테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 오락실(전자오락)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 지역
D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단,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가 건축물의 2개층 이상이고, 용적률의 15% 이상인 경우에 한함)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외부벽 등과 같은 건축구조물로 소음 및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축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함)	-	-
E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외부벽 등과 같은 건축구조물로 소음 및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축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시설	-	-

*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 층	1층	전 층	1층	
a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개방화장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개방화장실 •가로활성화용도	상업지역
b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꼭대기층(10층 이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망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꼭대기층(10층 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전망대	•개방화장실 •가로활성화용도	준주거지역
c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가로활성화용도	일반주거지역
d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	-	

- * 가로활성화 용도 : 방이맛골에 면한 필지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 꼭대기층 : 석촌호수길 주변 가구 내 주변조망이 양호한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구분	1층 지정용도		비 고
	기 정	변 경	
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표구점 - 판매시설 중 상점 - 운동시설 중 체력단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표구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의 판매시설 중 상점	석촌호수길 간선부

* 가구번호 E1-3~4, E2-1~2, E3-1~4 중 석촌호수길에 대지경계선이 면한 필지(삼학사길, 송파대로, 오금로 및 이면도로에 면한 필지 제외)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비 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60%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이하	

2) 용적률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¹⁾
		일반건축물	관광숙박 시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	—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250%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25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300%이하	400%이하	480%이하 (송파대로지구 단위계획 구역)	(송파대로지구 단위계획 구역)	30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	—	600%이하	8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²⁾	250%이하	350%이하	—	400%이하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주2)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적용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각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용적률계획에 따름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

주택연면적비율(%)	허용용적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0이상~70미만	600%이하
50이상~60미만	650%이하
40이상~50미만	700%이하
30이상~40미만	750%이하
20이상~30미만	800%이하
20미만	800%이하

* 관련 법령 및 조례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름

3) 높이계획

위 치					최고높이		비 고
					기 정	변 경	
간선변	잠실지역				130m (가각부 150m)이하	130m (가각부 150m)이하	－
	방이지역	일반상업지역			100m이하	100m이하	－
		준주거지역			80m이하	80m이하	－
	석촌 호수길 변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석촌호수길	95m이하	95m이하	－
				그외도로변	80m이하	80m이하	
			일반주거지역		60m이하	60m이하	－
이면부	방이지역	일반 상업 지역	10m 도로변		도로사선제한	35m이하	기부채납 미제공시
			6m이하 도로변			30m이하	
			획지면적 ≤ 1,500㎡		도로사선제한	50m이하	연접도로 폭원 1m이상 기부채납시
			1,500㎡ < 획지면적 ≤ 가구면적		100m이하	100m이하	10%이상 기부채납시
			가구간 공동개발시		120m이하	120m이하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35m이하	35m이하	－
			일반 주거지역	10m 도로변	도로사선제한	20m이하	－
				6m이하 도로변		15m이하	
	석촌 호수길 변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m이하	25m이하	송파대로지구에서 편입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m이하	30m이하	

* 높이적용을 달리 받는 필지간의 공동개발의 경우 도로위계가 높은 필지의 최고높이 적용

* 간선도로의 전면부와 이면부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면부 높이는 동일 용도지역 및 접도조건의 높이계획을 따름(방이지역)

— 방이 상업지역 간선 이면부 : 50m

— 방이 준주거지역 간선 이면부 : 35m

* 접도조건에 의한 최고높이 적용시 도로폭은 확폭이전 폭원 적용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지정선	•건축물 외벽면의 1층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1이상 접해야 함 - 올림픽로, 위례성길, 백제고분로, 오금로, 송파대로 : 3~5m	•건축물 외벽면의 1층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1이상 접해야 함 - 올림픽로, 위례성길, 송파대로 : 3~5m	결정도 참조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잠실지역 : 3~20m - 방이지역 : 1~5m - 석촌호수길 : 1~11m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잠실지역 : 3~20m - 방이지역 : 1~5m - 석촌호수길 : 1~11m	결정도 참조
형태	1층부	•간선변은 전면공지내 주차가 가능한 1층부 건축형태 규제	•간선변은 전면공지내 주차가 가능한 1층부 건축형태 규제	시행지침 참조
	통경 공간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석촌호수길 별도적용) : 5층 이상의 장변길이 ≤ 50m •석촌호수길에 면한 건축물 : 높이 25m이상 장변길이 < 대지 최장변의 2/3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석촌호수길 별도적용) : 5층 이상의 장변길이 ≤ 50m •석촌호수길에 면한 건축물 : 높이 25m이상 장변길이 < 대지 최장변의 2/3	시행지침 참조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제 어 기 준		비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쌈지형공지 공개공지	•주요 보행결절점에 지정 -잠실지역 : 27개소 -방이지역 : 7개소 -석촌호수길 : 3개소 ※전면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주요 보행결절점에 지정 -잠실지역 : 27개소 -방이지역 : 7개소 -석촌호수길 : 3개소 ※전면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잠실지역 : 4~20m •방이지역 : 1~3m •석촌호수길 : 1~11m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잠실지역 : 4~20m -방이지역 : 1~4m -석촌호수길 : 1~11m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보행 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잠실지역 : 6개소 -방이지역 : 6개소 -석촌호수길 : 3개소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잠실지역 : 6개소 -방이지역 : 6개소 -석촌호수길 : 5개소	결정도 참조
	보차혼용 통로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잠실지역 : 2개소 -석촌호수길 : 4개소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잠실지역 : 2개소 -석촌호수길 : 4개소	결정도 참조
보행자 우선구간		-	•방이맛골 보행자우선구간 지정	결정도 참조

* 방이지역의 '견고싶은거리(방이맛골)' 활성화를 위하여 방이지역 이면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5m 이상의 보행공간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전면공지 조성방식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7조(전면공지)의 전면공지 조성방식을 따름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불허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불허하 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범위 허용	결정도 참조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 방이지역 : 1개소 •주차출입구 -잠실지역 : 2개소 -방이지역 : 2개소 -석촌호수길 : 14개소	•공동주차출입구 - 방이지역 : 2개소 - 석촌호수길 : 1개소 - 잠실지역 : 1개소 •주차출입구 -잠실지역 : 5개소 -방이지역 : 4개소 -석촌호수길 : 6개소	결정도 참조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옥상녹화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2007.2.7.)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변경 없음
생태면적률	•건축물의 신축시 '환경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5.12)'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 (2007.12.18.) 준수	-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 기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2008.3)"을 준수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13-81·82호)" 기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2008.3)"을 준수	-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변경 없음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자부 고시 제2007-52)'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2)'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조명	•상업지역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옥외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의 경우에도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상업지역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옥외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의 경우에도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변경 없음

4.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에 대한 계획기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C8-2, C8-3, C8-4, C8-6, C8-7, C8-8	
용도지역	상향전	•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향후	• 준주거지역	
공공시설계획		• 도로, Open space, 주차장 등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부채납(10%이상)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 C
		권장 용도	• 지정 : 권장용도 분류표상 a • 변경 : 권장용도 분류표상 b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250%이하
		허용 용적률	• 350%이하
		상한 용적률	• 400%이하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times(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 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최고높이		• 35m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로변 : 2m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및 주요 이면도로에서 차량출입 불허	
최소개발규모		• $1,500\text{m}^2 \leq \text{개발면적} \leq \text{가구}$	

- *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개발규모가 $1,500\text{m}^2$ 이상 개발하는 대지에 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을 따르며 향후 기존 변경시 변경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을 만족해야 함
- *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1	잠실동 40-1	128,246.2	세부개발계획 미수립
기정	특별계획구역2	신천동 29, 29-8	88,170.4	세부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고시 2013-35호(2013.2.7))

* 특별계획구역 개발은 제안된 세부개발계획이 서울시 심의 및 결정고시 후 해당기관의 개발허가를 득하여 시행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위 치		•잠실동 40-1	
특별계획구역 면적		•128,246.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권장용도	•공연, 관람, 전시, 업무, 관광호텔 등 복합개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600%이하
		허용 용적률	•800%이하
		상한 용적률	-
	최고높이		•1.5D 이하
배치	건축한계선	-	
교통처리계획	차량동선	•올림픽로에서 주차진출입 최소화(2개소 이내) •서비스 동선은 석촌호수측 도로를 이용	
	보행동선	•동측대가구과 지하연결 •잠실4거리 지하철 '콘코스' 와 지하연결, 입구부분 24시간 개방	
기타에 관한 사항	공공보행통로	•잠실4거리와 잠실3단지간 생활동선 확보 (폭10m이상, 24시간 개방되는 보행전용통로를 가능한 최단거리로 설치)	
	전면공지	•올림픽로, 송파대로변 폭20m이상	
	주차장 형태	•도로에 면하여 주차장 설치시 차폐조경	

* 기타 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적 지침으로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내용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2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신천동 29, 29-8	
특별계획구역 면적			•88,170.4㎡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중심지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운수시설	
		권장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공연, 관람, 전시, 업무, 관광호텔 등 복합개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400%이하	
		허용 용적률	•600%이하	
		상한 용적률	-	
	최고높이		•H≤1.5D 이하 (높이제한 완화적용 배제)	
배치	건축한계선		•올림픽로, 송파대로변 : 20m •잠실길변 : 7.6m~9.35m •동측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1m~24.3m이상 이격	
기타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부지의 10%이상의 공개공지 확보	
	전면공지		•올림픽로변 : 송파구청변으로부터 130m구간 - 폭11m •잠실길변 :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도, 자전거도로 및 차도로 조성 - 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7.6m~9.35m 후퇴 지하차도 상부(길이 170.0m이상) - 보도 5.6m, 자전거도로 2m 동측(VAR.) - 보도 3.75m, 자전거도로 2m, 차도 3.3m 서측(VAR.) - 보도 3.75m, 자전거도로 2m, 차도 3.6m •송파구청변(사업부지 동측) :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도, 보도로 조성(대지경계선으로부터 21m~24.3m이상 후퇴)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 자전거도로 1.5m(사업지쪽), 보도 2m이상(송파구청쪽)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차도 : 17.5m~20.8m(지하램프 포함)	
	공공보행통로		•올림픽로와 잠실길을 연계하는 24시간 공공보행통로 조성(폭10m이상) - 건축물 내부 통과시 높이는 4m이상 - 단,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되는 지상구간은 폭 6m이상 •지하철2호선, 8호선간 지하연결통로와 지상공공보행통로를 선크게단(폭 6m이상)을 이용하여 연계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폭 6m이상, 높이 2.7m이상)	
	지하콘코스		•잠실4거리 및 C1,C2부지 사이의 송파대로 지하공간을 아케이드 및 지하광장 등 지하콘코스로 개발 후 기부채납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서울특별시 고시 2013-35호(2013.2.7))에 대한 결정사항 반영(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시 그에 따름)

* 주거용도를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6. ‘방이지역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 (기정)

구 분		조 건	최고높이	건축선	인센티브
가구내 개별개발 또는 필지간 공동개발	1,500㎡ 이하	-	도로사선 제한	•건축한계선 : 필지에 면한 모든 도 로변으로 2m	•‘획지 및 공동개발’ 부문은 획지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기본 항목 준수로 인정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좌측 건 축한계선 준수시 기 본항목준수로 인정
가구규모 이내 개발	1,500㎡ 초과	•기존 도로를 제외한 순수대지의 10%이 상 기부채납	100m이하	•건축한계선 : 필지에 면한 모든 도 로변으로 2m	
가구간 공동개발		•기존 도로를 제외한 순수대지의 10%이 상 기부채납 •주변지역과의 연계기준 ①올림픽로, 위례성길 진입도로와 연결과 선형을 고려하여 확폭할 것 (가구C7-6+가구C7-7, 가구C7-10 또는 가구D1-4 또는 가구D1-5 또는 가구D1-6, 가구D1-8+가구D1-9 공 동개발은 불허) ②가구분할 후 인접가구와의 공동개발시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면부 연결도 로 시설 등 교통처리방안 제시 ③남측(10m)도로변으로 차량소통 완화를 위해 도로 1차선(5m이상) 이상 확폭 ④남측(10m)도로변으로 가로활성화(상가 등) 용도를 배치하되 가로활성화를 저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Open space 설 치 권장 ⑤D1-4 , D1-5, D1-6 가구간 공동개 발시 방이어린이공원 및 단지를 정형화와 재배치하여 몽촌토성역과 남측(10m)도로와의 보행 연계 ⑥간선변 이면진입도로는 4m이상 확보 ⑦남측(10m)도로변 가각부에 공개공지 배치 ⑧꼭대기층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공간으 로 조성할 것 (최소 1개소)-권장사항	120m이하	•건축한계선 : 남측(10m)도로를 제외 한 모든 도로변 3m이 상 : 남측도로변으로는 10m이상	

* 가구번호 C7-4, C7-5, C7-6, C7-7, C7-8, C7-9, C7-10, DI-4, DI-5, DI-6, DI-7, DI-8, DI-9, DI-10, DI-11
내 필지에 적용

■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 (변경)

구 분		조 건	최고높이	건축선	공동개발, 건축한계선 용적을 완화기준
가구내 개별개발 또는 필지간 공동개발	1,500㎡ 이하	•기부채납 미제공시(6m이하 도로변)	30m	•건축한계선 : 필지에 면한 모든 도로변으로 2~4m	
		•기부채납 미제공시(10m 도로변)	35m		
		•연접도로 1m 이상 확폭(기부채납)6	50m이하	•건축한계선 : 필지에 면한 모든 도로변으로 2~4m (도로확폭시 건축선 은 변경전 도로경계 선을 기준으로 함)	
가구규모 이내 개발	1,500㎡ 초과	•기존 도로를 제외한 순수대지의 10%이 상 기부채납	100m이하		
가구간 공동개발		•기존 도로를 제외한 순수대지의 10%이 상 기부채납 •주변지역과의 연계기준 ①올림픽로, 위례성길 진입도로와 연결과 선형을 고려하여 확폭할 것 (가구C7-6+가구C7-7, 가구C7-10 또는 가구D1-4 또는 가구D1-5 또는 가구D1-6, 가구D1-8+가구D1-9 공 동개발은 불허) ②가구분할 후 인접가구와의 공동개발시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면부 연결도 로 시설 등 교통처리방안 제시 ③남측(10m)도로변으로 차량소통 완화를 위해 도로 1차선(5m이상) 이상 확폭 ④남측(10m)도로변으로 가로활성화(상가 등) 용도를 배치하되 가로활성화를 저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Open space 설 치 권장 ⑤D1-4, D1-5, D1-6 가구간 공동개발 시 평화공원 및 단지를 정형화와 재배 치하여 몽촌토성역과 남측(10m)도로와 의 보행 연계 ⑥간선변 이면진입도로는 4m이상 확보 ⑦남측(10m)도로변 가각부에 공개공지 배치 ⑧꼭대기층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공간으 로 조성할 것(최소 1개소) - 권장사항	120m이하	•건축한계선 - 방이맛골변 이외 의 도로변 : 3m이 상 - 방이맛골변 : 10m이상	•공동개발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동개발에 의한 용적을 완화기 준항목을 준수한 것 으로 인정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좌측 건 축한계선 준수시 용 적을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준수한 것으 로 인정

* 가구번호 C7-4, C7-5, C7-6, C7-7, C7-8, C7-9, C7-10, D1-4, D1-5, D1-6, D1-7, D1-8, D1-9, D1-10, D1-11
내 필지에 적용

* 자세한 조성지침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7조(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를 따름

7.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1)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획지계획 공동개발	획지계획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3필지 : $\alpha=0.2$ •4필지이상 : $\alpha=0.3$ (국공유지는 필지계산에서 제외)
건축물용도	권장 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주차장 제외 건축면적) $\times 0.2$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시
		1층		기준용적률 $\times 0.1$	
		꼭대기 층		기준용적률 $\times 0.1$	•꼭대기층 권장용도 중 1개 이상의 용도를 설치시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times 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 \text{의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구조 $\alpha=0.6$ •침상형구조 $\alpha=1$ •개방형구조 $\alpha=1.2$ •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쌈지형 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times 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구조 $\alpha=0.6$ •침상형구조 $\alpha=1$ •개방형구조 $\alpha=1.2$
	건축 한계선 건축 지정선	전면 공지	-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간선변가구 $\alpha=1.2$ •이면부가구 $\alpha=2.0$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대지내통로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2$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2$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지하철관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지하철입구, 연결통로의 건물내 또는 대지내 설치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건축물 시공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¹⁾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보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div$ 대지면적) 으로서 기준용적률 0.05	
	중수도시설 설치 ²⁾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²⁾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부담
	에너지 절약	1등급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8$	•에너지 절감율 : 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85점 이상
		2등급		기준용적률 $\times 0.05$	•에너지 절감율 : 22.5~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74~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75~85점 이상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 지의 용적률 • α 란 공공시설제공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 주1)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 * 주2) 대지면적 2,000㎡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한함
- * 조성 및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 건축시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2)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권장·지정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의 해당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④ 구분지상권 제공이란 건축물내 일부 공간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용범위 등 대하여는 입안권자 등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⑤ 최대개발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해당 위원회(자치구 포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⑥ 미관지구내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
- ⑦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한다.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전체 인센티브의 30% 이상) - 공통사항

항 목	세 분	세분계획기준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 × 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준용 ●서울시, 송파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 무대상은 의무등급 이상 등급 만족시 등급별 적 용요율의 차이값 만 적용
		우수(그린 2등급)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효율 2등급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신재생에너지 2등급	기준용적률 × 0.10		
		신재생에너지 3등급	기준용적률 × 0.08		
		신재생에너지 4등급	기준용적률 × 0.06		
		신재생에너지 5등급	기준용적률 × 0.04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지하구조물 미설치, 자연토양 및 식생 가능 시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0.05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구 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기준/허용 용적률	비 고
유형1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800	잠실지역전체, 방이지역
유형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600/800	방이지역
유형3	준주거지역	간선/이면부	300/400	방이지역, 카페거리
유형4	일반주거지역	간선/이면부	200/200 250/250	방이지역, 삼전동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간선/이면부	250/350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되는 경우)
유형5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1	600/800	제1롯데월드
		특별계획구역2	400/600	제2롯데월드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

① 유형1 : 간선부 일반상업지역(기준 600 / 허용 80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1, 0.00$ 3필지 : $\alpha=0.2, 0$ 4필지이상 : $\alpha=0.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1.0, 0.00$ 침상형 : $\alpha=1.2, 0.00$ 개방형 : $\alpha=1.5$
	섬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5$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text{연면적}) \times 0.5$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특정층(꼭대기층)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연면적}) \times 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text{연면적}) \times 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 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 $\times 0.08$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에 따라 주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 $\times 0.04$	

② 유형2 : 이면부 일반상업지역(기준 600 / 허용 80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1, 0.3$ 필지 : $\alpha=0.2$, 4필지이상 : $\alpha=0.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1.0, 0.3$ 침상형 : $\alpha=1.5, 0.3$
	쌘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 $\alpha=2.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도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text{연면적}) \times 0.5$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연면적}) \times 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기준용적률 $\times 0.05$	●방이맛골 보행자우선구간에 한함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보행개선	가로지장을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도로	기준용적률 $\times 0.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text{연면적}) \times 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 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 $\times 0.08$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에 따라 주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 $\times 0.04$	

③ 유형3 : 준주거지역(기준 300 / 허용 40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1, 0.3$ 필지 : $\alpha=0.2, 0.3$ 4필지이상 : $\alpha=0.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1.0, 0.3$ 침상형 : $\alpha=1.5, 0.3$
	쌘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 $\alpha=2.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도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text{연면적}) \times 0.5$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지정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지정용도}/\text{연면적}) \times 0.5$	●석촌호수길 간선부 1층부에 한함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연면적}) \times 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기준용적률 $\times 0.05$	●방이맛골 보행자우선구간에 한함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보행개선	가로지장을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도로	기준용적률 $\times 0.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text{연면적}) \times 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 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 $\times 0.08$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에 따라 주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 $\times 0.04$	

④ 유형4 : 제2종일반주거지역(기준 200 / 허용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 250 / 허용 25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규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제	
	건축한계선	규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규제	
건축물 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규제	•방이맛골 보행자우선구간에 한함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규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 용도지역 변경시(유형4)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준 250 / 허용 35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 α	2필지 : $\alpha=0.1, 00$ 3필지 : $\alpha=0.15, 00$ 4필지이상 : $\alpha=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피로타 : $\alpha=1.0, 00$ 침상형 : $\alpha=1.5, 0$ 개방형 : $\alpha=2.0$
	섬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2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연면적) × 0.5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연면적) × 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기준용적률 × 0.1	•방이맛골 보행자우선구간에 한함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 0.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연면적) × 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 × 0.08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에 따라 주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 × 0.04	

⑤ 유형5 : 특별계획구역1(기준 600 / 허용 800), 특별계획구역2(기준 400 / 허용 600)

항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타: α=1.0,00 침상형: α=1.2,0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 α=1.5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5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도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지정·권장용도/연면적)×0.5	
	특정층(꼭대기층)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도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0.08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라 주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0.04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3) 상한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완 화 조 건	산 정 방 식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또는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 확보시 (용도지역 변경(상향)없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1+{공개공지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용적률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확보 후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등 지장물 설치시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용적률 및 높이완화 중복 불가

나. 최고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완 화 조 건	산 정 방 식
최고높이 완화	기부채납시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 확보시 (용도지역 변경(상향)없는 일반주거지역)	●높이의 제한 완화 : 높이제한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1+{공개공지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해당지역의 높이제한 기준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확보 후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등 지장물 설치시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용적률 및 높이완화 중복 불가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변 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획지는 제외)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원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 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6. 구역 내 공동개발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7.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	8.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6.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9. 대지내 · 외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7.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변에서의 주차출입구 변경 (신설)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공동개발 변경 또는 대지분할에 의한 경우)	-
8.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10.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11. 법령이나 지침의 제 ·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IV.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67,687	—	367,687	100.0	
주거지역	소 계	313,348	—	313,348	85.2	
	제1종일반주거지역	9,406	—	9,406	2.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4,648	—	104,648	28.5	
	제2종일반주거지역	57,086	—	57,086	15.5	
	제3종일반주거지역	139,576	—	139,576	38.0	
	준주거지역	2,632	—	2,632	0.7	
상업지역	소 계	54,339	—	54,339	14.8	
	일반상업지역	54,339	—	54,339	14.8	

■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연번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 고
		상향전	상향후		
1	잠실동 213 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72,839	
2	잠실동 199 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3,061	
3	잠실동 190 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6,270	

*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개발규모가 1,500㎡이상 개발하는 대지에 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미관지구 (올림픽로)	중심지 미관지구	잠실 1134블럭 ~ 잠실 1142블럭	18,480 (8,808)	770 (785)	양측12m (편측12m)	서고121호 (' 85.2.26)	
기정	④	미관지구 (백제고분로)	중심지 미관지구	잠실동 196-5 ~ 석촌동 210-9	56,880 (7,702)	4,400 (680)	양측12m (편측12m)	서고121호 (' 85.2.26)	
기정	⑥	미관지구 (석촌호수길)	중심지 미관지구	신천동 교통회관 ~ 잠실 1134블럭	69,490 (4,077)	2,900 (370)	양측12m (편측12m)	서고172호 (' 85.2.26)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73	11,750	109,380	9	2,805	44,697	1	580	13,089	63	8,365	51,594
광로	2	1,220	29,161	1	640	16,072	1	580	13,089	-	-	-
대로	2	913	13,430	1	460	7,807	-	-	-	1	453	5,623
중로	1	360	8,551	1	360	8,551	-	-	-	-	-	-
소로	68	9,185	58,019	6	1,345	12,267	-	-	-	62	7,840	45,752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20	50 (25)	주간선	7,780 (640)	서초동 광로21 (광로 2-51)	송파동 (대로 3-107)	일반 도로	-	건고324호 (' 74.09.24)	올림픽로
기정	광로	2	51	40 (20)	보조 간선	1,100 (580)	신천동 중로2-123 (광로 1-20)	잠실동 대로1-22	일반 도로	-	건고64호 (' 78.3.29)	백제고분로
기정	대로	1	33	35 (17.5)	보조 간선	3,900 (460)	잠실동 대1-22	송파동 광1-23 (잠실동 230-2)	일반 도로	-	건고64호 (' 78.3.29)	백제고분로
기정	대로	3	107	25 (12.5)	보조 간선	2,910.5 (453)	송파동 대1-32 (잠실동 209-10)	신천동 중2-123 (광로 1-20)	일반 도로	-	건고324호 (' 74.9.24)	석촌호수길
기정	중로	1	186	20	국지 도로	360	광20호선	광51호선	일반 도로	-	건고395호 (' 83.12.3)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635	잠실동 184	잠실동 228-8	일반 도로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03	잠실동 181	잠실동 179-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04	잠실동 175	잠실동 177-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228	잠실동 178-3	잠실동 182-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232	잠실동 184-11	잠실동 187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1	6	10 (5)	국지 도로	43	잠실동 209-10	잠실동 209-11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39	잠실동 176-4	잠실동 176-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29	잠실동 177-7	잠실동 177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05	잠실동 178	잠실동 178-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	4	국지 도로	35	잠실동 179	잠실동 179-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62	잠실동 181-10	잠실동 181-18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	4	국지 도로	52	잠실동 180-2	잠실동 180-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42	잠실동 180-9	잠실동 180-10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204	잠실동 183	잠실동 183-8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112	잠실동 196-4	잠실동 19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13	잠실동 195-7	잠실동 195-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13	잠실동 193-7	잠실동 193-8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12	잠실동 192-12	잠실동 192-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12	잠실동 191-7	잠실동 19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112	잠실동 190-10	잠실동 190-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11	잠실동 189-12	잠실동 189-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6	4	국지 도로	100	잠실동 187-10	잠실동 187-1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92	잠실동 187-17	잠실동 187-1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8	4	국지 도로	83	잠실동 186-7	잠실동 186-10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76	잠실동 186-14	잠실동 186-11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0	4	국지 도로	68	잠실동 185-5	잠실동 185-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179	잠실동 185-12	잠실동 207-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225	잠실동 193-2	잠실동 188-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73	잠실동 187-4	잠실동 185-10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247	잠실동 196-23	잠실동 197-8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5	4	국지 도로	35	잠실동 198-10	잠실동 198-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263	잠실동 199-5	잠실동 200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7	4	국지 도로	35	잠실동 200-10	잠실동 200-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275	잠실동 201	잠실동 20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29	4	국지 도로	35	잠실동 202-4	잠실동 202-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0	6	국지 도로	275	잠실동 202-8	잠실동 203-7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1	4	국지 도로	33	잠실동 204-6	잠실동 204-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2	4	국지 도로	114	잠실동 205-24	잠실동 205-10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114	잠실동 205-16	잠실동 205-1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4	4	국지 도로	114	잠실동 206-5	잠실동 206-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14	잠실동 207-4	잠실동 207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6	4	국지 도로	114	잠실동 207-14	잠실동 207-10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7	6	국지 도로	260	잠실동 209	잠실동 205-2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38	잠실동 221-13	잠실동 221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39	6	국지 도로	30	잠실동 196-14	잠실동 196-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0	6	국지 도로	33	잠실동 221-6	잠실동 221-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316	잠실동 218-7	잠실동 221-1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190	잠실동 222-10	잠실동 222-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3	6	국지 도로	142	잠실동 223-22	잠실동 223-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4	6	국지 도로	113	잠실동 222-31	잠실동 22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5	6	국지 도로	111	잠실동 225-10	잠실동 225-1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6	6	국지 도로	113	잠실동 227-4	잠실동 227-8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7	6	국지 도로	113	잠실동 226-5	잠실동 226-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8	6	국지 도로	259	잠실동 214-7	잠실동 224-10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49	6	국지 도로	40	잠실동 219-7	잠실동 21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0	6	국지 도로	65	잠실동 219-2	잠실동 219-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1	6	국지 도로	85	잠실동 217-10	잠실동 217-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2	6	국지 도로	107	잠실동 216-12	잠실동 216-1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3	6	국지 도로	129	잠실동 215-4	잠실동 215-7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4	4	국지 도로	115	잠실동 213-27	잠실동 213-1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5	6	국지 도로	116	잠실동 213-56	잠실동 213-4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6	4	국지 도로	115	잠실동 212-29	잠실동 212-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7	6	국지 도로	116	잠실동 213-59	잠실동 212-4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8	4	국지 도로	115	잠실동 211-27	잠실동 211-1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59	6	국지 도로	116	잠실동 211-41	잠실동 211-3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0	6	국지 도로	116	잠실동 210-56	잠실동 210-43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61	6 (3)	국지 도로	355	잠실동 213-13	잠실동 209-11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90	6	국지 도로	115	잠실동 210-27	잠실동 210-14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90	4	국지 도로	115	잠실동 210-27	잠실동 210-14	일반 도로	-	-	폭원오기 정정

* 폭원, 연장, 기점 및 종점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90	소로 3-90	• 폭원 : 6m ⇒ 4m	• 폭원 오기정정

2)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본선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또는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경과지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1	강동구 둔촌동 566		L=13,573	서고 415호 (' 08.11.20)	
기정	-	철도	고속철도 (2호선본선)	시청	잠실동	전철2호선	48.8km	서고 273호 (' 82.7.20)	

■ 철도 정거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신천역 정거장)	잠실동 35	6,919	-	2호선 신천역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새마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잠실동 209-4일대	1,667.3	-	1,667.3	건고125호 (' 74.12.6)	
기정	④	뽕밭공원	어린이공원	잠실동 220일대	1,125.6	-	1,125.6	건고125호 (' 74.12.6)	
기정	⑤	잠실 7공원 (잠실)	근린공원	잠실동 230일대	6,613.3	-	6,613.3	건고125호 (' 74.12.6)	

2) 시장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시장	시장	잠실동 230-2	2,314.3	-	2,314.3	건고125호 (' 74.12.6)	잠실종합 시장

다. 공공시설

1) 사회복지시설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잠실동 194-7일대	-	증) 476	476		용적률 : 400%이하 건폐율 : 60%이하 높이 : 35m 이하
신설	②	사회복지시설	잠실동 211-36일대	-	증) 383.3	383.3		용적률 : 200%이하 건폐율 : 60%이하 높이 : 7층 이하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 신설 : 476㎡	•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결정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계획적 관리 도모
②	사회복지시설	• 신설 : 383.3㎡	• 잠실어린이집 : 체비지 내의 송파구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계획시 설 결정 관리 - 용도현황에 부합하는 계획적 관리 도모

2) 공공청사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동사무소, 파출소	잠실동 230-1	잠실동 230-1, 3	663.2	증) 328.6	991.8	송파구 2004-27 (' 04.4.30)	용적률 : 200%이하 건폐율 : 60%이하 높이 : 15m 이하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시설의 종류 : 동사무소 ⇒ 동사무소, 파출소 • 면적 : 663.2㎡ ⇒ 991.8㎡ (증 328.6㎡)	• 제2지구 편입지역의 공공청사부지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 해 인접한 파출소를 편입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관리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변	제한없음	-
이면부	제한없음 (단, 종교집회시설은 2,000㎡)	-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기 정	변 경	
획지계획	•간선변 상업지역 필지중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경우	-	폐지
공동개발 (규제)	•획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간선변 필지중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경우 •간선변 필지중 기 공동개발 상황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동일 소유, 기 공동개발(기 맞벽건축), 간선변 계획적 개발 유도가 필요한 경우	
필지분할 가능선	-	•필지분할 가능한 위치를 지정하여 개발 촉진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B1-1	B1-1	4,035.2	4,035.2	
기정	B1-2	B1-2	6,955.4	6,955.4	
기정	B1-3	B1-3	3,502.9	3,502.9	
변경	B1-5	B1-4	5,910.8	5,910.8	가구번호 조정
기정	B2-1	B2-1	6,440.3	6,440.3	
기정	B2-2	B2-2	3,309.4	3,309.4	
기정	B2-3	B2-3	2,462.5	2,462.5	
기정	B2-4	B2-4	2,324.4	2,324.4	
기정	B2-5	B2-5	2,080.4	2,080.4	
기정	B2-6	B2-6	2,237.7	2,237.7	
기정	B2-7	B2-7	3,217.3	3,217.3	
기정	B2-8	B2-8	3,979.7	3,979.7	
기정	B2-9	B2-9	2,987.6	2,987.6	
기정	B2-10	B2-10	3,191.4	3,191.4	
기정	B2-11	B2-11	3,972.0	3,972.0	
기정	B3-1	B3-1	5,688.1	5,688.1	
기정	B3-2	B3-2	9,189.2	9,189.2	
기정	B3-3	B3-3	1,897.1	1,897.1	
기정	B3-4	B3-4	1,682.9	1,682.9	
기정	B3-5	B3-5	2,552.9	2,552.9	
기정	B3-6	B3-6	4,654.7	4,654.7	
기정	B4-1	B4-1	3,980.2	3,980.2	
기정	B4-2	B4-2	3,985.9	3,985.9	
기정	B4-3	B4-3	3,947.3	3,947.3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B4-4	B4-4	3,325.3	3,325.3	
기정	B4-5	B4-5	3,583.9	3,583.9	
기정	B4-6	B4-6	3,926.4	3,926.4	
기정	B4-7	B4-7	4,045.7	4,045.7	
기정	B4-8	B4-8	3,983.2	3,983.2	
기정	B4-9	B4-9	4,068.6	4,068.6	
기정	B4-10	B4-10	3,982.2	3,982.2	
기정	B4-11	B4-11	3,632.7	3,632.7	
기정	B5-1	B5-1	2,723.5	2,723.5	
기정	B5-2	B5-2	2,524.1	2,524.1	
기정	B5-3	B5-3	2,325.8	2,325.8	
기정	B5-4	B5-4	2,122.6	2,122.6	
기정	B5-5	B5-5	1,792.6	1,792.6	
기정	B5-6	B5-6	1,527.8	1,527.8	
기정	B5-7	B5-7	9,815.2	9,815.2	
기정	B5-8	B5-8	2,942.3	2,942.3	
기정	B5-9	B5-9	2,942.7	2,942.7	
기정	B5-10	B5-10	2,970.0	2,970.0	
기정	B5-11	B5-11	2,969.7	2,969.7	
기정	B5-12	B5-12	2,719.7	2,719.7	
기정	B5-13	B5-13	2,719.5	2,719.5	
기정	B6-1	B6-1	9,983.2	9,983.2	
기정	B6-2	B6-2	3,050.3	3,050.3	
기정	B6-3	B6-3	3,000.2	3,000.2	
기정	B6-4	B6-4	3,100.2	3,100.2	
기정	B6-5	B6-5	3,182.0	3,182.0	
기정	B6-6	B6-6	2,858.7	2,858.7	
기정	B6-7	B6-7	2,867.8	2,867.8	
기정	B6-8	B6-8	2,973.0	2,973.0	
기정	B6-9	B6-9	3,017.0	3,017.0	
변경	B1-4	B7-1	1,186.4	5,502.1	B1-4를 B7-1로 편입
	B7-1		4,315.7		
기정	B7-2	B7-2	5,414.8	5,414.8	
기정	B7-3	B7-3	4,267.5	4,267.5	
기정	B7-4	B7-4	1,934.2	1,934.2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B7-5	B7-5	2,709.9	2,709.9	
기정	B7-6	B7-6	3,479.8	3,479.8	
기정	B7-7	B7-7	4,255.0	4,255.0	
기정	B7-8	B7-8	4,864.7	4,864.7	
기정	B7-9	B7-9	2,634.3	2,634.3	
기정	B7-10	B7-10	4,070.2	4,070.2	
기정	B7-11	B7-11	4,071.8	4,071.8	
기정	B7-12	B7-12	5,520.4	5,520.4	
신설	-	B7-13	-	9,919.4	신규편입지역

■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B1-1	잠실동 196-22, 23	617.3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96-8, 21	564.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96-9, 10, 11, 12, 17, 18, 19, 20	1,712.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간선가로변 적정개발 유도 및 주차출입구 확보
	잠실동 196-13, 14, 15, 16	799.8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간선가로변 적정개발 유도 및 주차출입구 확보
B1-2	잠실동 222, 222-1, 15, 16	1,128.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222-2, 3, 17	924.1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잠실동 222-7, 8	455.6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잠실동 222-4, 5, 30	951.9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B1-4	잠실동 223-6, 20	510.4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2-1	잠실동 175-6, 7	951.6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75-9, 20, 21	754.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75-4, 22, 27	1,533.4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B2-2	잠실동 176, 176-10	490.3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76-2, 3	704.9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B2-3	잠실동 177-4, 5	631.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 유도 및 주차출입구 확보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B2-4	잠실동 175-14, 15	547.4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2-5	잠실동 178, 178-6	986.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78-1, 2, 5	705.8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 유도 및 주차출입구 확보
	잠실동 178-3, 4	388.4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 유도 및 주차출입구 확보
B2-6	잠실동 179-1, 4	1,113.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2-8	잠실동 195-1, 2	429.1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잠실동 195-3, 4	549.4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2-9	잠실동 194	2,156.0	획지선 지정	-	-
	잠실동 194-7	476.0	획지선 지정	-	-
B2-10	잠실동 193, 193-6	891.5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93-2, 8	583.3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2-11	잠실동 192-2, 14	483.1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3-1	잠실동 181, 181-1, 17, 18	1,004.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81-2, 3, 15, 16	1,291.8	(181-2, 16 공동개발 지정) (181-3, 15 공동개발 지정) 맞벽건축	(181-2, 16 공동개발 지정) (181-3, 15 공동개발 지정) 맞벽건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잠실동 181-4, 5, 13, 14	1,007.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81-7, 8, 11	547.1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81-6, 12, 19, 20	1,114.9	획지선 지정	-	-
	잠실동 181-6, 12, 19	901.6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184-12, 13	623.4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B3-2	잠실동 184, 184-21	1,176.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잠실동 184-1, 19	426.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84-3, 18, 22	974.7	획지선 지정	-	-
	잠실동 184-2, 3, 18	1,015.9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184-4, 23, 24	860.7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184-5, 6, 16, 17	1,189.2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187-7, 8, 14	2,516.5	획지선 지정	-	-
	잠실동 187-8, 14	820.4	-	공동개발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184-9, 10, 11	1,012.0	획지선 지정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B3-6	잠실동 183-2, 12, 14	749.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잠실동 183-5, 10	1,031.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적정개발 유도 및 주차출입구 확보
	잠실동 183-1, 13	908.9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4-4	잠실동 188-1, 8	830.9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B4-5	잠실동 198, 198-8	1,371.7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잠실동 198-1, 2	502.1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B4-10	잠실동 203-3, 16	530.3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B5-2	잠실동 187-10, 17	883.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5-6	잠실동 185- 9, 10	710.0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5-7	잠실동 208, 208-1, 16	1,622.2	공동개발 지정	—	
	잠실동 208-2, 3, 13, 14, 15	1,801.2	공동개발 지정	—	
	잠실동 208-2, 15	775.8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208-3, 13, 14	1,025.4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208-4, 9, 10, 11, 12, 17	3,072.8	공동개발 지정	—	
	잠실동 208-10, 11, 12	1,111.9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208-4, 9, 17	1,960.9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잠실동 208-5, 6, 7, 8	3,319.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B5-8	잠실동 205-4, 23	484.3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동일소유
B6-1	잠실동 209, 209-1, 2, 3, 12, 13, 14	2,779.6	공동개발 지정	—	—
	잠실동 209-2, 3, 12, 13, 14	1,832.1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209-5, 6, 16, 17	3,460.1	공동개발 지정	—	—
	잠실동 209-8, 9, 10, 11, 15	2,076.2	공동개발 지정	—	—
	잠실동 209-8, 9, 15	1,380.7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B7-3	잠실동 224, 224-10	1,036.3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B7-5	잠실동 217-5, 11	423.1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B7-6	잠실동 216-1, 17	638.3	—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B7-8	잠실동 214-10, 11	385.5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B7-10	잠실동 226-5, 14	570.7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B7-11	잠실동 227-6, 16	348.3	—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B7-12	잠실동 228-1, 10, 16	750.8	—	공동개발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잠실동 228-8	1,815.7	—	필지분할 가능선 지정	계획적 개발 유도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전층)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A	•단독주택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위락시설(관광호텔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제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대중음식점 : '신천지역'의 상업지역중 이면도로에서 차량출입이 불가한 간선변 필지에 한함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불허)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캠핑 및 베틱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은 '신천지역'의 상업지역 중 이면도로에서 차량출입이 불가한 간선변 필지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포함)	상업지역 (간선변)
B	•단독주택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위락시설(관광호텔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제외) •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제외,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위락시설은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상업지역 (이면부)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C	•단독주택 -단, 준주거지역에 불허,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허용 •공동주택 -단, 준주거지역에 불허(복합용도중 비주거용도가 전체면적 30%이상인 경우는 제외),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복합용도 포함)허용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공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 1.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허용 2. 준주거지역은 비주거용도가 용적률의 10% 이상인 주거복합건물인 경우 허용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자 게임장 운영업 중 성인오락실(전자오락)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오락장 운영업 중 전화방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 성인용품 소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 지역

*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 층	1층	전 층	1층	
a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 제외)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소로 3-37 도로변('새마을시장' 가로변) 시장 상가기능 유지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방화장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개방 화장실	상업 지역
b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소로 3-37도로변('새마을시장' 가로변) 시장 상가기능 유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이와 유사한 것	-	주거 지역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비 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60%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이하	

2) 용적률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¹⁾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250%이하	-	25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	600%이하	8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제2종(7층,12층)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²⁾	200%이하	230%이하	250%이하	200%이하	23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²⁾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주2)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적용

■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

주택연면적비율(%)	허용용적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0이상~70미만	600%이하
50이상~60미만	650%이하
40이상~50미만	700%이하
30이상~40미만	750%이하
20이상~30미만	800%이하
20미만	800%이하

* 관련 법령 및 조례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름

3) 높이계획

위 치			최고높이		비고
			기 정	변 경	
간선변	일반상업지역		100m이하	100m이하	-
	용도지역 상향시	준주거지역	80m이하	80m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존치시	25m이상 도로변	도로사선제한	50m이하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50m이하	50m이하	-
	용도지역 상향시	준주거지역 (기상향지 포함)	35m이하	35m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m이하	25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존치시	20m 도로변	도로사선제한	25m이하	새마을주택지 별도적용
		10m 도로변		20m이하	
		6m이하 도로변		15m이하	

- * 높이적용을 달리 받는 필지간의 공동개발의 경우 도로위계가 높은 필지의 최고높이 적용
- * 간선도로의 전면부와 이면부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선 이면부 높이는 동일 용도지역 및 접도조건에 높이계획을 따름
- 상업지역 간선 이면부 : 50m / 준주거지역 간선 이면부 : 35m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 이면부 : 15m
-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간선전면부와 이면부간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간선전면부의 최고높이 40m
- * 새마을주택지(B6-2~9) 공동개발시 최고높이 별도 적용
- 10m미만 도로변의 단독개발시 최고높이 : 12m이하
- 10m미만 도로변의 2~3필지 공동개발시 또는 대지규모 200㎡이상 400㎡미만 개발시 최고높이 : 15m이하
- 10m이상 도로에 면하거나 4필지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대지규모 400㎡이상 개발시 최고높이 : 20m이하
(양측 도로변 필지수가 2필지 이상 차이 발생시 최고높이 12m이하)
- * 접도조건에 의한 최고높이 적용시 도로폭은 확폭이전 폭원 적용

다.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지정선	•건축물 외벽면의 1층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1이상 접해야 함 -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 3~5m	•건축물 외벽면의 1층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1이상 접해야 함 - 올림픽로 : 3m	결정도 참조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1~3m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1~3m	결정도 참조
형태	1층부	•간선변은 전면공지내 주차가 가능한 1층부 건축형태 규제	•간선변은 전면공지내 주차가 가능한 1층부 건축형태 규제	
	통경 공간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 : 5층 이상의 장변길이 ≤ 50m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 : 5층 이상의 장변길이 ≤ 50m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제 어 기 준		비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쌔지형공지 공개공지	•주요 보행결절점에 지정 (19개소) ※ 전면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주요 보행결절점에 지정 (18개소) ※ 전면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1~6m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1~6m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보행 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8개소)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9개소)	결정도 참조
	보차혼용 통로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3개소)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4개소)	결정도 참조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불허 •청소년 이벤트거리' 및 주요 이면도로에서 대지 전면부의 차량출입은 불허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불허하 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범위 허용	결정도 참조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2개소 •주차출입구 7개소	•공동주차출입구 6개소 •주차출입구 4개소	결정도 참조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옥상녹화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2013.5)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변경 없음
생태면적률	•건축물의 신축시 '환경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5.12)'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2007.12.18.) 준수	-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 2004-158호)” 기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2008.3)”을 준수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 2013-81·82호)” 기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2008.3)”을 준수	-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변경 없음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자부 고시 제2007-52)'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9)'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조명	•상업지역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옥외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의 경우에도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상업지역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옥외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의 경우에도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변경 없음

4.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에 대한 계획기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 상향 가능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위 치		B1-1, B1-2, B2-7, B2-8, B2-9, B2-10, B2-11, B4-1, B4-2, B4-3, B4-4, B5-1, B5-2, B5-3, B5-4, B5-5, B5-6, B5-7, B6-1, B7-12	B1-3, B1-4, B4-5, B4-6, B4-7, B4-8, B4-9, B4-10, B4-11, B5-8, B5-9, B5-10, B5-11, B5-12, B5-13, B7-1, B7-2, B7-3, B7-4, B7-5, B7-6, B7-7, B7-8, B7-9, B7-10, B7-11	
용도지역	상향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후	•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시설계획		• 도로, Open space, 주차장 등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부채납(10%이상)	• 도로, Open space, 주차장 등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부채납(10%이상)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 C	
		권장용도	• 기정 : 권장용도 분류표상 a • 변경 : 권장용도 분류표상 b	분류번호 변경
	건폐율		• 60%이하	• 5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이하	• 200%이하
		허용용적률	• 350%이하	• 230%이하
		상한용적률	• 400%이하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α 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250%이하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 - α 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최고높이	• 간선변 : 80m, 이면부 : 35m	• 이면부 : 25m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 3m, 이면부 : 2m	• 도로변 : 2m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및 주요 이면도로에서 차량출입 불허	-	
최소개발규모		• $1,500\text{㎡} \leq \text{개발면적} \leq \text{가구}$	• $1,500\text{㎡} \leq \text{개발면적} \leq \text{가구}$	

- *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개발규모가 1,500㎡ 이상 개발하는 대지에 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을 따르며 향후 기존 변경시 변경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을 만족해야 함
- *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1)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획지계획 공동개발	획지계획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 α	•3필지 : $\alpha=0.2$ •4필지이상 : $\alpha=0.3$ (국공유지는 필지계산에서 제외)
건축물용도	권장 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 건축면적)×0.2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시
		1층		기준용적률×0.1	
		꼭대기층		기준용적률×0.1	•꼭대기층 권장용도 중 1개 이상의 용도를 설 치시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피로티구조 $\alpha=0.6$ •침상형구조 $\alpha=1$ •개방형구조 $\alpha=1.2$ •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쌈지형 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α	•피로티구조 $\alpha=0.6$ •침상형구조 $\alpha=1$ •개방형구조 $\alpha=1.2$
	건축 한계선 건축 지정선	전면 공지	-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α	•간선변가구 $\alpha=1.2$ •이면부가구 $\alpha=2.0$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2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2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지하철관련		준수시	기준용적률×0.1	•지하철입구,연결통로의 건물내 또는 대지내 설치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건축물 시공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1)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으로서 기준용적률 0.05	
	중수도시설 설치2)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 우는 제외
	빗물이용시설2)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사 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부담
	에너지 절약	1등급	준수시	기준용적률×0.08	•에너지 절감율 : 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85점 이상
		2등급		기준용적률×0.05	•에너지 절감율 : 22.5~33.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 74~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 : 75~85점 이상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α)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 란 공공시설제공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 주1)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됨
- * 주2) 대지면적 2,000㎡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한함
- * 조성 및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 건축시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2)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권장·지정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의 해당면적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④ 구분지상권 제공이란 건축물내 일부 공간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용범위 등 대하여는 입안권자 등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⑤ 최대개발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해당 위원회(자치구 포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⑥ 미관지구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
- ⑦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한다.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전체 인센티브의 30% 이상) - 공통사항

항목	세분	세분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 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준용 ●서울시, 송파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대상은 의무등급 이상 등급 만족시 등급 별 적용요율의 차이값 만 적용	
		우수(그린 2등급)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효율 2등급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신재생에너지 2등급	기준용적률 × 0.10			
		신재생에너지 3등급	기준용적률 × 0.08			
		신재생에너지 4등급	기준용적률 × 0.06			
		신재생에너지 5등급	기준용적률 × 0.04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지하구조물 미설치, 자연토양 및 식생 가능 시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0.05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구 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기준/허용 용적률	비 고
유형1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800	신천지역
유형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600/800	신천지역
유형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간선/이면부	250/350	용도지역 상향지역
유형4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이면부	250/250	신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간선/이면부	250/350	용도지역 상향되는 경우
유형5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200/200	신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200/230	용도지역 상향되는 경우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

① 유형1 : 간선부 일반상업지역(기준 600 / 허용 80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1, \square$ 3필지 : $\alpha=0.15, \square$ 4필지이상 : $\alpha=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1.0, \square$ 침상형 : $\alpha=1.2$, 개방형 : $\alpha=1.5$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5$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text{연면적}) \times 0.5$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연면적}) \times 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할 경우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text{연면적}) \times 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 $\times 0.08$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라 주 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 $\times 0.04$	

② 유형2 : 이면부 일반상업지역(기준 600 / 허용 80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1, 0.00$ 3필지 : $\alpha=0.2$, 4필지이상 : $\alpha=0.3$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1.0, 0.00$ 침상형 : $\alpha=1.5$, 개방형 : $\alpha=2.0$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text{연면적}) \times 0.5$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특정층(꼭대기층)개 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연면적}) \times 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text{연면적}) \times 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 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 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 $\times 0.08$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 라 주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 $\times 0.04$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③ 유형3 : 준주거지역(기준 250 / 허용 35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1, 0.00$ 3필지 : $\alpha=0.15$, 4필지이상 : $\alpha=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1.0, 0.00$ 침상형 : $\alpha=1.5$, 개방형 : $\alpha=2.0$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text{연면적}) \times 0.5$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특정층(꼭대기층)개 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연면적}) \times 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text{연면적}) \times 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 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 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 $\times 0.08$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 라 주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 $\times 0.04$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 송파구 잠실동 194번지 필지에 한하여 권장용도 적용하지 않음

- 1층부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소매점)의 규모는 주변지역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소매점) 규모와 조화되는 적정규모 설치하
여야 함

④ 유형4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 250 / 허용 25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규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제	
	건축한계선	규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규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규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 용도지역 변경시(유형4)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준 250 / 허용 35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 $\alpha=0.1, \square$ 3필지 : $\alpha=0.15$, 4필지이상 : $\alpha=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 $\alpha=1.0, \square$ 침상형 : $\alpha=1.5, \square$
	쌘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개방형 : $\alpha=2.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 / \text{연면적}) \times 0.5$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연면적}) \times 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 \text{연면적}) \times 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 $\times 0.08$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에 따라 주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 $\times 0.04$	

⑤ 유형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지역 포함)(기준 200 / 허용 20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규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제	
	건축한계선	규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규제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규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 용도지역 변경시(유형5) : 제2종(7층, 12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00 / 허용 230)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3필지 : $\alpha=0.05$, 4필지이상 : $\alpha=0.08$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피로티: $\alpha=1.0$, 침상형: $\alpha=1.5$, 개방형: $\alpha=2.0$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의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0.5$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제외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text{연면적}) \times 0.3$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text{연면적}) \times 0.1$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1$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주차계획	공동주차도로	기준용적률 $\times 0.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위치를 결정한 경우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text{연면적}) \times 1$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 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 정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버스 주·정차시설 (25인승기준)	객실 300실 미만 주차공간 확보	기준용적률 $\times 0.05$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에 따 라 주차공간 의무확보 사항은 인센티브 제외 - 주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300실 이상 / 36인승 기준) - 일시적 정차공간 의무확보 (객실 200실~300실미만/ 36인승 기준) ●주차공간, 일시적 정차공간 인센티브 중복적용 가능
	객실 200실 미만 일시적 정차공간	기준용적률 $\times 0.03$	

3) 상한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완 화 조 건	산 정 방 식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기준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또는 [허용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 확보시 (용도지역 변경(상향)없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1 + {공개공지 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times$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용적률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확보 후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등 지장물 설치시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times$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의 절반 $\div$ 대지면적) 이내

* 용적률 및 높이완화 중복 불가

나. 최고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완 화 조 건	산 정 방 식
최고높이 완화	기부채납시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 확보시 (용도지역 변경(상향)없는 일반주거지역)	●높이의 제한 완화 : 높이제한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1 + {공개공지 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 대 지면적] × 해당지역의 높이제한 기준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확보 후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등 지장물 설치시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 하는 공개공지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용적을 및 높이완화 중복 불가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변 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획지는 제외)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원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 설, 폐지 포함)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결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5. 구역과 연결한 대지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	6. 구역 내 공동개발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7.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	8.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6.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9. 대지내 · 외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7.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변에서의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 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공동개발 변경 또는 대지분할에 의한 경우)	-
8.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10.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11. 법령이나 지침의 제 ·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V.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98,442	—	198,44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63	—	2,063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45,607	—	45,607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546	—	100,546	50.7	
	준주거지역	50,226	—	50,226	25.3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송파대로)	일반 미관지구	석촌동~장지동	110,400 (21,066)	4,600 (1,768)	양측12m	서고46호 (96.3.6)	
기정	②	미관지구 (백제고분로)	중심지 미관지구	석촌동 286-9~ 방이동 51-11	32,400 (9,279)	1,350 (773)	양측12m	서고121호 (85.2.26)	

* 면적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0	5,760	79,250	6	1,861	72,496	2	315	4,278	42	3,498	17,736
광로	1	1,065	53,203	1	1,065	53,203	—	—	—	—	—	—
대로	2	588	—	2	502	15,260	—	—	—	—	—	—
중로	1	294	4,110	—	—	—	1	294	4,110	—	—	—
소로	46	3,813	21,937	3	294	4,033	1	21	168	42	3,498	17,736

*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29	50	주간선 도로	7,300 (1,065)	가락동잠실대교 남단(송파동15)	장지동596-1 (송파동97-39)	일반 도로	-	건고198호 (71.4.7)	송파 대로
기정	대로	1	32	35 (17.5)	보조 간선	4,050 (132)	송파동광20 (송파동58-7)	방이동대2-33 (송파동58-1)	일반 도로	-	건고331호 (81.8.29)	오금로
기정	대로	1	33	35	보조 간선	3,900 (370)	잠실동대1-21 (석촌동286-9)	송파동 23 (송파동84)	일반 도로	-	건고64호 (78.3.29)	백 제 고분로
기정	중로	2	131	15 (7.5~15)	보조 간선	3,000 (294)	삼전동광19 (석촌동295-11)	방이동광1-23 (송파동94-40)	일반 도로	-	건고324호 (74.9.24)	가락로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413 (84)	석촌동 174-3	석촌동 183 (석촌동 175)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7	10 (5~10)	국지 도로	381 (163)	석촌동286-9	석촌동295-11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8	10 (5)	국지 도로	83 (34)	석촌동297-32	석촌동296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1	9	10	국지 도로	299 (97)	송파동113-1	송파동108-9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02 (21)	석촌동296-18	석촌동297-32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4	6 (3)	국지 도로	182 (112)	석촌동181-4	석촌동183-3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5	6 (3)	국지 도로	136 (70)	석촌동184-7	석촌동179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6	6 (3)	국지 도로	103 (15)	석촌동179-4	석촌동184-7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7	6 (3)	국지 도로	104 (19)	석촌동177-2	석촌동 177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8	6 (3)	국지 도로	140 (56)	석촌동176	석촌동174-15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142 (142)	석촌동174-10	석촌동175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09 (109)	석촌동174	석촌동174-10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55 (155)	석촌동287-4	석촌동286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16 (116)	석촌동288-19	석촌동288-6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3	6 (3)	국지 도로	159 (59)	석촌동288-7	석촌동290-7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4	6 (3)	국지 도로	120 (28)	석촌동290-2	석촌동291-15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5	6 (3)	국지 도로	161 (69)	석촌동291-5	석촌동290-6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	6 (3)	국지 도로	124 (10)	석촌동290-6	석촌동293-3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7	6 (3)	국지 도로	169 (169)	석촌동294-5	석촌동294-4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128 (128)	석촌동295-4	석촌동295-12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19	6 (3)	국지 도로	312 (312)	석촌동297-17	석촌동297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97 (68)	송파동97-39	송파동99-2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1	6 (3)	국지 도로	206 (26)	송파동97-43	송파동98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2	4	국지 도로	50 (50)	송파동97-37	송파동97-29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3	4	국지 도로	377 (48)	송파동97-31	송파동97-53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4	6 (3)	국지 도로	146 (42)	송파동97-1	송파동98-22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45 (45)	송파동97-4	송파동97-6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6	6 (3~6)	국지 도로	135 (110)	송파동96-7	송파동95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7	4 (2)	국지 도로	73 (73)	송파동95-36	송파동95-42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8	6 (3)	국지 도로	139 (49)	송파동95-40	송파동95-6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29	6	국지 도로	126 (20)	송파동96	송파동95-5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0	6 (3)	국지 도로	100 (100)	송파동89-9	송파동89-3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1	6 (3)	국지 도로	172 (18)	송파동89-3	송파동88-15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2	6	국지 도로	200 (43)	송파동89	송파동87-21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165 (165)	송파동87-20	송파동87-18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4	6	국지 도로	162 (162)	송파동85-5	송파동85-11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86 (186)	송파동85	송파동85-5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166 (166)	송파동18-4	송파동18-17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7	6	국지 도로	146 (146)	송파동19-2	송파동17-10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143 (143)	송파동17-3	송파동19-1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39	6 (3)	국지 도로	174 (56)	송파동16-7	송파동16-1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40	6 (3)	국지 도로	136 (20)	송파동13-4	송파동15-6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41	6 (3)	국지 도로	167 (58)	송파동13-16	송파동13-18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42	6 (3)	국지 도로	203 (88)	송파동11-2	송파동10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43	6 (3)	국지 도로	121 (24)	송파동15	송파동10-1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기정	소로	3	44	6 (3)	국지 도로	118 (23)	송파동8-3	송파동7-8	일반 도로	-	서고150호 (' 12.6.7)	

* 폭원, 연장, 기점 및 종점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철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또는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경과지			
기정	①	고속철도	고속철도 (8호선본선)	송파구 방이동 35	송파구 장지동 596	-	L=6,500	건고399호 (91.7.15)	
기정	②	고속철도	8호선 석촌 정차장	송파구 송파동 19	-	-	6,978	서고94-104호 (94.3.30)	
기정	③	고속철도	8호선 송파 정차장	송파구 가락동 479	-	-	5,295	서고94-104호 (94.3.30)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송파 2동 97번지 일대	103.8	-		서고150호 (' 12.6.7)	-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간선부	준주거지역	3,0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0㎡ 이하
이면부		1,000㎡ 이하

* 기존 최대개발규모 이상으로 단독 및 공동개발된 대지는 제외

나.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없음

■ 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2종일반주거지역	1-2	4,436.7
3종일반주거지역	2-2	4,992.9
	2-3	1,059.3 (석촌동 180-3 :제2종일반주거지역)
	2-4	527.2
	2-5	766.2
	2-6	3,292.0
	2-7	6,600.4
	2-8	572.1
	2-9	874.8
	2-10	412.3
	2-11	7,551.7
3종일반주거지역	2-12	4,583.1
	2-13	3,523.6
	2-14	1,171.6
	2-15	2,596.8
	2-16	2,182.3
	2-17	3,031.9
	2-18	407.1
	2-19	5,069.7
	2-20	631.5
	2-21	544.5
	2-22	388.2
준주거지역	3-5	5,315.2
	3-6	3,534.2
	3-7	4,615.2
	3-8	4,259.8
	3-9	4,505.4
	3-10	4,709.2
	3-11	4,956.6
	3-12	4,417.9
	3-13	3,978.0
	3-14	3,979.7

■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1-2	석촌동 294-2, -16	352.9	공동개발 (지정)	
	석촌동 294-7, -17	504.3	공동개발 (지정)	
2-5	석촌동 176-3, -4	766.2	공동개발 (지정)	송파구고시 제2011-32호 (2011. 7. 7)
2-6	석촌동 290-3, -4	794.3	공동개발 (지정)	
	석촌동 290-5, -6	596.7	공동개발 (지정)	
2-7	석촌동 295-8, -15	913.2	공동개발 (지정)	
2-11	석촌동 296, 296-1	427.4	공동개발 (지정)	
	석촌동 296-2, -20	698.6	공동개발 (지정)	
	석촌동 296-4, -5	1,399.9	공동개발 (지정)	
2-12	송파동 97-35, -36	676.4	공동개발 (지정)	
2-13	송파동 97-8, -9	302.3	공동개발 (지정)	
	송파동 97-17, -18, -59	224.6	공동개발 (지정)	
	송파동 97-14 송파동 97-17, -18, -59	547.5	맞벽건축	
2-14	송파동 97-2, -3, -4, -5	398.4	공동개발 (지정)	
2-17	송파동 89-1, -10	609.3	맞벽건축	
	송파동 89-2, -3	584.2	맞벽건축	
3-5	석촌동 174-1, -5, -6, -16	1,257.2	공동개발 (지정)	
	석촌동 174-2, -7	1,863.3	공동개발 (지정)	
	석촌동 174-3, -4	668.7	단독개발	
3-6	석촌동 175-10, -11	657.2	공동개발 (지정)	
3-7	석촌동 286-7, -8	1,130.1	공동개발 (지정)	
3-8	석촌동 287-15, -16	388.5	공동개발 (권장)	
3-9	송파동 84-2, -3	676.1	공동개발 (지정)	
3-10	송파동 85, 85-1	603.3	공동개발 (지정)	
3-11	송파동 86-1, -12	340.7	공동개발 (지정)	
	송파동 86-20, -21	396.0	단독개발	
3-13	송파동 18-17, -19	467.9	공동개발 (권장)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1) 건축물의 불허용도 : 변경없음

구 분	전층불허용도
A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주1)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주2)
B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주2)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시설

* 주1)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가 건축물의 2개층 이상이고, 용적률의 15%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주2) 외부벽 등과 같은 건축구조물로 소음 및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축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함.

* 공동주택(주거복합 포함) 건립시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권장용도 : 변경없음

구 분	전층 권장용도
1	준주거지역 간선부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 꼭대기층(주1)(10층 이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망대
2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3	이면부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지상층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보며,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전체연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전체 연면적의 20%이상이 되어야 함. 이 경우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은 제외하고 지하층 및 공용면적은 포함하여 산정.

* 꼭대기층 권장용도를 꼭대기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꼭대기층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 (단, 용적률 완화 적용은 전망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주1) 꼭대기층 권장용도는 석촌호수길 및 석촌역 주변 가구 내 주변조망이 양호한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함.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없음

1) 건폐율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비 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60%이하

*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는 건축허가권자가 속한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해당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용적률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가구번호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주1)
			일반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1-2 (석촌동 180-3)	180%	20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2~2-22	210%	25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준주거지역	3-5~3-14	300%	360% 이하	42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주1) 상한용적률은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인정된 시설(지정된 경우는 제외)에 한함
 * 준주거지역(3-5~3-14)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10% 이상 계획
 ※ 용적률 10% 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준주거지역(3-5~3-14)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하는 기준과는 별도로 비주거 용도비율을 만족하여야 함

- * 주2) 준주거지역 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의거하여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관광숙박시설 적용 허용용적률)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다만, 기준용적률로부터 일반건축물 허용용적률까지의 용적률 완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용적률 완화세부기준

- 건축물 신축시 : 최대 완화범위에서 용적률 적용
 ○ 건축물 증축시 : 증축 면적중 객실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
 - 객실 연면적 비율 70% 이상 : 최대 완화범위의 100% 적용
 - 객실 연면적 비율 50% 이상 70% 미만 : 최대 완화범위의 50% 적용
 - 객실 연면적 비율 50% 미만 : 최대 완화범위의 25% 적용
 ※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증축시에는 최대범위 완화
 ※ 객실 연면적 : 용적률에 산정되는 증축부분의 건축 연면적 중에서 객실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 (복도, 기계실, 화장실 등 공용면적 합)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사항

- 석촌동 1-7 (로사나 관광호텔) : 허용용적률 478.5% (서울시 고시 제2012-29호(2012.2.2.)
 *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는 건축허가권자가 속한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해당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장기전세주택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름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시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2.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3)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 공통사항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에서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준수한 의무형 인센티브량만 인정한다. 반면, 의무형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유도형과 규제형의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꼭대기층 권장의 경우는 꼭대기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구분지상권 제공이란 건축물내 일부 공간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용범위 등 대하여는 입안권자 등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7. 공동개발(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8.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제공면적으로 산입한다.
9. 미관지구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
10.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 할 수 없다.
11. 의무형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공통사항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친환경적 계획요소	자연지반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5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령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되도록 설치
	신·재생 에너지 시설 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		구분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8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05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구 분	공간특성	유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계획방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면부	Y1	180%	200% 이하	•건축한계선 확대와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환경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간선부, 이면부	Y2	210%	250% 이하	•건축물의 공동개발 유도 및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준주거지역	석촌역 주변 간선부	Y4	300%	360% 이하	•석촌역 주변 지하철출입구를 대지 내 설치를 유도하여 보행공간 및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의 공동개발 유도 및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준주거지역	석촌역 주변 이면부	Y5	300%	360% 이하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설치 유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인센티브유형 : Y1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2, 석촌동 180-3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180% / 200% 이하
중점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확대와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가로환경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건축면적)×0.2
	공동개발(자율적)		기준용적률×0.1
규제형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유형 : Y2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부,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210% / 250% 이하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공동개발 유도 및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건축면적)×0.2
	공동개발(자율적)		기준용적률×0.1
규제형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유형 : Y4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3-5, 3-7, 3-9, 3-12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석촌역 주변 간선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이하	
중점계획목표		• 석촌역 주변 지하철출입구를 대지 내 설치를 유도하여 보행공간 및 도시경관 개선 • 건축물의 공동개발 유도 및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1.5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1.5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 0.3
		꼭대기층	기준용적률 × 0.1
	도시경관	지하철출입구 등을 건축물 또는 대지 내 설치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 형태	탑상형 건축물	기준용적률 × 0.1
	공동개발(자율적)		기준용적률 × 0.1
규제형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5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유형 : Y5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3-6, 3-8, 3-10, 3-11, 3-13, 3-14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석촌역 주변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이하	
중점계획목표		• 건축물의 공동개발 유도 및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 0.3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기준용적률 × 0.1
규제형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5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다. 건축물의 높이 : 변경없음

1) 높이 : 변경없음

위치	최저	최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간선부	-	-	송파대로 그 외 도로변	60m 이하 50m 이하
간선이면	-	-	30m 이하	30m 이하
이면부	-	25m 이하	30m 이하	30m 이하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 변경없음

1) 건축선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제어기준
건축지정선	간선부	3, 5m
건축한계선	간선부	1, 3, 5~11m
	간선이면	1~2m
	이면부	1~3m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 및 공중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1층부 형태	• 폭 1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50% 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처리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축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폭 1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설치 금지 • 폭 1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을 권장
측면 이격공지의 처리	• 폭 15m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간격이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야간경관조명	• 폭 15m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방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
건축설비의 노출	• 폭 1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탑상형 건축물	• 폭 1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을 권장 • 탑상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장면에 대한 단면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이고,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송파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지하철출입구 이전 가능지	• 지하철역(또는 예정된 곳)과 인접한 대지 또는 지하철출입구 이전가능지가 지정된 대지는 지하철출입구와 환기구, 분전반 등의 지중화 관련시설을 건물 또는 대지 안에 설치 권장
경관 등 기타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답장 설치는 배제하도록 권장한다.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	-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보도부속형과 차도부속형으로 구분되며, 지침에 의해 설치 - 위치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침에 의해 보도형으로 설치
공개공지	-	- 주간선도로변 및 주요보행결절점 등 주요지점에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조성 - 간선부 : 1개소

나. 대지내 · 외 통로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공공보행통로	-	- 접하는 보도 및 연결되는 구간은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단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 - 간선부 : 14개소
공중연결통로	석촌동 174-13 ⇔ 176-3, 4	2개 이상 개별건축된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지상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석촌동 174-13 ⇔ 176-3, 4 : 폭5m이하, 높이5m이하, 지상으로부터 6m이상
보차혼용통로	-	- 접하는 도로 및 연결되는 구간은 단차가 없도록 설치 - 간선부 : 6개소, 이면부 : 3개소

다. 차량동선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의 출입 불허
주차출입구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주차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표시된 지역에 한하여 허용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계 획 내 용	비 고
•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
• 공개공지, 씌지형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 변경	-
•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 구역 내 공동개발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 대지내 · 외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공중연결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VI.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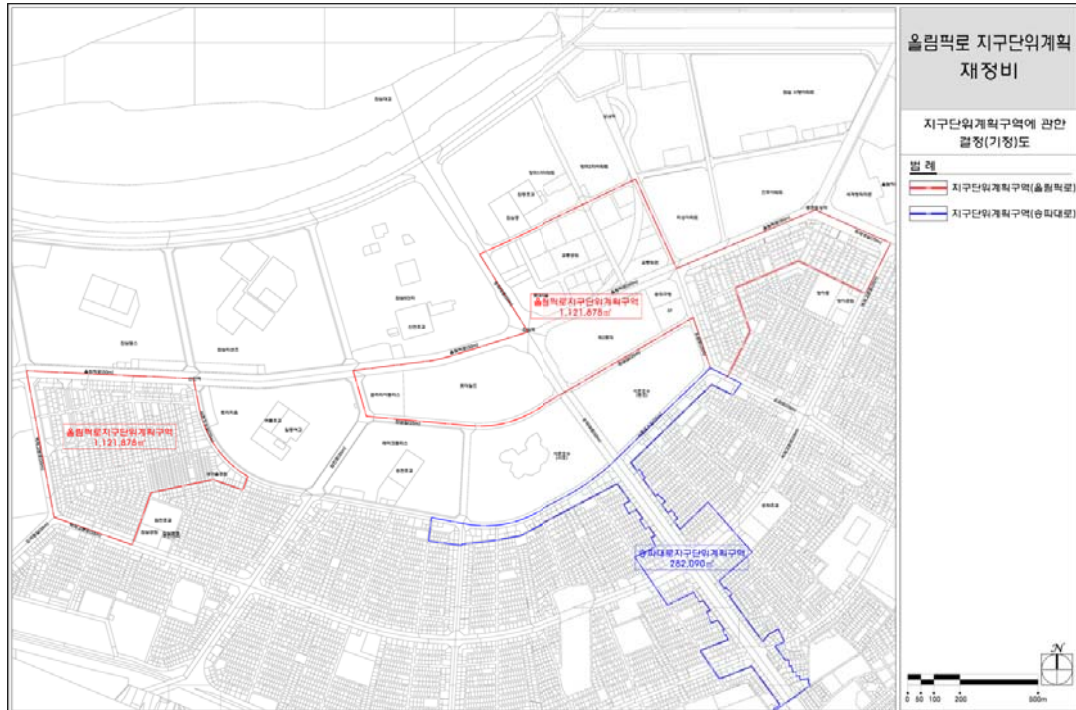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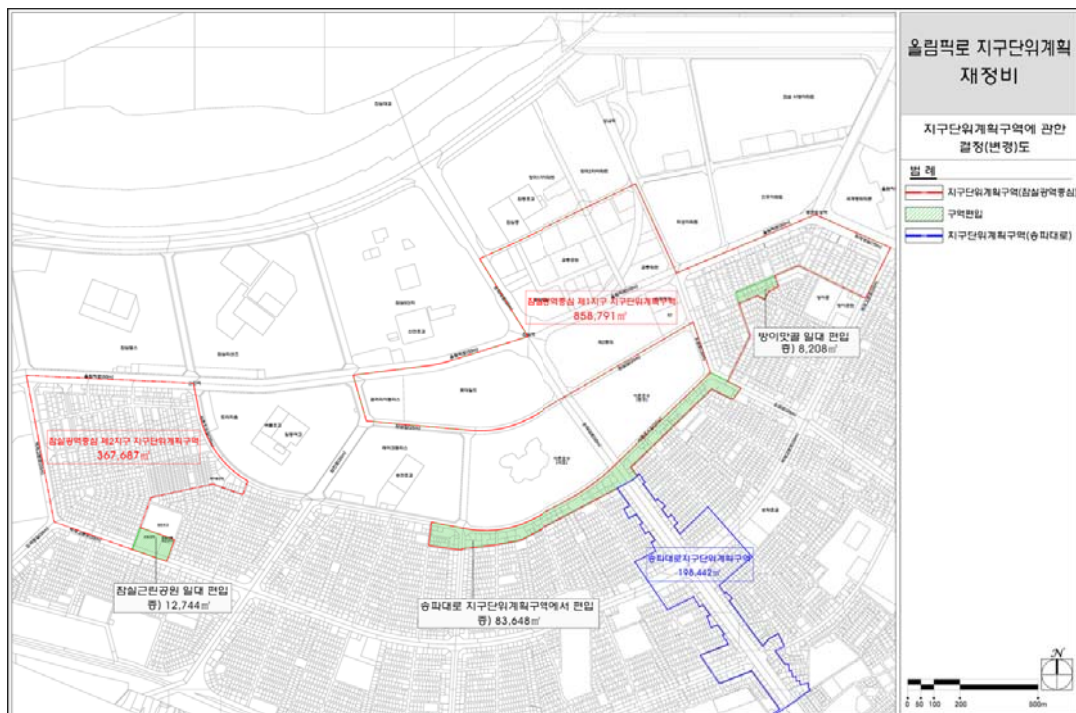
VIII.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9) 및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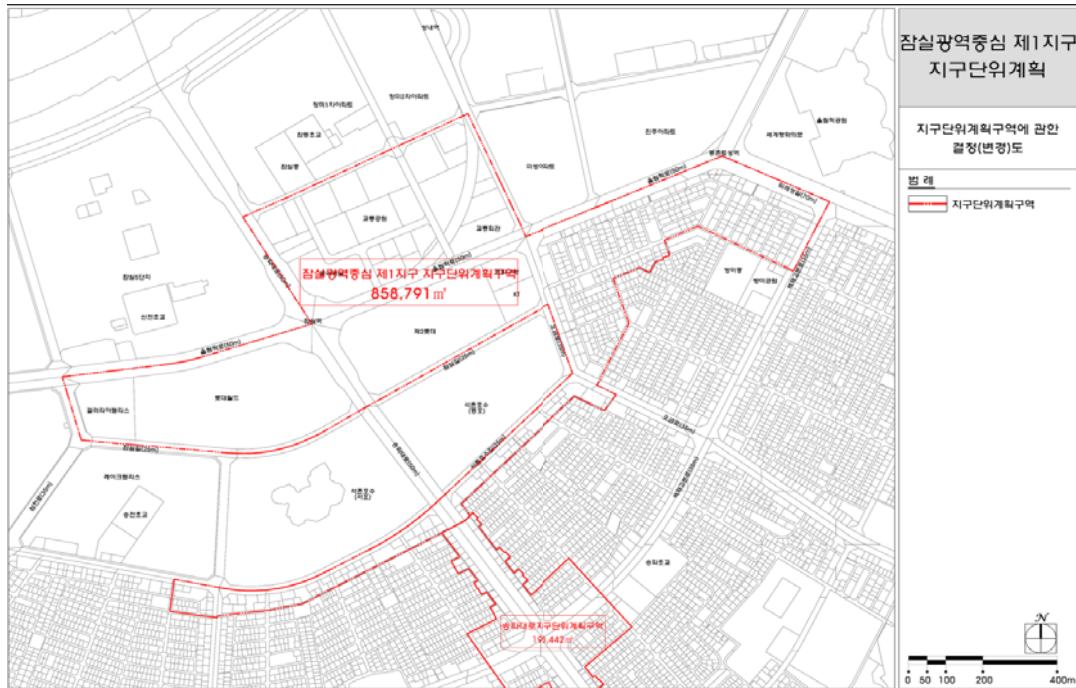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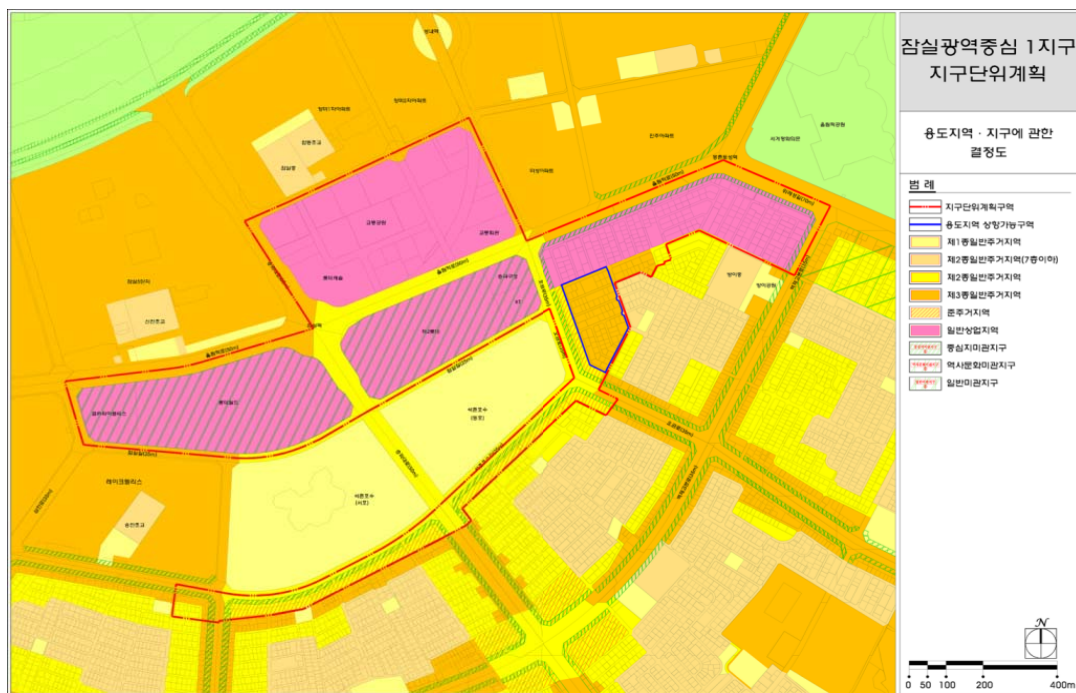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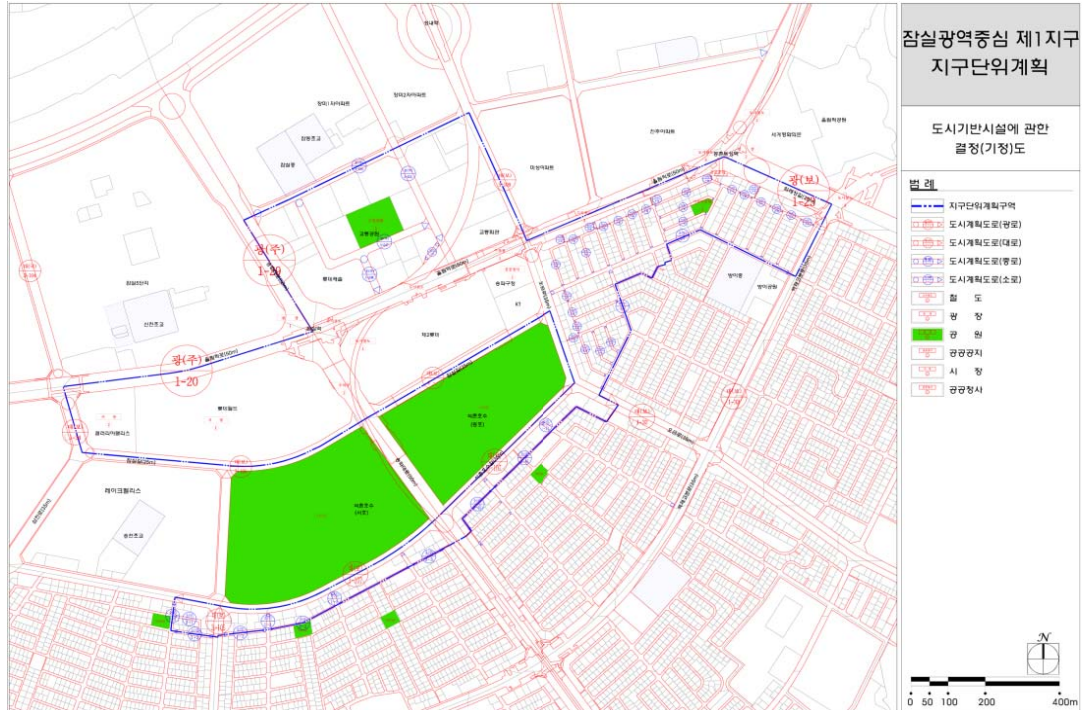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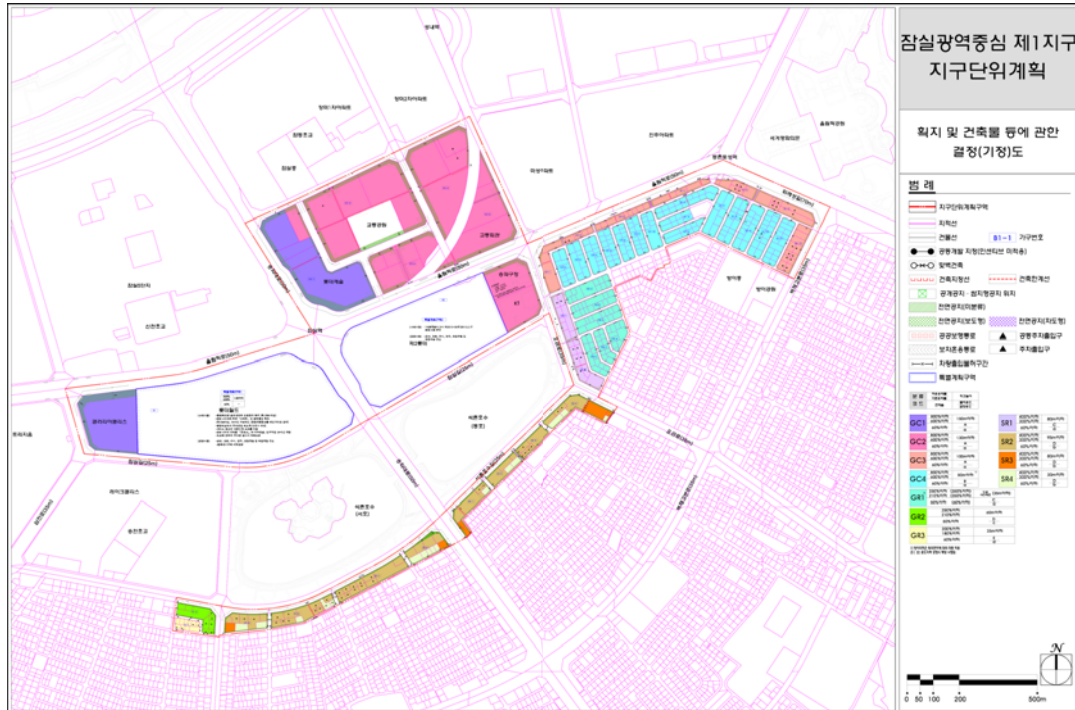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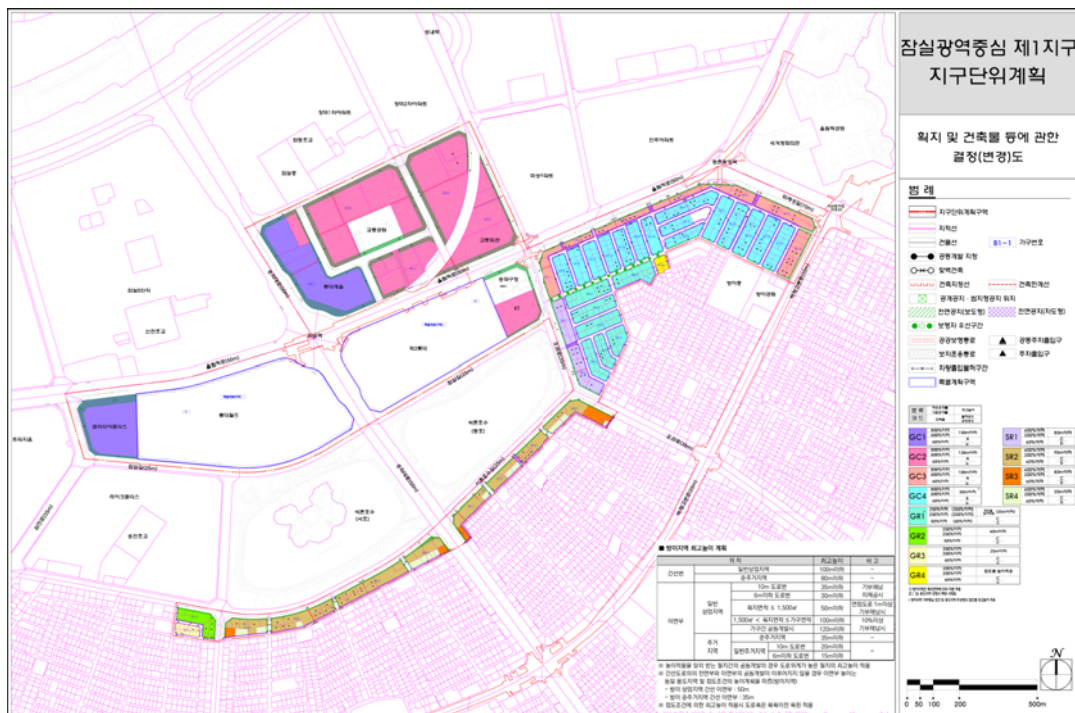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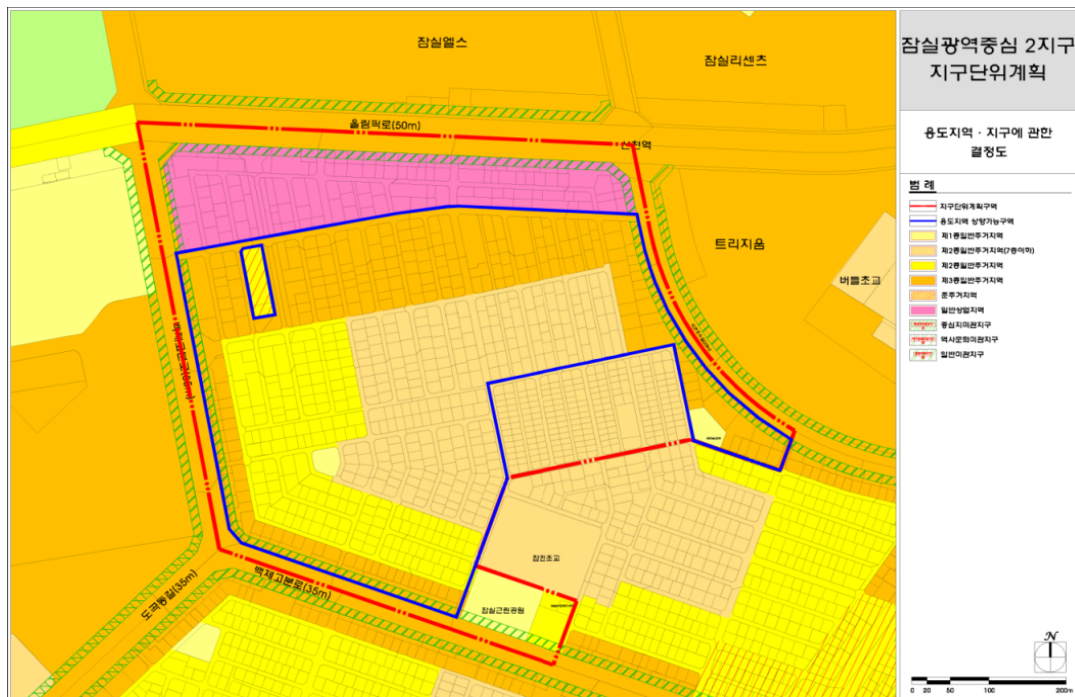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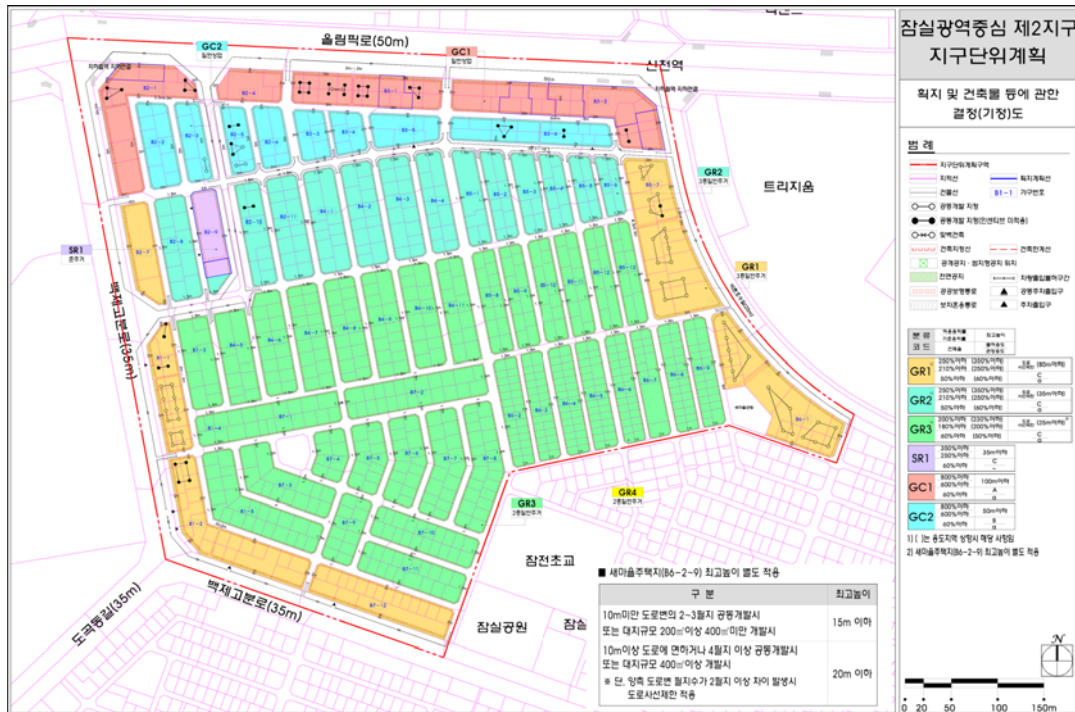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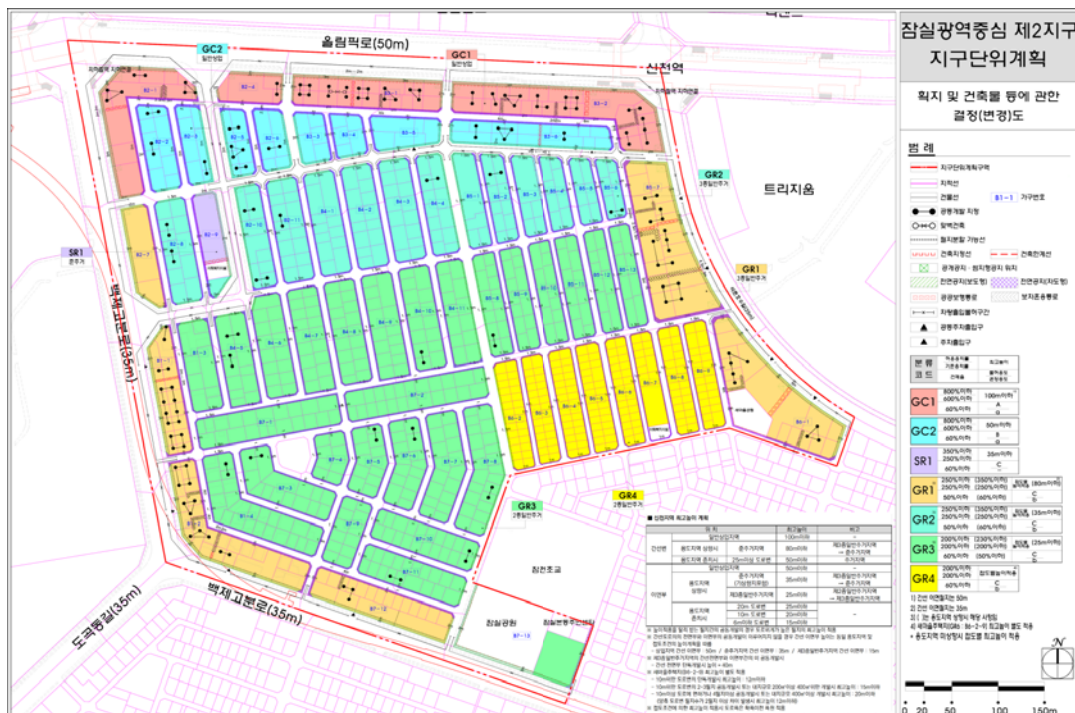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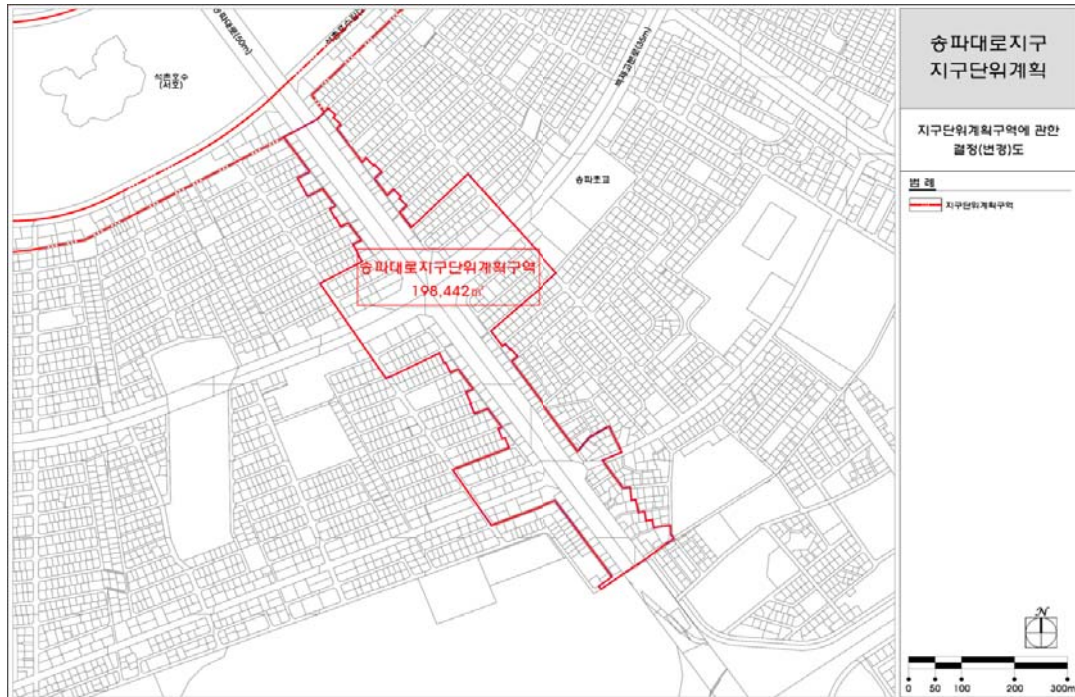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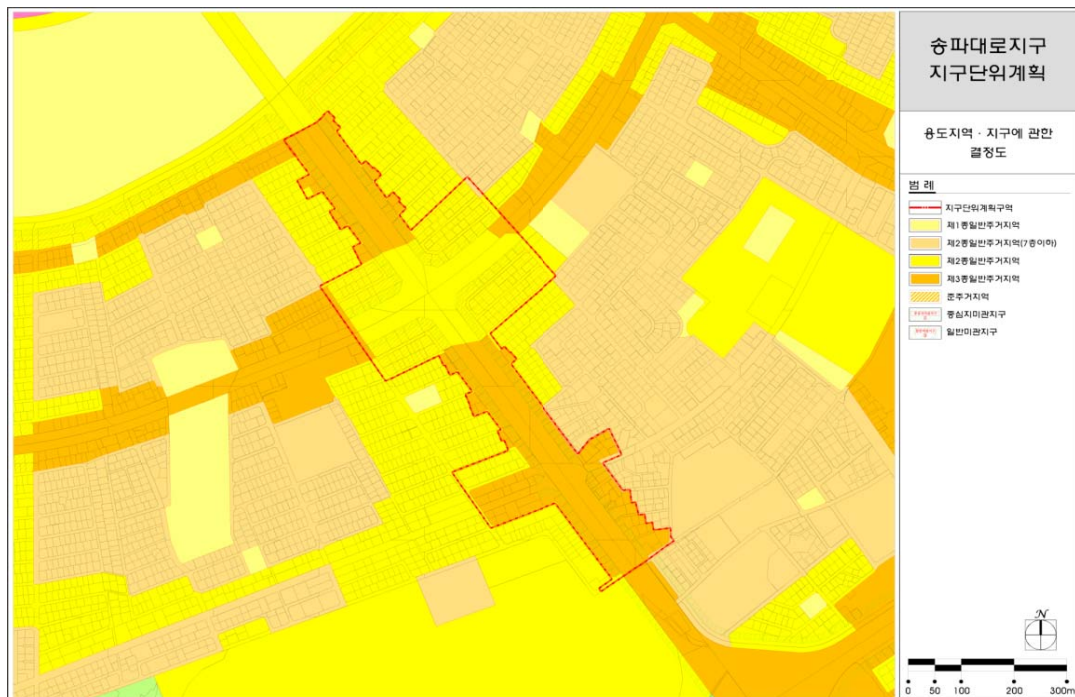


《송파대로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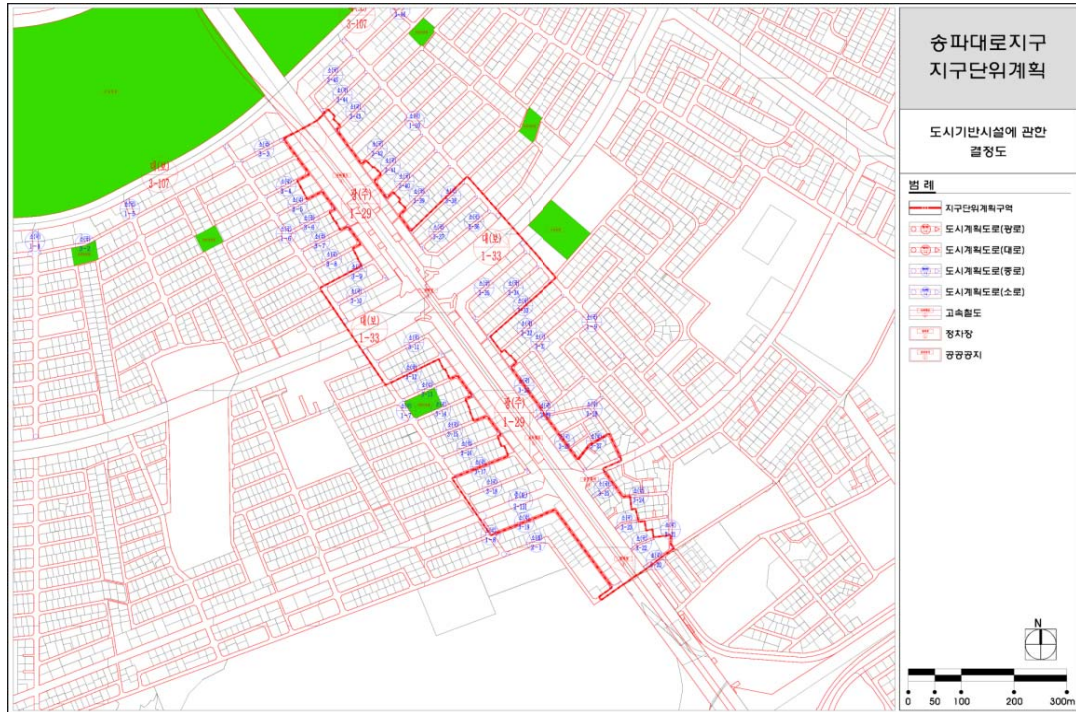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7호

개화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수립에 따른 강서구 방화동 553-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화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개화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강서구 방화동 553-9번지 일대	-	증) 9,678.0	9,678.0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9,678.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708.0	7.3	
	도로	708.0	7.3	
획지	소계	8,970.0	92.7	
	획지	8,970.0	92.7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678.0	-	9,67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678.0	감) 9,678.0	-	-	
	준주거지역	-	증) 9,678.0	9,678.0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①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김포공항 주변일대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29,129,000 (9,678)	서고제120호 1977.04.22	-

※ ()는 대상지 해당사항임

② 시설보호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공항 주변일대	57,931,000 (9,678)	1977.04.22	-

※ ()는 대상지 해당사항임

다.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40	방화동 533-3	방화동 563-16	일반 도로	-	서고 제196호 (' 76.08.16)	
변경	소로	2	1	8~10	국지 도로	340 (112)	방화동 533-3	방화동 559-17	일반 도로	-		일부확폭 (8m→10m)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30	방화동 535-1	방화동 553-6	일반 도로	-	서고 제196호 (' 76.08.16)	
변경	소로	2	3	8~10	국지 도로	230 (87)	방화동 535-1	방화동 553-6	일반 도로	-		일부확폭 (8m→10m)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60	방화동 538-5	방화동 553-10	일반 도로	-	서고 제196호 (' 76.08.16)	
변경	소로	3	4	6~8	국지 도로	160 (114)	방화동 538-5	방화동 553-15	일반 도로	-		일부확폭 (6m→8m)

※ ()는 구역내의 변경되는 도로 연장임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보상후 철거	
신설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9,678.0	획지	8,970.0	강서구 방화동 553-9번지 일대	45	-	-	45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개화산 역세권구역	9,678.0	획지	8,970.0	강서구 방화동 553-9번지 일대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50 이하	기준 200 허용 430 상한 460이하	49m이하 /최고16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298세대(장기전세주택 124세대, 일반분양 174세대), 오피스텔 143호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table><tr><td colspan="2">구분(전용면적)</td><td>합 계</td><td>분양주택</td><td>장기전세주택</td></tr><tr><td colspan="2">합 계</td><td>298</td><td>174</td><td>124</td></tr><tr><td rowspan="3">공동주택</td><td>60㎡이하</td><td>182(61.1%)</td><td>82(47.1%)</td><td>100(80.6%)</td></tr><tr><td>60㎡~85㎡이하</td><td>116(38.9%)</td><td>92(52.9%)</td><td>24(19.4%)</td></tr><tr><td>85㎡초과</td><td>-</td><td>-</td><td>-</td></tr><tr><td colspan="2">오피스텔(52㎡미만)</td><td>143호</td><td>-</td><td>-</td></tr></table>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설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								구분(전용면적)		합 계	분양주택	장기전세주택	합 계		298	174	124	공동주택	60㎡이하	182(61.1%)	82(47.1%)	100(80.6%)	60㎡~85㎡이하	116(38.9%)	92(52.9%)	24(19.4%)	85㎡초과	-	-	-	오피스텔(52㎡미만)		143호	-	-
			구분(전용면적)		합 계	분양주택	장기전세주택																															
			합 계		298	174	124																															
			공동주택	60㎡이하	182(61.1%)	82(47.1%)	100(80.6%)																															
				60㎡~85㎡이하	116(38.9%)	92(52.9%)	24(19.4%)																															
				85㎡초과	-	-	-																															
			오피스텔(52㎡미만)		143호	-	-																															
심의완화 사항			· 사업계획인가시 장기전세주택공급(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및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5가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키지)허용용적률 미부여 · 장기전세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60㎡이하 : 80%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20%이하 ※ 전용면적 60㎡이하가 과반이 되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85㎡초과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격 (북측 소로2-1 구간 건축한계선 제외)																																

3) 용적률(개발가능용적률) 계획

구 분	이 행 조 건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등)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공공시설 환산부지 및 대지지분면적)주1)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 공유지 면적
	9,678.0㎡	8,970.0㎡	708.0㎡ (1,136.13㎡)	7.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기부채납 공공시설 환산부지 및 대지지분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내 국 · 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 공유지 = 708.0㎡ + 1,136.13㎡ - 7.0㎡ - 0 = 1,837.13㎡(구역면적 대비 18.98%)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 430%(패키지 허용용적률 계획 적용)				
	구분		건축계획(안)		
	장기전세주택공급		●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이상 (115%이상) ⇒ 법정:10,315.5㎡(115%이상) < 계획:10,342.8㎡(115.3%)		
	필수 항목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에 적합할 것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로 계획		
		커뮤니티 지원시설	●커뮤니티지원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의 3%이상) ⇒ 주민자치회관 및 작은도서관 등(법정:1,060.5㎡ < 계획:1,776.9㎡)		
		에너지 효율 건축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 평점합계 90점 이상,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친환경 건축물	⇒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인증		
선택 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1%(공동주택)이상, 3%(일반건축물) 이상			
■ 상한용적률 : 500%이하					
정비계획(상한) 용적률 산정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430 × (1 + 1.3 × 1 × 0.2048) = 544.48% ≒ 500%이하 (계획:456.53%)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837.13㎡ / 8,970.0㎡ = 0.2048				

주1)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1,136.13㎡) = 대지지분면적(293.69㎡) + 환산부지면적(842.44㎡)

※ 공공시설계획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환산 부지면적 산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건축허가시 최종 결정됨

4) 공공시설 설치 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운영주체	비고
주민자치 센터	헬스장,공연연습장,강의실, 다목적실,작은도서관 등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면부	1층 599.29㎡ 2층 1,177.62㎡	강서구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3-3-1 (2)에 따라 계획하였으며, 향후 건축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근경, 중경,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유도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저감 방안(세부계획 일부) -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 망설치, 사업대상지내 살수설치,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임	
재난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현황세대수 : 112세대 계획세대수 : 298세대 증가세대수 : 186세대	—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도록 하겠음(현재 사업으로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아.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1)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 장기전세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60㎡이하	60㎡초과	합계	
방화동 553-9번지일대	기준	완화된 용적률의 1/2 10,315.5㎡	사회혼합 (Social Mix)	124	80%내외	20%내외	100%	부속토지 2,151.98㎡
	계획	10,342.8㎡			100 (80.6%)	24 (19.4%)	124 (100%)	

※ 장기전세주택 부속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4호마목 및 주택법 제38조의6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3. 지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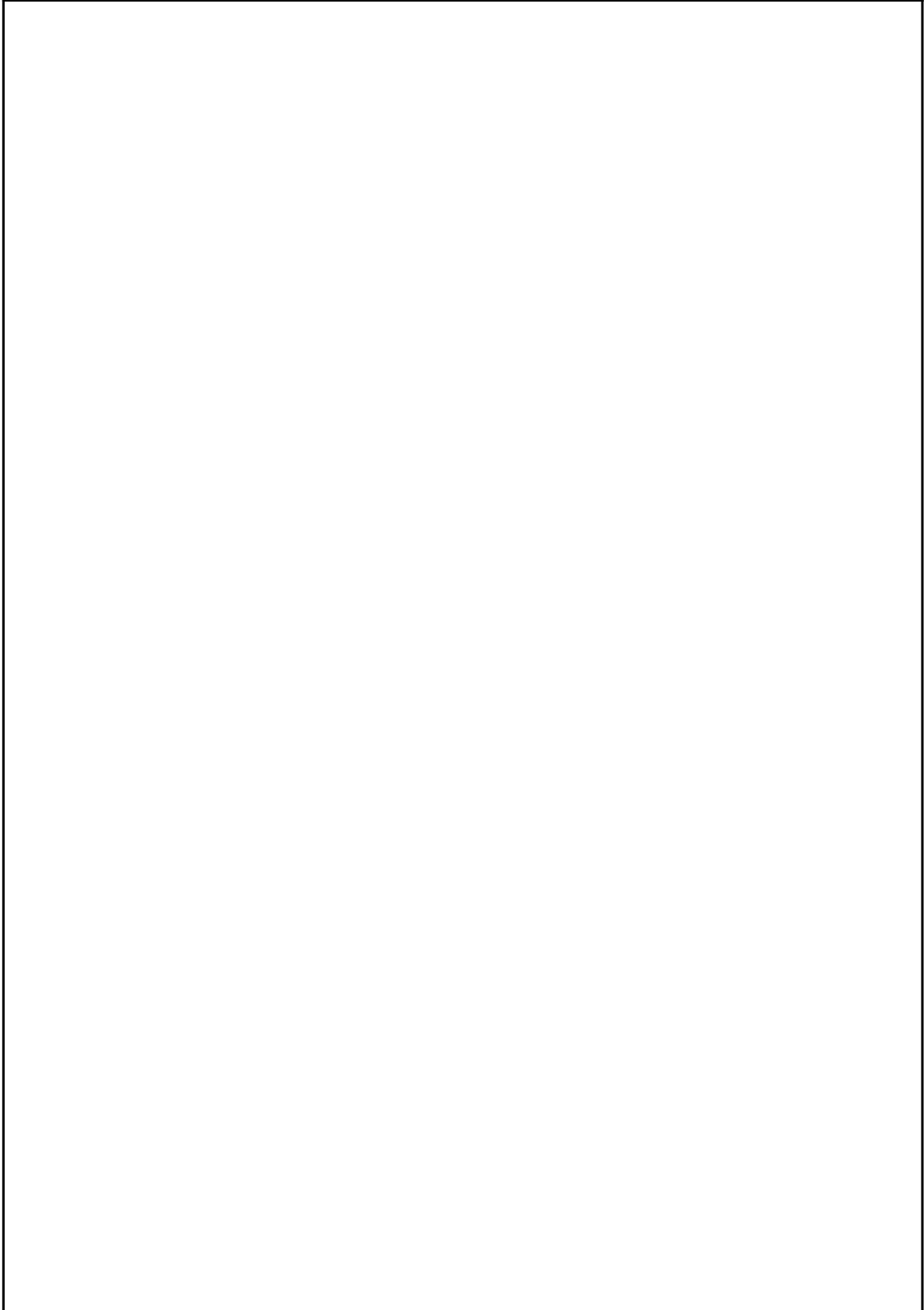
-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으로부터 반경 250m내의 1차 역세권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대상지의 도시기능 회복과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역세권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4.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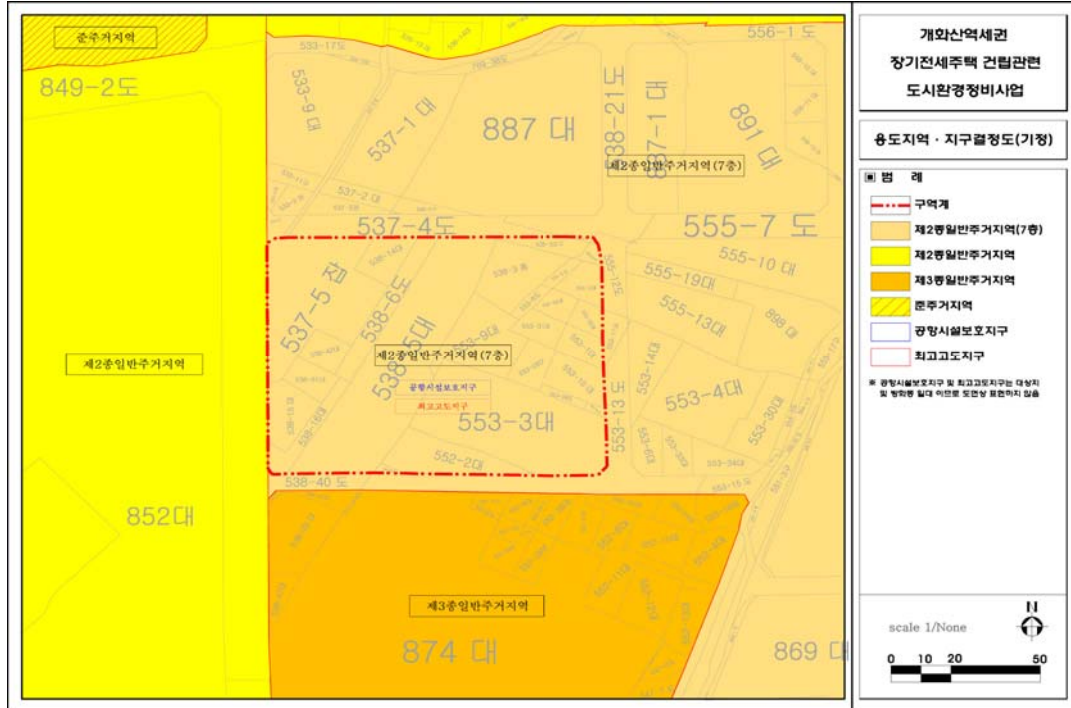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 도서 참조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7),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384)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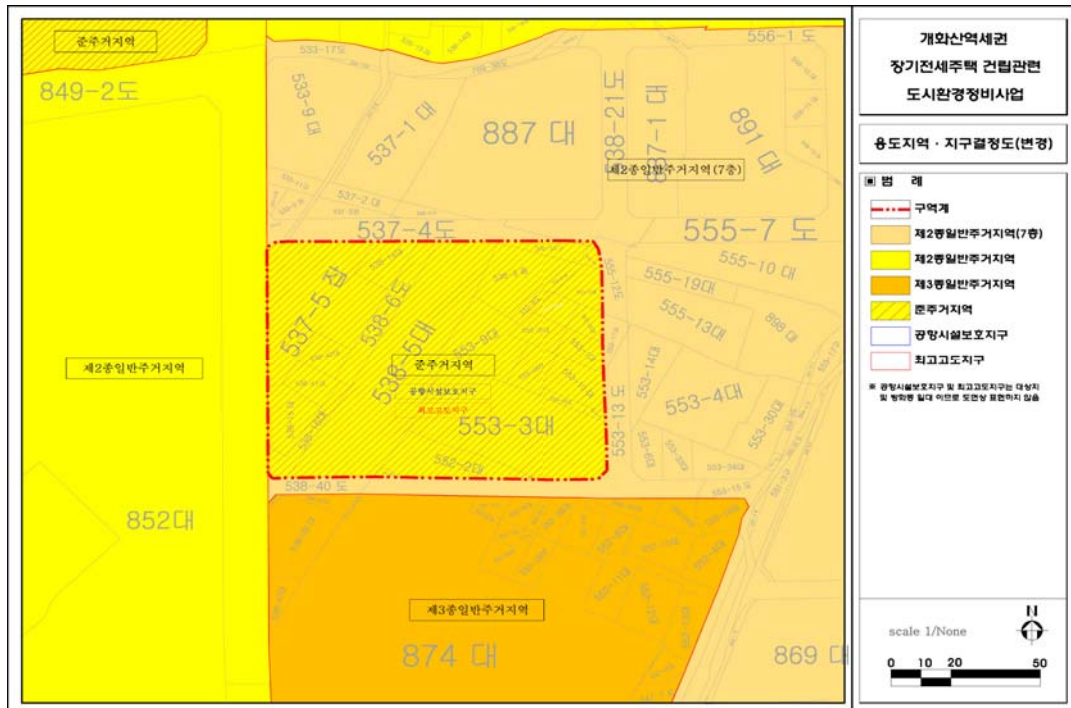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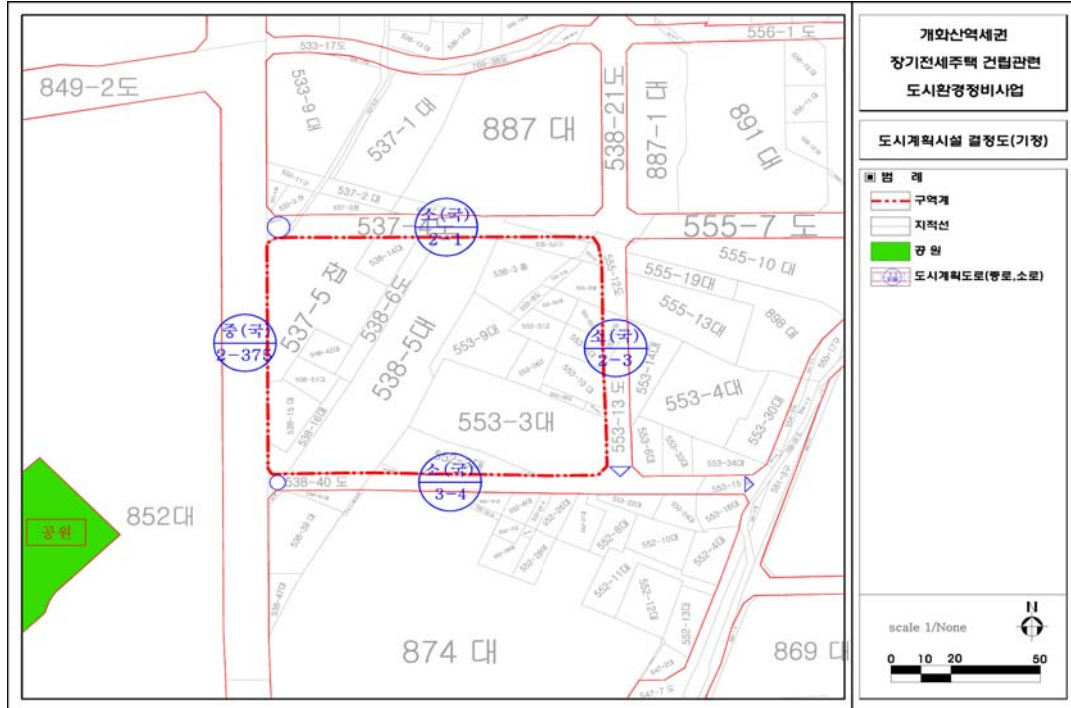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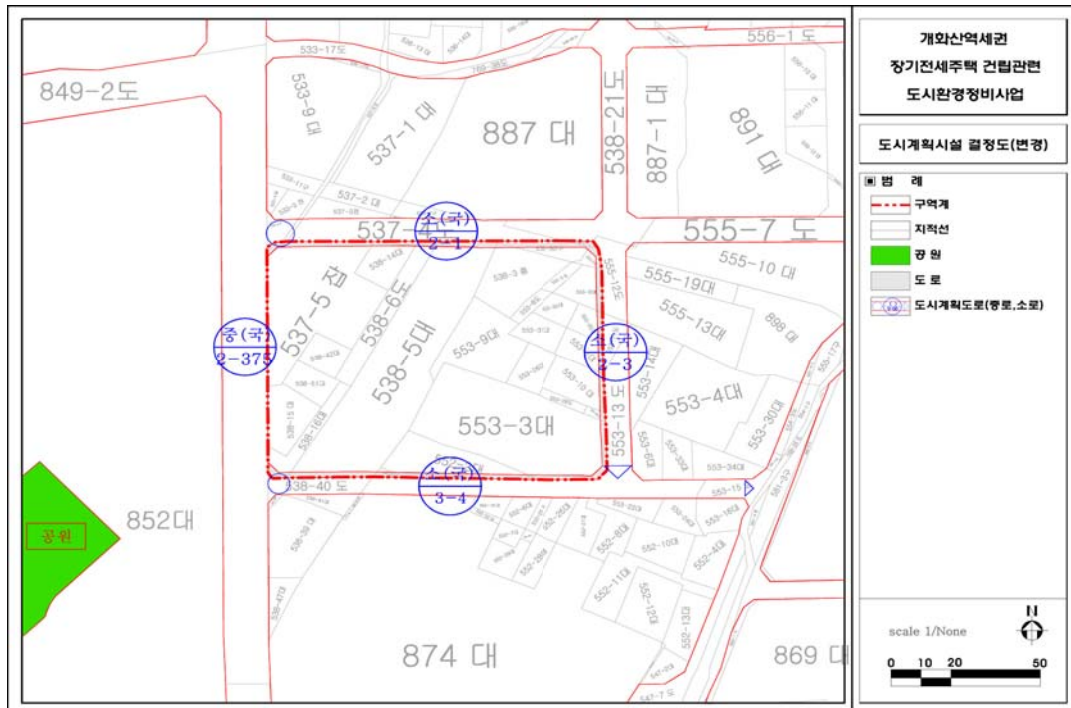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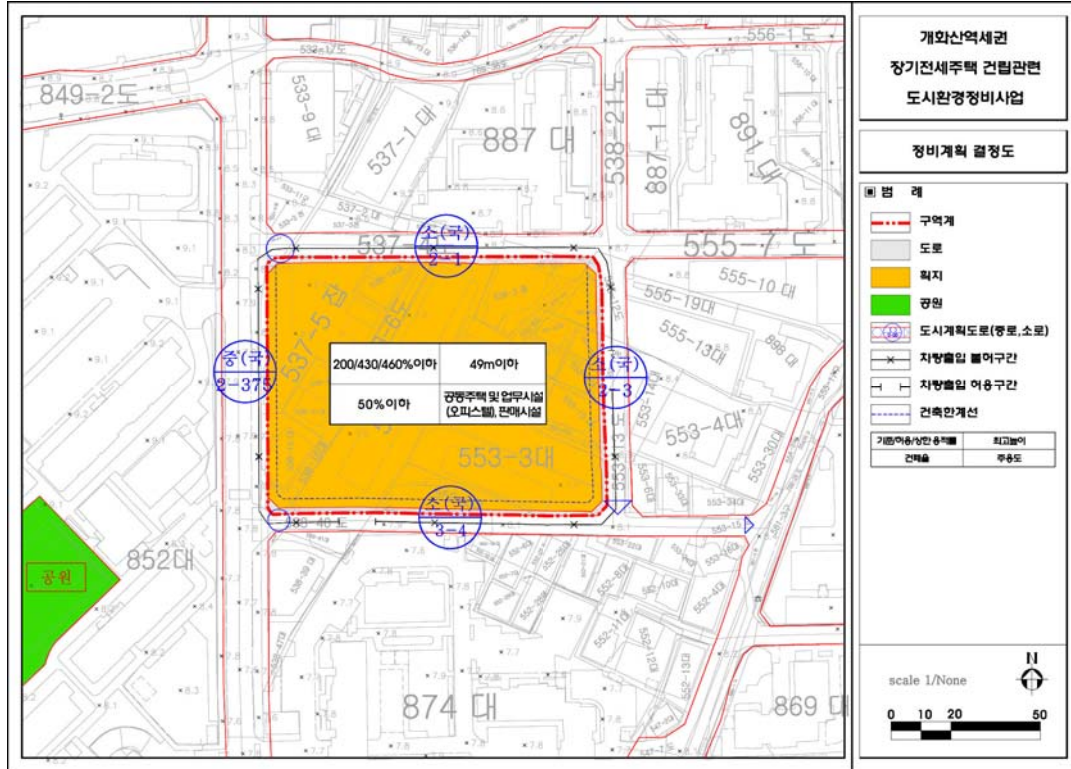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2008.5.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7.16)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봉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상봉 재정비촉진 지구	중심 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597.9	-	505,597.9	지역중심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증진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중랑 생활권 및 동북1권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중심기능 확충과 기반정비를 통한 고용기반 조성,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생활환경 및 부정적 이미지개선을 통한 동북1권의 새로운 전략거점 조성

라. 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내용

- 상봉1재정비촉진구역을 상봉15준치관리구역으로 변경
- 상봉3재정비촉진구역을 상봉16준치관리구역으로 변경
- 상봉1준치정비구역을 상봉17준치관리구역으로 변경
- 상봉2준치정비구역을 상봉18준치관리구역으로 변경
- 상봉5재정비촉진구역을 상봉19준치관리구역으로 변경
- 상봉5준치정비구역을 상봉20준치관리구역으로 변경

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05,597.9	-	505,597.9	10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10,522.8	감) 9,632.8	200,890.0	39.7
	문화시설	1,304.3	-	1,304.3	0.3
	사회복지시설	606.7	-	606.7	0.1
	공 원	28,992.3	감) 405.8	28,586.5	5.7
	광 장	6,161.3	감) 3,446.9	2,714.4	0.5
	경관녹지	800.0	감) 800.0	0.0	0.0
	공공공지	5,339.0	감) 1,104.4	4,234.6	0.8
	보행자전용도로	227.0	-	227.0	0.1
	철 도	15,375.3	-	15,375.3	3.0
	도 로	150,147.9	감) 3,875.7	146,272.2	28.9
개발 용지	여객자동차터미널	1,569.0	-	1,569.0	0.3
	소 계	295,075.1	증) 9,632.8	304,707.9	60.3
	상업복합	118,156.8	증) 3,016.3	121,173.1	24.0
	업무복합	55,738.7	증) 2,809.3	58,548.0	11.6
	도심주거	64,243.7	-	64,243.7	12.7
	상업·숙박	16,814.5	증) 4,716.0	21,530.5	4.2
	상업·업무	16,575.0	-	16,575.0	3.3
	대형판매	19,428.0	-	19,428.0	3.8
	종 교	3,781.5	감) 908.8	2,872.7	0.6
	유 치 원	336.9	-	336.9	0.1

2) 인구 · 주택수용계획(변경) : 17,175인 / 6,506세대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909	감) 403	6,506	18,239	감) 1,064	17,175	
촉진구역	소 계	4,540	감) 850	3,690	11,985	감) 2,244	9,741	세대당 2.64인
	60㎡ 이하	1,099	감) 252	847	2,901	감) 665	2,236	
	60㎡~85㎡	2,103	감) 342	1,761	5,552	감) 903	4,649	
	85㎡ 초과	1,338	감) 256	1,082	3,532	감) 676	2,856	
존치정비 구역	소 계	556	감) 556	—	1,468	감) 1,468	—	
	60㎡ 이하	167	감) 167	—	441	감) 441	—	
	60㎡~85㎡	223	감) 223	—	589	감) 589	—	
	85㎡ 초과	166	감) 166	—	438	감) 438	—	
존치관리구역		1,813	증) 1,003	2,816	4,786	증) 2,648	7,434	기존세대 수용

※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으로 변경시 별도의 세대수 계획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함

○ 구역별 수용계획 (기정)

구 분		기존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인구수 (인)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수	임대주택		
촉진 구역	상봉1재정비촉진구역	175	198	198	—	523	66.1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475	652	542	110	1,721	62.6
	상봉5재정비촉진구역	7	—	—	—	—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1,868	1,835	1,527	308	4,844	74.0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511	423	88	1,349	59.8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847	776	71	2,236	49.0
존치정비 구역	상봉1존치정비구역	1	—	—	—	—	—
	상봉2존치정비구역	47	—	—	—	—	—
	상봉3존치정비구역	50	—	—	—	—	—
	상봉4존치정비구역	44	—	—	—	—	—
	상봉5존치정비구역	298	556	462	94	1,468	74.0
존치관리구역		1,813	1,813	1,813	—	4,786	—
합 계		5,129	6,909	6,214	695	18,239	—

○ 구역별 수용계획 (변경)

구 분		기존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인구수 (인)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수	임대주택		
촉진 구역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1,868	1,835	1,527	308	4,844	74.0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511	423	88	1,349	59.8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847	776	71	2,236	49.0
존치정비 구역	상봉3존치정비구역	50	—	—	—	—	—
	상봉4존치정비구역	44	—	—	—	—	—
존치관리구역		2,816	2,816	2,816	—	7,434	—
소 계		5,129	6,506	6,015	491	17,175	—

3)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위 치	전용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148.6	감)5,000.0	9,148.6	—
문화 복지 시설	Culture Complex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4,000.0	—	4,000.0	별도 대지(면적 1,304.3㎡) 및 건축물 기부채납
	상봉커뮤니티센터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2,700.0	—	2,700.0	대지지분과 함께 건축물 조성 후 기부채납
	소극장/갤러리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448.6	—	2,448.6	대지지분과 함께 건축물 조성 후 기부채납
	다목적 종합전시관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1,500.0	감)1,500.0	—	폐지
	상봉종합복지관	상봉5존치정비구역	1,500.0	감)1,500.0	—	폐지
	문화공연장	상봉2존치정비구역	2,000.0	감)2,000.0	—	폐지

※ 대지면적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제공시설면적을 계산하여 대지지분으로 산정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 녹지시 설	계		－	29,792.3	감)1,205.8	28,586.5	－
	공 원	소공원	상봉5재정비촉진구역	405.8	감)405.8	－	폐지
		문화공원	상봉6,7,9재정비촉진구역	28,586.5	－	28,586.5	주제공원
	경관녹지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800.0	감)800.0	－	폐지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변경)

지구명	구역명	위 치	면적(㎡)			정비유형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 봉 재정비 촉진 지 구	상봉1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상봉동 108번지 일대	11,832.7	감)11,832.7	-	전면개발	기정
	상봉15존치관리구역	중랑구 상봉동 108번지 일대	-	증)11,832.7	11,832.7	-	변경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상봉동 101번지 일대	29,609.9	감)29,609.9	-	전면개발	기정
	상봉16존치관리구역	중랑구 상봉동 101번지 일대	-	증)29,609.9	29,609.9	-	변경
	상봉5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망우동 564-10번지 일대	3,705.4	감)3,705.4	-	전면개발	기정
	상봉19존치관리구역	중랑구 망우동 564-10번지 일대	-	증)3,705.4	3,705.4	-	변경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상봉동 84번지 일대	98,342.1	-	98,342.1	전면개발	기정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16,508.8	-	16,508.8	전면개발	기정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 일대	25,334.6	-	25,334.6	전면개발	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28,526.6	-	28,526.6	전면개발	기정

○ 구역별 계획(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최고높이	사업방식	비고
				기준	최대			
상봉6 재정비촉진구역	98,342.1	주거, 문화, 판매	60이하	360	400	120m이하/ 140m이하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정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6,508.8	주거, 문화, 판매	60이하	600	900	140m이하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정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25,334.6	주거, 판매	60이하	510	600	185m이하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정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업무, 판매, 주거, 문화	60이하	700	738	175m이하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정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5,597.9	-	505,597.9	-	-
촉진 구역	소 계 (4개 구역)		185,327.8	감)45,148.0	140,179.8	-	-
	상봉1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108번지 일대	11,832.7	감)11,832.7	-	-	해제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101번지 일대	29,609.9	감)29,609.9	-	-	해제
	상봉5재정비촉진구역	망우동 564-10번지일대	3,705.4	감)3,705.4	-	-	해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4번지 일대	98,342.1	-	98,342.1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8번지 일대	16,508.8	-	16,508.8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73-10번지 일대	25,334.6	-	25,334.6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3-1번지 일대	28,526.6	-	28,526.6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존치 정비 구역	소 계 (2개 구역)		52,421.9	감)37,159.3	15,262.6	-	-
	상봉1존치정비구역	상봉동91-1번지 일대	3,031.9	감)3,031.9	-	-	해제
	상봉2존치정비구역	상봉동90번지 일대	6,698.3	감)6,698.3	-	-	해제
	상봉3존치정비구역	망우동490-1번지 일대	8,991.1	-	8,991.1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4존치정비구역	망우동489-1번지 일대	6,271.5	-	6,271.5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상봉5존치정비구역	상봉동50-1번지 일대	27,429.1	감)27,429.1	-	-	해제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19개 구역)		134,843.9	증)82,503.1	217,347.0	-	-
	상봉1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0번지 일대	7,807.1	-	7,807.1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2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13번지 일대	11,768.4	-	11,768.4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3존치관리구역	상봉동 92번지 일대	2,869.1	-	2,869.1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4존치관리구역	상봉동 89번지 일대	3,055.1	-	3,055.1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5존치관리구역	상봉동 89-3번지 일대	3,294.1	-	3,294.1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6존치관리구역	상봉동 79번지 일대	31,781.2	-	31,781.2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7존치관리구역	망우동 563번지 일대	3,916.7	-	3,916.7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8존치관리구역	망우동 479번지 일대	8,558.8	-	8,558.8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9존치관리구역	망우동 506-1번지 일대	9,255.2	-	9,255.2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10존치관리구역	망우동 506-3번지 일대	3,903.7	-	3,903.7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11존치관리구역	망우동 508-1번지 일대	13,397.7	-	13,397.7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13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1번지 일대	2,735.6	-	2,735.6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14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7-6번지 일대	3,974.6	-	3,974.6	개별건축사업	기정
	상봉15존치관리구역	상봉동108번지 일대	-	증)11,832.7	11,832.7	개별건축사업	신규
	상봉16존치관리구역	상봉동101-2번지 일대	-	증)25,174.8	25,174.8	개별건축사업	신규
	상봉17존치관리구역	상봉동91-1번지 일대	-	증)4,755.7	4,755.7	개별건축사업	신규
	상봉18존치관리구역	상봉동90번지 일대	-	증)8,371.0	8,371.0	개별건축사업	신규
	상봉19존치관리구역	망우동564-10번지 일대	-	증)3,705.4	3,705.4	개별건축사업	신규
	상봉20존치관리구역	상봉동50-1번지 일대	-	증)27,429.1	27,429.1	개별건축사업	신규
기타 존치지역	도로 등	-	132,998.6	감)195.8	132,802.8	-	-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구역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 고
				기 준	최 대		
촉진 구역	상봉1재정비촉진구역	업무,판매,주거	48이하	360	400	70m/80m이하	해제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업무,판매,주거,문화	60이하	450	550	160m이하	해제
	상봉5재정비촉진구역	업무,판매	60이하	700	1,000	90m이하	해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주거,문화,판매	60이하	360	400	120m/140m이하	기정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주거,문화,판매	60이하	600	900	140m이하	기정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주거,판매,업무	60이하	510	600	185m이하	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업무,판매,주거,문화	60이하	700	738	175m이하	기정

구분	구역명	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 고
				기 준	허 용	최 대		
준치 정비 구역	상봉1준치정비구역	업무,숙박,판매	60이하	470	690	950	90m이하	해제
	상봉2준치정비구역	업무,숙박,판매,문화	60이하	440	680	890	90m이하	해제
	상봉3준치정비구역	업무,판매	60이하	300	500	600	90m이하	기정
	상봉4준치정비구역	업무,판매	60이하	300	360	400	90m이하	기정
	상봉5준치정비구역	업무,판매,주거,문화	60이하	300	360	400	120m/160m이하	해제

※ 준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으로 변경시 지구단위계획상의 허용용적률을 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로 적용

- 12)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 공공부문 (변경없음)
 ○ 민간부문(변경)

구 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②-③-④)	순 부담률 (%)
			계	도 로	공 원	광 장	기 타					
민간 부문 (촉진계획)	계	183,974.7	50,835.3	17,812.8	26,211.2	1,994.4	4,825.9	11,389.2	8,649.6	-	30,796.5	16.7
	소 계	168,712.1	48,579.2	17,509.3	26,211.2	1,994.4	2,873.3	11,389.2	8,649.6	-	28,570.4	16.9
	상봉6 재정비촉진구역	98,342.1	30,114.3	10,749.2	19,365.1	-	-	9,477.8	6,654.3	-	13,982.2	14.2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6,508.8	5,369.1	74.0	3,990.8	-	1,304.3	1,911.4	1,505.4	-	1,952.3	11.8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25,334.6	7,267.7	5,282.3	-	1,994.4	-	-	489.9	-	6,777.8	26.7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5,828.1	1,403.8	2,855.3	-	1,569.0	-	-	-	5,828.1	20.4
	소 계	15,262.6	2,256.1	303.5	-	-	1,952.6	-	-	-	2,256.1	14.8
	준치 정비 구역											
	상봉3 준치정비구역	8,991.1	1,331.3	208.9	-	-	1,122.4	-	-	-	1,331.3	14.8
	상봉4 준치정비구역	6,271.5	924.8	94.6	-	-	830.2	-	-	-	924.8	14.7

구 분		구 역 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②- ③-④)	순 부담률 (%)
				계	도 로	공 원	광 장	기 타					
민간 부문 (기부 채납)	계		32,585.6	462.5	462.5	-	-	-	-	-	462.5	-	
	존치 관리 구역	상봉16 존치관리구역	25,174.8	143.8	143.8	-	-	-	-	-	143.8	-	
		상봉17 존치관리구역	3,705.4	264.0	264.0	-	-	-	-	-	264.0	-	
		상봉19 존치관리구역	3,705.4	54.7	54.7	-	-	-	-	-	54.7	-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구 역 명	계 획 세대수	일반 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비 고
				소 계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합 계		3,690	3,199	491	187	186	79	39	-
촉진구역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1,835	1,527	308	187	30	61	30	기정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511	423	88	-	40	39	9	기정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497	473	24	-	24	-	-	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847	776	71	-	71	-	-	기정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 당 구 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	2009년	2012년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
2단 계	기정	2011년	2015년	2016년	상봉3·6·7재정비촉진구역, 상봉5존치정비구역	－
	변경	2011년	2015년	2016년	상봉6·7재정비촉진구역	－
3단 계	기정	2015년	2017년	2017년	상봉1·5·9재정비촉진구역, 상봉1·2·3·4존치정비구역	－
	변경	2015년	2017년	2017년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상봉3·4존치정비구역	－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 추진의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

15) 기타(광고물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친화적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 계획) (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상봉 1,3,5상봉재정비촉진구역 : 구역해제

나) 상봉 6,7,8,9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17)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가) 상봉1,2,5존치정비구역 : 구역해제

나) 상봉3,4존치정비구역 : 변경없음

다)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준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와 같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특별계획구역 1	상봉동 83-1번지 일대	28,527	-	-	상봉터미널부지(유보지)
기 정	특별계획구역 2	상봉동 479번지 일대	8,223	-	8,223	아주레미콘부지
기 정	특별계획구역 3	상봉동 79-1번지 일대	8,759	-	8,759	동서울 자동차공업사부지
기 정	특별계획구역 4	상봉동 81-5번지 일대	10,920	-	10,920	강원산업콘크리트공장부지
기 정	특별계획구역 5	상봉동 81-1번지 일대	11,677	-	11,677	코스트코부지
기 정	특별계획구역 7	상봉동 107-6번지	3,974.6	-	3,974.6	한남프라자
폐 지	특별계획구역 8	상봉동 91-1번지 일대	3,031.9	감) 3,031.9	-	상봉1존치정비구역
폐 지	특별계획구역 9	상봉동 90번지 일대	6,698.3	감) 6,698.3	-	상봉2존치정비구역
기 정	특별계획구역 10	망우동 490-1번지 일대	8,991.1	-	8,991.1	상봉3존치정비구역
기 정	특별계획구역 11	망우동 489-1번지 일대	6,271.5	-	6,271.5	상봉4존치정비구역
신 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2	상봉동 50-1번지 일대	-	증) 10,576.6	10,576.6	상봉5존치정비구역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5	35~41	간선도로	8,100 (1,210)	중랑교	망우동 서울시계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망우로
변경	대로	1	15	35~41	간선도로	8,100 (1,210)	중랑교	망우동 서울시계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대로	3	-	25~30	보조간선	(380)	(상봉동 160-7)	(상봉동 160-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935호 (1964.6.25)	면목동길
변경	대로	3	-	25~30	보조간선	(380)	(상봉동 160-7)	(상봉동 160-21)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대로	3	-	25~28	보조간선	(675)	(상봉동 160-18)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봉우재길
기정	대로	3	-	25~28	보조간선	(380)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동길
기정	소로	2	-	8	집산도로	370	상봉동 402-35	상봉동 90-48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425호 (1984.7.31)	면목천길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0	상봉2동 81-2	상봉2동 8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4호 (2000.8.4)	상봉여울길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19	상봉2동 79-6	상봉2동 399-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5호 (2000.8.16)	-
기정	중로	1	185	20~26	-	620	상봉동 99	상봉동 301	-	서울시고시 제949호 (1988.12.12)	상봉중앙길
기정	대로	2	88	25~32	-	2,020	망우동 489-2	신내동 674-1	-	서울시고시 제104호 (1994.4.7)	신내길
기정	중로	2	-	16	집산도로	40	상봉동 99	상봉동 184-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203	망우동 565	망우동 495-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맞춤씨길
기정	중로	3	2	13	집산도로	292	망우동 534-37	망우동 534-6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새한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9	망우동 534-62	망우동 534-5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맞춤씨길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370	상봉동 186-7	상봉동 80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1	상봉동 73-14	상봉동 72-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폐지	소로	1	-	12	국지도로	228	상봉동 106-2	상봉동 49-1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망우역길
기정	중로	1	-	15	집산도로	139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요람2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	20	집산도로	405	상봉동 91-4	상봉동 85-4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상봉중앙길
변경	중로	2	-	20	집산도로	429	상봉동 91-4	상봉동 85-41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연장·선형변경
폐지	중로	3	-	15	집산도로	219	상봉동 102	상봉동 102-7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달개비길
폐지	소로	2	-	8	국지도로	133	상봉동 108-38	상봉동 113-2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봉향남1길
폐지	소로	2	-	8	국지도로	56	상봉동 109-31	상봉동 109-1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
기정	소로	1	-	12	국지도로	88	상봉동 107-24	상봉동 107-60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달개비1길
기정	소로	3	-	4	특수도로	53	상봉동 106-3	상봉동 91-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
기정	소로	1	-	10	집산도로	46	망우동 490-1	망우동 490-20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우림길
기정	소로	1	-	10	집산도로	41	망우동 534-65	망우동 564-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망우로
변경	소로	1	-	8	집산도로	41	망우동 534-65	망우동 564-1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폭원변경
폐지	중로	1	-	25	집산도로	75	상봉동 80-4	상봉동 72-5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망우역길 일부 철도와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	8	국지도로	21	상봉동 50-8	상봉동 50-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망우역길
폐지	중로	1	-	25	집산도로	52	망우동 534-8	망우동 489-16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송림길
폐지	소로	1	-	12	국지도로	123	상봉동 49-10	상봉동 49-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송림길
폐지	중로	2	-	20	집산도로	115	상봉동 90-64	상봉동 89-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내천길
폐지	소로	1	-	10	국지도로	69	상봉동 90-33	상봉동 89-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동백길
폐지	소로	1	-	12	국지도로	47	상봉동 90-40	상봉동 102-10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동백길

※ ()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면적, 연장, 폭원, 시·종점

(2) 철도 (변경없음)

(3) 공원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상봉 중앙공원	문화공원	상봉동 399-4 일대	28,589.8	-	28,589.8	서울고시제2009-312호 (2009.8.13)	-
폐지	②	소공원	소공원	상봉동 564-11 일대	405.8	감)405.8	-	서고시제2009-312호 (2009.8.13)	상봉5재정비 촉진구역

(4) 녹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상봉동 395-4번지 일대	800.0	-	80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2호 (2009.8.13)	상봉3재정비 촉진구역

(5)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공지	상봉2동 81-4 일대	1,099.0	-	1,099.0	서울특별시고시 제235호 (2000년 8월 16일)	소공원
기정	③	공공공지	상봉2동 397-16 일대	1,183.0	-	1,1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35호 (2000년 8월 16일)	소공원
기정	⑥	공공공지	상봉동 490-1일대	1,122.4	-	1,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312호 (2009년 8월 13일)	-
기정	⑦	공공공지	상봉동 489-1 일대	830.2	-	830.2	서울특별시고시 제312호 (2009년 8월 13일)	-
폐지	⑧	공공공지	상봉동 91-2 일대	243.0	감) 243.0	-	서울특별시고시 제312호 (2009년 8월 13일)	상봉1존치 정비구역
폐지	⑨	공공공지	상봉동 90-58 일대	861.4	감) 861.4	-	서울특별시고시 제312호 (2009년 8월 13일)	상봉2존치 정비구역

(6) 광장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망우역 광장	교통광장	상봉동 72-1번지 일대	182.0	-	182.0	서울특별시고시제157호 (2008년5월8일)	-
기정	②	망우역 광장	교통광장	상봉동 72-7번지 일대	248.0	-	248.0	서울특별시고시제157호 (2008년5월8일)	-
기정	③	망우역 광장	교통광장	상봉동 73-10번지 일대	1560.1	-	1560.1	서울특별시고시제157호 (2008년5월8일)	-
폐지	④	망우역 광장	교통광장	상봉동 50-3번지 일대	517.2	감) 517.2	-	서울특별시고시제312호 (2009년 8월 13일)	-
폐지	⑤	망우역 광장	교통광장	상봉동 74-7번지 일대	2,929.7	감) 2,929.7	-	서울특별시고시제312호 (2009년 8월 13일)	-
변경	⑥	신상봉역 광장	일반광장	상봉동 101-13번지 일대	720.0	감) 373.7	346.3	서울특별시고시제312호 (2009년 8월 13일)	철도(442.8㎡) 와 중복결정

- (7) 도시철도 (변경없음)
- (8) 문화시설 (변경없음)
- (9)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10) 공공청사(변경없음)
- (11)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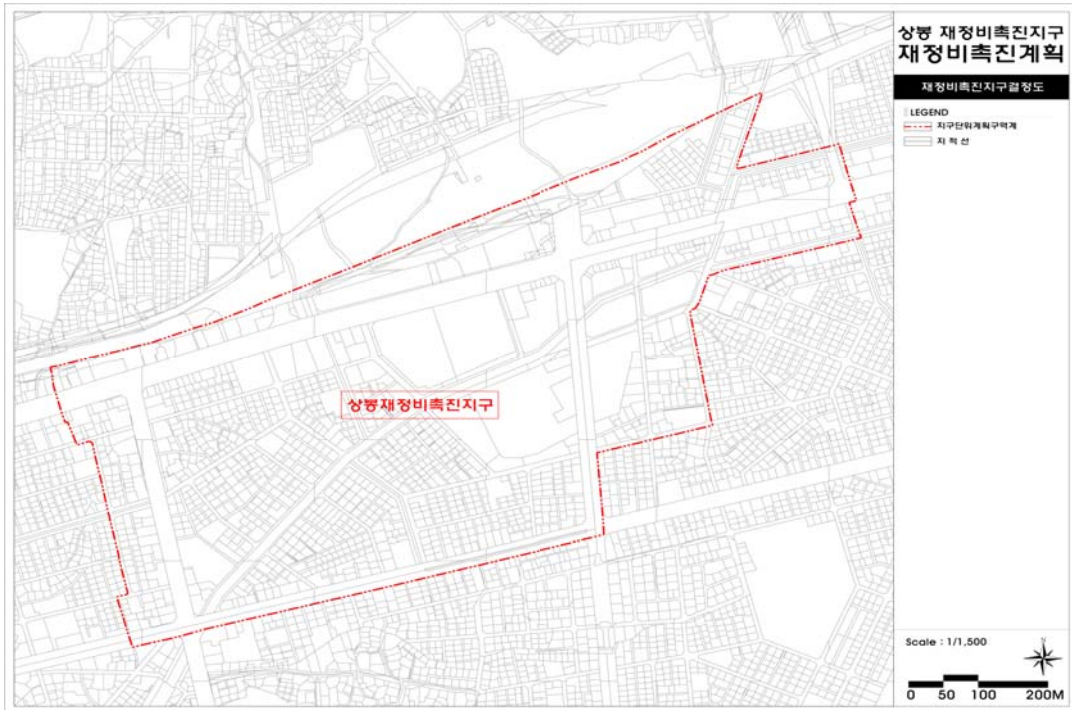
사.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열람 장소 :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7) 및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2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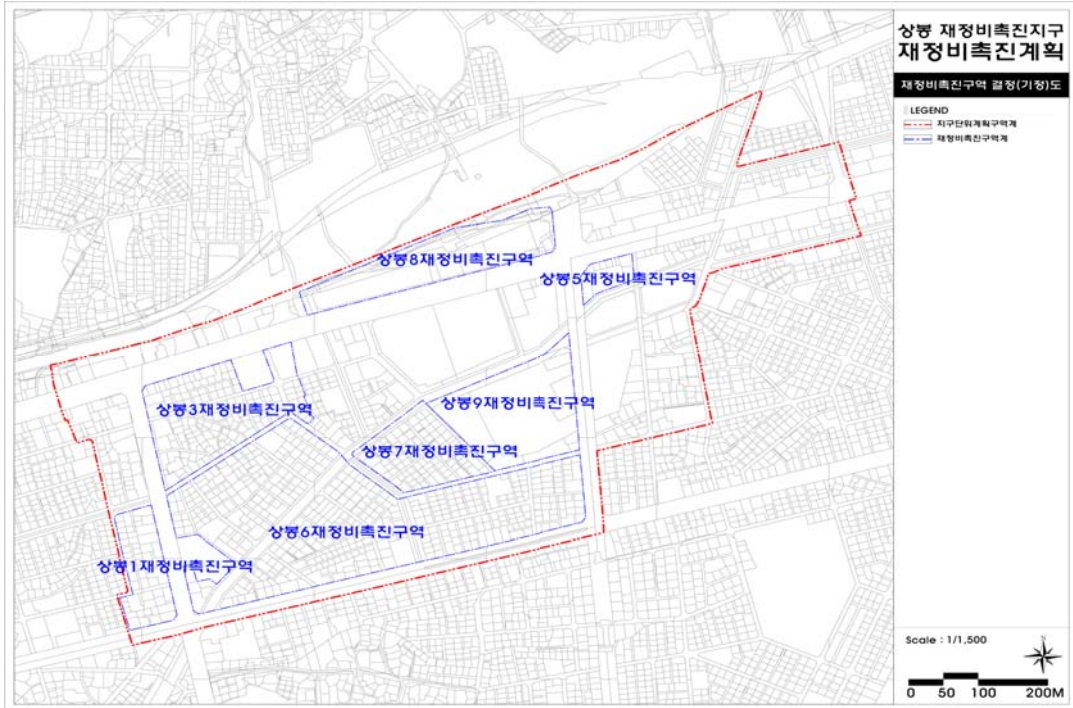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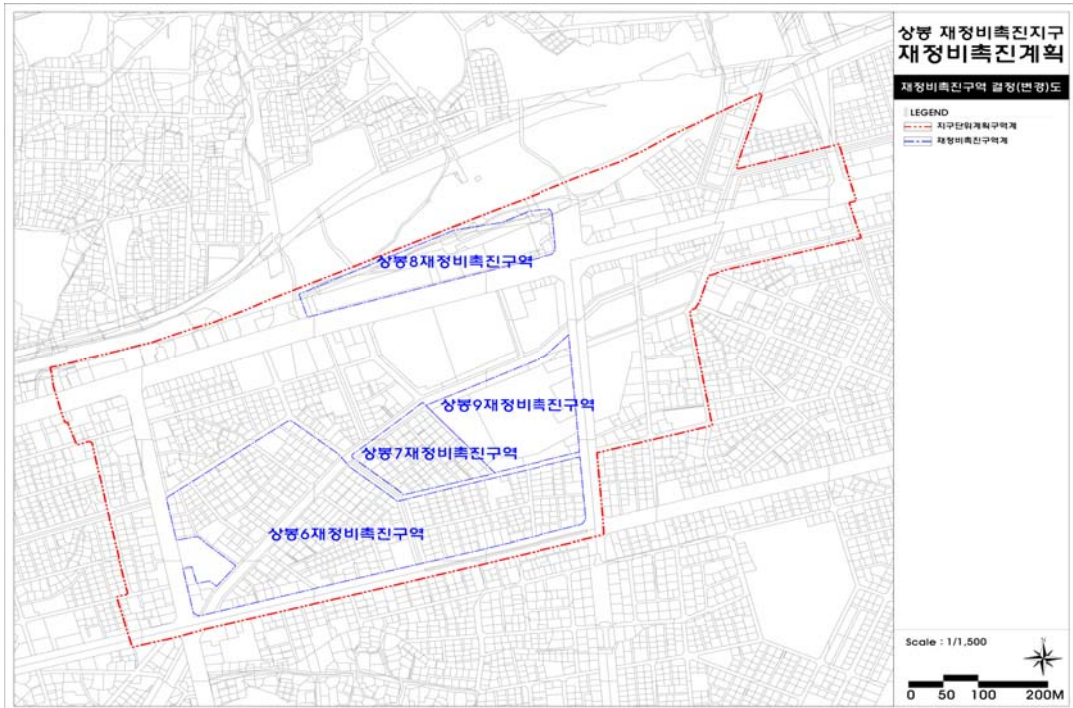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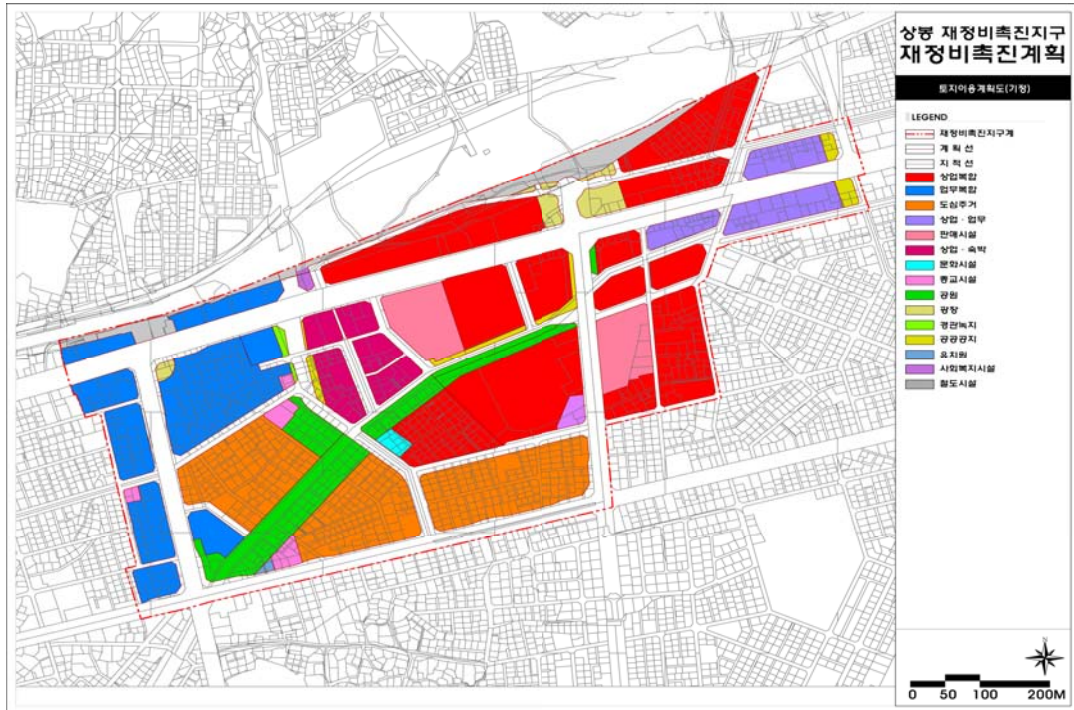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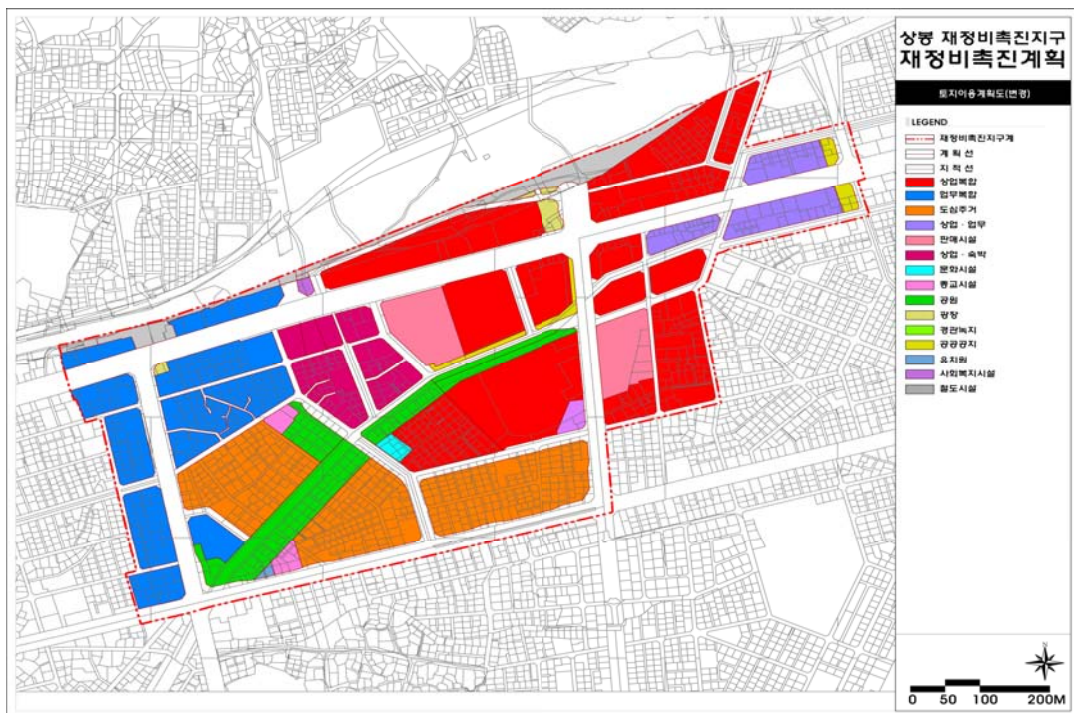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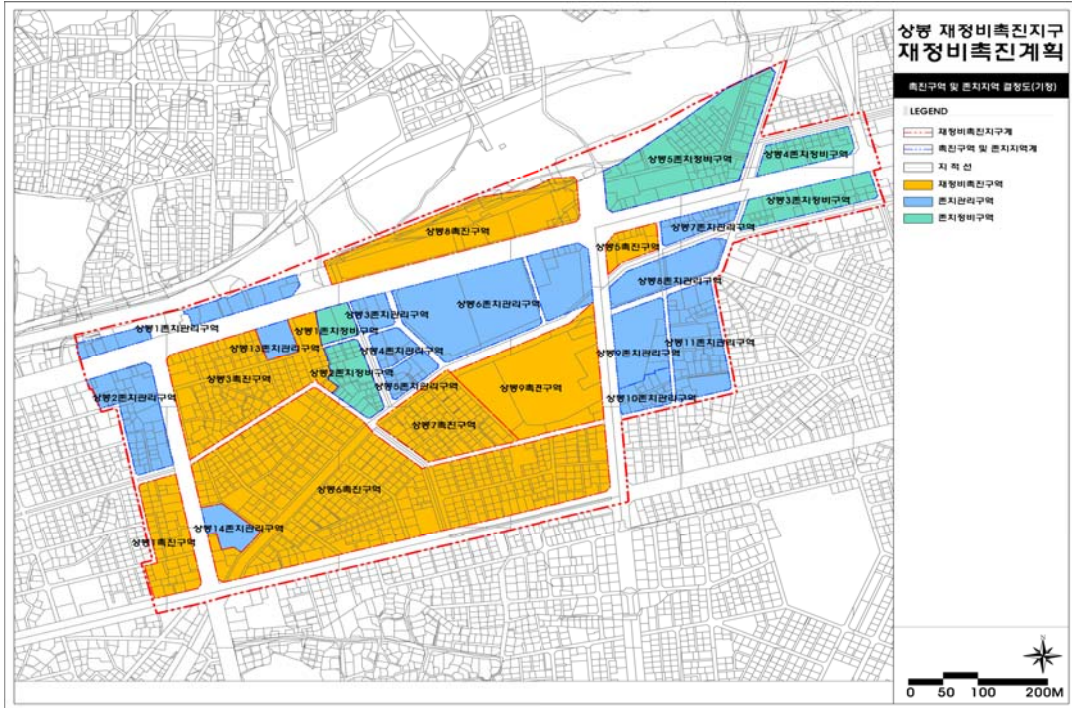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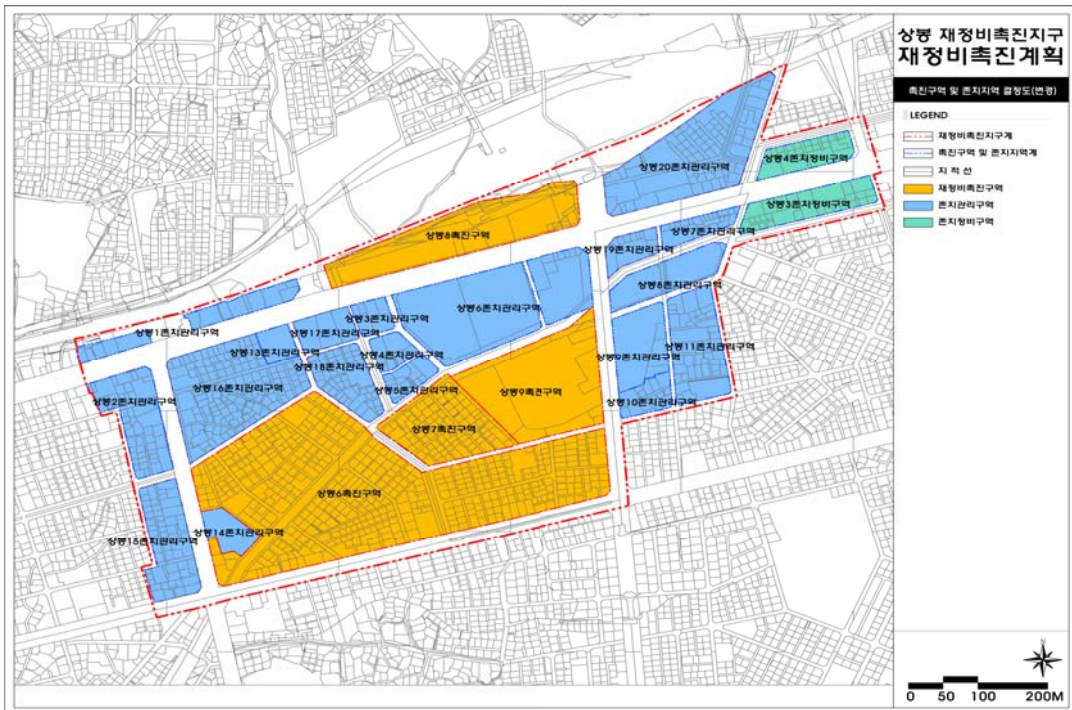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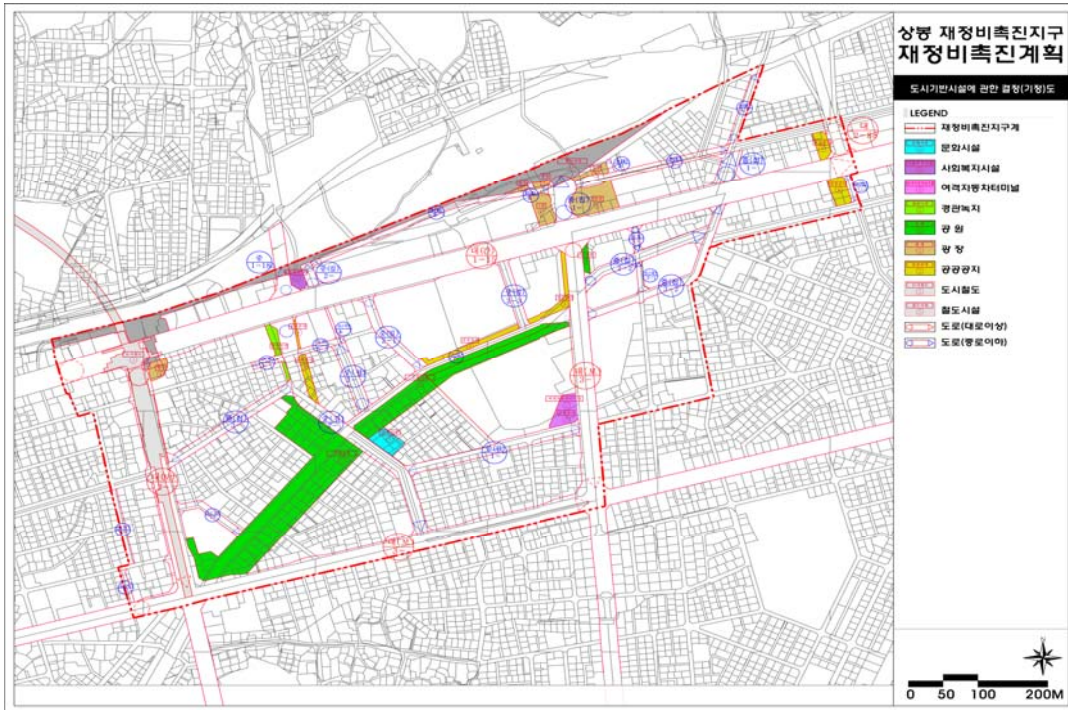
○ 존치정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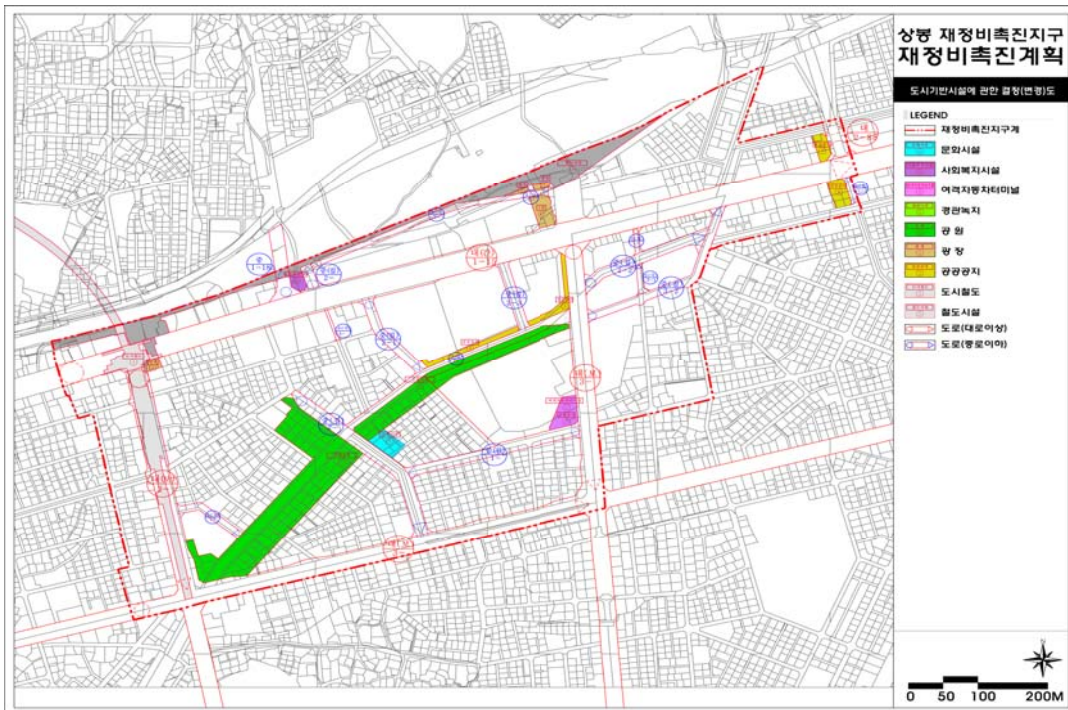
○ 존치정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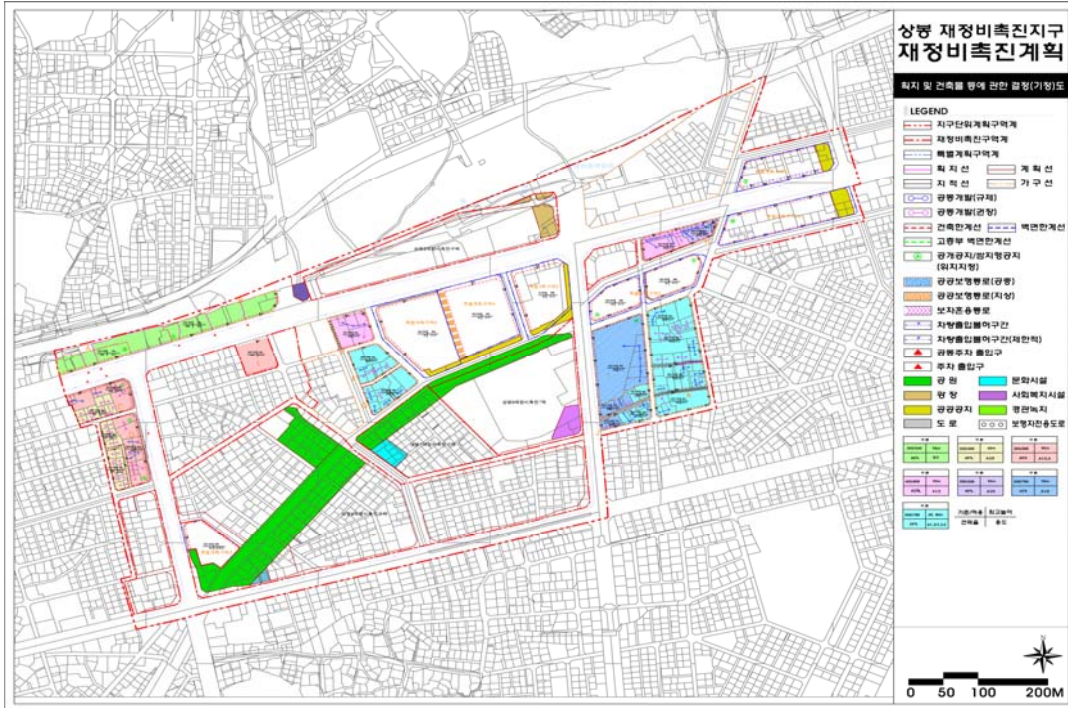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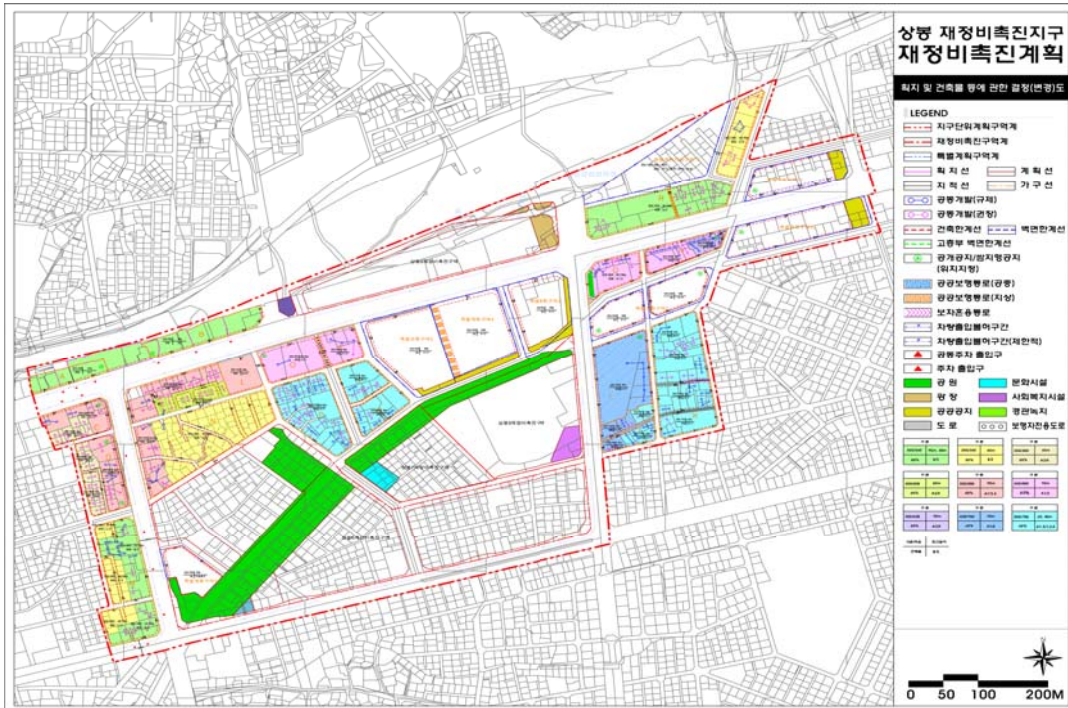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0호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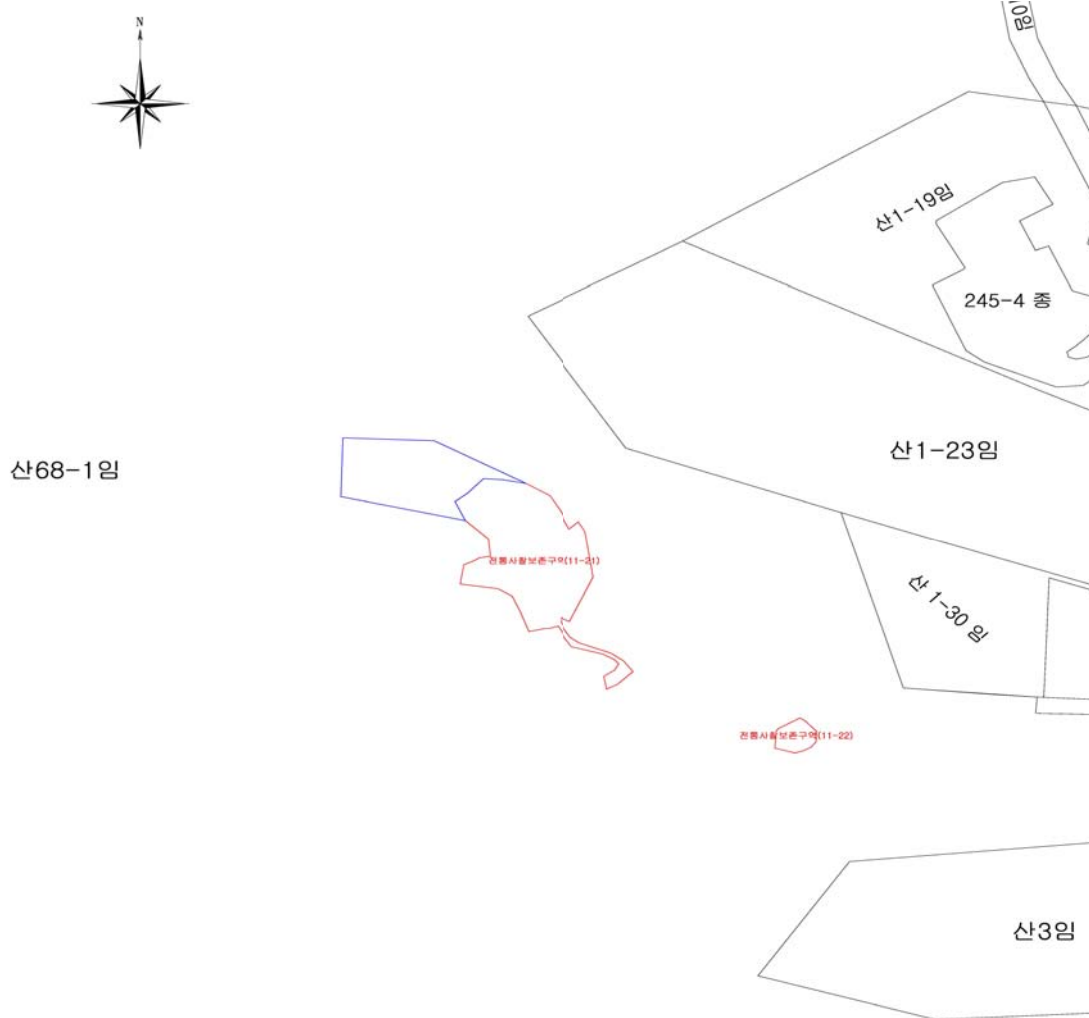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고시 대상사찰 : 신검사
2. 지정일자(고시일자) : 2015. 9. 24.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02-2133-2576)
 - 강북구 문화체육과(☎ 02-901-6208)
4.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현황

사찰명	사찰 소재지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신검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	우이동 산68-1	4,421,983	1,820

5. 지형도면



범례

기 호	명 칭
	기지정부분
	추가지정요청부분

구 적 표 (m²)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산68-1	임	3,104	기지정부분
		1,820	추가지정요청부분
		4,924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2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 직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5.8.31.	
	도시농업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2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김명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1길 2*~1(대림동)	일시 : 2015-07-17 06:55 장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송파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m 초과	과태료:30만원
함광석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38번길 1* 2동3*1(덕계동)	일시 : 2015-07-21 06:54 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언주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박장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 *13동1*0*호(상하동)	일시 : 2015-05-09 07:0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언주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박경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42-7 *동*0*호(부개동)	일시 : 2015-05-21 19:18 장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7m 초과	과태료: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5.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33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청문 실시 공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현장조사결과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청문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등록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등 록 소 재 지
	제321호	지케이이엘(주)	한원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58(성내동, 2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 미달 - 사무실 무단폐쇄(소재불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취소			
5. 법 적 근 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6. 청 문 실 시	공고기간	2015. 9.21 ~ 2015.10.19.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부 서 명	건축기획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전화:02-2133-7118, 전송:02-3707-8269)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14:00		
	장 소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주 재 자	소 속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성 명	최성일	

★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 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지참), 기타 이견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

행규칙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Fax, e-mail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시 건축기획과 담당자 최성일 02-2133-7118 e-mail : ilsung@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3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30015	한문화개발(주)	박 열	[본사]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31, 214호(대치동, 롯데골드로즈2) [지사]제주시 서해안로 644, 3층 (용담삼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015.9.16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등록요건(본점 사무실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라.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마.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바. 부동산개발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3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5-93	재단법인 피플 (대표 정유석)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28길 6 노무빌딩 104,501호	○ 취약계층(산재가족,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 - 법률 상담, 문화활동 지원, 창업컨설팅, 취업지원 등	500 (현금 및 물품)	전국	' 15.10.1 ~ ' 16.9.30 ' 15.10.1 ~ ' 17.9.30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4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2015.08.31. 조직개편 신규부서 공인(회계직인)을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고)에 따라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15. 8. 31. 조직개편 신규부서
- 공인종류 :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공인등록 일자 : 2015.08.31.
- 공인등록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일상경비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없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분임물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없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없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지출원	2.0cm×2.0cm 훈민정음체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53호**

광진구 구의동 626-1 일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26-1 일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전화번호 2133-7059)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과(전화번호 450-7684)

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공간적 범위 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유수지	유수시설	광진구 구의동 626-1 일원	6,942	증)2,914.1	9,856.1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524호 (1984. 8. 24)	공간적 범위설정

- 유수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유수지	결정조서 면적 정정 공간적 범위 설정	토지이용 고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설치 에 따른 공간적 범위 설정

- 유수지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유수지	유수시설	광진구 구의동 626-1 일원	면적 (㎡)	6,942	증)2,914.1	9,856.1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524호 (1984. 8. 24)	
				높이	-	평균해수면 기준 +17.5m 이하	평균해수면 기준 +17.5m 이하		

- 유수지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유수지 상부 비시설
내용	토지이용 고도화 및 서민주거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설치에 따른 공간적 범위 결정 구의유수지 상부 공공주택 설치, 하부 유수지 및 CSOs 저류조 설치	- 용 도 : 공공주택, 문화 및 집회, 근생 - 건폐율/용적률 : 60%이하, 400%이하 - 층수(높이) : 30층이하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	주차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26-1 일원	6,942.0	감) 6,942.0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41호 (1996. 3. 7)	준주거지역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 지	유수지 일부 부지에 중복 결정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의 폐지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함

라.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 비치)

마.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도시디자인과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열람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56호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 시행의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1. 사업개요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89 일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 2) 명 칭 : 개봉유수지 시설공사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 1) 유수지 면적 : 75,880㎡
- 2) 토지보상 : 42,380㎡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보상대상 :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통지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장소,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예정

라. 보상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의거 3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하천관리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하천관리과(☎ 2133-3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개봉유수지 시설공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도면표시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42,380	42,380						
	개봉동 187-1	잡종지	1,973	652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0
				77					11
				63					12
			1181	구거				13	
개봉동 188	잡종지	604	604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4
개봉동 189	잡종지	1,855	1801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5
			54	구거				16	
			1953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1	
개봉동 189-7	잡종지	2,128	18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2
			157	구거				3	
개봉동 189-10	잡종지	978	819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7
			159	구거				18	
			3825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개봉동 190	잡종지	3,941	116	구거					5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도면표시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개봉동 190-2	잡종지	746	354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구거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9		
			31									20
			361									21
개봉동 192-1	잡종지	6,605	3651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구거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6		
			322									7
			52									8
			2580									9
개봉동 193-2	잡종지	1,328	1123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구거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27		
			205									28
			213									29
개봉동 193-7	잡종지	756	543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구거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30		
			9									31
개봉동 193-10	잡종지	39	39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구거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32		
			781									33
개봉동 193-13	잡종지	2,762	471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구거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34		
			1510									35
			91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도면표시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개봉동 194-1	잡종지	833	21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22
			88							23
			724							24
개봉동 194-3	잡종지	1,164	1117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37
			47							38
			52							25
개봉동 194-5	잡종지	104	52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26
			113							39
			679							40
개봉동 194-6	잡종지	792	367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41
			56							42
			12674							43
개봉동 194-7	잡종지	367	961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44
			261							45
			699							46
개봉동 194-8	잡종지	56	44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47
			261							48
			699							49
개봉동 195-7	잡종지	14,639	261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50
			961							51
			44							52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도면표시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개봉동 195-12	잡종지	40	10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48
			30	구거						49
개봉동 195-28	잡종지	54	33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50
			21	구거						51
개봉동 195-31	잡종지	87	4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전력공사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52
			83	구거						53
개봉동 410-7	잡종지	429	294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강우시 물에 잠기는 토지(유수지로 활용중)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54
			135	구거						5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75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광운대학교)

1. 서울특별시고시 제99호('74.7.1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75호(2013.11.14)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된 노원구 월계동 447-1 일대 광운 대학교에 대하여,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구역별 관리계획 : 일반관리, 상징경관, 녹지보존)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노원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1, fax : 2133-0739)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2116-3861, fax : 2116-4633)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 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상징경관, 녹지보존)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 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구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대학 (광운대학교)	제1캠퍼스	노원구 월계동 447-1 일대	44,375	-	44,375	서고시 제99호 ('74.7.15)	-
		제2캠퍼스	노원구 월계동 466 일대	21,679	감) 10	21,669	서고시 제140호 ('91.5.24)	분할측량에 의한 정정
		제3캠퍼스	노원구 월계동 505-2 일대	-	증) 4,477	4,477	-	금회 추가
		합계		66,054	증) 4,467	70,521		

○ 세부시설조성계획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토지이용계획 중심 관리(7개로 구분 결정) (건축, 녹지, 조경, 광장, 운동장, 도로, 주차장) · 건축별 높이 결정	· 지역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역 결정 (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 구역별 높이·밀도 결정

마. 구역별 관리계획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구 고 시

◆ 성동구고시 제2015-87호

성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342호(1961.4.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원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재배치로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동 13-21번지
3. 면 적 : 982.5m²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 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성동구 공원녹지과(☎ 02)2286-5654)

붙 임 :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각1부.

성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가. 총 괄 표(위치 : 성동구 성수1가 2동 13-21)

구 분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 물 (기)	비고
			동수 (등)	바닥 면적 (㎡)	연면적 (㎡)		
총 계	982.5	545.3					
기 반 시 설	소계	334.5	334.5				
	도로	63	63				
	광장	271.5	271.5				
휴 양 시 설	84.4	84.4					
유 희 시 설	93	93					
운 동 시 설	33.4	33.4					
관 리 시 설							
녹지 및 기타	437.2	437.2					
공원 시설율 (법정 60%)	$(545.3\text{㎡} \div 982.5\text{㎡}) \times 100\% = 55.50\%$						

나. 시설 조 서

구 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 적		
총 계				982.5	545.3						
기반 시설	계			334.5	334.5						
	도로			63	63						
	광장	가	중앙부	271.5	271.5					1	
휴양 시설	계			84.4	84.4						
	파고라										
	평의자	②	산책로			목재				9	
	등의자										
	경로당	라	경계부	53	53					1	
	휴게소-1	나	광장부	13.7	13.7					1	
	휴게소-2	다	경계부	17.7	17.7					1	
	구름 파고라	①	광장부			목재				1	
	유희 시설	계			93	93					
어린이 놀이터		마	놀이터	93	93						
유희 시설	조합놀이대	③	놀이터			스텐				1	
	시이소										
	그네										
	구름미끄럼대	④	놀이터			목재				1	
	구름터널	⑤	놀이터			로프				1	
운동 시설	계			33.4	33.4						
	체력단련장	바	경계부	33.4	33.4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체어스탠딩	⑥	경계부			스텐				1	
	스트레칭롤러	⑦	경계부			스텐				1	
	스트레칭레그암	⑧	경계부			스텐				1	
관리 시설	계										
	블라드	⑩	집입부			석재				6	
	펜스	⑪				목재					
	공원등	⑫				목재					
	휴지통	⑨				스텐					
녹지 기타	계			437.2	437.2						
	녹지및기타			437.2	437.2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218				
신 설	산책로	계				218				
신 설			1	2	12	2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2	
신 설			2	1.5	19.3	29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3	
신 설			3	1.5	4.0	6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4	
신 설			4	2	6.5	13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	
신 설			5	2	13.5	27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3	
신 설			6	1.5	18	27	산책로	산책로7	어린이 놀이터2	
신 설			7	2	19	38	산책로	공원경계	중심광장	

조성계획도(최초)

성원어린이공원



◆ 성동구고시 제2015-88호

서마장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1997-101호(1997.4.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서마장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공간 배치로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0-67번지
 - 면 적 : 350.3㎡
 -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 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열람장소 : 성동구 공원녹지과 ☎ 02)2286-5654
- 붙 임 :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각1부.

서마장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위치:성동구 마장동 450-67번지)

구분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계	350.30	163.5				11	
기 반 시 설	소계	26.82					
	도로	26.82					
조경시설	5.97	5.97				2	
유희시설	127.00	127.00				8	
편익시설	3.71	3.71				1	
녹지 및 기타	186.80	186.80					
공원 시설율 (법정 60%)	$(163.50\text{㎡} \div 350.30\text{㎡}) \times 100\% = 46.67\%$						

나. 세부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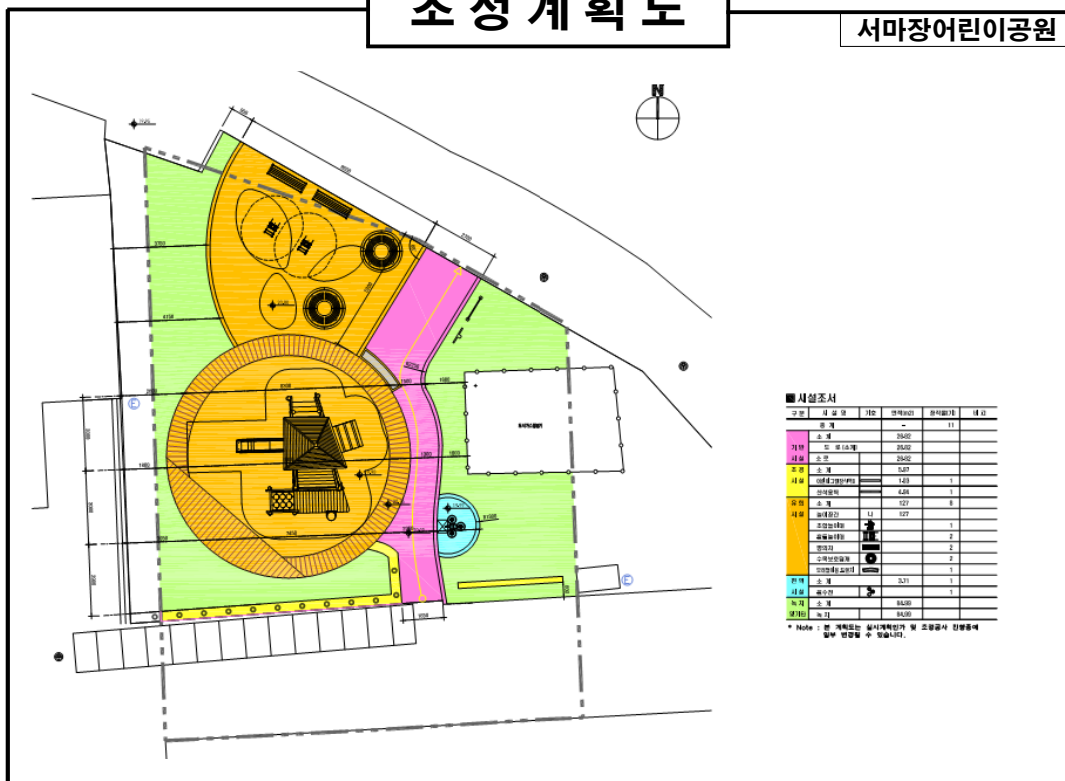
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 모	공작물 (기)	비고
합 계		248.49	163.5			11	
기 반 시 설	계	26.82	26.82				
	도로 계	26.82	26.82				도로조서참고
조경 시 설	계	5.97	5.97				
	어린이그림장식벽B	1.03	1.03			1	
	산석옹벽	4.94	4.94			1	
유희 시 설	계	127.00	127.00			8	
	조합놀이대					1	
	흔들놀이대					2	
	평의자					2	
	수목보호덮개					2	
	모래털이용트랜치					1	
편익 시 설	계	3.71	3.71			1	
	음수전					1	
녹 지	녹지 및 기타	186.80	186.80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26.82				
신 설	소로	계				26.82				
신 설			1	0.9	25.5	26.82	보행로	단지외부	단지외부	

조 성 계 획 도

서마장어린이공원



■ 시설조서

구분	종 류	개 수	면적(㎡)	설치(㎡)	비고
기타	조 경	-	35.02	11	
	단 지 외부	25.02			
	조 경	25.02			
소로	조 경	3.27			
	보행로(단지외부)	1.23		1	
	보행로(단지외부)	4.21		1	
보행로	조 경	127		8	
	보행로(단지외부)	127		1	
	보행로(단지외부)	127		2	
보행로	보행로(단지외부)	127		2	
	보행로(단지외부)	127		1	
	보행로(단지외부)	127		1	
주차장	조 경	3.21			
	주차장	3.21		1	
	주차장	3.21		1	
합계	주차장	3.21			

* Note : 본 계획도는 실시계획인가 및 조경공사 진행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진구고시 제2015-103호

중곡2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710호(1968.11.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중곡2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광진구청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중곡2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산책로 및 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47-6 일대

3. 공원면적 : 1,144㎡

4. 조성계획 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8), 광진구청 공원녹지과(☎450-7775)에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곡2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1. 총괄표(광진구 종곡동 147-6 일대)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면적 비율 (%)	비 고
			용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144	69.75					
기 반 시 설	69.75	69.75					
조 경 시 설							
휴 양 시 설						4	
유 희 시 설							
안 통 시 설							
교 양 시 설							
편 의 시 설							
관 리 시 설							
녹지 . 기타	1,074.25						
공 원 시 설 율 (법정60%)	$(69.75\text{㎡} \div 1,144\text{㎡}) \times 100\% = 6.10\%$						
공 원 건 폐 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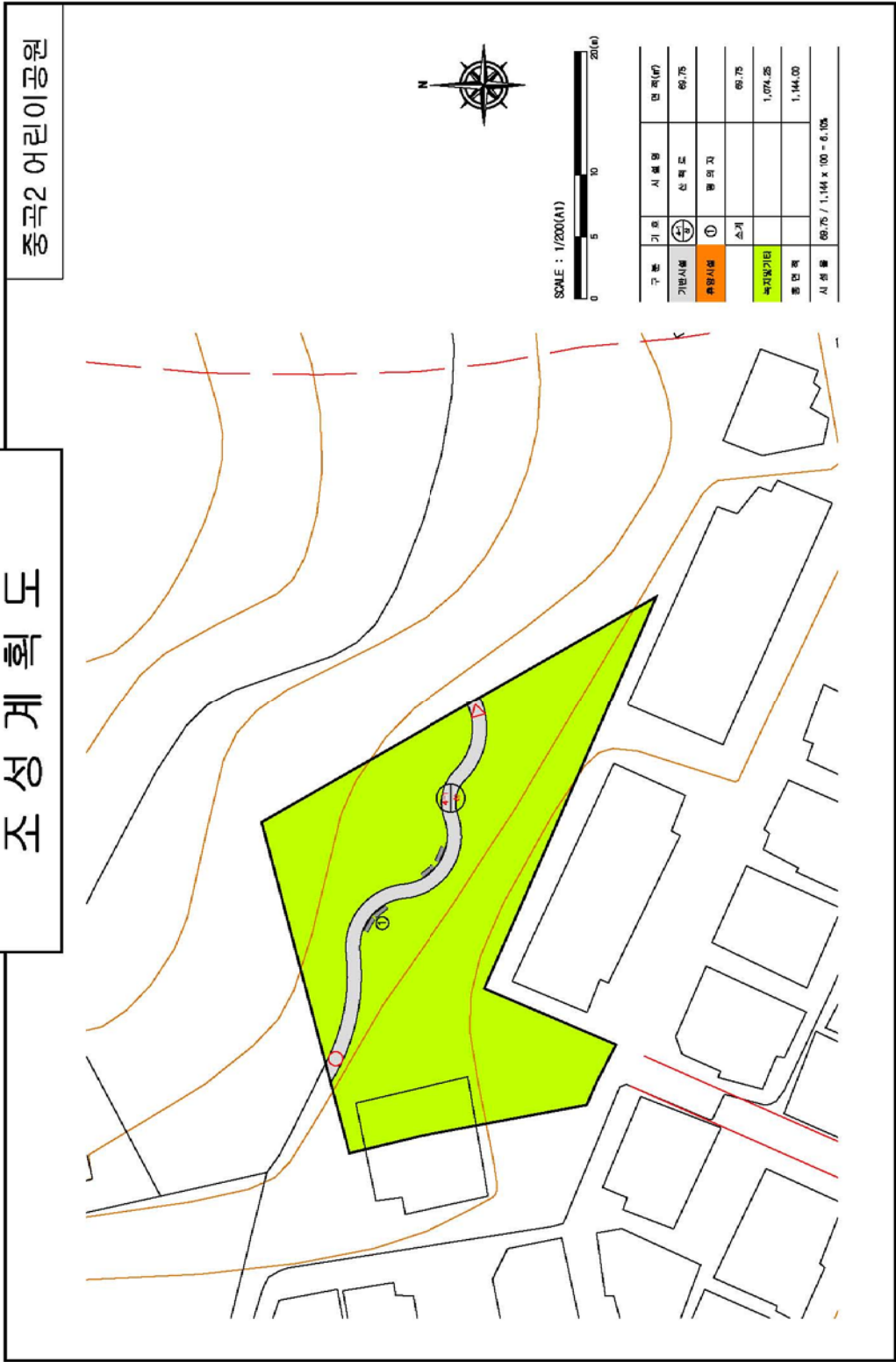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비담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계			1,144	69.75					4	
	소계			69.75	69.75					-	
	도로		공원 내	69.75	69.75					-	
	소계			-	-					4	
휴양 시설	앉음벽	①	신책로 주변	-	-	목재				4	
	소계			1,074.25	-						
녹지 및 기타	녹지			1,074.25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46.5	69.75				
신설	신책로	계			46.5	69.75				
		4	1	1.5	46.5	69.75	연결로	중곡동 147-6	중곡동 147-52	



◆ 강북구고시 제2015-221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2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08-428호(2008.11.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2호(2013.12.19)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137호(2015.02.12)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5-42호(2015.03.12)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870호(2015.08.27)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푸른도시과(전화 901-69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번동 산17번지 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5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다.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토지보상)

라. 규모변경 : 당초 - 토지보상 2,735㎡, 변경 - 토지보상 3,195㎡

마. 사업의 시행자 :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별첨 조서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자. 열람장소 :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5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변경전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지 분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의 내 용	
1필지												
1	번동 산17	임야	2,735	2,735	1			서울특별시				미집행 공원조성

변경후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지 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의 내 용	
2필지												
1	동 번 산17	임야	2,735	2,735	1			서울특별시				미집행 공원조성
2	동 번 산25-2	임야	460	460	1		성북구 장위동 69-58	사회복지법인 구세원				동네쉼터 공간조성

◆ 도봉구고시 제2015-118호

도봉구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도봉구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도 봉 구 청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도봉구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어린이공원 27개소

※ 붙임 1. 대상지 목록 참고

3. 면 적 : 총 23,370.3㎡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원녹지과(☎2091-375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 임 1. 대상지 목록 1부.

2. 조성계획 조서 및 도면 각 1부.

붙임1. 대상지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면적(㎡)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일	비고
도봉구 관내 어린이공원 27개소			23,370.3		
1	꽃동네	쌍문1동 286-32	317.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2호(1999.10.01)	
2	노해	쌍문2동 709-32	1,018.9	건설교통부고시 제1968-8호(1968.01.23)	
3	샛별	쌍문3동 315-362	331.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2호(1999.10.01)	
4	둥근달	쌍문3동 139-101	1,013.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2호(1999.10.01)	
5	무궁화	방학1동 655-31	1,002.8	건설교통부고시 제1968-8호(1968.01.23)	
6	사슴	방학1동 681-13	969.5	건설교통부고시 제1968-8호(1968.01.23)	
7	소망	방학1동 694-9	972.5	건설교통부고시 제1968-8호(1968.01.23)	
8	학골	방학1동 735-4	149.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2호(1999.10.01)	
9	생잇들	방학2동 644-28	969.9	건설교통부고시 제1968-8호(1968.01.23)	
10	개나리	방학2동 638-12	960.2	건설교통부고시 제1968-8호(1968.01.23)	
11	샘말	방학2동 611-5	1,084.6	건설교통부고시 제1968-8호(1968.01.23)	
12	뒷말	방학2동663	1,000.0	건설교통부고시 제1968-8호(1968.01.23)	
13	방학	방학2동304-20	305.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2호(1999.10.01)	
14	꿈동산	창1동 663-1	1,007.9	서울특별시고시 제1965-150호(1995.11.08)	
15	창고개	창2동 608-5	990.4	서울특별시고시 제1965-150호(1995.11.08)	
16	다람쥐	창2동 624-16	988.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5-150호(1995.11.08)	
17	장미	창2동 553-8	999.7	서울특별시고시 제1965-150호(1995.11.08)	
18	달내	창2동 630-4	1,000.7	서울특별시고시 제1965-150호(1995.11.08)	
19	신창	창3동 449-103	579.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2호(1999.10.01)	
20	물방울	창3동 458-6	646.0	도봉구 고시 제2004-52호(2004.07.30)	
21	미화	창5동 715-17	995.7	건설교통부고시 제1975-127호(1975.10.02)	
22	무지개	도봉1동 570-13	921.4	건설교통부고시 제1976-77호(1976.06.25)	
23	해태	도봉1동 614-37	961.6	건설교통부고시 제1968-8호(1968.01.23)	
24	서원	도봉1동 576-13	921.3	건설교통부고시 제1976-77호(1976.06.25)	
25	새동네	도봉1동 289-5	1,289.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2호(1999.10.01)	
26	무수	도봉1동 585-2	1,002.7	건설교통부고시 제1976-77호(1976.06.25)	
27	갈대밭	도봉2동 625-123	973.3	건설교통부고시 제1976-77호(1976.06.25)	

붙임2. 조성계획 결정조서

1. 꽃동네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쌍문1동 286-32)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17.0	317.0				4	
공 원 시 설	소 계	143.3	143.3				4	45.21%
	기 반 시 설	소계	10.2	10.2				
		도로	10.2	10.2				
		광장	—	—				
	조경시설		—	—				
	휴양시설		—	—				
	유희시설		133.1	133.1			4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4	
녹 지 및 기 타		173.7	173.7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317.0	317.0						
	합 계		143.3	143.3					4	
기반 시설	계		10.2	10.2						
	도 로		10.2	10.2						
유희 시설	계		133.1	133.1					2	
	어린이놀이터	가	133.1	133.1						
	조합놀이대	1							1	
	그네	2							1	
관리 시설	계								2	
	안내판	3							2	
녹지 및 기타	계		173.7	173.7						
	녹지	나	95.1	95.1						
	미조성지	다	78.6	78.6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1.2	10.2				
	소 로	계			11.2	10.2				
		3	1	7.7	11.2	10.2	외부도로	외부도로	외부도로	

2. 노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쌍문2동 709-32)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18.9	1,018.9				12	
공 원 시 설	소 계	532.3	532.3				12	52.24%
	기 반 시 설	소계	167.6	167.6				
		도로	136.1	136.1				
		광장	31.5	31.5				
	조경시설		21.9	21.9			3	
	휴양시설		119.6	119.6			3	
	유희시설		218.1	218.1			3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5.1	5.1			3	
녹 지 및 기 타		486.6	486.6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018.9							
	합 계		532.3						12	
기 반 시 설	계		167.6							
	도 로		136.1							
	입구광장	가	31.5							
조 경 시 설	계		21.9						3	
	바닥분수	나	21.9							
	문주	1							1	
	파고라	2							1	
	장식벽	3							1	
휴 양 시 설	계		119.6						3	
	휴게쉼터	다	119.6							
	휴게쉼터1	다-1	(105.0)							
	휴게쉼터2	다-2	(14.6)							
	평의자	4							1	
	앉음벽	5							2	
유 희 시 설	계		218.1						3	
	놀 이 터	라	218.1							
	어린이놀이터	라-1	(198.9)							
	유아놀이터	라-2	(19.2)							
	조합놀이대	6							1	
	시소	7							1	
	색연필조형물	8							1	
관 리 시 설	계		5.1						3	
	세면장	마	5.1							
	음수대	9							1	
	안내판	10							2	
	녹지 및 기타시설	바	486.6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76.0	136.1				
신 설	소로	계			31.0	47.3				
		3	1	6.5	31.0	47.3	외부도로	외부도로	외부도로	
신 설	산책로	계			45.0	88.8				
			1	3.5	6.7	23.5	진입로	소로3-1	휴게쉼터1	
			2	3.3	2.5	8.1	진입로	소로3-1	입구광장	
			3	1.9	8.5	16.2	연결도로	휴게쉼터1	휴게쉼터2	
			4	1.5	27.3	41.0	연결도로	입구광장	휴게쉼터2	

3. 셋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쌍문3동 315-362)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31.0	331.0				6	
공 원 시 설	소 계	186.6	186.6				6	56.37%
	기 반 시 설	소계	82.1	82.1				
		도로	-	-				
		광장	82.1	82.1				
	조경시설		-	-				
	휴양시설		-	-			2	
	유희시설		104.5	104.5			1	
	운동시설		-	-			1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2	
녹 지 및 기 타		144.4	144.4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331.0	331.0					6	
	합 계		186.6	186.6					6	
기반 시설	계		82.1	82.1						
	입구광장	가	82.1	82.1						
휴양 시설	계								2	
	평의자	1							2	
유희 시설	계		104.5	104.5					1	
	어린이놀이터	나	104.5	104.5						
	조합놀이대	2							1	
운동 시설	계								1	
	체력단련시설	3							1	
관리 시설	계								2	
	안내판	4							2	
	녹지 및 기타시설	다	144.4	144.4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신설	산책로	계								
				해	당	없	음			

4. 등근달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쌍문3동 139-101)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13.1	1,013.1				30	
공 원 시 설	소 계	575.0	575.0				30	56.76%
	기 반 시 설	소계	385.9					
		도로	188.9					
		광장	197.0					
	조경시설		10.0				1	
	휴양시설		31.0				14	
	유희시설		148.1				7	
	운동시설		-				4	
	교양시설		-					
	편익시설		-					
	관리시설		-				4	
녹 지 및 기 타		438.1	438.1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013.1	1,013.1						
	합 계		575.0	575.0					30	
기반 시설	계		385.9	385.9						
	도 로		188.9	188.9						
	중앙광장	가	197.0	197.0						
조 경 시 설	계		10.0	10.0					1	
	사각화단	나	10.0	10.0						
	사각화단1	나-1	(3.6)	(3.6)						
	사각화단2	나-2	(3.2)	(3.2)						
	사각화단3	나-3	(3.2)	(3.2)						
	파고라	1							1	
휴 양 시 설	계		31.0	31.0					14	
	휴게쉼터	다	31.0	31.0						
	평의자	2							6	
	원형의자	3							5	
	통석의자	4							3	
유 희 시 설	계								7	
	어린이놀이터	라	148.1	148.1						
	조합놀이대	5							1	
	암벽타기	6							1	
	경사지미끄럼틀	7							1	
	로프잡고오르기	8							1	
	흔들놀이	9							3	
운동 시설	계								4	
	체력단련시설	10							4	
관리 시설	계								4	
	수목보호호출덮개	11							4	
	녹지 및 기타시설	마	438.1	438.1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89.7	188.9				
신 설	산책로	계			89.7	188.9				
			1	5.7	6.8	38.9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2	3.6	8.7	30.1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3	1.5	54.8	82.2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4	
			4	2.7	7.2	19.5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5	1.5	12.1	18.2	연결도로	산책로4	중앙광장	

5. 무궁화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방학1동 655-31)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02.8	1,002.8				31	
공 원 시 설	소 계	599.5	599.5				31	59.78%
	기 반 시 설	소계	285.1	285.1				
		도로	97.0	97.0				
		광장	188.1	188.1				
	조경시설		19.6	19.6			3	
	휴양시설		51.2	51.2			15	
	유희시설		243.6	243.6			7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6	
녹 지 및 기 타		403.3	403.3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002.8	1,002.8						
	합 계		599.5	599.5					31	
기반 시설	계		285.1	285.1						
	도 로		97.0	97.0						
	광 장	가	188.1	188.1						
	진입광장	가-1	(105.4)	(105.4)						
	입구광장	가-2	(82.7)	(82.7)						
조경 시설	계		19.6	19.6					3	
	바닥분수	나	19.6	19.6						
	원형파고라	1							1	
	문주	2							1	
	장식벽	3							1	
휴양 시설	계		51.2	51.2					15	
	휴게쉼터	다	51.2	51.2						
	휴게쉼터1	다-1	(38.8)	(38.8)						
	휴게쉼터2	다-2	(8.4)	(8.4)						
	휴게쉼터3	다-3	(4.0)	(4.0)						
	등의자	4							4	
	1인의자	5							11	
유 의 시 설	계		243.6	243.6					7	
	놀 이 터	라	243.6	243.6						
	어린이놀이터	라-1	(170.2)	(170.2)						
	소리놀이터	라-2	(52.4)	(52.4)						
	암벽놀이터	라-3	(21.0)	(21.0)						
	조합놀이대	6							1	
	소리골	7							4	
	암벽등반대	8							1	
	걸리버놀이벽	9							1	
관리 시설	계								6	
	음수전	10							1	
	수목보호호출덮개	11							2	
	안내판	12							3	
	녹지 및 기타시설	마	403.3	403.3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64.7	97.0				
신 설	산책로	계			64.7	97.0				
			1	1.5	64.7	97.0	순환도로	입구광장	입구광장	

6. 사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방학1동 681-13)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69.5	969.5				14	
공 원 시 설	소 계	516.5	516.5				14	53.27%
	기 반 시 설	소계	160.9					
		도로	93.9					
		광장	67.0					
	조경시설		18.1				1	
	휴양시설		-				1	
	유희시설		337.5				9	
	운동시설		-					
	교양시설		-					
	편익시설		-					
	관리시설		-				3	
녹 지 및 기 타		453.0	453.0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69.5	969.5						
	합 계		516.5	516.5					14	
기반 시설	계		160.9	160.9						
	도 로		93.9	93.9						
	중앙광장	가	67.0	67.0						
조경 시설	계		18.1	18.1					1	
	바닥분수	나	18.1	18.1						
	장식가벽	1							1	
휴양 시설	계								1	
	연식의자	2							1	
유 희 시 설	계		337.5	337.5					9	
	놀 이 터	다	337.5	337.5						
	어린이놀이터	다-1	(304.9)	(304.9)						
	유아놀이터	다-2	(32.6)	(32.6)						
	조합놀이대	3							1	
	그네	4							1	
	시소	5							2	
	흔들놀이	6							3	
	모래탁자	7							1	
	모래놀이터웁스	8							1	
관리 시설	계								3	
	음수대	9							1	
	안내판	10							2	
	녹지 및 기타시설	라	453.0	453.0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56.3	93.9				
	소 로	계			20.4	17.7				
		3	1	5.5	20.4	17.7	외부도로	외부도로	외부도로	
신 설	산책로	계			35.9	76.2				
			1	3.7	8.8	32.9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2	1.6	27.1	43.3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7. 소망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방학1동 694-19)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72.5	972.5				25	
공 원 시 설	소 계	581.3	581.3				25	59.77%
	기 반 시 설	소계	172.7					
		도로	172.7					
		광장	-					
	조경시설		-					
	휴양시설		-				7	
	유희시설		378.7				9	
	운동시설		26.2				2	
	교양시설		-				1	
	편익시설		-					
	관리시설		3.7				6	
녹 지 및 기 타		391.2	391.2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72.5	972.5						
	합 계		581.3	581.3					25	
기반 시설	계		172.7	172.7						
	도 로		172.7	172.7						
	광 장									
휴양 시설	계								7	
	평의자	1							6	
	앉음벽	2							1	
유 희 시 설	계		378.7	378.7					9	
	놀 이 터	가	378.7	378.7						
	어린이놀이터	가-1	(363.3)	(363.3)						
	유아놀이터	가-2	(15.4)	(15.4)						
	조합놀이대	3							1	
	그네	4							1	
	스피드레이서	5							1	
	수퍼노바	6							1	
	시소	7							2	
	흔들놀이대	8							2	
	유아용탁자	9							1	
운동 시설	계		26.2	26.2					2	
	체력단련장	나	26.2	26.2						
	체력단련시설	10							2	
교양 시설	계								1	
	참여의벽	11							1	
관리 시설	계		3.7	3.7					6	
	세면장	다	3.7	3.7						
	음수대	12							1	
	수목보호호출덮개	13							3	
	안내판	14							2	
	녹지 및 기타시설	라	391.2	391.2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78.0	172.7				
신 설	산책로	계			78.0	172.7				
			1	3.0	8.1	24.4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 4	
			2	2.0	7.8	15.6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 4	
			3	3.0	8.4	25.3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 4	
			4	2.0	53.7	107.4	연결도로	놀이터	체련단련장	

8. 학골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방학1동 735-4)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49.0	149.0				3	
공 원 시 설	소 계	79.4	79.4				3	53.26%
	기 반 시 설	소계	79.4					
		도로	-					
		광장	79.4					
	조경시설		-					
	휴양시설		-					
	유희시설		-					
	운동시설		-					
	교양시설		-					
	편익시설		-					
	관리시설		-				3	
녹 지 및 기 타		69.6	69.6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49.0							
	합 계		79.4						3	
기반 시설	계		79.4							
	보행광장	가	79.4							
관리 시설	계								3	
	수목보호호출덮개	1							3	
	녹지 및 기타시설	나	69.6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신 설	산책로	계								
				해	당	없	음			

9. 생잇들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방학2동 644-28)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69.9	969.9				12	
공 원 시 설	소 계	580.9	580.9				12	59.89%
	기 반 시 설	소계	261.5					
		도로	131.1					
		광장	130.4					
	조경시설		-					
	휴양시설		47.5				5	
	유희시설		188.7				2	
	운동시설		83.2				4	
	교양시설		-					
	편익시설		-					
	관리시설		-				1	
녹 지 및 기 타		389.0	389.0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69.9	969.9						
	합 계		580.9	580.9					12	
기반 시설	계		261.5	261.5						
	도 로		131.1	131.1						
	중앙광장	가	78.7	78.7						
	입구광장	나	51.7	51.7						
휴양 시설	계		47.5	47.5					5	
	휴게쉼터	다	47.5	47.5						
	휴게쉼터1	다-1	(41.6)	(41.6)						
	휴게쉼터2	다-2	(3.0)	(3.0)						
	휴게쉼터3	다-3	(2.9)	(2.9)						
	평의자	1							4	
	앉음벽	2							1	
유희 시설	계		188.7	188.7					2	
	어린이놀이터	라	188.7	188.7						
	조합놀이대	3							1	
	그네	4							1	
운동 시설	계		83.2	83.2					4	
	체력단련장	마	83.2	83.2						
	체력단련시설	5							4	
관리 시설	계								1	
	안내판	6							1	
	녹지 및 기타시설	바	580.9	580.9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계			69.9	131.1				
신 설	산책로	계			69.9	131.1				
			1	5.4	4.5	24.1	진입로	외부도로	체력단련장	
			2	3.1	15.1	47.1	진입로	외부도로	입구광장	
			3	1.5	19.2	28.8	진입로	외부도로	입구광장	
			4	1.0	31.1	31.1	연결도로	체력단련장	산책로2	

10. 개나리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방학2동 638-12)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60.2	960.2				11	
공 원 시 설	소 계	549.4	549.4				11	57.22%
	기 반 시 설	소계	365.0					
		도로	177.7					
		광장	187.3					
	조경시설		25.0	25.0			1	
	휴양시설		—	—			6	
	유희시설		153.9	153.9			1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5.5	5.5			3	
녹 지 및 기 타		410.8	410.8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60.2	960.2						
	합 계		549.4	549.4					11	
기반 시설	계		365.0	365.0						
	도 로		177.7	177.7						
	입구광장	가	187.3	187.3						
조경 시설	계		25.0	25.0					1	
	바닥분수	나	25.0	25.0						
	문주	1							1	
휴양 시설	계								6	
	평의자	2							5	
	원형의자	3							1	
유희 시설	계		153.9	153.9					1	
	어린이놀이터	다	153.9	153.9						
	조합놀이대	4							1	
관리 시설	계		5.5	5.5					3	
	세면장	라	5.5	5.5						
	음수대	5							1	
	안내판	6							2	
	녹지 및 기타시설	마	410.8	410.8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69.2	177.7				
신 설	산책로	계			69.2	177.7				
			1	3.5	7.0	24.2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3	
			2	3.5	6.7	23.3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3	
			3	2.3	55.5	130.2	순환도로	입구광장	입구광장	

11. 샘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방학2동 611-5)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84.6	1,084.6				15	
공 원 시 설	소 계	586.9	586.9				15	54.11%
	기 반 시 설	소계	123.2					
		도로	97.9					
		광장	25.3					
	조경시설		-				4	
	휴양시설		63.5				2	
	유희시설		397.2				6	
	운동시설		-					
	교양시설		-					
	편익시설		-					
	관리시설		3.0				3	
녹 지 및 기 타		497.7	497.7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084.6	1,084.6						
	합 계		586.9	586.9					15	
기반 시설	계		123.2	123.2						
	도 로		97.9	97.9						
	입구광장	가	25.3	25.3						
조경 시설	계								4	
	원형파고라	1							2	
	장식벽	2							2	
휴양 시설	계		63.5	63.5					2	
	휴게쉼터	나	63.5	63.5						
	등의자	3							2	
유 희 시 설	계		397.2	397.2					6	
	놀 이 터	다	397.2	397.2						
	어린이놀이터	다-1	(362.0)	(362.0)						
	물놀이터	다-2	(19.0)	(19.0)						
	유아놀이터	다-3	(16.2)	(16.2)						
	조합놀이대	4							1	
	그네	5							1	
	흔들놀이대	6							2	
	물펌프수반놀이	7							1	
	모래탁자	8							1	
관리 시설	계		3.0	3.0					3	
	세면장	라	3.0	3.0						
	음수대	9							1	
	안내판	10							2	
	녹지 및 기타시설	마	497.7	497.7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41.5	97.9				
신 설	산책로	계			41.5	97.9				
			1	2.8	13.8	38.5	진입로	외부도로	어린이놀이터	
			2	1.9	13.9	26.4	연결도로	산책로 1	휴게쉼터	
			3	1.9	7.7	14.7	연결도로	입구광장	휴게쉼터	
			4	3.0	6.1	18.3	진입로	외부도로	어린이놀이터	

12. 뒷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방학2동 633)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00.0	1,000.0				17	
공 원 시 설	소 계	570.5	570.5				17	57.05%
	기 반 시 설	소계	312.5	312.5				
		도로	175.0	175.0				
		광장	137.5	137.5				
	조경시설		28.3	28.3			1	
	휴양시설		-	-			6	
	유희시설		253.1	253.1			6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4.9	4.9			4	
녹 지 및 기 타		429.5	429.5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000.0	1,000.0						
	합 계		570.5	570.5					17	
기반 시설	계		312.5	312.5						
	도 로		175.0	175.0						
	광 장	가	137.5	137.5						
	중앙광장	가-1	(102.8)	(102.8)						
	원형광장	가-2	(34.7)	(34.7)						
조경 시설	계		28.3	28.3					1	
	바닥분수	나	28.3	28.3						
	장식벽	1							1	
휴양 시설	계								6	
	등의자	2							6	
유 희 시 설	계		253.1	253.1					6	
	놀 이 터	다	253.1	253.1						
	어린이놀이터	다-1	(239.1)	(239.1)						
	유아놀이터	다-2	(14.0)	(14.0)						
	조합놀이대	3							1	
	그네	4							1	
	시소	5							1	
	흔들놀이대	6							2	
	모래탁자	7							1	
관리 시설	계		4.9	4.9					4	
	세면장	라	4.9	4.9						
	음수대	8							1	
	안내판	9							3	
	녹지 및 기타시설	마	429.5	429.5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60.8	175.0				
신 설	산책로	계			60.8	175.0				
			1	4.2	6.9	29.1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2	1.8	8.3	14.9	진입로	외부도로	원형광장	
			3	2.6	28.3	72.3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4	3.4	17.3	58.7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13. 방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방학2동 304-20)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05.0	305.0				7	
공 원 시 설	소 계	43.7	43.7				7	14.33%
	기 반 시 설	소계	3.6	3.6				
		도로	3.6	3.6				
		광장	—	—				
	조경시설		—	—				
	휴양시설		—	—			3	
	유희시설		—	—				
	운동시설		40.1	40.1			3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1	
녹 지 및 기 타		261.3	261.3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305.0							
	합 계		43.7						7	
기반 시설	계		3.6							
	도 로		3.6							
휴양 시설	계								3	
	평의자	1							2	
	앉음벽	2							1	
운동 시설	계		40.1						3	
	체력단련장	가	40.1							
	체력단련시설	3							3	
관리 시설	계								1	
	안내판	4							1	
	녹지 및 기타시설	나	261.3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8	3.6				
신 설	산책로	계			1.8	3.6				
			1	2.0	1.8	3.6	진입로	외부도로	체력단련장	

14. 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창1동 663-1)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07.9	1,007.9				13	
공 원 시 설	소 계	464.3	464.3				13	46.07%
	기 반 시 설	소계	126.7					
		도로	16.0					
		광장	110.7					
	조경시설		28.3				2	
	휴양시설		42.2				3	
	유희시설		291.5				4	
	운동시설		—					
	교양시설		—					
	편익시설		—					
	관리시설		3.9				4	
녹 지 및 기 타		543.6	543.6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007.9	1,007.9						
	합 계		464.3	464.3					13	
기반 시설	계		126.7	126.7						
	도 로		16.0	16.0						
	중앙광장	가	110.7	110.7						
조경 시설	계		28.3	28.3					2	
	바닥분수	나	28.3	28.3						
	파고라	1							1	
	장식벽	2							1	
휴양 시설	계		42.2	42.2					3	
	휴게쉼터	다	42.2	42.2						
	등의자	3							3	
유 희 시 설	계		291.5	291.5					4	
	놀 이 터	다	291.5	291.5						
	어린이놀이터	다-1	(254.1)	(254.1)						
	유아놀이터	다-2	(37.4)	(37.4)						
	조합놀이대	4							1	
	그네	5							1	
	시소	6							1	
	모래탁자	7							1	
관리 시설	계		3.9	3.9					4	
	세면장	라	3.9	3.9						
	음수대	8							1	
	안내판	9							3	
	녹지 및 기타시설	마	543.6	543.6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7.6	16.0				
신 설	산책로	계			7.6	16.0				
			1	2.2	4.6	10.1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2	2.0	3.0	5.9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15. 창고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창2동 608-5)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90.4	990.4				16	
공 원 시 설	소 계	495.1	495.1				16	49.99%
	기 반 시 설	소계	135.5	135.5				
		도로	135.5	135.5				
		광장	-	-				
	조경시설		20.4	20.4			2	
	휴양시설		117.5	117.5			6	
	유희시설		214.3	214.3			2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7.4	7.4			6	
녹 지 및 기 타		495.3	495.3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90.4	990.4						
	합 계		495.1	495.1					16	
기반 시설	계		135.5	135.5						
	도 로		135.5	135.5						
조경 시설	계		20.4	20.4					2	
	벽천분수	가	20.4	20.4						
	문주	1							1	
	장식벽	2							1	
휴양 시설	계		117.5	117.5					6	
	휴게쉼터	나	117.5	117.5						
	휴게쉼터1	나-1	(77.7)	(77.7)						
	휴게쉼터2	나-2	(24.6)	(24.6)						
	휴게쉼터3	나-3	(15.2)	(15.2)						
	앉음벽	3							2	
	사각의자	4							4	
유 희 시 설	계		214.3	214.3					2	
	놀 이 터	다	214.3	214.3						
	어린이놀이터	다-1	(146.5)	(146.5)						
	유아놀이터	다-2	(67.8)	(67.8)						
	조합놀이대	5							1	
	버섯놀이대	6							1	
관리 시설	계		7.4	7.4					6	
	세면장	라	7.4	7.4						
	음수대	7							1	
	수목보호호출덮개	8							3	
	안내판	9							2	
	녹지 및 기타시설	마	495.3	495.3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75.8	135.5				
신 설	산책로	계			75.8	135.5				
			1	1.8	56.7	104.4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1	
			2	2.3	2.6	6.3	연결도로	산책로1	휴게쉼터2	
			3	1.5	4.5	6.7	연결도로	휴게쉼터2	휴게쉼터3	
			4	1.5	12.1	18.1	연결도로	휴게쉼터3	세면장	

16. 다람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창2동 624-16)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88.1	988.1				18	
공 원 시 설	소 계	558.1	558.1				18	56.48%
	기 반 시 설	소계	66.9	66.9				
		도로	32.3	32.3				
		광장	34.6	34.6				
	조경시설		—	—			1	
	휴양시설		—	—			3	
	유희시설		417.7	417.7			7	
	운동시설		69.4	69.4			3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4.1	4.1			4	
녹 지 및 기 타		430.0	430.0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88.1	988.1						
	합 계		558.1	558.1					18	
기반 시설	계		66.9	66.9						
	도 로		32.3	32.3						
	중앙광장	가	34.6	34.6						
조경 시설	계								1	
	장식벽	1							1	
휴양 시설	계								3	
	평의자	2							1	
	앉음벽	3							1	
	원형의자	4							1	
유 희 시 설	계		417.7	417.7					7	
	놀 이 터	나	417.7	417.7						
	어린이놀이터	나-1	(405.1)	(405.1)						
	유아놀이터	나-2	(12.6)	(12.6)						
	조합놀이대	5							1	
	그네	6							1	
	시소	7							1	
	개미터널	8							1	
	흔들놀이대	9							2	
	모래탁자	10							1	
운동 시설	계		69.4	69.4					3	
	체력단련장	다	69.4	69.4						
	체력단련시설	11							3	
관리 시설	계		4.1	4.1					4	
	세면장	라	4.1	4.1						
	음수대	12							1	
	안내판	13							3	
	녹지 및 기타시설	마	430.0	430.0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4.9	32.3				
신 설	산책로	계			14.9	32.3				
			1	2.2	14.9	32.3	진입로	외부도로	체력단련장	

17. 장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창2동 553-8)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99.7	999.7				26	
공 원 시 설	소 계	482.0	482.0				26	48.21%
	기 반 시 설	소계	85.7	85.7				
		도로	85.7	85.7				
		광장	-	-				
	조경시설		-	-			1	
	휴양시설		-	-			9	
	유희시설		328.4	328.4			8	
	운동시설		46.6	46.6			4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21.3	21.3	1	16.3	16.3	4
녹 지 및 기 타		517.7	517.7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99.7	999.7						
	합 계		482.0	482.0					26	
기반 시설	계		85.7	85.7						
	도 로		85.7	85.7						
조경 시설	계								1	
	장식벽	1							1	
휴양 시설	계									
	등의자	2							6	
	앉음벽	3							1	
	원형의자	4							1	
	에벌레벤치	5							1	
유 희 시 설	계		328.4	328.4					8	
	놀 이 터	가	328.4	328.4						
	어린이놀이터	가-1	(303.8)	(303.8)						
	유아놀이터	가-2	(24.6)	(24.6)						
	조합놀이대	6							1	
	시소	7							2	
	수퍼노바	8							1	
	봉놀이대	9							1	
	흔들놀이대	10							2	
	모래탁자	11							1	
운동 시설	계		46.6	46.6					4	
	체력단련장	나	46.6	46.6						
	체력단련시설	12							4	
관리 시설	계		21.3	21.3					4	
	비상급수시설	다	16.3	16.3	조적	1동	16.3	16.3		
	세면장	라	5.0	5.0						
	음수대	13							1	
	수목보호호출덮개	14							1	
	안내판	15							2	
	녹지 및 기타시설	마	517.7	517.7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53.4	85.7				
신 설	산책로	계			53.4	85.7				
			1	1.6	36.2	57.9	진입로	외부도로	체력단련장	
			2	1.5	13.9	20.9	진입로	외부도로	체력단련장	
			3	2.1	3.3	6.9	진입로	외부도로	체력단련장	

18. 달내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창2동 630-4)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00.7	1,000.7				15	
공 원 시 설	소 계	523.4	523.4				15	52.30%
	기 반 시 설	소계	-	-				
		도로	-	-				
		광장	-	-				
	조경시설		-	-			2	
	휴양시설		112.0	112.0			3	
	유희시설		407.5	407.5			6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3.9	3.9			4	
녹 지 및 기 타		477.3	477.3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000.7	1,000.7						
	합 계		523.4	523.4					15	
조경 시설	계								2	
	파고라	1							1	
	장식벽	2							1	
휴양 시설	계		112.0	112.0					3	
	휴게쉼터	가	112.0	112.0						
	등의자	3							2	
	원형의자	4							1	
유 희 시 설	계		407.5	407.5					6	
	놀 이 터	나	407.5	407.5						
	어린이놀이터	나-1	(365.7)	(365.7)						
	유아놀이터	나-2	(41.8)	(41.8)						
	조합놀이대	5							1	
	그네	6							1	
	시소	7							1	
	흔들놀이대	8							2	
	모래탁자	9							1	
관리 시설	계		3.9	3.9					4	
	세면장	다	3.9	3.9						
	음수대	10							1	
	안내판	11							3	
	녹지 및 기타시설	라	477.3	477.3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신 설	산책로	계								
				해	당	없	음			

19. 신창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창3동 449-103)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579.0	579.0				17	
공 원 시 설	소 계	289.9	289.9				17	50.07%
	기 반 시 설	소계	138.7	138.7				
		도로	60.0	60.0				
		광장	78.7	78.7				
	조경시설		-	-			1	
	휴양시설		23.1	23.1			10	
	유희시설		128.1	128.1			1	
	운동시설		-	-			5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녹 지 및 기 타		289.1	289.1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579.0	579.0						
	합 계		289.9	289.9						
기반 시설	계		138.7	138.7						
	도 로		60.0	60.0						
	진입광장	가	78.7	78.7						
조경 시설	계								1	
	파고라	1							1	
휴양 시설	계		23.1	23.1					10	
	휴게쉼터	나	23.1	23.1						
	평의자	2							3	
	앉음벽	3							5	
	원형의자	4							2	
유희 시설	계		128.1	128.1					1	
	어린이놀이터	다	128.1	128.1						
	조합놀이대	5							1	
운동 시설	계								5	
	체력단련시설	6							5	
	녹지 및 기타시설	라	289.1	289.1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44.4	60.0				
	소 로	계			5.6	5.2				
		3	1	4.9	5.6	5.2	외부도로	외부도로	외부도로	
	신 설	계			38.8	54.8				
		산책로	1	1.6	20.6	33.0	진입로	진입광장	외부도로	
			2	1.2	18.2	21.8	진입로	진입광장	어린이놀이터	

20. 물방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창3동 458-6)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46.0	646.0				26	
공 원 시 설	소 계	378.3	378.3				26	58.56%
	기 반 시 설	소계	152.0					
		도로	114.2					
		광장	37.8					
	조경시설	38.3	38.3				4	
	휴양시설	19.5	19.5				6	
	유희시설	125.5	125.5				4	
	운동시설	43.0	43.0				4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8	
녹 지 및 기 타		267.7	267.7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646.0	646.0					26	
	합 계		378.3	378.3					26	
기반 시설	계		152.0	152.0						
	도 로		114.2	114.2						
	진입광장	가	37.8	37.8						
조경 시설	계		38.3	38.3					4	
	바닥분수	나	38.3	38.3						
	파고라	1							1	
	게이트	2							3	
휴양 시설	계		19.5	19.5					6	
	휴게쉼터	다	19.5	19.5						
	평의자	3							3	
	앉음벽	4							3	
유희 시설	계		125.5	125.5					4	
	어린이놀이터	라	125.5	125.5						
	조합놀이대	5							1	
	흔들놀이대	6							3	
운동 시설	계		43.0	43.0					4	
	체력단련장	마	22.5	22.5						
	지압보도	바	20.5	20.5						
	지압보도 1	바-1	(5.8)	(5.8)						
	지압보도 2	바-2	(14.7)	(14.7)						
	체력단련시설	7							4	
관리 시설	계								8	
	볼라드	8							8	
	녹지 및 기타시설	사	267.7	267.7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47.5	114.2				
신 설	산책로	계			47.5	114.2				
			1	2.2	35.4	77.9	진입로	외부도로	바닥분수	
			2	3.0	2.1	6.3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 1	
			3	3.0	3.5	10.4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 1	
			4	3.0	2.5	7.4	진입로	외부도로	어린이놀이터	
			5	3.0	4.1	12.2	진입로	외부도로	어린이놀이터	

21. 미화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창5동 715-17)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95.7	995.7					
공 원 시 설	소 계	568.4	568.4					57.09%
	기 반 시 설	소계	75.6	75.6				
		도로	6.4	6.4				
		광장	69.2	69.2				
	조경시설		30.3	30.3			1	
	휴양시설		-	-			6	
	유희시설		358.3	358.3			6	
	운동시설		99.9	99.9			4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4.3	4.3			9	
녹 지 및 기 타		427.3	427.3					

-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95.7	995.7						
	합 계		587.9	587.9					26	
기반 시설	계		75.6	75.6						
	도 로		6.4	6.4						
	중앙광장	가	69.2	69.2						
조경 시설	계		30.3	30.3					1	
	바닥분수	나	30.3	30.3						
	장식벽	1							1	
휴양 시설	계								6	
	등의자	2							4	
	앉음벽	3							1	
	평상	4							1	
유희 시설	계		358.3	358.3					6	
	놀이터	다	358.3	358.3						
	어린이놀이터	다-1	(330.7)	(330.7)						
	유아놀이터	다-2	(27.6)	(27.6)						
	조합놀이대	5							1	
	그네	6							1	
	시소	7							1	
	수퍼노바	8							1	
	흔들놀이대	9							2	
	모래탁자	10							1	
운동 시설	계		99.9	99.9					4	
	체력단련장	라	99.9	99.9						
	체력단련시설	11							4	
관리 시설	계		4.3	4.3					9	
	세면대	마	4.3	4.3						
	음수전	12							1	
	수목보호호출덮개	13							5	
	안내판	14							3	
	녹지 및 기타시설	바	427.3	427.3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3.2	6.4				
신 설	산책로	계			3.2	6.4				
			1	2.0	3.2	6.4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22. 무지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도봉1동 570-13)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21.4	921.4				12	
공 원 시 설	소 계	519.7	519.7					56.40%
	기 반 시 설	소계	188.3	188.3				
		도로	53.7	53.7				
		광장	134.6	134.6				
	조경시설		18.1	18.1				
	휴양시설		—	—			3	
	유희시설		313.3	313.3			6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3	
녹 지 및 기 타		401.7	401.7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21.4	921.4						
	합 계		519.7	519.7					12	
기반 시설	계		188.3	188.3						
	도 로		53.7	53.7						
	광 장	가	134.6	134.6						
	중앙광장	가-1	93.0	93.0						
	분수광장	가-2	41.6	41.6						
조경 시설	계		18.1	18.1						
	바닥분수	나	18.1	18.1						
휴양 시설	계								3	
	등의자	1							3	
유 희 시 설	계		313.3	313.3					6	
	놀 이 터	다	313.3	313.3						
	어린이놀이터	다-1	(276.3)	(276.3)						
	유아놀이터	다-2	(37.0)	(37.0)						
	조합놀이대	2							1	
	그네	3							1	
	시소	4							2	
	흔들놀이대	5							2	
관리 시설	계								3	
	음수전	6							1	
	안내판	7							2	
	녹지 및 기타시설	라	401.7	401.7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23.4	53.7				
신 설	산책로	계			23.4	53.7				
			1	2.0	3.3	6.5	진입로	외부도로	분수광장	
			2	2.0	14.5	28.9	연결도로	분수광장	중앙광장	
			3	3.2	5.7	18.3	진입로	외부도로	중앙광장	

23. 해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도봉1동 614-37)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61.6	961.6				29	
공 원 시 설	소 계	545.7	545.7				29	56.75%
	기 반 시 설	소계	109.0	109.0				
		도로	109.0	109.0				
		광장	-	-				
	조경시설		-	-			3	
	휴양시설		41.0	41.0			8	
	유희시설		392.1	392.1			13	
	운동시설		-	-			2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3.6	3.6			3	
녹 지 및 기 타		415.9	415.9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61.6	961.6						
	합 계		545.7	545.7					29	
기반 시설	계		109.0	109.0						
	도 로		109.0	109.0						
조경 시설	계								3	
	문주	1							2	
	장식벽	2							1	
휴양 시설	계		41.0	41.0					8	
	휴게쉼터	가	41.0	41.0						
	등의자	3							7	
	원형의자	4							1	
유 희 시 설	계		392.1	392.1					13	
	놀 이 터	다	392.1	392.1						
	어린이놀이터	다-1	(338.0)	(338.0)						
	유아놀이터	다-2	(54.1)	(54.1)						
	조합놀이대	5							1	
	그네	6							1	
	무지개시소	7							1	
	흔들놀이대	8							2	
	자가발전사이클	9							1	
	크레용소리폴	10							5	
	모래탁자	11							2	
운동 시설	계								2	
	체력단련시설	12							2	
관리 시설	계								3	
	세면장	다								
	음수전	13							1	
	안내판	14							2	
	녹지 및 기타시설	라	415.9	415.9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43.0	109.0				
신 설	소 로	계			8.8	20.1				
		3	1	7.5	8.8	20.1	진입로	외부도로	외부도로	
		계			34.2	88.9				
신 설	산책로		1	2.6	34.2	88.9	진입로	외부도로	외부도로	

24. 서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도봉1동 576-13)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21.3	921.3				15	
공 원 시 설	소 계	532.7	532.7				15	57.82%
	기 반 시 설	소계	230.9	230.9				
		도로	65.6	65.6				
		광장	165.3	165.3				
	조경시설		21.0	21.0			1	
	휴양시설		31.6	31.6			5	
	유희시설		249.2	249.2			6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3	
녹 지 및 기 타		388.6	388.6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21.3	921.3						
	합 계		532.7	532.7						
기반 시설	계		230.9	230.9						
	도 로		65.6	65.6						
	중앙광장	가	165.3	165.3						
조경 시설	계		21.0	21.0					1	
	바닥분수	나	21.0	21.0						
	문주	1							1	
휴양 시설	계		31.6	31.6					5	
	휴게쉼터	다	31.6	31.6						
	휴게쉼터1	다-1	(19.5)	(19.5)						
	휴게쉼터2	다-2	(12.1)	(12.1)						
	평의자	2							2	
	앉음벽	3							3	
유 희 시 설	계		249.2	249.2					6	
	놀 이 터	라	249.2	249.2						
	어린이놀이터	라-1	(233.8)	(233.8)						
	유아놀이터	라-2	(15.4)	(15.4)						
	조합놀이대	4							1	
	꽃회전놀이	5							1	
	흔들시소	6							1	
	흔들놀이대	7							2	
	놀이가벽	8							1	
관리 시설	계								3	
	음수전	9							1	
	안내판	10							2	
	녹지 및 기타시설	마	388.6	388.6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35.4	65.6				
신 설	산책로	계			35.4	65.6				
			1	1.9	35.4	65.6	연결도로	중앙광장	중앙광장	

25. 새동네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도봉1동 289-5)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289.0	1,289.0				17	
공 원 시 설	소 계	636.0	636.0				17	49.34%
	기 반 시 설	소계	220.0					
		도로	200.6					
		광장	19.4					
	조경시설		-				2	
	휴양시설		28.6				2	
	유희시설		350.2				6	
	운동시설		37.2				3	
	교양시설		-					
	편익시설		-					
	관리시설		-				4	
녹 지 및 기 타		653.0	653.0					

-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289.0	1,289.0						
	합 계		636.0	636.0					17	
기반 시설	계		220.0	220.0						
	도 로		200.6	200.6						
	은행나무광장	가	19.4	19.4						
조경 시설	계								2	
	파고라	1							1	
	장식벽	2							1	
휴양 시설	계		28.6	28.6					2	
	휴게쉼터	나	28.6	28.6						
	평의자	3							2	
유 희 시 설	계		350.2	350.2					6	
	놀 이 터	다	350.2	350.2						
	어린이놀이터1	다-1	(274.6)	(274.6)						
	어린이놀이터2	다-2	(55.4)	(55.4)						
	유아놀이터	다-3	(20.2)	(20.2)						
	조함놀이대	4							1	
	그네	5							1	
	시소	6							1	
	흔들놀이대	7							2	
	모래탁자	8							1	
운동 시설	계		37.2	37.2					3	
	체력단련장	라	37.2	37.2						
	체력단련시설	9							3	
관리 시설	계								4	
	음수전	10							1	
	안내판	11							3	
	녹지 및 기타시설	마	653.0	653.0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88.3	200.6				
신 설	산책로	계			88.3	200.6				
			1	2.6	38.9	102.5	진입로	외부도로	은행나무광장	
			2	1.9	6.3	11.9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 1	
			3	2.0	43.1	86.2	연결도로	산책로 1	은행나무광장	

26. 무수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도봉1동 585-2)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02.7	1,002.7				12	
공 원 시 설	소 계	376.8	376.8				12	37.58%
	기 반 시 설	소계	76.3	76.3				
		도로	76.3	76.3				
		광장	-	-				
	조경시설		-	-			1	
	휴양시설		45.2	45.2			2	
	유희시설		155.1	155.1			2	
	운동시설		100.2	100.2			2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5	
녹 지 및 기 타		625.9	625.9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1,002.7	1,002.7						
	합 계		376.8	376.8					12	
기반 시설	계		76.3	76.3						
	도로		76.3	76.3						
조경 시설	계								1	
	파고라	1							1	
휴양 시설	계		45.2	45.2					2	
	휴게쉼터	가	45.2	45.2						
	등의자	2							2	
유희 시설	계		155.1	155.1					2	
	어린이놀이터	나	155.1	155.1						
	조합놀이대	3							1	
	그네	4							1	
운동 시설	계		100.2	100.2					2	
	지압장	다	58.7	58.7						
	체력단련장	라	41.5	41.5						
	체력단련시설	5							2	
관리 시설	계								5	
	수목보호호덮개	6							4	
	안내판	7							1	
녹지 및 기타	계		625.9	625.9						
	녹지	마	289.1	289.1						
	미조성지	바	336.8	336.8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25.4	76.3				
신설	산책로	계			25.4	76.3				
			1	3.0	25.4	76.3	진입로	외부도로	외부도로	

27. 갈대밭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총괄표(도봉구 도봉2동 625-123)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973.3	973.3				21	
공 원 시 설	소 계	575.6	575.6				21	59.14%
	기 반 시 설	소계	236.5					
		도로	236.5					
		광장	—					
	조경시설		—					
	휴양시설		133.7				9	
	유희시설		165.4				1	
	운동시설		40.0				4	
	교양시설		—					
	편익시설		—					
	관리시설		—				7	
녹 지 및 기 타		397.7	397.7					

2) 세부시설결정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공원면적		973.3	973.3						
	합 계		575.6	575.6					21	
기반 시설	계		236.5	236.5						
	도 로		236.5	236.5						
휴양 시설	계		133.7	133.7					9	
	휴게쉼터	가	133.7	133.7						
	평의자	1							2	
	등의자	2							6	
	앉음벽	3							1	
유희 시설	계		165.4	165.4					1	
	어린이놀이터	나	165.4	165.4						
	조함놀이대	4							1	
운동 시설	계		40.0	40.0					4	
	체력단련장	다	40.0	40.0						
	체력단련시설	5							4	
관리 시설	계								7	
	수목보호호출덮개	6							6	
	안내판	7							1	
	녹지 및 기타시설	라	397.7	397.7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75.0	236.5				
신 설	산책로	계			75.0	236.5				
			1	3.0	4.1	12.3	진입로	외부도로	휴게쉼터	
			2	3.4	4.8	13.6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5	
			3	3.8	8.5	32.7	진입로	외부도로	산책로5	
			4	3.6	3.9	14.1	진입로	외부도로	휴게쉼터	
			5	3.0	53.7	161.1	순환도로	휴게쉼터	휴게쉼터	



조성계획결정도

S = 1 : 150



■섯별어린이공원 조성계획추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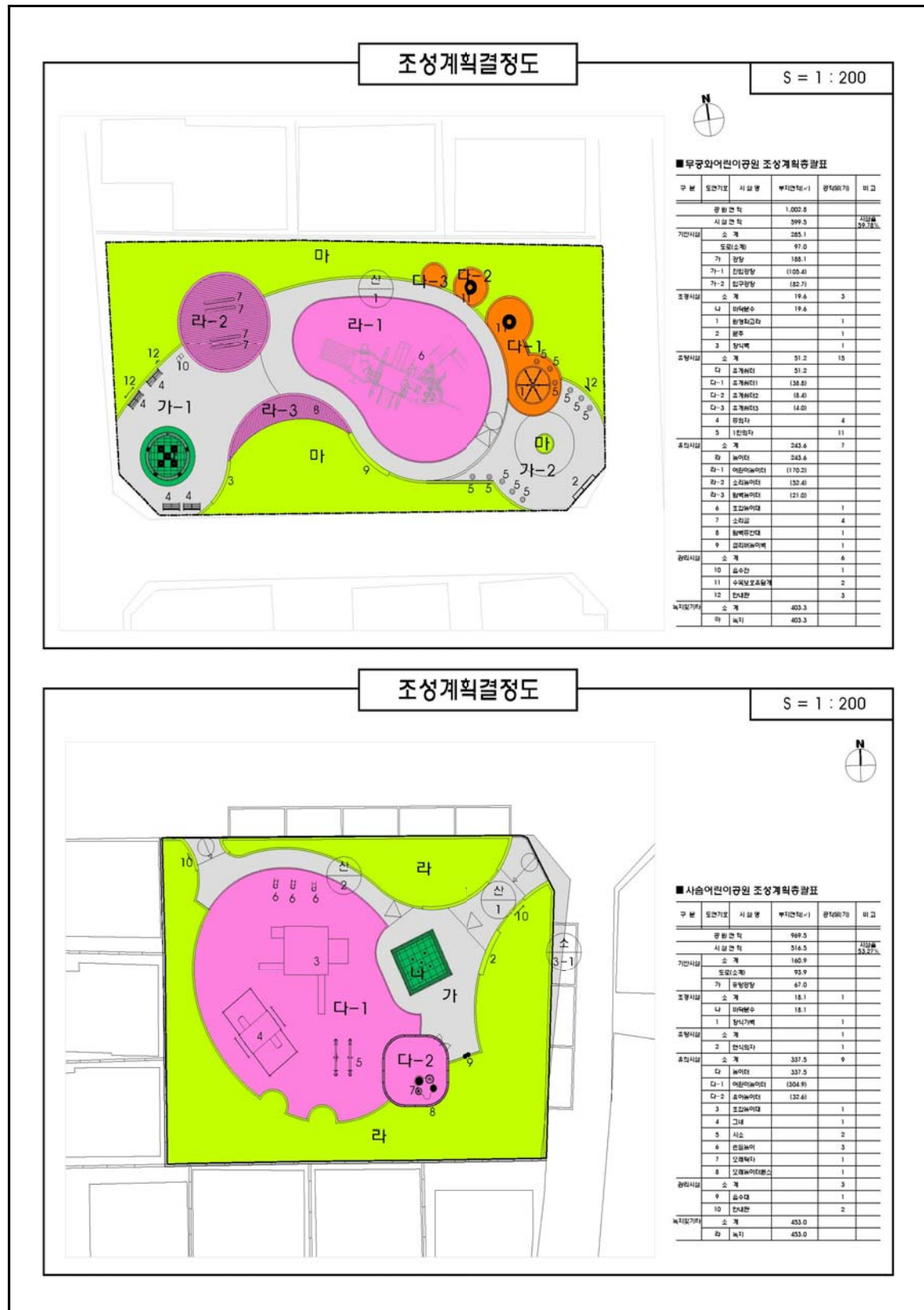
구분	연간회차	시상명	부지전적(㎡)	공적회차	비고
		광화문전적	331.0		
		시상전적	166.6		시상 56.3%
기간시설	소 계	82.1			
	가	건구장상	82.1		
조형시설	소 계			2	
	1	활판자			
조각시설	소 계		104.5	1	
	나	이탈(이탈기대)	104.5		
	2	조각(조각기대)		1	
운동시설	소 계			1	
	3	체육단련시설			
관리시설	소 계			2	
	4	관리관			
비지연기회차	소 계		144.4		
	다	복지	144.4		

조성계획결정도

$$S = 1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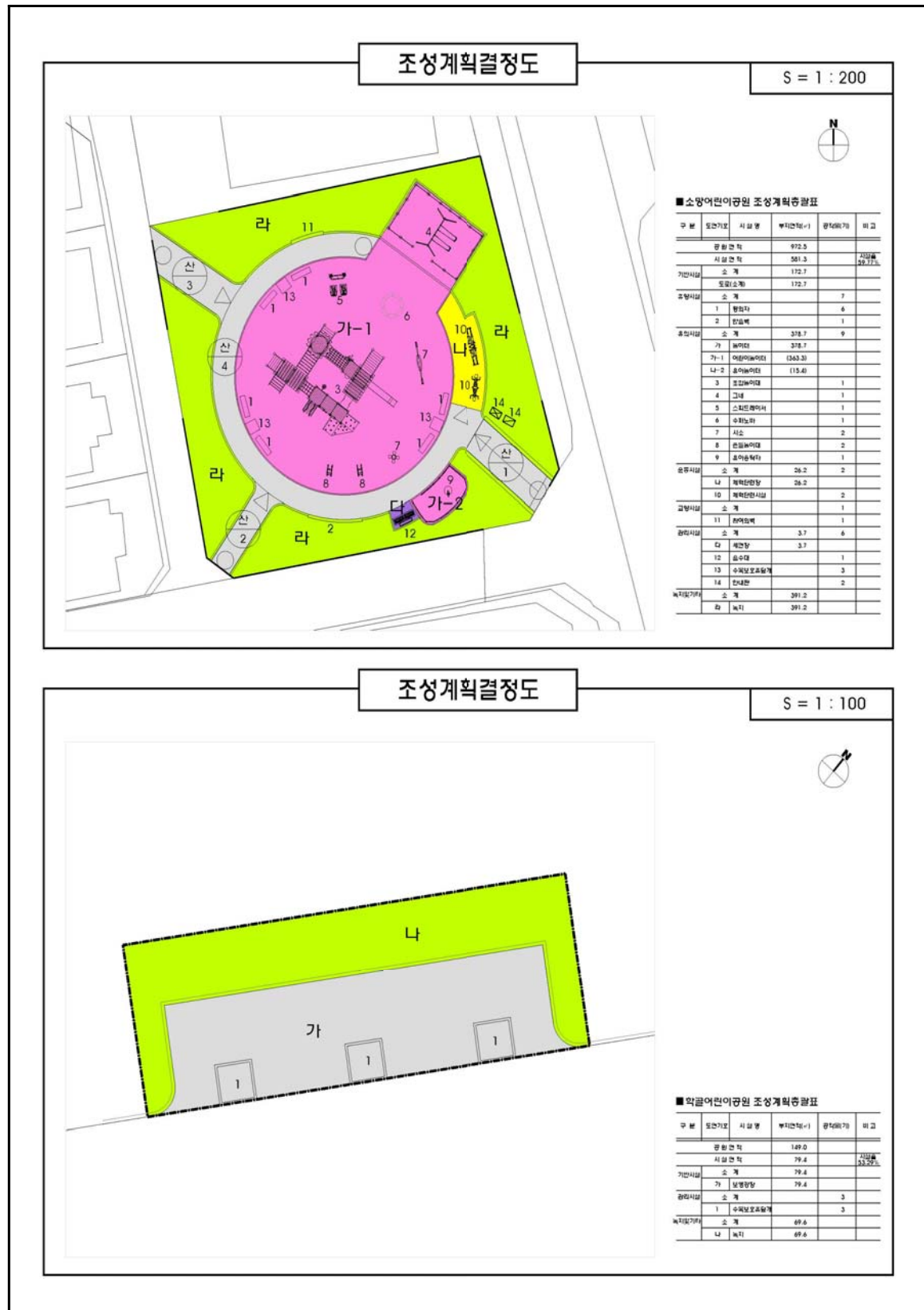

■통근달어린이공원 조성계획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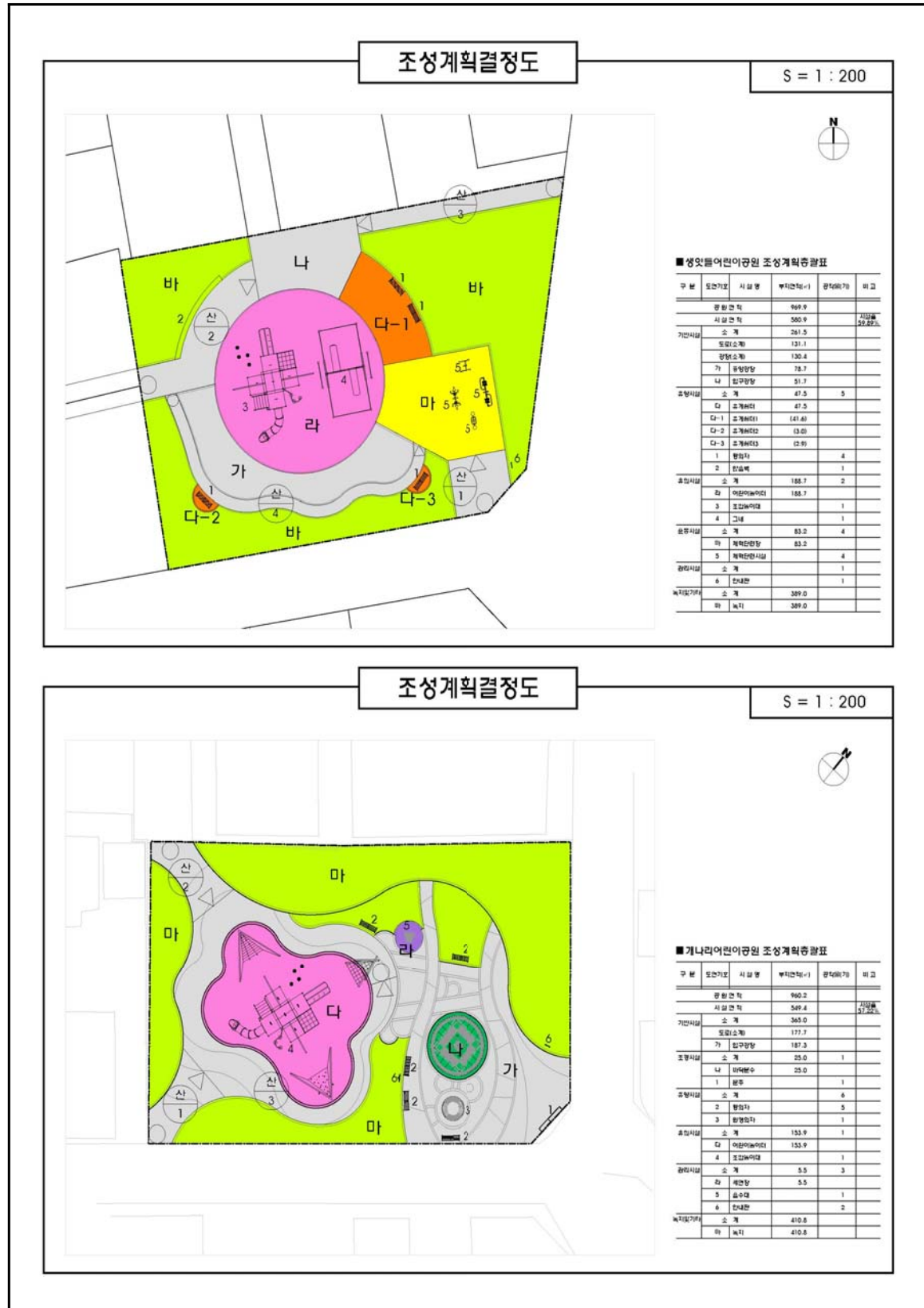
구분	연간자료	시정량	부위(단위: t)	광학(단위: t)	비고
기판시량	광학전력		1,013.1		시정량
	시정량		575.0		26.7%
	소 계		365.9		
	도입(소재)		168.9		
포장시량	가) 우량양장		197.0		
	소 계		10.0	1	
	나) 사각(소재)		10.0		
	나-1) 사각(소재) 1		(3.4)		
호양시량	나-2) 사각(소재) 2		(3.2)		
	나-3) 사각(소재) 3		(3.2)		
	1) 회고량			1	
	소 계		31.0	14	
호양시량	다) 소계(호양)		31.0		
	2) 양양자		6		
	3) 양양양자		5		
	4) 양양양자		3		
호양시량	소 계		148.1	7	
	라) 양양양양양양		148.1		
	5) 양양양양		1		
	6) 양양양		1		
호양시량	7) 양양양양양양		1		
	8) 양양양양양양		1		
	9) 양양양		3		
	소 계		4		
광학시량	10) 광학전력시량		4		
	11) 수확양양양양		4		
비지정자료	소 계		435.1		
	라) 비지		435.1		



조성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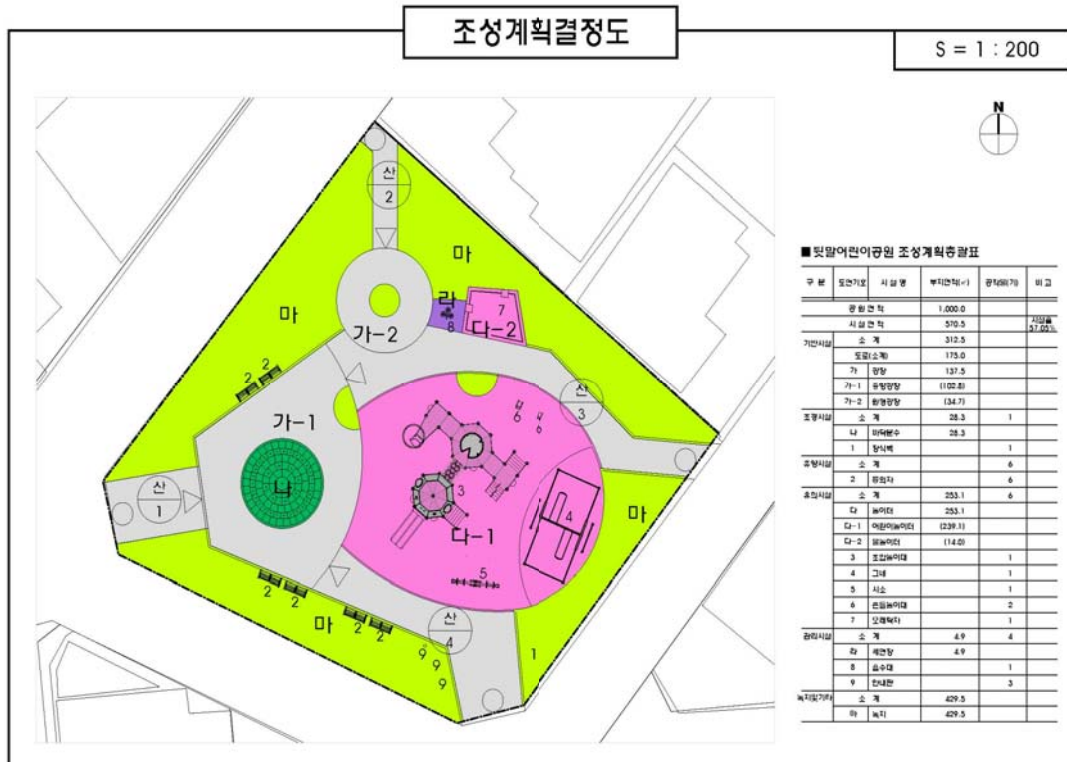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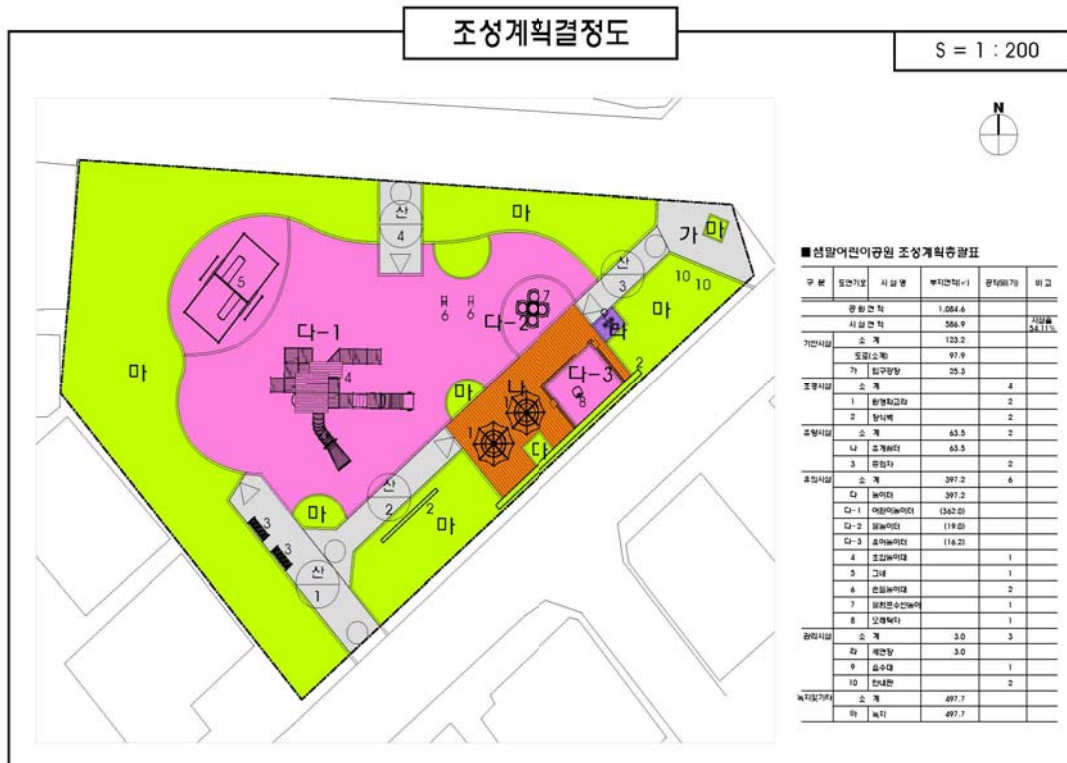
S = 1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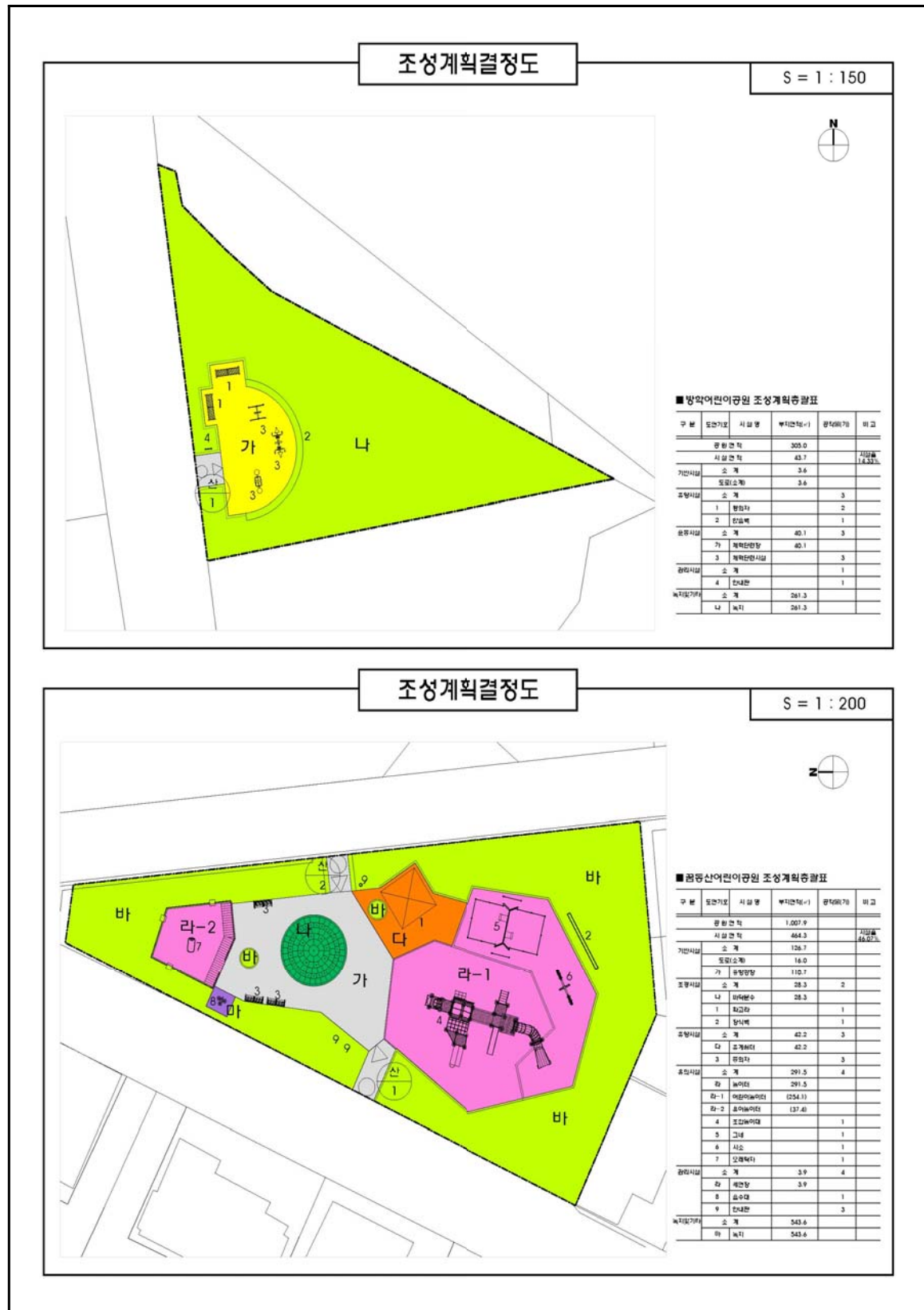




조성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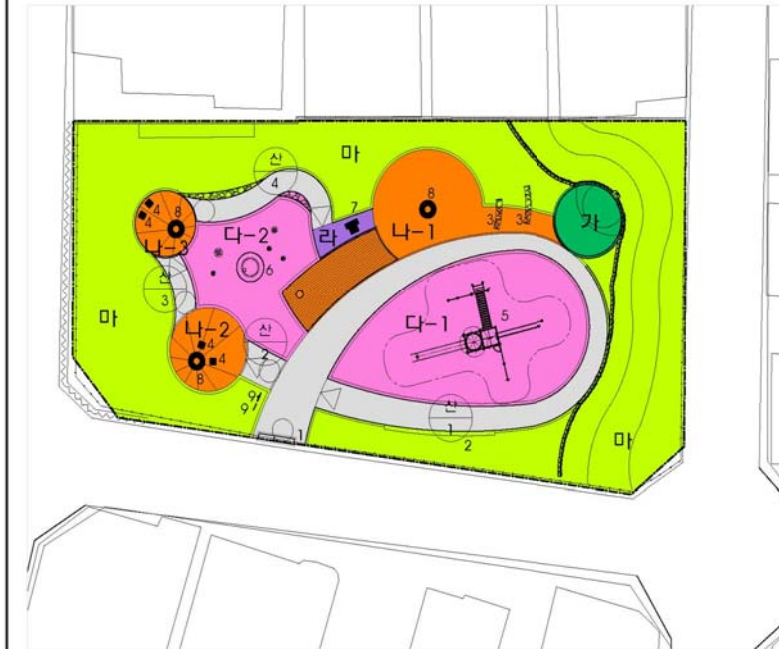
S = 1 : 200





조성계획결정도

S = 1 : 200



■ 상고개어린이공원 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요건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면적(㎡)	비 고
총괄	면적	면적	990.4		
	면적	면적	495.1		기타시설 495.3
기타시설	수 계	수 계	135.5		
	도랑(수계)	도랑(수계)	135.5		
조경시설	수 계	수 계	20.4	2	
	가	계단부수	20.4		
조경시설	1	원주		1	
	2	장식벽		1	
조경시설	수 계	수 계	117.5	6	
	나	조경화단	117.5		
조경시설	나-1	조경화단	(77.7)		
	나-2	조경화단	(24.8)		
조경시설	나-3	조경화단	(15.0)		
	3	원주		2	
조경시설	4	사각원주		4	
	수 계	수 계	214.3	2	
조경시설	다	원주	214.3		
	다-1	원주(원주)	(146.5)		
조경시설	다-2	원주(원주)	(67.8)		
	5	조경화단		1	
조경시설	6	조경화단		1	
	수 계	수 계	7.4	6	
조경시설	라	계단부수	7.4		
	7	원주		1	
조경시설	8	수직선조경화단		3	
	9	원주		2	
조경시설	수 계	수 계	495.3		
	라	원주	4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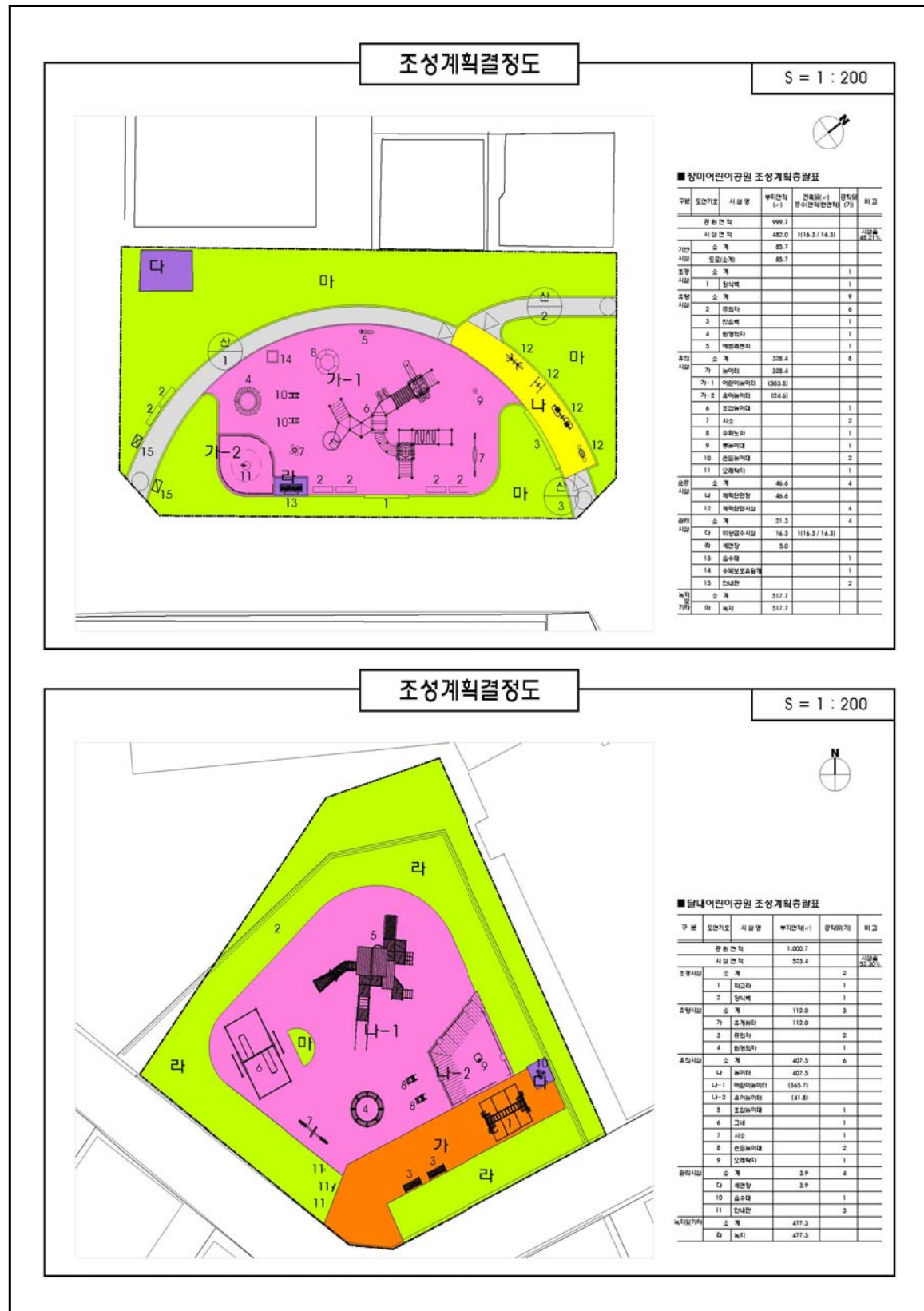
조성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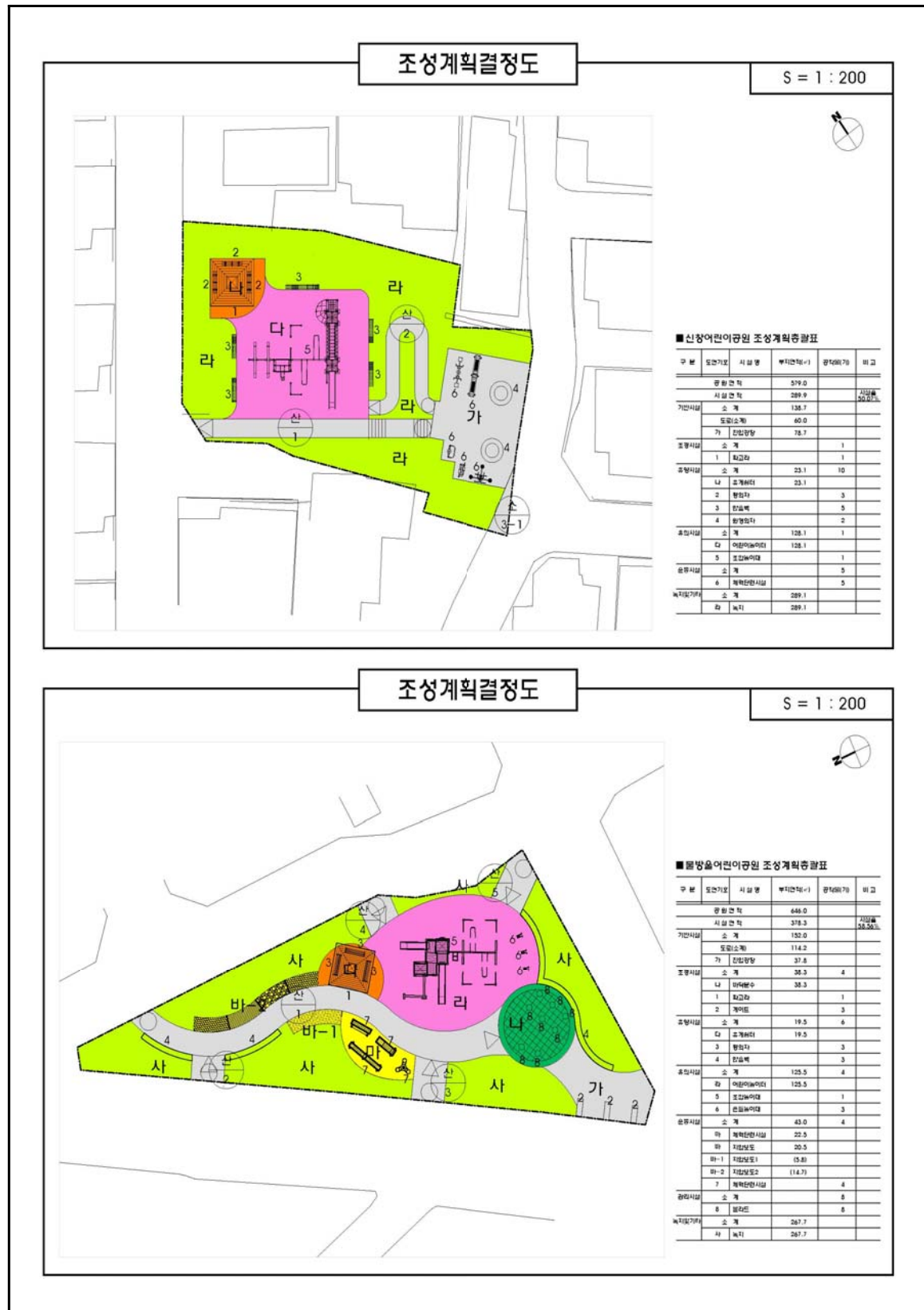
S = 1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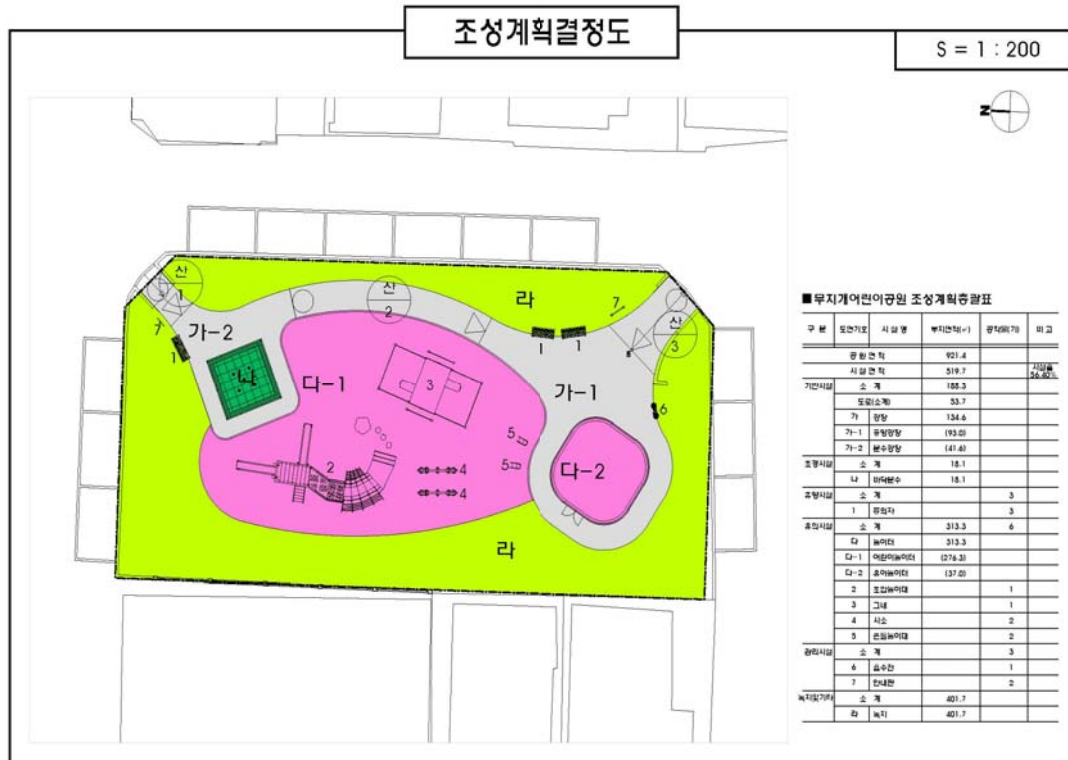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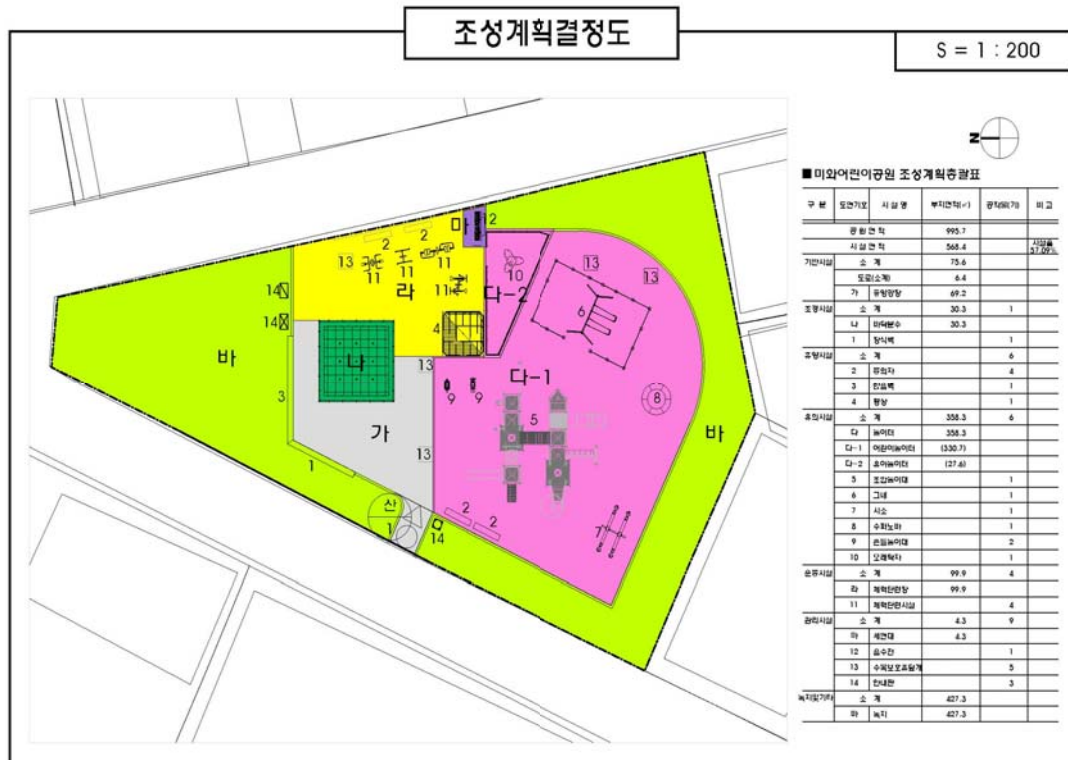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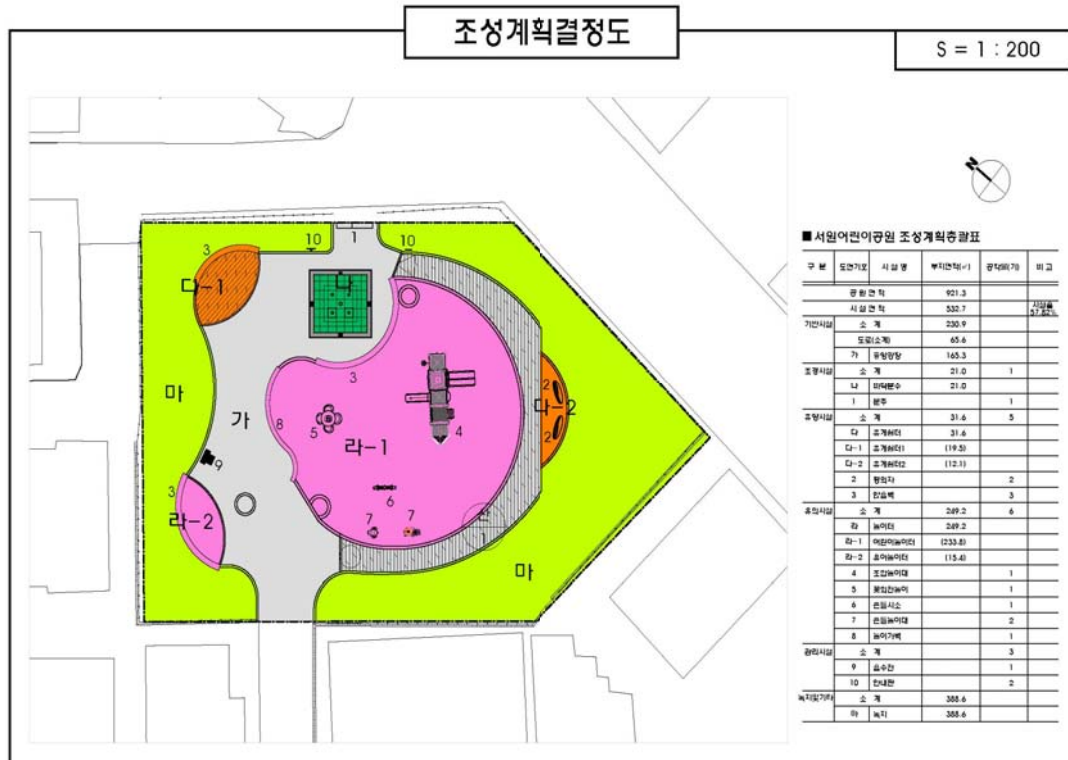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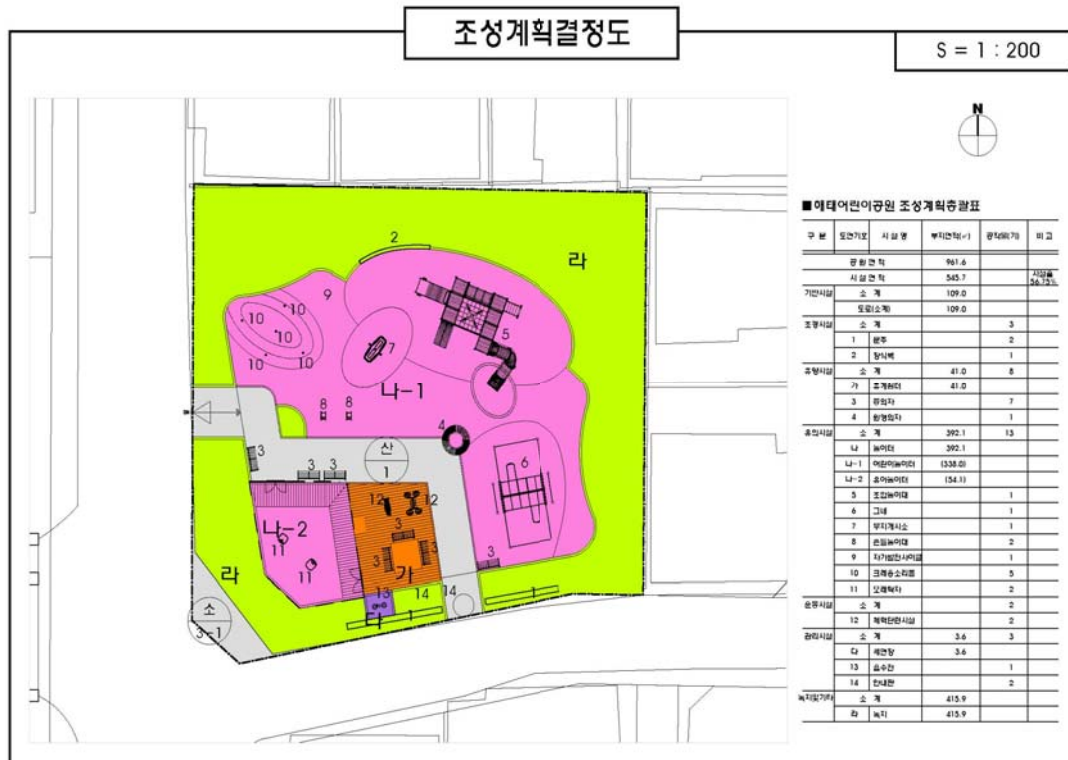
■ 다람재어린이공원 조성계획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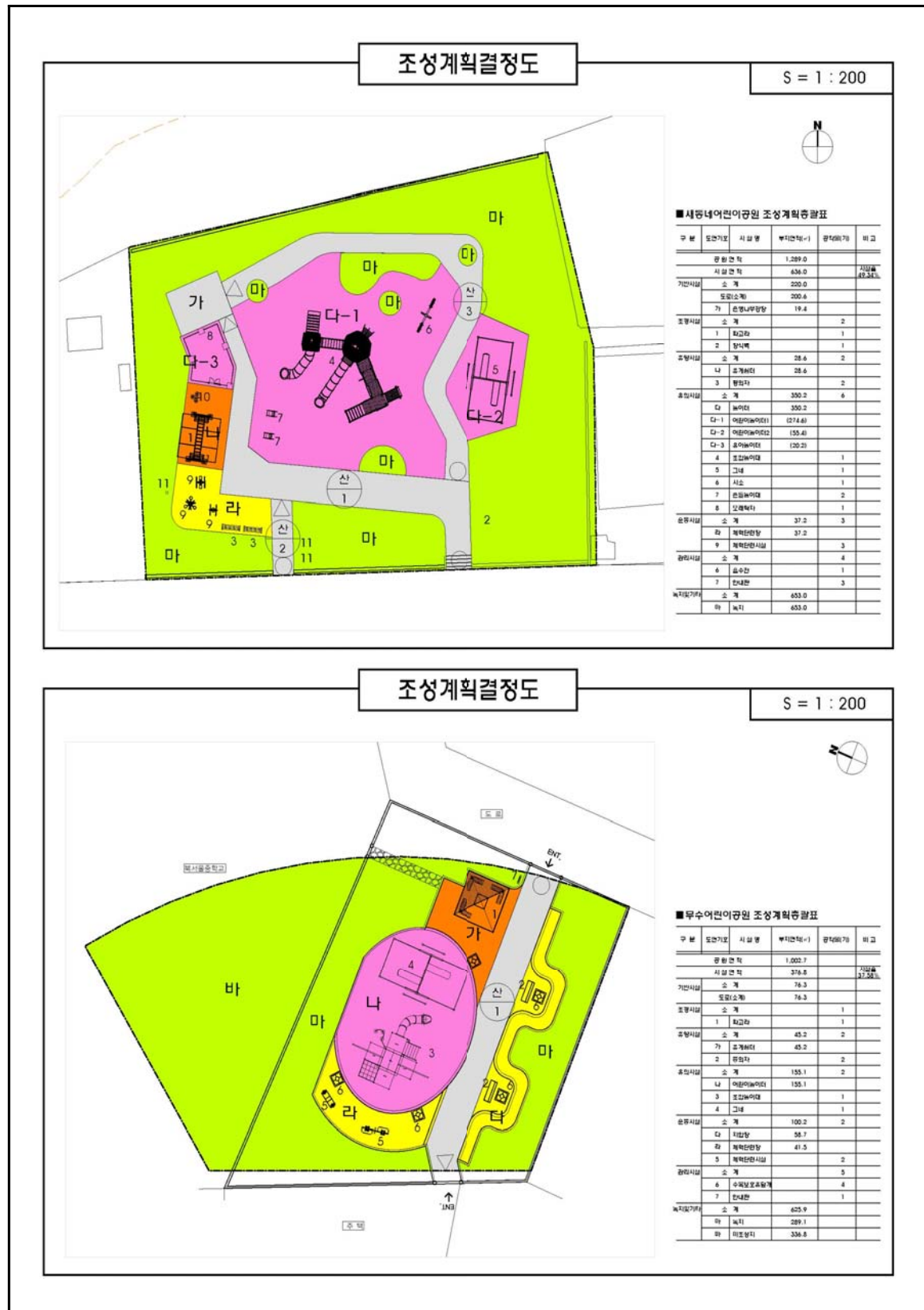
구 분	요건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면적(㎡)	비 고
총괄	면적	면적	988.1		
	면적	면적	558.1		기타시설 430.0
기타시설	수 계	수 계	66.9		
	도랑(수계)	도랑(수계)	32.3		
조경시설	가	원주	34.6		
	수 계	수 계		1	
조경시설	1	장식벽		1	
	수 계	수 계		3	
조경시설	2	원주		1	
	3	원주		1	
조경시설	4	원주		1	
	수 계	수 계	417.7	7	
조경시설	나	원주	417.7		
	나-1	원주(원주)	(405.1)		
조경시설	나-2	원주(원주)	(12.6)		
	5	조경화단		1	
조경시설	6	원주		1	
	7	원주		1	
조경시설	8	원주		1	
	9	원주		2	
조경시설	10	조경화단		1	
	수 계	수 계	69.4	3	
조경시설	다	원주	69.4		
	11	원주		3	
조경시설	수 계	수 계	6.1	4	
	라	원주	6.1		
조경시설	12	원주		1	
	13	원주		3	
조경시설	수 계	수 계	430.0		
	라	원주	4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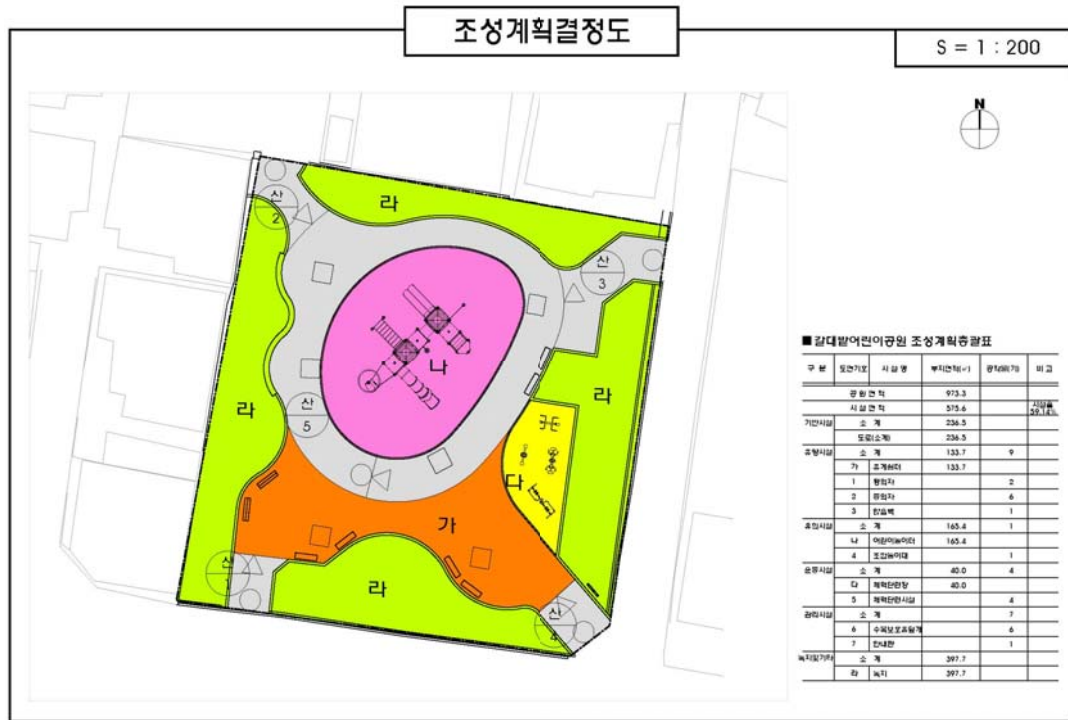












◆ 서대문구고시 제2015-116호

독립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1-372호(2001.11.06.)으로 천연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독립문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대문구청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용객들의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265번지 일대

3. 면 적 : 2,635㎡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대문구 푸른도시과(☎330-1907)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독립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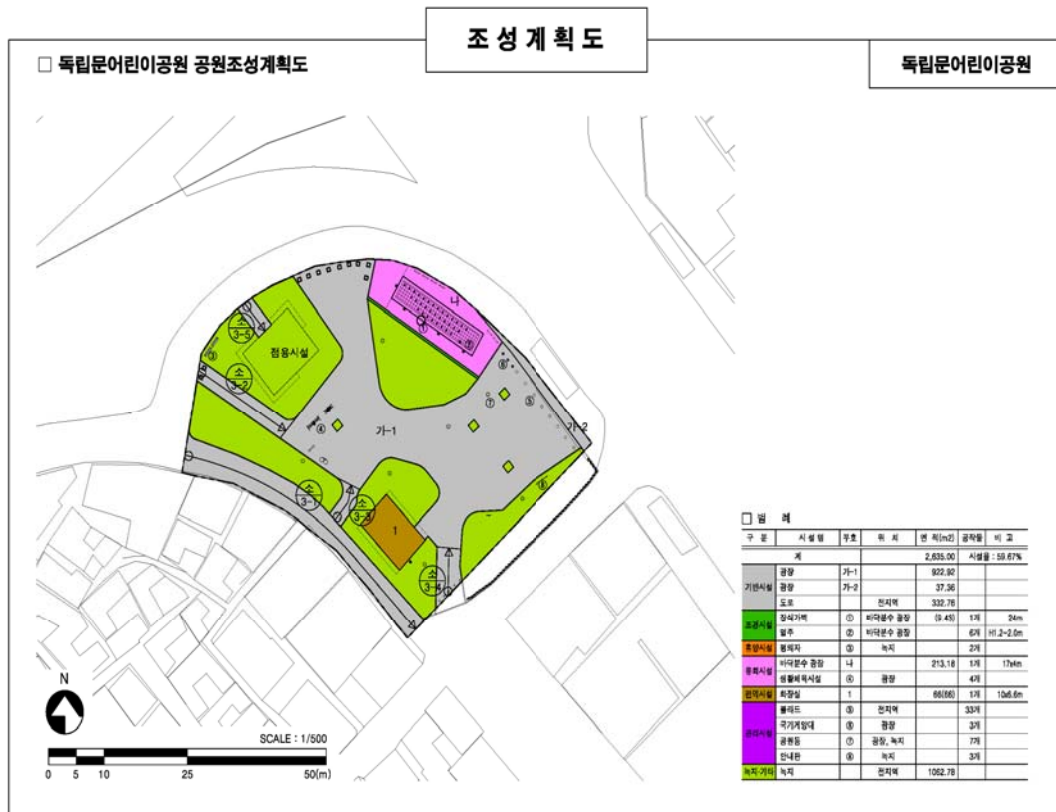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 고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2,635.00	1,572.22				61	시설율 59.67%
기 반 시 설	소계	1,293.04	1,293.04					
	도로	332.76	332.76					
	광장	960.28	960.28					
조경시설		—	—				7	
휴양시설		—	—				2	
유희시설		213.18	213.18				5	
교양시설		—	—					
편익시설		66.00	66.00	1	66	66	1	화장실
관리시설		—	—				46	
녹지·기타		1,062.78						
공원시설율 (법정60%)		(1,572.22㎡ / 2,635㎡) * 100% = 59.67%						
공원건폐율 (법정5%)		(66.00㎡ / 2,635㎡) * 100% = 2.50%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 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 물 (기)	비 고
								바닥면 적	연면 적		
계				2,635.00	1,572.22					61	
기반 시설	소계			1,293.04	1,293.04						
	도로		전지역	332.76	332.76						
	광장	가-1		922.92	922.92						
	광장	가-2		37.36	37.36						
조경 시설	소계			(9.43)	(9.43)						
	장식가벽	①	바닥분수광장	(9.43)	(9.43)	타일				1	24m
	열주	②	바닥분수광장			판석				6	H1.2~2.0m
휴양 시설	평의자	③	녹지							2	
유희 시설	소계			213.18	213.18						
	바닥분수광장	나		213.18	213.18					1	17x4m
	생활체육시설	④	광장							4	
편익 시설	화장실	1		66.00	66.00	철콘	1층	66	66	1	10x6.6m
관리 시설	볼라드	⑤	전지역							33	
	국기게양대	⑥	광장							3	
	공원등	⑦	광장, 녹지							7	
	안내판	⑧	녹지							3	
녹지·기타			전지역	1,062.78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합계					86.83	332.76				
기존	소로	3	1	4.5	50.72	210.30	외부도로	보도	시장입구	시장가는길
			2	3.0	16.60	55.67	진입로	보도	광장	
			3	2.8	6.37	18.03	진입로	소로3-1	광장	
			4	4.3	7.46	31.72	진입로	시장입구	광장	
			5	3.0	5.68	17.04	진입로	보도	파출소	파출소진입로



◆ 서대문구고시 제2015-117호

불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65-1388호(1965.02.03.)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불천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대문구청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용객들의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387-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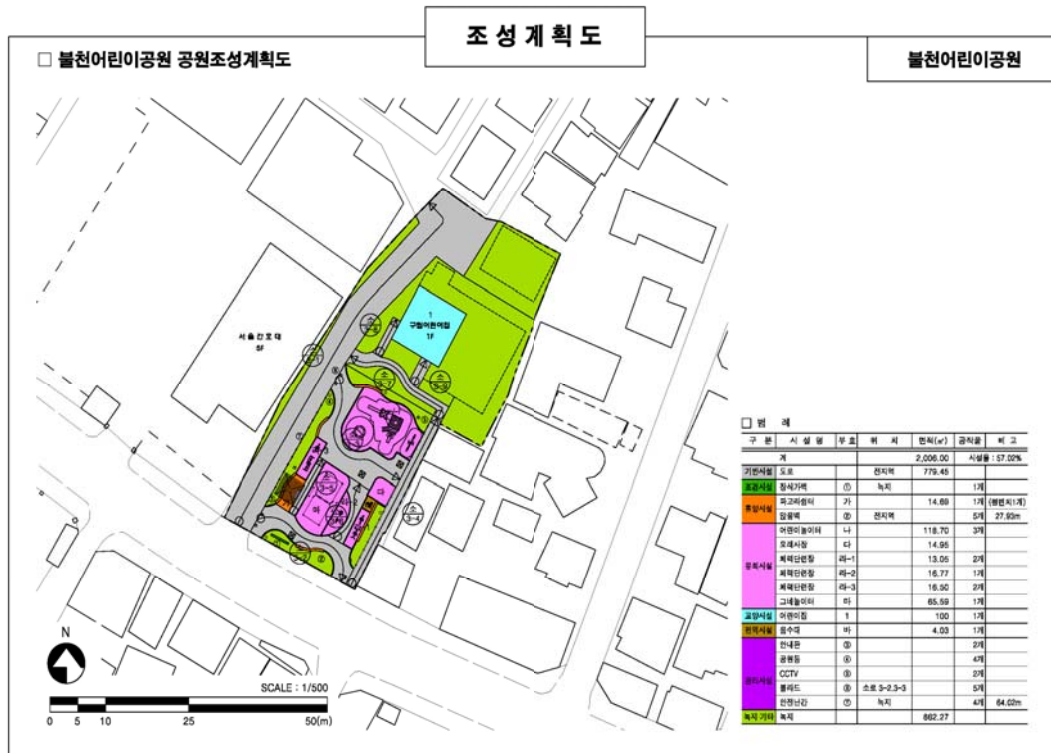
3. 면 적 : 2,006㎡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대문구 푸른도시과(☎330-1907)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불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 고
				동수 (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2,006.00	1,143.73				35	시설율 57.02%
기반 시설	소계	779.45	779.45					
	도로	779.45	779.45					
조경시설		—	—				1	
휴양시설		14.69	14.69				6	
유희시설		245.56	245.56				9	
교양시설		100.00	100.00	1층	100	100	1	어린이집
편익시설		4.03	4.03				1	
관리시설		—	—				17	
녹지·기타		862.27						
공원시설율 (법정60%)		$(1,143.73\text{㎡} / 2,006\text{㎡}) * 100\% = 57.02\%$						
공원건폐율 (법정5%)		$(100.00\text{㎡} / 2,006\text{㎡}) * 100\% = 4.99\%$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2,006.00	1,143.73					35	
기반 시설	소계			779.45	779.45						
	도로		전지역	779.45	779.45						
조경 시설	장식가벽	①	녹지							1	
휴양 시설	소계			14.69	14.69						
	파고라쉼터	가		14.69	14.69					1	(평벤치1개)
	앉음벽	②	전지역							5	27.93m
유희 시설	소계			245.56	245.56						
	어린이놀이터	나		118.70	118.70					3	
	모래사장	다		14.95	14.95						
	체력단련장	라-1		13.05	13.05					2	
	체력단련장	라-2		16.77	16.77					1	
	체력단련장	라-3		16.50	16.50					2	
	그네놀이터	마		65.59	65.59					1	
교양 시설	어린이집	1		100	100			100	100	1	
편익 시설	음수대	바		4.03	4.03					1	
관리 시설	안내판	③	녹지							2	
	공원등	④	녹지							4	
	CCTV	⑤	녹지							2	
	볼라드	⑥	소로3-2,3-3							5	
	안전난간	⑦	녹지							4	64.02m
녹지 기타	녹지			862.27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합계					201.73	779.45				
기 존	소로	3	1	5.0	67.52	447.37	보차도	차도	차도	
			2	3.0	21.56	68.47	진입로	보도	보도	
			3	2.5	25.23	108.75	진입로	보도	보도	
			4	1.8	32.29	59.93	보행로	보도	어린이집	
			5	1.3	10.72	14.06	연결로	소로3-2	소로3-3	
			6	1.5	10.95	23.33	연결로	소로3-2	소로3-3	
			7	1.9	21.70	37.37	연결로	소로3-4	소로3-1	
			8	1.5	6.92	10.58	연결로	소로3-7		
			9	2.0	4.84	9.59	진입로	소로3-7	어린이집	

◆ 서대문구고시 제2015-118호

은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65-1671호(1965.07.0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은가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용객들의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3-3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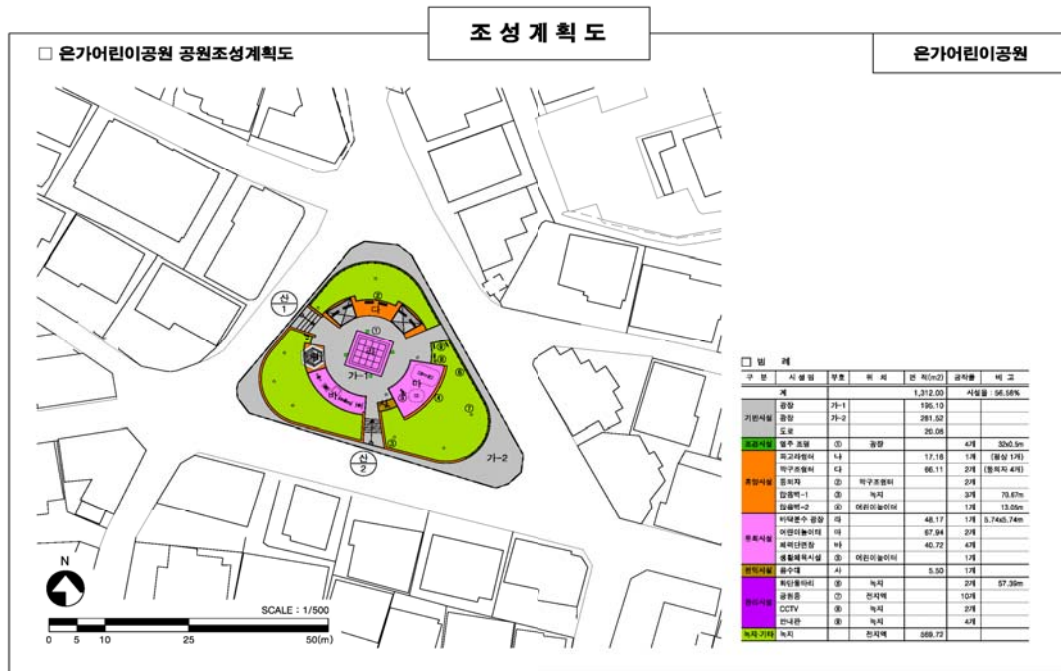
3. 면 적 : 1,312㎡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대문구 푸른도시과(☎330-1907)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은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 고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1,312.00	742.28				40	시설율 56.58%
기반 시설	소계	496.68					
	광장	476.62					
	도로	20.06					
조경시설						4	
휴양시설	83.27	83.27				9	
유치시설	156.83	156.83				8	
교양시설	-	-					
편익시설	5.50	5.50				1	
관리시설	-	-				18	
녹지-기타	569.72						
공원시설율 (법정60%)	(742.28㎡ / 1,312.00㎡) * 100% = 56.58%						
공원건폐율 (법정5%)	-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12.00	742.28					40	
기반 시설	소계			496.68	496.68						
	광장	가-1		195.10	195.10						
	광장	가-2		281.52	281.52						
	도로			20.06	20.06						
조경 시설	열주 조명	①	광장							4	32x0.5m
휴양 시설	소계			83.27	83.27						
	파고라쉼터	나		17.16	17.16					1	(평상1ea)
	막구조쉼터	다		66.11	66.11					2	(등의자 4ea)
	등의자	②	막구조쉼터							2	
	앉음벽-1	③	녹지							3	70.67m
	앉음벽-2	④	어린이놀이터							1	13.05m
유희 시설	소계			156.83	156.83						
	바닥분수광장	라		48.17	48.17					1	5.74x5.74m
	어린이놀이터	마		67.94	67.94					2	
	체력단련장	바		40.72	40.72					4	
	생활체육시설	⑤	어린이놀이터							1	
편의 시설	음수대	사		5.50	5.50					1	
관리 시설	화단울타리	⑥	녹지							2	57.39m
	공원등	⑦	전지역							10	
	CCTV	⑧	녹지							2	
	안내판	⑨	녹지							4	
녹지·기타			전지역	569.72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합계					8.1	30.32				
기존	산책로		1	4.4	3.3	14.42	진입로	광장	광장	
	산책로		2	3.1	4.8	15.90	진입로	광장	광장	

◆ 서대문구고시 제2015-119호

문화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65-1388호(1965.02.03.) 및 건설부고시 제1965-1675호(2015.07.0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문화촌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대문구청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용객들의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2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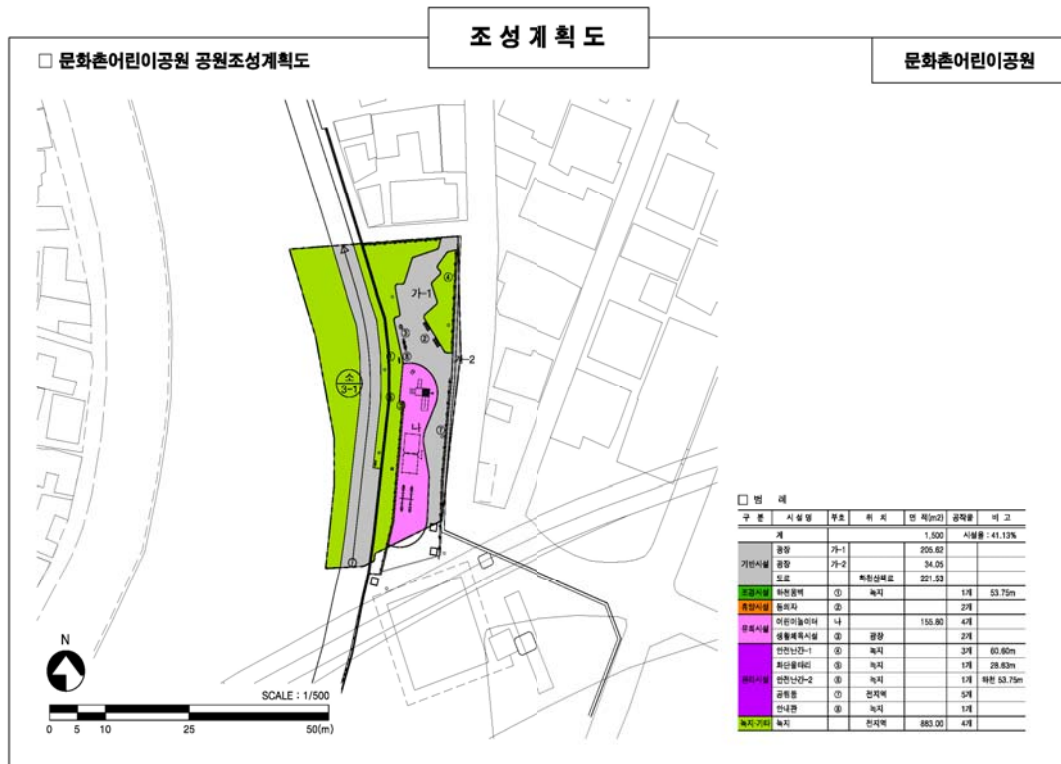
3. 면 적 : 1,50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대문구 푸른도시과(☎330-1907)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 고
				등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1,500.00	617.00				24	시설율 41.13%
기 본 시 설	소계	461.20	461.20					
	도로	221.53	221.53					
	광장	239.67	239.67					
조경시설		-	-				1	
휴양시설		-	-				2	
유희시설		155.80	155.80				6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11	
녹지·기타		883.00					4	
공원시설율 (법정60%)		(617㎡ / 1,500㎡) * 100% = 41.13%						
공원건폐율 (법정5%)		-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500.00	617.00					24	
기반 시설	소계			461.20	461.20						
	도로		하천산책로	221.53	221.53						
	광장	가-1		205.62	205.62						
	광장	가-2		34.05	34.05						
조경 시설	하천옹벽	①	녹지							1	53.75m
휴양 시설	등의자	②	광장							2	
유희 시설	소계			155.80	155.80						
	어린이놀이터	나		155.80	155.80					4	
	생활체육시설	③	광장							2	
관리 시설	안전난간-1	④	녹지							3	60.60m
	화단울타리	⑤	녹지							1	28.63m
	안전난간-2	⑥	녹지							1	53.75m
	공원등	⑦	전지역							5	
	안내판	⑧	녹지							1	
녹지기타				883.00						4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합계					54.09	221.53				
기존	소로	3	1	3.7	54.09	221.53	산책로	하천산책로	하천산책로	

◆ 서대문구고시 제2015 -120호

문화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0-180호(2010.05.13.)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 결정된 문화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용객들의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0-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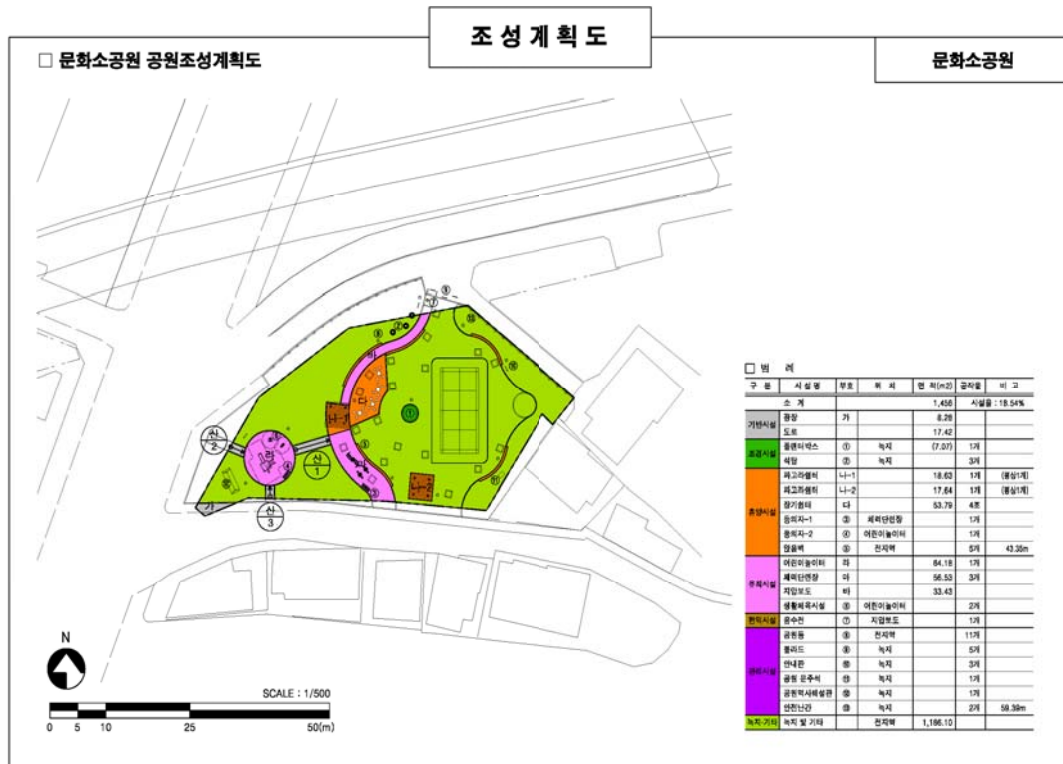
3. 면 적 : 1,456㎡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대문구 푸른도시과(☎330-1907)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 고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1,456.00	252.26				47	시설율 18.54%
기 반 시 설	소계	25.7	25.7					
	도로	17.42	17.42					
	광장	8.28	8.28					
조경시설		—	—				4	
휴양시설		90.06	90.06				13	
유희시설		154.14	154.14				6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1	
관리시설		—	—				23	
녹지·기타		1,186.10						
시설율 (법정20%)		(269.90㎡ / 1,456㎡) * 100% = 18.54%						
건폐율 (법정0%)		—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456.00	269.90					47	
기반 시설	소계			25.70	25.70						
	도로			17.42	17.42						
	광장	가		8.28	8.28						
조경 시설	플랜터박스	①	녹지	(7.07)	(7.07)					1	
	석탑	②	녹지							3	
휴양 시설	소계			90.06	90.06						
	파고라쉼터	나-1		18.63	18.63					1	(평상1개)
	파고라쉼터	나-2		17.64	17.64					1	(평상1개)
	장기쉼터	다		53.79	53.79					4	
	등의자-1	③	체력단련장							1	
	등의자-2	④	어린이놀이터							1	
	앉음벽	⑤	전지역							5	43.35m
유희 시설	소계			154.14	154.14						
	어린이놀이터	라		64.18	64.18					1	
	체력단련장	마		56.53	56.53					3	
	지압보도	바		33.43	33.43						
	생활체육시설	⑥	어린이놀이터							2	
편의 시설	음수전	⑦	지압보도							1	
관리 시설	공원등	⑧	전지역							11	
	볼라드	⑨	녹지							5	
	안내판	⑩	녹지							3	
	공원문주석	⑪	녹지							1	
	공원역사해설판	⑫	녹지							1	
	안전난간	⑬	녹지							2	59.39m
녹지 기타	녹지		전지역	1,186.10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합계					11.56	17.42				
기존	산책로		1	1.5	6.70	10.08	진입로	보도	어린이놀이터	
			2	1.5	2.80	4.22	진입로	보도	어린이놀이터	
			3	1.5	2.06	3.12	진입로	보도	어린이놀이터	

◆ 서대문구고시 제2015-121호

가자거꾸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0-180호(2010.05.13.)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된 가자거꾸로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대문구청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용객들의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38-2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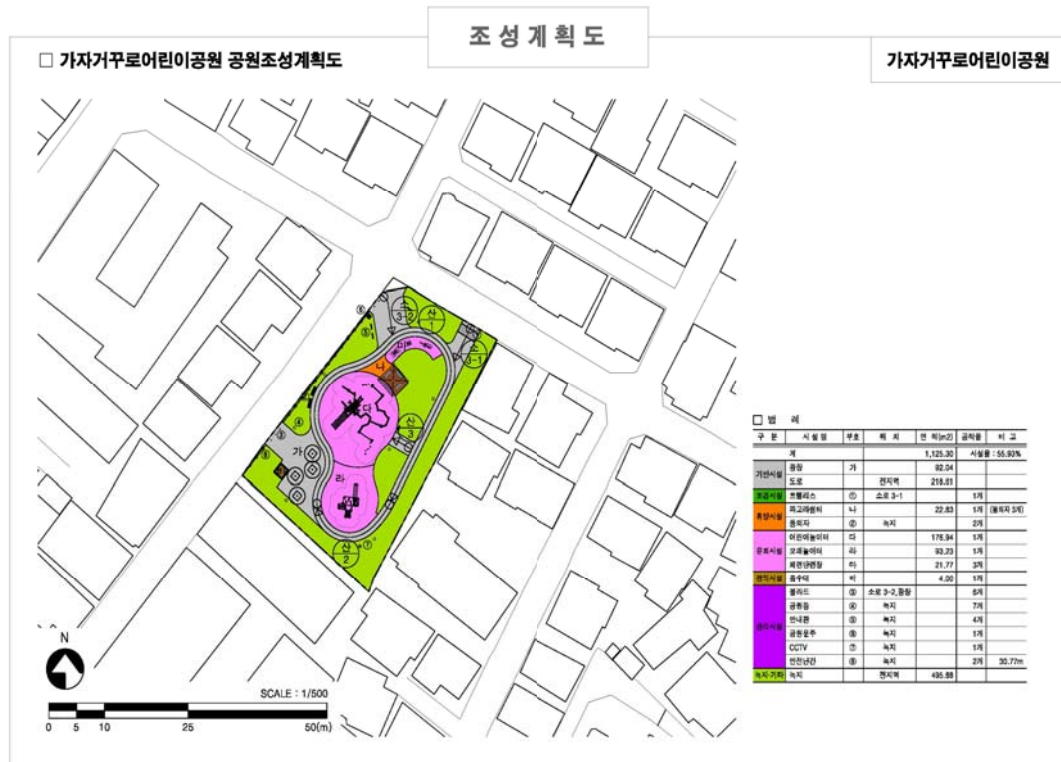
3. 면 적 : 1,125.3㎡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대문구 푸른도시과(☎330-1907)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자거꾸로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 고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1,125.30	629.42				31	시설율 55.93%
기 반 시 설	소계	310.65	310.65					
	도로	218.61	218.61					
	광장	92.04	92.04					
조경시설		-	-				1	
휴양시설		22.83	22.83				3	
유희시설		291.94	291.94				5	
교양시설		-	-					
편익시설		4.00	4.00				1	
관리시설		-	-				21	
녹지·기타		495.88						
시설율 (법정60%)		(629.42㎡ / 1,125.3㎡) * 100% = 55.93%						
건폐율 (법정5%)		-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 적		
계				1,125.30	629.42					31	
기반 시설	소계			310.65	310.65						
	도로			218.61	218.61						
	광장	가		92.04	92.04						
조경 시설	트렐리스	①	소로 3-1							1	
휴양 시설	소계			22.83	22.83						
	파고라쉼터	나		22.83	22.83					1	(평의자3개)
	등의자	②	녹지							2	
유희 시설	소계			291.94	291.94						
	어린이놀이터	다		176.94	176.94					1	
	모래놀이터	라		93.23	93.23					1	
	체력단련장	마		21.77	21.77					3	
편의 시설	음수대	바		4.00	4.00					1	
관리 시설	볼라드	③	소로 3-2, 광장							6	
	공원등	④	녹지							7	
	안내판	⑤	녹지							4	
	공원문주	⑥	녹지							1	
	CCTV	⑦	녹지							1	
	안전난간	⑧	녹지							2	30.77m
녹지 기타	녹지		전지역	495.88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합계					111.58	218.61				
기준	소로	3	1	3.6	6.87	26.17	진입로	보차도	산책로1	
			2	5.8	7.34	42.73	진입로	보차도	산책로1	
기준	산책로		1	1.5	75.13	112.7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순환산책로
			2	1.5	18.27	27.4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순환산책로
			3	2.4	3.97	9.61	연결로	산책로1	어린이놀이터	

◆ 구로구고시 제2015-1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구로구청장

1. 변경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존치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이 낮고 주변 토지로의 접근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100	구로동 638-28	구로동 614-79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 (1990.10.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임

나.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소로2	-	- 변경(폐지) • 연장 100m → 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를 해소하고 존치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이 낮고 주변 토지로의 접근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해당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임

3. 지형도면의 작성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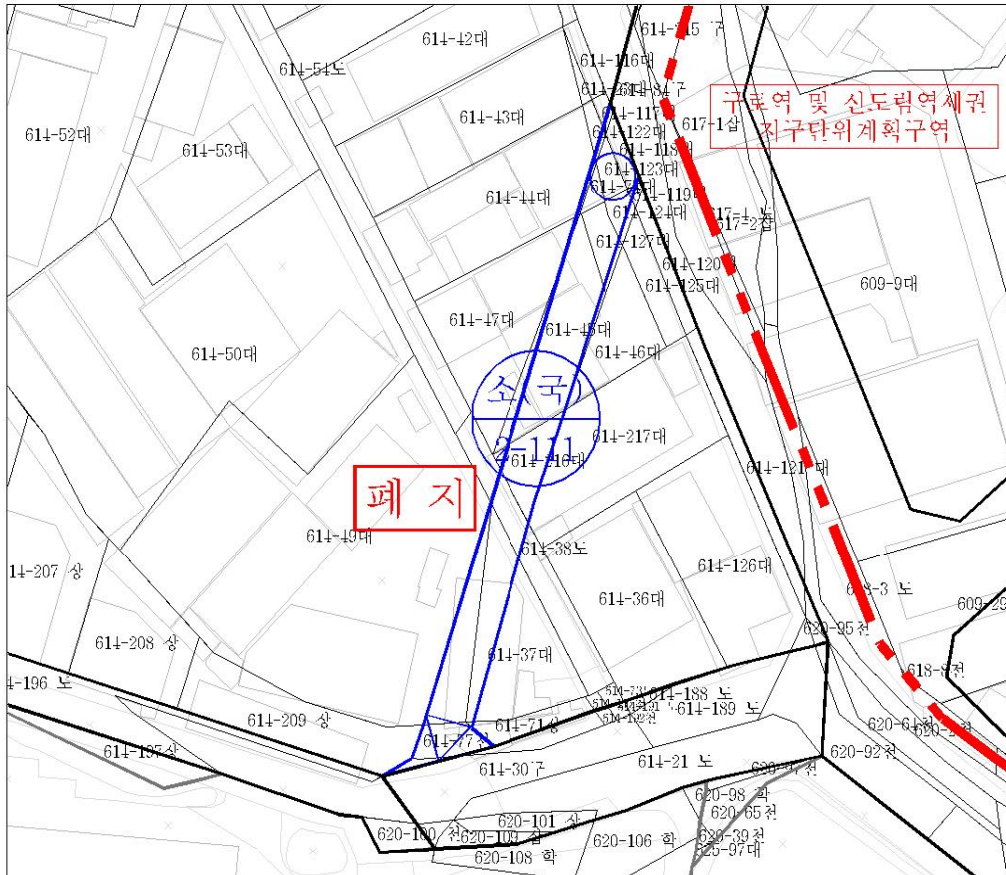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4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S = 1:1,000



구 분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구토쿠 도시계획과	구토쿠 도시계획과	구토쿠 도시계획과
직 위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직 명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성 명	양청인	이경호	이기호
확인인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규 보				기능	인장 (m)	기립	중립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건설일	비 고
	등급	구별	번호	폭(m)								
폐지	소로	2	111	8	국지도로	100	구로동 638-28	구로동 614-79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354호 (제39, 19, 24)	상기 미결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판례 :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

◆ 서초구고시 제2015-117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구 분	지 번	면적 (㎡)	기 정	변 경	비고
			계획내용	계획내용	
GC-7	공동 개발	서초동 1575-1~3	990.8	1509-1,-2/-3 공동개발 지정/권장	1575-1 단독개발
				1575-2/-3 공동개발 권장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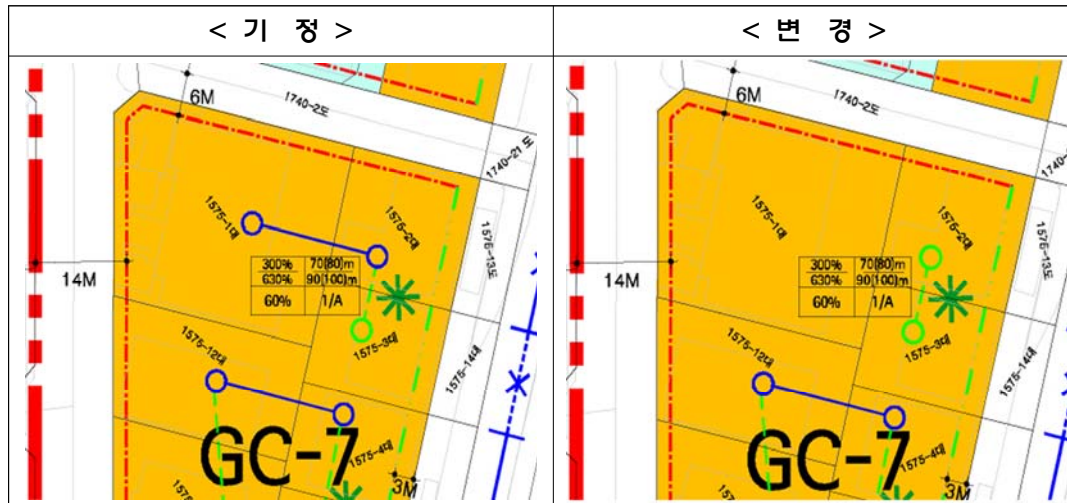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초동 1575-1~3번지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15-7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3-194호(1973.12.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0-38호(2000.08.05)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능동 436-1~138-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토지(물건)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진구 능동 436-1~138-6, 385-3~385-6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능동 436-1~138-6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폭 6m, 연장 320m

마.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12.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토지조서 참고)

자.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내용	
1	능동	138-9	대	85	85		학교법인 대양학원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				
2	능동	138-10	대	108	108		학교법인 대양학원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				원지번 138-2
3	능동	140-1	대	17	17		신옥순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16길 105-5(능동)				원지번 140
4	능동	147-11	도로	80	80		서울특별시					
5	능동	147-18	대	34	34		권태신	서울시 광진구 능동 256-4				원지번 147
6	능동	147-19	대	44	44		서울특별시					원지번 147-3
7	능동	147-23	공원	159	159		기획재정부					원지번 147-4
8	능동	147-24	공원	130	130		기획재정부					원지번 147-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 분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9	능동	147-25	공원	16	16		기획재정부						원지번 147-4
10	능동	147-26	대	45	45		서울특별시						원지번 147-9
11	능동	147-27	공원	3	3		서울특별시						원지번 147-10
12	능동	147-28	공원	3	3		서울특별시						원지번 147-10
13	능동	147-29	공원	55	55		서울특별시						원지번 147-15
14	능동	18-57	공원	690	690		서울특별시						원지번 18
15	능동	18-58	공원	205	205		서울특별시						원지번 18
16	능동	384-1	대	2	2		김숙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0-4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	능동	385-9	전	114	114	80/323	박상훈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19-3 백두아파트 968동 402호				원지번 385-1
						120/323	박상호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43길 145 (중곡동)				
						123/323	박상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7-7 양지빌라 나동 202호				
18	능동	385-10	대	24	24	1/2	정희중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60 인왕산아이파크 105-202	능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광진구 능동 223-8	근저당	원지번 385-3
						1/2	최항화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60 인왕산아이파크 105-202				
19	능동	385-11	대	6	6	1/2	정희중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60 인왕산아이파크 105-202	능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광진구 능동 223-8	근저당	원지번 385-3
						1/2	최항화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60 인왕산아이파크 105-202				
20	능동	437-4	대	100	100		구종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리 3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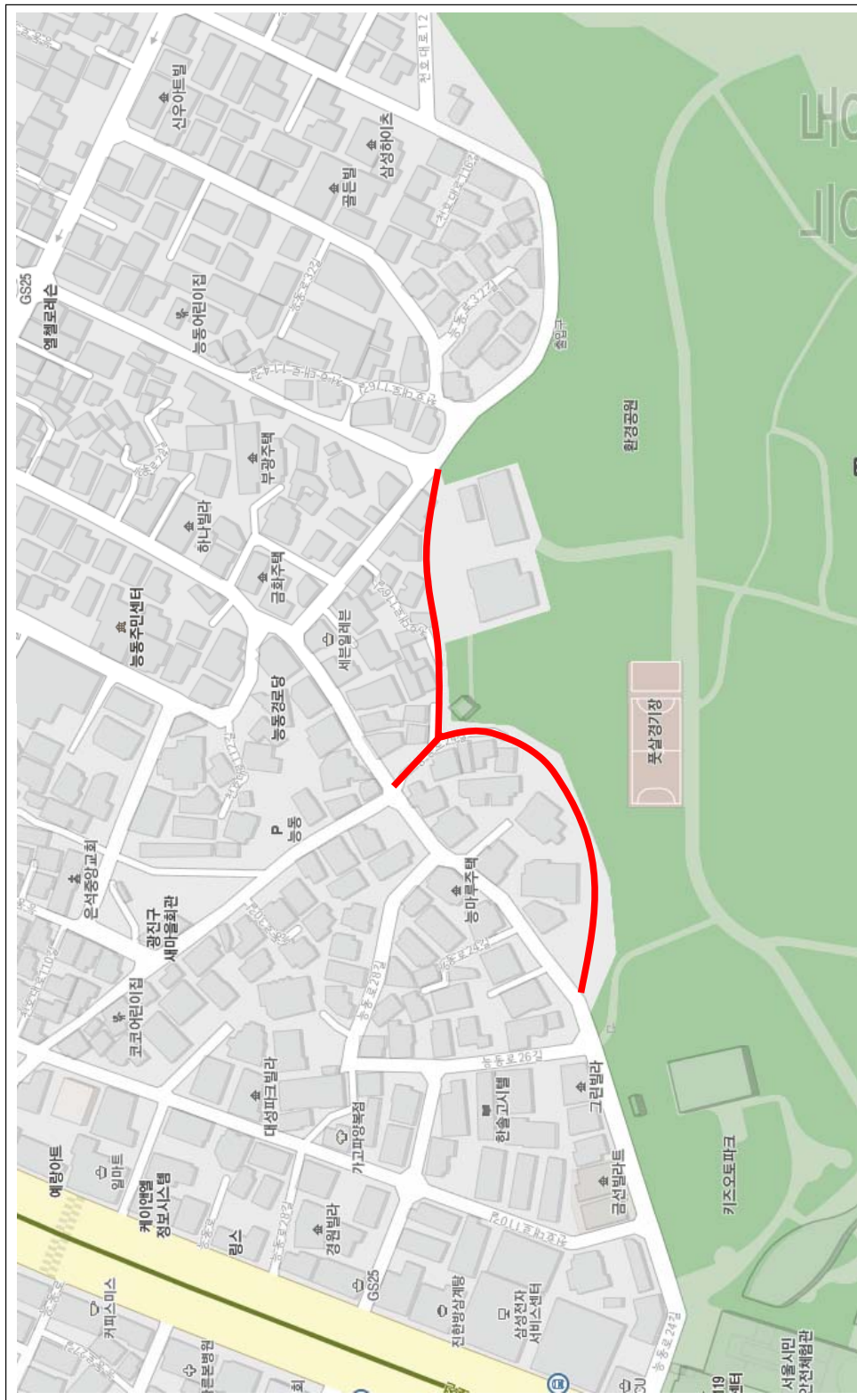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층별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능동	138-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	지층	주택	학교법인 대영학원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4㎡	1층	주택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	2층	주택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	3층	주택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8㎡	3층 (물출부)	주택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8㎡	지층	통로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	지층	보일러실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	1층	보일러실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0㎡	1~2층	계단							
			건물	철골구조	5㎡	3~4층	계단							
			케노피		8㎡	3층	케노피							
			화단		3㎡		화단							
			수목		2주		수목							
			담장		1식		담장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층별 면적	설계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지	판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2	능동	140	건물	연외조	3㎡	1층	주택			박순안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18길 43			
			답장		1식		답장								
3	능동	147-3	건물	연외조	22㎡	1층	주택			김장기		서울시 광진구 능동 145			기 존 무허가
4	능동	147-9	건물	시멘트블럭조	6㎡	1층	주택			권태신		서울시 광진구 능동 256-4			
			건물	시멘트블럭조	4㎡	1층	화장실								
5	능동	147	건물	시멘트블럭조	8㎡	1층	부엌			권태신		서울시 광진구 능동 256-4			
				시멘트블럭조	27㎡	1층	주택								
				시멘트블럭조	2㎡	1층	주택								
6	능동	147-4	건물	시멘트블럭조	2㎡	1층	보일러 실			권태신		서울시 광진구 능동 256-4			
7	능동	385-7	건물	시멘트블럭조	2㎡	1층	주택			이명국		서울시 광진구 능동 385-6			
8	능동	385-6	건물	시멘트블럭조	4㎡	1층	창고			이명국		서울시 광진구 능동 385-6			
					1㎡	1층	주택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층별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 류						
9	능동	385-2	건물	연외조	8㎡	1층	주택		박미라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4길 60-10	중곡24동 세마들금고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7	근저당						
			건물	연외조	1㎡	층	보일러실												
			건물	목재	2㎡		계단												
10	능동	385-3	건물	철골구조	2㎡	1,2층	계단	1/2	정희종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60 인왕산아이파크 105-202	능동 세마들금고	서울시 광진구 능동 223-8	근저당						
			건물	철골구조	1㎡	3,4층	계단												
			답장		1식		담장												
11	능동	385-1	대문		1식		대문	1/2	최향화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60 인왕산아이파크 105-202									
			수목		1주		수목												
			답장				답장								80/323	박상훈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19-3 백두아파트 968동 402호		
12	능동	18	창고	천막창고	22㎡		창고	120/323	박상호	서울시 광진구 지양로43길 145 (중곡동)									

■ 위치도



◆ **강북구공고 제2015-973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7-87호(2007.12.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4-59호(2014.3.27)로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4-114호(2014.6.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5-24호(2015. 2.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5-71호(2015. 4. 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강북구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구분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비고
당초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강북구 삼양로77길 95 ~ 삼양로77길 66	폭 12m 연장 270m	강북구고시 제87호 (2007.12.20)	
변경		강북구 삼양로77길 95 ~ 삼양로77길 16	폭 12m 연장 582m		연장 312m 추가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열람 장소 : 강북구청 별관 도로관리과[강북구 솔매로 49길 14(미아동) 3층]}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 변경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추가구간에 대한 명세로 당초구간에 대한 명세는 변동없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전화 02-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관리의 내 용	
1	수유동 477-12	대지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9길 27-24	유응명	61/14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9길 27-24	권오천	80/141				
2	수유동 480-46	대지	6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9길 35-37	황병주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9길 35-37	유정숙	1/2				
3	수유동 480-47	도로	9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9길 35-35	임홍식					
4	수유동 480-48	대	5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46	김무현					
5	수유동 480-50	도로	596	59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505/59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세무과)	압류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81	유귀순	92/597				
6	수유동 480-51	도로	2	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42 조양빌딩	김창건					
7	수유동 480-52	대	3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42	김진태					
8	수유동 480-53	대지	1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조로7길 15	황효미					
9	수유동 480-55	대지	7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22길 53 주공아파트 1003-403	최생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삼양동지점)	근저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뱀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0	수유동 480-57	대지	8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5.109/ 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32, 502호	김경희	5.109/ 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5.2635/ 38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수유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5.2635/ 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6.9285/38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수유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6.9285/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10.0045/38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수유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10.0045/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201호	조동호	32.719/ 38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뱀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0	수유동 480-57	대지	8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202호	장윤주	33.982/38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 166	북서울농업협동 조합 (삼양로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38가길 32, 301호	김요탁	32.716/38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미아역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302호	양환영	33.982/38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수유역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401호	홍기옥	29.084/38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서울은행 (삼양동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402호	문순옥	34.066/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13.6075/383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	농협동조합중 영회 (수유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13.6075/38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뱀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지분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10	수유동 480-57	대지	8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1호	김한민	29.084/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세무과)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등적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수유역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37.772/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37.772/38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뱀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의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1	수유동 480-58	대지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5.109/ 38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수유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32, 502호	김경희	5.109/ 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5.2635/ 38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수유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5.2635/ 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6.9285/3 8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수유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6.9285/3 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10.0045/ 38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수유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10.0045/ 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201호	조동호	32.719/ 38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1	수유동 480-58	대지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202호	장윤주	33.982/ 38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66	북서울농업협동조합 (삼양로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38가길 32, 301호	김요탁	32.716/ 38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미이역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302호	양환영	33.982/38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수유역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401호	홍기욱	29.084/ 38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서울은행 (삼양동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402호	윤순옥	34.066/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13.6075/383	서울특별시 중구 총정로 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유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13.6075/38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뱀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1	수유동 480-58	대지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1호	김한민	29.084/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세무과)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동작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수유역지점)	근저당권	
12	수유동 480-59	대	40	4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한원석	37.772/38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2, 502호	한용수	37.772/383				
13	수유동 480-60	대지	21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8가길 28	장길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천구 금하로23라길 31, 606호(시흥동, 현대아파트)	장길한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8가길 28	이정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4	수유동 480-61	도로	35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8길 43, 301호	주식회사 리펠스베이					
15	수유동 480-62	대지	9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28-4	주병선	89.1/2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05-396	김재걸	121.9/ 211				
16	수유동 480-63	임야	196	196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23길 14	김기주					
17	수유동 483-22	대지	71	71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14-8	김태진					
18	수유동 483-23	대지	55	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6길 5-14, 501호(대치동)	김은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종암로21길 25(종암동)	종암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9	수유동 483-24	대지	91	9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43	조성호					
20	수유동 483-25	대지	105	10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9	김성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24 정암빌딩	강북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45	강북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21	수유동 483-26	대지	2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20-11	박경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주택과)	압류		
22	수유동 483-27	대지	50	5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20-13	김연식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우리은행 (수지동천지점)	근저당권		
23	수유동 483-28	대지	10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3길 74-7	백태기						
24	수유동 483-29	대지	33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07, 5동 605호(개포동, 우성3차아파트)	이승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60(장위동)	장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25	수유동 483-30	대지	25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1(수유동)	박석규						
26	수유동 483-31	대지	24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29	오테옥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83-6	강북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7	수유동 484-90	대지	91	9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61	김무환						
28	수유동 484-91	도로	13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4길 48-5	송의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29	수유동 484-92	대지	83	8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59(수유동)	김경숙					
30	수유동 484-93	대지	64	6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57	송영옥					
31	수유동 484-94	도로	92	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15	천일곡산업 주식회사					
32	수유동 484-95	대지	93	9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89-26 진명체르빌 202호	김성옥					
33	수유동 484-96	대지	162	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51	박종숙	209.73/5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삼성동)	(주)비지에프리텔	전세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26 월곡래미안루나벨리	김희진	111.01/501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3길 66	김명희	69.25/5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34-41(장위동)	김희준	111.01/501				
34	수유동 486-1522	도로	6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12(수서동)	유중광	8/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8 벽산블루밍아파트 102-503	김문배	2/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35	수유동 486-1523	대지	23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15길 93	전호철	12.77/357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1가길 37, 3동	이인숙	9.29/357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1가길 37, 3동 101호	이인숙	16.79/357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인로7나길 27-10	홍완석	23.8/35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8길 39, 202호	임윤남	27.19/357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 (삼양동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8길 39, 203호	김보관	15.61/357				
						김재숙	15.61/35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8길 39, 301호	계명석	11.9/357				
						계명호	11.9/357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국민은행 (미아역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8길 39, 302호	배정복	27.19/357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19	북서울농협 협동조합 (삼양로지점)	근저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뱀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35	수유동 486-1523	대지	23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3길 11-1	신미영	31.22/3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611 비동 비04호	노승인	23.80/35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8길 39, 402호	강신호	27.19/357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거정로 367	서울경기양계축산업 협동조합 (삼양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8길 39, 403호	박종원	15.61/357				
						박종한	15.61/35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8길 39, 501호	노승자	32.79/357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도봉지점)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8길 39, 502호	최정선	38.73/357	서울특별시 중로구 공평동 1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소매여신영업부)	근저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36	수유동 605-677	대지	55	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2 청담아파트 3동 305호	김진규					
37	수유동 605-678	대지	216	2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6	구명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0-1	하나은행 (삼양동지점)	근저당권	
38	수유동 484-38	대지	43	4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57	김광찬					
39	수유동 480-42	대지	16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8가길 28	장길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압류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3라길 31, 606호(시흥동 현대아파트)	장길한		
40	수유동 480-41	대지	5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6-6	한용수					
41	수유동 신158-1	임야	68	68	서울 중구 마른내로4길 14	최한순	3/5				
					서울 중구 마른내로4길 14	차정숙	2/5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수유동 480-18	화장실 1층	벽돌조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42	김진태				
2	수유동 480-1	건물 지층	세멘벽돌조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28-4	김재권				
				6						
				6						
3	수유동 477-8	가건물 1층	연외조 및 세멘벽돌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9길 27-24	권오천				
4	수유동 605-646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20	안윤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19	북부농업협동조합 (삼양동지점)	근저당권	
				5						
				5						
5	수유동 605-449	창고	철근콘크리트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16	박석태				
		창고		11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6	수유동 605-445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	5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6	구명륜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가건물	1층		11						
		건물	1층		56						
			2층		61						
			3층		61						
			4층		61						
			옥탑		5						
7	수유동 605-444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4번지 1 세창연립 나동 204호	김진규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층		6						
			2층		6						
			3층		6						
			4층		6						
			옥탑		3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8	수유동 605-657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38						
		화장실	1층		3						
9	수유동 483-1	건물	지하	연외조	3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3-1	오태욱			강북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층		31						
			2층		31						
		보일러실	1층		1						
10	수유동 483-2	건물	1층	연외조	3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3-1	박석규				
			2층		35						
11	수유동 483-3	건물	1층	연외조	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33	이화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암로 60(장암동)	근저당권
			2층		33						
12	수유동 483-5	건물	1층	벽돌조	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3-5	김연식				
			2층		33						
			3층		33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2	수유동 483-5	건물	4층	연외조	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3-5	김연식				
			옥탑		9						
13	수유동 483-15	건물	1층	연외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3-15	박경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14	수유동 483-16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6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3의 16호	김성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0-6	강북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층		61						
			2층		61						
15	수유동 483-21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	69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3-21	조성호				
			1층		55						
			2층		55						
16	수유동 483-10	건물	1층	연외조	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6길 5-14, 501호(대치동)	김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1길 25(종암동)	종암동 새마을금고		
17	수유동 483-19	건물	지층	연외조	44	전라남도 보성군 화천면 동율리 14-8	김태진				
			1층		44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리의 내용	
18	수유동 484	건물	철근콘크리트	97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51	박종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삼성동)	(주)비지엠프 리테일	전세권	570.42/1 349.87
				85						
				8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26 웰곡래미안루나밸리 108-1902	김희진				301.95/1 349.87
				85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메로 43길 66	김명희				175.55/1 349.87
				8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34-41(장위동)	김희준				301.95/1 349.87
19	수유동 484-19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동1길 155 진명세르빌 202호	김성욱				
				60						
				5						
				60						
				60						
				60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20	수유동 484-20	창고	1층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57	송영우				
			지층		47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47						
			2층		47						
			3층		47						
		샷시	1층		13						
21	수유동 484-15	건물	지하2층	연외조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59	김경숙				
			지하1층		47						
			1층		47						
22	수유동 484-25	건물	지층	연외조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4길 19, 704동 1206호(장지동, 송파퍼민타운7 단지)	동정길				근저당권
			1층		50						

발래골길 도로확장공사



◆ 서대문구공고 제2015-807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2181호(1965.2.5.)호 및 서울시 고시 제109호(1998.04.02)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5-79호(2015.3.1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결정된 백련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안)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 일대(백련근린공원)
2. 면 적 : 1,310,294㎡
3. 조성계획 변경(안)
 - 시설면적 : 당초 211,142.71㎡ → 변경 211,499.97㎡
 - 주요시설(변경)
 - 기 반 시 설
 - 도로 39,632.00㎡ ⇒ 39,700.06㎡ (증68.06㎡)
 - 조 경 시 설 : 2,653㎡(변동없음)
 - 휴 양 시 설 : 9,048.5㎡ ⇒ 9,121.7㎡(증73.2㎡)
 - 유 희 시 설 : 1,778㎡ ⇒ 1,955㎡(증177㎡)
 - 운 동 시 설 : 31,570㎡ ⇒ 31,600㎡(증30㎡)
 - 교 양 시 설 : 116,159.21㎡(변동없음)
 - 편 익 시 설 : 5,052㎡ ⇒ 5,061㎡(증9㎡)
 - 관 리 시 설 : 250㎡(변경없음)
 - 녹지 및 기타 : 1,099,151.29㎡ ⇒ 1,098,794.03㎡ (감357.26㎡)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330-1706)
7. 기 타 :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푸른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15-821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1. 공 고 명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9. 17. ~ 2015. 10. 20.
3. 공고대상

연번	등 록 번 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체 구분	비고
1	2013-서울금천-00027 (대부업)	(주)지*건설대부	이*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35(독산동)	법인	

4. 공고내용

- 가.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사무소 소재불명으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위 기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같은 법 제4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경제일자리과(☎02-2627-1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15-88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1-66호(2011.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31호(2015.4.30) 및 동작구고시 제2015-43호(2015.6.11)로 실시계획인가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현충근린공원조성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21-16 등 11필지
 -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21-16 등 11필지
- 면 적
 - 당초 : 16,235㎡
 - 변경 : 14,647㎡
- 내 용
 - 당초 : 토지보상 16,235㎡
 - 변경 : 토지보상 14,647㎡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 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권리 내용	
1	사당동 신21-16	임야	3,000	2,912	3,000	2,912	2,912	서울 관악구 사당동 57-7	김상길	1/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84-5	이덕상	10/1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23길 14(회경동)	이육상	10/104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97-15	최상근	3/520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79-15	최서연	2/520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8-34	이만숙	1/104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8-34	김유자	2/104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8-34	이우창	2/10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2-4	설준희	1591.875/2547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김영자	5/40				
								샘마을아파트 205-701			서인천세무서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연희동) (재산세과-1703)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	조영실	2/40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연리동) 168-9) (인천서부지사) (징수부-2761)	압류	
								영남텔레콤스텔아파트 115-1901			동해시	강원동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세무과-420)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20130524)	압류	
											인천광역시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세정과-3344)	압류	

입원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및내용	
1	사당동 산21-16	사당동 산21-16	임야	3,000	2,912	3,000	2,912	성계제	1/40		상속변경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자아파트 327-305	1/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827 반포아파트 78-103	1/40		
								서울 동작구 흑석3동 59-10	6367.5/509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류
2	사당동 산22-32	사당동 산22-32	임야	2,500	2,500	2,500	-	설상희	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90길 64, 401호(청담동, 연세리버테라스)	1/2		
3	흑석동 산79-49	흑석동 산79-49	임야	4,000	4,000	4,000	4,000	이태구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8길 49(서초동)	1/2		
4	흑석동 산79-48	흑석동 산79-48	임야	2,148	2,148	2,148	2,148	이동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종대로 110			
5	흑석동 산70-13	흑석동 산70-13	임야	1,614	1,614	1,614	1,614	서울특별시	5093.724/51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종대로 110	20.276/51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6	흑석동 산71-3	흑석동 산71-3	임야	335	335	335	33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7	사당동 산10-6	사당동 산10-6	임야	855	855	855	85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8	사당동 산10-38	사당동 산10-38	임야	40	40	40	4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9	사당동 산10-39	사당동 산10-39	임야	1,359	1,359	1,359	1,35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10	사당동 산10-40	사당동 산10-40	임야	367	367	367	36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11	사당동 산10-41	사당동 산10-41	임야	17	17	17	1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12	흑석동 산79-47	흑석동 산79-47	임야	-	5,561	-	1,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51, 108동 401호(전농동, 래미안아름다운아파트)	이광우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건축면적 (연면적)	이용현황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사당동 산21-16	건물	시멘트블록조 및 판넬, 사시	94㎡	창고	서울 동작구 사당로23길 247-1, 디동 101(사당동)	박영호					무허가
		건물	천막구조물	62㎡	창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8-1 성락빌라 A동 302호	김재홍					무허가
		가설물	천막구조물	15㎡	창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8-1 성락빌라 A동 302호	김재홍					무허가
			컨테이너	7㎡	창고	미상						무허가
			컨테이너	27㎡	창고	미상						무허가
			컨테이너	18㎡	창고	미상						무허가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5-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수개발 (대표 한종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길 9(영등포동7가) 207호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 (가양대교북단 하류100m)	선박 31척 (8977.3㎡)	정박대기	2015.9.1 ~ 2015.9.30	2015. 8.2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5-1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대한전선(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천호대교 하단 수상부위	선박 3척 (891.3㎡)	천호-구의T/L 케이블 교체작업	2015.9.14~ 2015.11.30	2015. 9.12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5-1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삼림 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1001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 2척 (448.2㎡)	마곡철도교 정밀점검	2015.9.17~ 2015.9.30	2015. 9.16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5-13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5.9.24. ~ 2015.10.7.(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5.10.8. ~ 2015.10.2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명	적발년월	통지번호	성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43	채*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길 ***	***호 (회기동)
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46	김*복	이륜 이상의 비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원로***길 ***	(신사동)
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52	오*진	이륜 이상의 비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길 ***	***동 ****호 (망우동)
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58	문*송	이륜 이상의 비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길 **	***호 (상암동)
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59	정*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경기도 오산시 수정로 ***	죽미마을 휴먼시아아파트 ****동 ****호 (금암동, 죽미마을휴먼시아아파트)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66	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	(삼성동)
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70	강*자	이륜 이상의 비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	
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71	강*자	이륜 이상의 비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	
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77	강*자	이륜 이상의 비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	
1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78	강*자	이륜 이상의 비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	
1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179	강*자	이륜 이상의 비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5-13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5.9.24. ~ 2015.10.7.(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5.10.8. ~ 2015.10.2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충돌 대상내역

순번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소재주소
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82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서*훈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성신동)
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83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한*수	기타	경기도 하남시 덕신로 **	***동 ****호 (덕봉동, 한솔리치빌아파트*단지)
3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11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욱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	***동 ****호 (고덕동,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4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7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5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1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성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다길 *	(서계동)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7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근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길 **	***호 (역삼동)
7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3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혜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호 (석남동, 신성빌라)
8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62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9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8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나길 **	***호 (성내동)
10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2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영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길 **	***호 (구로동)
11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4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강*철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길 *-**	***호 (석촌동)
12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 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0850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5-14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3. 공시송달 대상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 번호	성명	주소	부과 예정액(원)	자진납부금액 (원)	사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5-09	2769	최*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침길36번길 **	500,000	400,000	보관기간 경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15-09	2770	홍*현	서울시 광진구 독섬로52마길 **	500,000	400,000	보관기간 경과

4. 공고기간 : 2015.9.21. ~ 2015.10.08(18일)
5. 자진납부기간 : 2015.10.09. ~ 2015.10.23.(15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에서 사전통지서 및 자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
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02-3780-079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 정 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617호 정정

서울시보 제3309호(2015.9.3.)에 게재 · 공고된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정정

○ 시보 200면(2015.9.3. 제3309호)

시보 내용	○ 공인폐기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장인	2.7cm × 2.7cm		없음
정정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장인	2.7cm × 2.7cm		없음
	서울특별시 상수도연구원의인	2.4cm × 2.4cm		
비고	폐기 공인명 오타 수정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